



돌봄취약계층 맞춤형 육아지원 방안 (Ⅳ)

- 미혼모·부 가정의 자녀양육 실태 및 지원방안 -

김지현 외

연구보고 2018-22

돌봄취약계층 맞춤형 육아지원 방안(IV)

-미혼모·부 가정의 자녀양육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책임자 김지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자 권미경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최윤경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연구보고 2018-22

돌봄취약계층 맞춤형 육아지원 방안(Ⅳ)

- 미혼모·부 가정의 자녀양육 실태 및 지원방안 -

발행일 2018년 12월
발행인 백선희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소 06750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3층, 4층
전화 02) 398-7700
팩스 02) 398-7798
홈페이지 <http://www.kicce.re.kr>
인쇄처 (사)한국장애인문화콘텐츠협회 02) 2279-6760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9-11-87952-81-7 93330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머 / 리 / 말

최근 우리나라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출산 장려를 하기 전에 낳은 아이부터 잘 기르자는 방향 아래 한부모, 미혼모·부 가정의 자녀들이 마음 놓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 및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8년 한 해에도 미혼모·부를 비롯한 한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동양육비 인상 및 지원자녀 연령 확대, 중위소득 기준 상향 등의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까지의 미혼모·부 가정 지원에 관련된 연구들은 일부 연구를 제외하고는 청소년 미혼모 및 십대 미혼모 등의 특정 연령대에 집중되어 있거나, 미혼 임신기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재가에서 양육을 선택하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미혼 한부모를 대상으로 양육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현재 미혼모·부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지원정책들을 검토하여, 미혼모·부 가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앞으로 미혼모·부의 지원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경제적인 지원 또는 시설위주의 지원뿐만 아니라, 재가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재가 양육 미혼모·부 가정에 관심을 가지고, 이들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자리 잡고 있는 돌봄 문제의 해결, 미혼모·부가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을 정확히 제공할 수 있는 지원창구의 마련, 미혼모·부 초기지원 거점센터의 역량 강화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해 도움을 주신 미혼모 당사자모임, 민간 미혼모 지원단체,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관계자와 전국 17개의 미혼모·부 초기지원 거점센터 담당자, 자문해 주신 학계 교수님들께도 감사를 드린다. 끝으로 본 연구를 통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미혼모·부 가정에도 차별없는 인식이 확산되고, 건강하게 자녀를 양육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사회에 한 발짝 다가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둔다.

2018년 12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백 선 희

목 차

요약	1
<hr/>	
I. 서론	17
<hr/>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
2. 연구내용	21
3. 연구방법	22
4. 연구의 범위	27
II. 연구의 배경	33
<hr/>	
1. 미혼모·부 가정 현황	35
2. 국내 미혼모부 지원 정책	39
3. 미혼모·부 지원 전달체계	54
4. 국외 미혼모·부 지원 정책	66
5. 미혼모·부 관련 선행연구	80
III. 미혼모 자녀 양육 및 자립 실태	93
<hr/>	
1. 응답자 특성	95
2. 자녀 돌봄 및 양육 특성	108
3. 취업 및 자립 관련 특성	149
4. 임신·출산기 경험	166
5. 정책 지원 경험 및 요구	176
6. 소결	187

IV. 미혼모·부 가정 양육의 어려움 및 지원요구	191
1. 심층 면담 개관	193
2. 양육의 어려움	194
3. 취업 및 자립의 어려움	204
4. 법적 제도 및 지원절차로 인한 어려움	206
5. 인적네트워크 및 지원 요구	211
6. 자녀 연령별 특성	213
7. 소결	222
V. 미혼모·부 초기지원 거점기관의 운영현황	225
1. 미혼모·부 초기지원 거점기관 현황	227
2. 미혼모 거점기관 현황 및 요구사항	228
3. 소결	233
VI. 미혼모·부 가정의 자녀양육 지원방안	235
1. 정책 방향	237
2. 자녀 양육단계별 요구 및 정책 방안	239
3. 미혼모·부 생활 점진별 정책 방안	251
참고문헌	261
Abstract	275
부록	277
부록 1. 미혼모 실태 조사 설문지	279
부록 2. 미혼모·부 면담 질문지	302

표 목차

〈표 Ⅰ-3-1〉 조사 참여자 특성	23
〈표 Ⅰ-3-2〉 미혼모 가정 설문조사 내용	24
〈표 Ⅰ-3-3〉 심층면담참여자	26
〈표 Ⅰ-3-4〉 심층면담 내용	26
〈표 Ⅰ-3-5〉 전문가 자문, 정책실무협의회 진행일정 및 내용	27
〈표 Ⅰ-4-1〉 선행연구에 의한 미혼모 관련 용어	30
〈표 Ⅱ-1-1〉 전국 연령별 미혼모의 수 현황	35
〈표 Ⅱ-1-2〉 전국 연령별 미혼부의 수 현황	36
〈표 Ⅱ-1-3〉 전국 자녀연령별 미혼모·부의 자녀수 현황	37
〈표 Ⅱ-1-4〉 연도별 요보호 아동 발생 수 및 발생원인	37
〈표 Ⅱ-1-5〉 국내외 입양허가 아동 수	38
〈표 Ⅱ-2-1〉 미혼모·부 초기 지원 사업내용	40
〈표 Ⅱ-2-2〉 2018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복지급여 지급기준	41
〈표 Ⅱ-2-3〉 모든 아동과 가족에 대한 차별 없는 지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18)	42
〈표 Ⅱ-2-4〉 2018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소득인정액 기준	43
〈표 Ⅱ-2-5〉 한부모 가족복지시설 유형 및 현황	44
〈표 Ⅱ-2-6〉 전국 미혼모 및 한부모 가족복지시설 수	45
〈표 Ⅱ-2-7〉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지원대상 및 내용	47
〈표 Ⅱ-2-8〉 미혼모 대안교육위탁기관 지역별 현황	48
〈표 Ⅱ-2-9〉 나래대안학교 교육과정 및 지원내용	49
〈표 Ⅱ-2-10〉 취업성공패키지 대상 및 연령	50
〈표 Ⅱ-2-11〉 양육비이행원의 양육비 이행지원 성립	53
〈표 Ⅱ-3-1〉 2018 미혼모·부 초기지원사업 수행 기관 명	57
〈표 Ⅱ-3-2〉 미혼모자 가족복지 시설 유형 및 지원내용	58
〈표 Ⅱ-3-3〉 미혼모자 가족복지 기본생활지원 지역별 현황	59
〈표 Ⅱ-3-4〉 미혼모자 가족복지 공동생활지원 지역별 현황	59

〈표 II-3-5〉 한국미혼모가족협회 연혁	61
〈표 II-3-6〉 한국미혼모가족협회 2017년 기준 주요 사업	62
〈표 II-3-7〉 미혼모 협회 I'm MoM 2012-2017 활동연혁	63
〈표 II-3-8〉 미혼모 협회 I'm MoM 프로그램	64
〈표 II-3-9〉 인트리 2013-2017 활동연혁	65
〈표 II-4-1〉 OECD 국가의 청소년 한부모 정책의 유형별 구분	67
〈표 II-4-2〉 동경세자가야구 한부모지원을 위한 체크리스트 내용	75
〈표 II-4-3〉 호주의 한부모 지원	78
〈표 II-5-1〉 미혼모 관련 정책연구 연구내용 정리	80
〈표 III-1-1〉 최종 학력	96
〈표 III-1-2〉 임신 시 학력	96
〈표 III-1-3〉 임신 당시 취업상태	97
〈표 III-1-4〉 임신으로 인한 퇴직 여부	98
〈표 III-1-5〉 임신으로 인한 자퇴 또는 휴학 여부	99
〈표 III-1-6〉 임신 시 학력 X 현재 학력	100
〈표 III-1-7〉 임신 시 취업 및 학업 X 현재 취업 및 학업	101
〈표 III-1-8〉 영역별 월평균 수입	102
〈표 III-1-9〉 영역별 월평균 지출	103
〈표 III-1-10〉 채무 여부 및 이유	105
〈표 III-1-11〉 주거형태	106
〈표 III-1-12〉 양육비 수급 여부	107
〈표 III-1-13〉 양육비 이행확보절차 진행 경험	107
〈표 III-1-14〉 양육비 소송 시 변경이 필요한 조건	107
〈표 III-1-15〉 자녀 아버지의 자녀 인지 여부	108
〈표 III-2-1〉 미취학 자녀 돌봄 유형 (복수응답)	108
〈표 III-2-2〉 미취학 자녀 이용하는 기관 유형	109
〈표 III-2-3〉 (미취학 자녀) 기관 등하원 시각	110
〈표 III-2-4〉 (미취학 자녀) 등하원 동행자	111
〈표 III-2-5〉 미취학 자녀 기관 미이용 사유	112
〈표 III-2-6〉 미취학 자녀-선호하는 돌봄 유형	112
〈표 III-2-7〉 영유아 대상 서비스 인지 여부, 이용 여부 및 의향, 만족도	114

〈표 Ⅲ-2-8〉 (미취학 자녀) 아이돌봄 서비스 미이용 사유	115
〈표 Ⅲ-2-9〉 (미취학 자녀) 자녀가 집에 혼자 있었던 경험	116
〈표 Ⅲ-2-10〉 (초등학생 자녀) 방과 후 돌봄 유형(복수응답)	117
〈표 Ⅲ-2-11〉 (초등학생 자녀) 선호하는 방과 후 돌봄 유형: 1+2순위	118
〈표 Ⅲ-2-12〉 (초등학생 자녀) 등하교 시각	119
〈표 Ⅲ-2-13〉 (초등학생 자녀) 등하원 동행자	119
〈표 Ⅲ-2-14〉 초등학생 대상 서비스 인지 여부, 이용 여부 및 의향, 만족도 ..	120
〈표 Ⅲ-2-15〉 (초등학생 자녀) 초등돌봄교실 미이용 사유	121
〈표 Ⅲ-2-16〉 (초등학생 자녀) 아이돌봄 서비스 미이용 사유	122
〈표 Ⅲ-2-17〉 (초등학생 자녀) 지역아동센터 미이용 사유	123
〈표 Ⅲ-2-18〉 (초등학생 자녀) 자녀가 집에 혼자 있었던 경험	124
〈표 Ⅲ-2-19〉 (초등학생 자녀) 자녀가 집에 혼자 있는 시간	124
〈표 Ⅲ-2-20〉 (초등학생 자녀) 자녀가 집에 혼자 있게 되는 상황	125
〈표 Ⅲ-2-21〉 자녀 양육 시 겪는 어려움	126
〈표 Ⅲ-2-22〉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나 기관	128
〈표 Ⅲ-2-23〉 자녀 양육 시 필요한 정보	129
〈표 Ⅲ-2-24〉 출산 직후 필요한 정보	129
〈표 Ⅲ-2-25〉 자녀의 아버지 부재 인지 여부	130
〈표 Ⅲ-2-26〉 자녀가 아버지를 찾은 경험	131
〈표 Ⅲ-2-27〉 자녀가 아버지를 처음 찾은 시기	132
〈표 Ⅲ-2-28〉 아버지 부재에 대한 어머니의 스트레스 및 심리적 어려움	133
〈표 Ⅲ-2-29〉 아버지 부재로 인한 자녀의 스트레스 및 심리적 어려움	134
〈표 Ⅲ-2-30〉 자녀가 겪는 스트레스 및 심리적 어려움의 원인(복수응답)	135
〈표 Ⅲ-2-31〉 자녀 동행 여가 활동 빈도	136
〈표 Ⅲ-2-32〉 자녀의 식생활	137
〈표 Ⅲ-2-33〉 자녀의 여가생활 환경	139
〈표 Ⅲ-2-34〉 자녀의 동영상 시청 시간	140
〈표 Ⅲ-2-35〉 자녀의 독서 시간	141
〈표 Ⅲ-2-36〉 자녀와의 놀이시간	141
〈표 Ⅲ-2-37〉 자녀와 함께 저녁 식사하는 빈도	142
〈표 Ⅲ-2-38〉 자녀가 함께 저녁을 먹는 사람 또는 장소	143

〈표 Ⅲ-2-39〉 자녀 양육에 대한 인식	144
〈표 Ⅲ-2-40〉 초등학생 부모의 양육관련 참여	146
〈표 Ⅲ-2-41〉 우울감에 대한 인식	147
〈표 Ⅲ-2-42〉 부모와의 관계 인식	148
〈표 Ⅲ-3-1〉 경제적 안정 여부	150
〈표 Ⅲ-3-2〉 자립을 위해 필요한 요소: 1순위	150
〈표 Ⅲ-3-3〉 자립을 위한 최소 학력 수준	151
〈표 Ⅲ-3-4〉 미혼모로서의 경제활동 경험	151
〈표 Ⅲ-3-5〉 근로시간 형태	153
〈표 Ⅲ-3-6〉 자녀 연령별 모의 출퇴근 시각	154
〈표 Ⅲ-3-7〉 현재 일자리 근무 기간	155
〈표 Ⅲ-3-8〉 현재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	155
〈표 Ⅲ-3-9〉 업무 시 느끼는 어려움	155
〈표 Ⅲ-3-10〉 구직 활동 빈도	156
〈표 Ⅲ-3-11〉 구직 활동 시 어려운 점	157
〈표 Ⅲ-3-12〉 교육 유형	158
〈표 Ⅲ-3-13〉 교육 수준	159
〈표 Ⅲ-3-14〉 교육비 총당 방법(복수응답)	160
〈표 Ⅲ-3-15〉 학업 유지 시 겪는 어려움	161
〈표 Ⅲ-3-16〉 직업교육 받은 경험 및 이유	161
〈표 Ⅲ-3-17〉 참여했던 직업훈련 프로그램 종류(복수응답)	162
〈표 Ⅲ-3-18〉 직업훈련 받은 기관(복수응답)	163
〈표 Ⅲ-3-19〉 직업훈련 비용 부담 방법	164
〈표 Ⅲ-3-20〉 직업훈련 시 겪는 어려움	164
〈표 Ⅲ-3-21〉 취업훈련을 통해 자격증 유무 및 활용여부	165
〈표 Ⅲ-3-22〉 취업교육의 개선점	166
〈표 Ⅲ-4-1〉 출산 결정의 주된 사유	166
〈표 Ⅲ-4-2〉 혼자 육아하게 된 주된 사유	168
〈표 Ⅲ-4-3〉 임신에 대한 주변 반응	168
〈표 Ⅲ-4-4〉 출산 결정 시 도움을 준 사람	169
〈표 Ⅲ-4-5〉 양육 결정 시 도움을 준 사람	170

〈표 Ⅲ-4-6〉 양육 결정 시 가장 큰 고민거리	171
〈표 Ⅲ-4-7〉 태아 검진을 위한 의료시설 첫 방문 시기	171
〈표 Ⅲ-4-8〉 의료시설 방문 지체 사유	172
〈표 Ⅲ-4-9〉 산후조리 장소	173
〈표 Ⅲ-4-10〉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이용 여부	173
〈표 Ⅲ-4-11〉 정부지원 산후도우미에 대한 정보 습득 경로	174
〈표 Ⅲ-4-12〉 임신 및 출산 비용 지불 방법(복수응답)	175
〈표 Ⅲ-4-13〉 국민행복카드 발급 여부	176
〈표 Ⅲ-5-1〉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수준	176
〈표 Ⅲ-5-2〉 사회적 차별 경험	177
〈표 Ⅲ-5-3〉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	178
〈표 Ⅲ-5-4〉 지원 프로그램 이용 경험	180
〈표 Ⅲ-5-5〉 미혼모가 된 이후 부모교육 참여 경험	182
〈표 Ⅲ-5-6〉 임신기·출산기 지원을 위해 보완되어야 할 지원 서비스	185
〈표 Ⅲ-5-7〉 양육기 지원을 위해 보완되어야 할 지원 서비스	187
〈표 Ⅳ-1-1〉 심층면담 참여자 특성	194
〈표 Ⅴ-1-1〉 미혼모·부 초기지원 사업의 문제점 정리	228
〈표 Ⅴ-2-1〉 미혼모·부 초기지원 거점기관 현황 및 개선안	232
〈표 Ⅵ-2-1〉 임신·출산기 지원요구 및 정책 방안	241
〈표 Ⅵ-2-2〉 미혼모·부 대상 상담창구 마련 계획	243
〈표 Ⅵ-2-3〉 한부모(미혼모·부 대상) 원스톱 상담창구 세부 제안 내용	244
〈표 Ⅵ-2-4〉 영아 양육기 지원요구 및 정책 방안	245
〈표 Ⅵ-2-5〉 유아 양육기 지원요구 및 정책 방안	247
〈표 Ⅵ-2-6〉 초등 양육기 지원요구 및 정책 방안	248
〈표 Ⅵ-2-7〉 초등돌봄교실 대상 우선순위 제안	250
〈표 Ⅵ-3-1〉 미혼모·부 초기지원 사업지침 변경 제안사항	254
〈표 Ⅵ-3-2〉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256
〈표 Ⅵ-3-3〉 한부모 임대주택 지원대상 및 입주요건 개정안	257
〈표 Ⅵ-3-4〉 점점별 정책 방안 요약	258

그림 목차

[그림 Ⅰ-2-1] 돌봄 취약계층 맞춤형육아지원 방안 5차년도 연구계획	22
[그림 Ⅰ-4-1] 본 연구에서 다루는 미혼모 지원 영역	31
[그림 Ⅱ-2-1] 취업성공패키지 지원내용	51
[그림 Ⅱ-2-2] 양육비 이행 지원 절차	54
[그림 Ⅱ-4-1] 호주의 가족 현황	77
[그림 Ⅲ-1-1] 임신 당시 취업상태 및 임신으로 인한 퇴직	98
[그림 Ⅲ-1-2] 임신 당시 학업상태 및 임신으로 인한 자퇴 및 휴학	99
[그림 Ⅲ-1-3] 월 평균 소득	103
[그림 Ⅲ-1-4] 월평균 지출	104
[그림 Ⅲ-2-1] 영유아 대상 서비스 이용만족도	115
[그림 Ⅲ-2-2] (미취학 자녀) 아이돌봄 서비스 미이용 사유	115
[그림 Ⅲ-2-3] (초등학생 자녀) 방과 후 돌봄 유형(복수응답)	117
[그림 Ⅲ-2-4] 초등학생 대상 서비스 만족도	121
[그림 Ⅲ-2-5] (초등학생 자녀) 초등돌봄교실 미이용 사유	121
[그림 Ⅲ-2-6] (초등학생 자녀) 아이돌봄 서비스 미이용 사유	122
[그림 Ⅲ-2-7] (초등학생 자녀) 지역아동센터 미이용 사유	123
[그림 Ⅲ-2-8] 자녀양육 어려움 정도	126
[그림 Ⅲ-2-9] 자녀 양육 시 필요한 정보	129
[그림 Ⅲ-2-10] 출산 직후 필요한 정보	130
[그림 Ⅲ-2-11] 아버지 부재에 대한 어머니의 스트레스 정도	132
[그림 Ⅲ-2-12] 아버지 부재에 대한 자녀의 스트레스 정도	133
[그림 Ⅲ-2-13] 자녀 양육에 대한 인식	144
[그림 Ⅲ-2-14] 부모와의 관계 인식	148
[그림 Ⅲ-3-1] 미혼모로서의 경제활동 경험	152
[그림 Ⅲ-3-2] 취업, 구직, 학업 상태	153
[그림 Ⅲ-3-3] 업무 시 느끼는 어려움	156
[그림 Ⅲ-3-4] 구직 활동 시 어려운 점	157

[그림 III-3-5] 교육비 총당 방법(복수응답)	159
[그림 III-3-6] 학업으로 인한 어려움	160
[그림 III-3-7] 직업훈련 시 겪는 어려움	165
[그림 III-4-1] 출산 결정의 주된 사유	167
[그림 III-4-2] 임신에 대한 주변 반응	169
[그림 III-5-1] 저소득층 대상 지원 프로그램 이용 경험	181
[그림 III-5-2] 한부모 대상 지원 프로그램 이용 경험	181
[그림 III-5-3] 미혼모가 된 이후 부모교육 참여 경험	182
[그림 III-5-4] 부모교육 영역별 도움 정도	184
[그림 III-5-5] 임신기·출산기 지원을 위해 보완되어야 할 지원 서비스	185
[그림 III-5-6] 양육기 지원을 위해 보완되어야 할 지원 서비스	186
[그림 VI-2-1] 연령별 지원내용 정리	240
[그림 VI-3-1] 미혼모·부 가정을 둘러싼 환경	252

요약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요보호 아동 중 미혼모·부의 자녀는 2011년 2,515명에서 2017년 850명으로 감소하였고, 이는 미혼모·부가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것을 반증함(박영혜, 2016: 494).
 - 미혼모의 양육 비율이 입양을 선택하는 비율을 앞질렀으나, 우리 사회는 여전히 미혼모·부 가정에 대해 차별적이고 배제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음(김희주·조성희·김지혜, 2016: 174).
- 결혼률이 낮아도 출생률이 낮지 않은 서구문화 나라의 이면에는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이해와 정책적 지지가 뒷받침되고 있음. 우리나라는 미혼모에 대한 법적인 정의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지원체계 및 지원대상 선정, 관련 법규 등이 실제 미혼모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함.
- 본 연구의 목적은 양육 미혼모·부를 대상으로 임신, 출산, 자녀양육 결심 과정을 포함한 자녀양육 실태를 파악하고, 어려운 점들을 분석하여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데에 있음.

나. 연구내용

- 본 연구는 돌봄 취약계층으로 고려되는 영유아 및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5개년 연속과제 중 4차년도 연구로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미혼모·부에 관한 현황 자료 분석 및 선행연구를 통해 미혼모·부 가구 현황과 관련된 쟁점을 살펴봄.
 - 둘째, 미혼모·부 지원정책 및 관련 사업을 살펴보고, 본 연구에서의 양육실태 조사를 통해 현 지원체계에서 보완되어야 할 지원 요구사항을 파악함. 또한 해외사례를 통해 타 문화권에서의 미혼모·부 가정 지원정책을 살펴봄.

- 셋째, 미혼모·부 지원 사업 관련 법률, 문헌 등을 분석하고 미혼모·부의 출산 및 자녀양육,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살펴보고, 법률관련 현안 파악함.
- 넷째, 미혼모 대상 자녀양육에 관한 실태 조사 실시 및 미혼모·부 대상 심층 면담 실시하여, 미혼모·부 가정의 상황별 지원요구 파악함.
- 다섯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미혼모·부 가정의 건강한 자녀 양육 및 자립을 위한 육아지원 방안 모색 및 양육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제언 제시함.

다. 연구방법

- 문헌연구를 통해 미혼모·부 현황 자료 및 통계자료 수집, 미혼모·부 지원현황과 지역별 미혼모 거점기관 및 미혼모 이용시설 수 등을 파악하여 전국적 지원현황 파악, 미혼모·부 지원 및 보호의 법적 근거를 수집함.
- 미혼모 양육실태를 살펴보기 위해서 미혼모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자녀양육의 어려움과 지원 요구 등을 가구 특성으로 나누어서 시기별 육아에서의 어려움과 정책적 요구를 파악하였음.
 - 미혼부 가정의 경우 샘플 확보 어려움으로 미혼모 가정만 대상으로 실시함. 조사 대상은 전국 지역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초등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로 시설이 아닌 재가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재가 양육 미혼모 300가구를 대상으로 함. 영아기, 유아기, 초등기로 자녀연령에 따라 최소 50표본 이상 확보되도록 구성함.
- 미혼모 관련 단체 협조를 통해 미혼모·부 25명을 대상으로 면담자 특성에 따라 심층면담을 실시함.
- 전문가 자문회의, 정책실무협의회 개최함

라. 연구의 범위

- 미혼모·부에 대한 법적 정의는 한부모가족지원법 하위의 정의 외에는 이루어지지 않음.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범위 설정을 위해서 선행연구를 분석하였음.
- 본 연구의 미혼모·부의 범위는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임신, 출산하고 재가에서 본인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재가 양육 미혼모·부로 한정함. 또한, 재가에서 양육하는 미혼모를 기준으로 양육 및 돌봄관련 지원에 초점을 맞춰, 자립 지원 및 법률지원을 통해 미혼모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자 함.

2. 연구의 배경

가. 미혼모·부 가정 현황

- 전국 미혼모·부 및 자녀수 현황을 살펴보면, 청소년 미혼모는 전체 미혼모의 10% 정도이며, 대부분 3~40대 미혼모임. 전국의 미혼부 현황은 2016년 9,172명으로 청소년 미혼부는 4.2%, 40대 미혼부가 44.3%로 나타남. 미혼모 자녀는 4세 미만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며, 미혼부 자녀는 5세~14세가 가장 많음.
- 전체 입양허가 아동 중에서 미혼모·부 아동의 비율은 국내외 모두 90% 수준으로 나타남. 과거에 비해 입양 허가 아동 수가 감소했으나, 미혼모·부 아동의 비율은 여전히 높게 나타남.

나. 국내 미혼모·부 지원 정책

-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를 근거로 하여 미혼모·부가 아이를 스스로 양육하고자 할 경우 초기 위기에 대처하고 양육 및 자립할 수 있도록 미혼모·부 초기 지원 사업을 지원함(여성가족부, 2018a: 305).
- 한부모가족법 제12조에 따라 한부모가족에 대해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복지급여로 지급하도록 함.
 - 2017년 기준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중위소득 52% 이하,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의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2018년에는 60% 이하, 72% 이하로 선정기준이 변경됨(여성가족부, 2018a: 4).
- 한부모가족법 제20조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모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일시지원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가 있음. 또한 한부모가족법 제18조에서 국민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때 한부모가족에게 일정 비율이 우선 분양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17개 시도로 나누어 시설 수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은 서울 및 경기도에 집중되어있고 미혼모자 공동생활시설도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음.

- 미혼모 대안위탁교육은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학습권 보장을 목적으로 함. 2018년 총 12개의 미혼모 대안교육기관이 운영 중이며, 2013년 18개보다 감소하였음.
- 고용노동부에서는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 대해 통합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동법 제1조). 그러나 양육비 이행에 대한 강제조항의 부재로 소송 후 양육비 미지급에도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없음.
 -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가족 중 양육비 청구 소송 비율은 6.7%에 불과하며, 확정판결은 소송 건수의 48.56%, 지급 건수는 19.54%에 그치며, 미혼모·부의 양육비 지급 건수는 9.07%로 더 낮은 수준임.

다. 미혼모·부 지원 전달체계

- 구청·주민센터는 정책수요자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전달체계임. 미혼모 지원은 한부모가족 대상 내 포함된 경우가 많고, 특화 지원은 찾기 힘들. 복지 사업 내용의 지역 간 편차가 있으며, 담당자가 정보를 잘 몰라 이용에 어려움이 있음.
- 미혼모·부자 거점기관은 미혼모·부자가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함. 거점기관을 중심으로 미혼모·부 초기지원사업을 제공하고 있음.
 - 전국에 17개소 기관만이 운영 중이어서, 물리적 접근성이 떨어지며, 담당자 1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과, 담당자의 잦은 교체 등의 문제점이 있음.
-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은 미혼모자가족과 출산 미혼모 등에게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각 목의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로 기본생활시설과 공동생활시설로 구분 가능함. 이용자 만족도가 높으나, 개인 정보를 밝혀야하는 부분과 제출 행정서류가 많아 어려움이 있음(김은지 외, 2013).
- 보건소에서는 미혼모의 산전, 분만, 산후에 필요한 검진 실시 및 신생아 및 자녀의 건강관리를 지원함. 관련 지원에 대한 홍보 부족, 불신, 편견 등으로 보건소 이용 경험은 높지 않으며, 서비스 제공자의 지원 내용 및 이해 부족, 지원 과정의 복잡성, 제출 서류가 많은 어려움이 있음(김은지 외, 2013).

-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대구 I'm MoM 등의 당사자협회에서 활발한 미혼모 지원 활동을 진행하고 있음.

라. 국외 미혼모·부 지원 정책

1) 국외 미혼모·부 정책 국가 유형별 특징

- 신윤정 외(2012:109-110)의 연구에서는 지원정책에 대한 국가 비교 연구를 실시함.

- 앵글로색슨국가(미국, 영국, 호주)의 경우는 소년 한부모 정책은 청교도적 보수주의로 금욕과 개인의 의지력을 강조하는 특징을 보임.
- 북구유럽국가(스웨덴, 덴마크)는 청소년의 자립을 독려하고 혼외출생 비율이 높음. 대륙유럽국가(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독일)는 의료적 지원정책의 성격을 지녀 의료전문가에 의한 교육과 개입의 동반지원이 중시함.
- 남부유럽국가(스페인, 이탈리아)는 결혼 전 금욕과 종교적 교리를 강조하며 국가의 개입은 미약함.

2) 국외 한부모 지원정책의 분류

- 국외 한부모 지원정책의 특징은 한부모라는 이유로 지원한다기보다는 일정 소득 이하의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으로 분류되어 지원받고 있는 경향이 있으며, 가족수당, 자녀양육수당 지원정책과 양육비 대리지급 지원정책이 가장 핵심적임.

- 영국의 경우 한부모의 사회적 보호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며 한부모로 하여금 집에서 자녀를 돌보거나 혹은 근로활동을 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함.
- 미국의 경우는 빈곤가족 한시부조(TANF, Temporary Assistance to Needy Family)에 근로연계나 노동참여가 의무화됨.
- 노르웨이, 스웨덴 같은 보편주의 국가에서는 국민과 국가의 상호계약적인 성격이 강해, 한부모에 대해 근로와 연결된 수당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영아보육에 서비스 지원정책도 병행됨.
- 프랑스는 취업정책을 강조하고 금전적인 부양정책을 혼합함.
- 독일의 경우 미성년 미혼모는 자녀에게 후견이 필요한 경우 후견법원에 이를

청구할 수 있음. 이 경우, 자녀가 출생하기 이전에 요청할 수 있으며, 자녀 출생 이후에도 이에 대한 효력이 있음(독일민법 제1774조; 조은희, 2018: 19 재인용).

3) 일본 및 호주의 미혼모 정책사례

□ 일본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가족모델을 가지고 있으며, 미혼모에 대한 불평등한 사회적 인식은 있으나 양육지원은 사별, 이혼, 미혼 구분 없이 보편적 양육 지원과 함께 재가 출산 및 양육 한부모 지원이 중심임.

- 일본의 한부모 지원은 아동수당 등 보편적 양육지원과 함께 아동부양수당을 중심으로 한 한부모 가족과 아동을 위한 지원이 실시됨.

□ 호주는 가족관계가 다양하게 정의됨. 한부모(single parent family)의 정의를 “혼자 거주하고 있는 15세 이상의 사람이 아동과 함께 살고 있는 가정으로, 아이의 연령은 상관없으며 또한 그 아이가 자신의 아이일 수도 있고, 파트너의 아이 일 수도 있다”라고 정의함.

- 부모양육수당은 부모나 보호자의 소득과 환경에 따라 아동양육비를 지급하는 경제적 지원수단임.

마. 미혼모·부 관련 선행연구

1) 미혼모 가구의 자녀양육 관련 요인

□ 백혜정·김지연(2013)에서는 청소년 한부모의 출산 당시 환경의 열악성이 출산 후 우울에 영향을 미쳤으며, 박화옥(2017)에서는 주관적 건강인식, 사회적 지지가 있는데, 건강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일수록, 타인 및 가족으로부터의 지지가 낮을수록 미혼모의 우울이 높음.

□ 안재진·김지혜(2006)에서는 양육결정에 미혼모의 연령, 원가족과의 관계, 미혼부와 관계 등이 영향을 미침.

- 조지용(2016)에서는 뜻하지 않은 임신으로 생활과 감정의 큰 변화를 겪고, 미혼부의 책임회피, 원가족과의 소원한 관계로 어려움을 겪으며, 자녀 양육 시 겪게 될 사회적 비난, 경제적 어려움 등을 예상하여 입양을 결정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가족들의 태도변화, 자식에 대한 모성애 등을 이유로 양육을 재결정함.

- 미혼모 양육 시 차별경험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미혼모가 양육결정으로 원가족으로부터 단절을 경험하고, 임신, 출산으로 기존직장을 그만두거나 구직활동에서 차별을 경험, 취업의 장벽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함(김희주·권중희·최형숙, 2012: 135-136).

2) 미혼모·부 법적 이슈

- 민법 제974조에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생계를 같이하는 기타 친족 간에는 서로 부양의무를 명시함. 그러나 부모의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에 대해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양육비 지급의무의 법적 근거에 대한 학설이 나뉨(이미정 외, 2011: 45-47).
 - 판례는 '아빠 또는 엄마와 미성년 자녀 사이의 친밀도'를 고려하며, 친밀도 판단하기 위해서 그동안 자녀를 누가 양육했는지가 중요한 요소임(이미정 외, 2011: 56).
- 신옥주(2016)는 미혼모가 낙태와 출산, 양육과 입양 사이에서의 갈등(임신·출산갈등)의 가장 큰 원인을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차별로 두고 이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을 위한 법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 소라미(2016: 6-7)는 모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으나(동법 제57조 제2항), 이에 대한 판례가 일치하지 않아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함.
- 미성년 미혼모의 경우에도 독자적인 법률행위가 불가함에 따르는 생활에서의 어려움, 자녀에 대한 친권 행사 등을 이유로 성년의제에 대한 필요성이 존재(조은희, 2018: 3).
- 민법 제781조는 부성주의원칙을 채택하고 있어, 인지된 자녀에게는 부의 성이 적용되며 예외적으로 합의한 경우에만 종전의 성을 사용하고 있음(신옥주, 2018: 32). 우리나라와 달리 독일의 경우 부의 인지를 위해서는 모의 동의가 필요하며, 인지 후에도 원칙적으로 모의 성을 유지함(신옥주, 2018: 29).

3) 미혼모 지원전달체계 관련

□ 미혼모 지원전달체계 관련 연구들은 정책의 전달자의 입장에서 또는 정책수요자의 입장에서 어려움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김희주, 2015; 성정현 외, 2016)와 지원전달체계의 문제와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짐(성정현·김지혜·신옥주, 2015; 이용우, 2017; 홍봉선·남미애, 2011).

4) 국외 정책 사례

□ 미혼모·부 가정을 지원하는 정책에 대한 국가 비교 연구들은 미혼모·부 가정의 법적 기초에 대한 연구와 관련 정책에 대한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추진.

- 조은희(2011)의 연구에서는 미혼모의 법적 지위를 논의하면서 혼인, 가족, 미혼모 가족 범주를 정의하고, 미혼모 가족 현황, 법적 기초에 대해 분석하였고, 신옥주(2016)는 미혼모를 위한 법적 토대가 공고하게 구축되어 있는 독일의 사례를 통해 그 시사점을 모색하였음.

□ 한부모 가족의 양육비 이행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에 대한 국가 간 비교 연구(김은지, 2013), 청소년 한부모, 미혼가족에 초점을 둔 국가 간 비교연구(남부현, 2010, 신윤정·이상림·김윤희, 2012), 미혼모 복지정책을 중심으로 영국과 한국의 정책을 비교한 연구(전재희, 2017) 국가 비교 보다는 각국의 미혼 부자 가족 관련 정책 사례를 고찰한 연구(서해정·안태윤·인현주, 2010) 등도 수행됨.

3. 미혼모 양육 및 자립실태 현황

가. 응답자 특성

□ 영아, 유아, 초등자녀를 재가에서 양육하고 있는 미혼모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음.

- 조사에 참여한 미혼모의 연령은 30대가 43.3%로, 20대 41.7%로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미혼모가 15.7%포함) 나타남. 응답자 중 전업주부가 31.3%, 취업중이 24.7%, 구직중이 23.3%, 학업중이 20.7%임.

- 월 평균 가구소득은 100만원에서 200만원 미만인 40.7%, 100만원 미만이

38.7%, 200만원 이상이 20.7%의 비율을 보임.

□ 응답자의 학력과 취업상태를 임신 전후를 나누어 살펴보았음.

- 고등학교 졸업이 46.7%, 대학교 졸업이 27.0%, 대학교 재학 또는 휴학이 14.0% 순으로 응답자의 88.4%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보임.
- 임신 시 학력을 살펴보면, 고등학교 졸업이 48.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학교 졸업 이상이 26.7%로, 16.3%이 고등학교 재학 이하, 임신 당시 중학교 중퇴나 고등학교 중퇴인 경우도 10.0% 정도로 나타났음.
- 임신 당시 취업 중이었던 경우가 58.2%로, 그 중 81.7%가 임신으로 인한 퇴직을 하였다고 응답.

□ 응답자의 소득과 지출상태를 살펴보았음.

- 응답자의 소득 중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35.3%, 정부 및 보조금 지원받는 비율 80.7%, 부모, 친척으로 용돈 받는 경우 9.0%, 자녀 아버지로부터 받는 양육비 7.3%임.
- 지출은 월평균 생활비가 107.6만원으로 가장 높고, 주거관리비(28.5만원), 교육비(17.4만원), 의료비(9.2만원), 저축보험(20.4만원)으로 나타남.
- 채무가 있는 경우가 66.3%로, 채무사유로는 생활비 55.3%, 보증금 17.1% 의료비 5.0%, 기타 21.6%로 나타남.

나. 자녀 돌봄

□ 영유아의 경우 기관 이용률이 32.5%이고, 대부분 부모가 돌보고 있음.

- 어린이집 시간연장형 보육을 가장 많이 이용(30.8%)하고, 이용하지 않은 부모 또한 시간연장형 보육(64.3%)을 원함.
- 영유아 자녀가 집에 혼자 있었던 경험이 전체의 8%를 차지함.

□ 사설학원이용(44.6%)과 초등 방과후과정(43.2%)의 이용이 높음.

- 직장에서 피치 못하게 야근을 하게 될 때 또는 주말에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50%를 차지함.

다. 자녀 양육 특성

□ 자녀양육 시 어려운 점으로 경제적 어려움(4.7점), 육체적 부담(4.2점), 정서적

부담(4.1점) 순으로 나타남.

- 어려운 상황에서 원가족에 의지하는 비율이 63.3%인 반면 거점기관은 8.7%, 단체 6.7%로 나타남.
- 정부 지원에 대한 정보(34.7%)와 출산 직후 자녀 양육에 대한 기술(33.3%)에 대한 정보가 필요함.

□ 자녀의 여가생활, 동영상 시청, 놀이 시간 등의 정도를 알아보았음.

- 여가 생활에서 여행, 영화나 공연관람, 박물관, 미술과 과학관 관람에서 전혀 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동영상 시청은 어머니가 취업중이나 학업중인 집단에서 그 외의 경우보다 동영상 시청 시간이 길게 나타남.
- 영아를 둔 경우보다 유아와 초등학교 자녀를 둔 집단, 어머니의 연령이 높은 집단에서 놀이시간이 짧음.

라. 자녀 아버지 관련

□ 자녀 아버지의 자녀 인지 여부를 살펴보았을 때, 전체의 46.7%가 인지가 되어 있으나, 양육비 수급여부는 11.3%만이 지급받고 있다고 응답함.

- 양육비 이행확보 절차 진행경험은 12.7%만이 '그렇다'라고 하였음.
- 전체의 31.7%가 조건에 상관없이 소송의향이 없다고 하였고, 수급에 지장이 없다면, 법적 구속력이 강화된다면 양육비 소송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정도가 24.2%, 21.3%로 나타남.

□ 자녀가 아버지를 찾는 시기는 평균 만 3.8세로 나타났음.

- 자녀의 아버지 부재 인지 여부는 영아의 63.3%가 '모른다', 유아의 31.0% '알고 상황을 받아들임', 26.8%가 '알고 있는 것 같음'이라 하였으며, 초등학교 생의 경우 전체의 51.4%가 '알고 받아들임', 23.0%가 '알고 있으나 혼란스러움'이라고 응답함.
- 아버지 부재에 대한 스트레스는 어머니의 경우 자녀 유아시기에 가장 높고, 자녀의 경우 초등시기에 가장 높게 나타남.

마. 임신·출산기 경험

- 어머니가 출산을 결정하고 양육을 결정하는데 본인의 결정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양육결정시 가장 큰 고민거리는 경제적인 문제(76.3%)인 것으로 나타남.
 - 혼자 육아하게 된 주된 사유는 부의 책임 회피 및 만남 회피(46.3%)가 가장 높음.
- 미혼모로서 임신기에 임신 의료시설 이용에 비용부담을 많이 느끼고, 28.3%가 산후조리를 못하였다고 응답하였음.
 - 임신 13주까지 66.6%가 병원을 찾았으나 약 4%로 달하는 미혼모가 출산 전에 전혀 병원을 찾지 않음.
 - 14주 이후에 병원 방문을 한 미혼모의 34%가 늦은 병원 방문 이유를 '병원비가 없어서'라고 응답함.

바. 취업 경험 및 자립 관련

- 응답자의 61.0%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전체의 86.0%가 경제적 안녕 여부에 전혀 그렇지 않다(55.0%), 별로 그렇지 않다(31.0%)라고 응답함.
 - 자립을 위해 필요한 요소로 44.0%의 다수가 정부지원을 지속하면서 소득이 인정이 되는 구조라고 응답함.
 - 자립을 위한 최소 학력 수준은 2-3년제 전문대 졸업(29.3%), 고등학교 졸업(28.3%), 자립과 학력은 무관(27.7%)의 순으로 응답이 높게 나타남.
- 응답자의 취업경험 및 자립관련 어려움을 취업, 구직, 학업으로 나누어 조사하였음.
 - 취업상태의 어려움 중에 '자녀 양육시간 부족(48.6%)', 구직중의 어려움 중 '자녀 돌봄으로 시간 선택에 제한이 있어서(40.0%)'이 순서로 나타났고, 학업상태의 어려움은 '육체적 어려움'이 43.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응답자 전체의 51.0%가 취업교육 경험이 있었고, 교육 목적은 '자격증 취득'이 87.6%, '조건부 수급자'가 30.7% 순으로 높게 나타났음.
 - 취업 교육의 어려움의 1순위가 '취업교육동안의 자녀 돌봄(37.3%)'으로 나타나 취업교육 과정에서도 자녀 돌봄이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음.

사. 정책 지원 경험 및 요구

- 전체의 76.0%가 미혼모에 대한 차별이 ‘매우 심각하다’ 또는 ‘심각하다’로 응답하였으며 자녀가 영유아 시기보다 초등학교 시기에 차별수준을 높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미혼부의 법적 책임 강화(41.3%), 미혼모의 자립지원 강화(35.3%)로 나타남.

4. 미혼모 양육 및 자립실태 현황

가. 심층 면담 개관

- 미혼모 협회 및 자조모임을 통하여 영아자녀 둔 미혼모 7명, 유아자녀 둔 미혼모 9명, 초등 자녀 둔 미혼모 8명, 민간지원 단체를 통하여 미혼부 1명(영아자녀)을 심층면접 하였음.

나. 미혼모로서 임신, 출산, 양육

- 혼자 자녀를 키우며 느끼는 어려운 점 중 하나는 자녀 돌봄임.
 - 돌봄으로 인해 구직이 어렵고, 취업한다하더라도 아이가 아프거나, 긴급돌봄 시 돌봐줄 사람이 없어, 해직당하는 경우도 있음.
- 기관 및 학교에서 어려운 경험을 겪는 경우가 있음.
 - 영유아 자녀 보육기관 및 초등학교에서의 돌봄 등에서 한부모 가정에 대한 우선순위가 없는 상태라 돌봄에 맡기는 것이 쉽지 않음.
- 자녀와의 질 높은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아버지 부재에 대해 어떻게 말해줘야 할지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았음.
- 임신·출산기에는 자녀 아버지와의 관계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이 있음.
 - 임신을 알았을 때, 미혼모 임신에 대한 상담 등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음.
 - 부실한 산후조리와 높은 출산비용을 감당하기가 어려움.

다. 취업 및 자립 준비를 위한 어려움

- 자녀 돌봄으로 인한 시간 제약으로 구직에 제약이 있으며, 취업 중에도 자녀

돌봄으로 인해 해직 경험이 있음.

- 취업교육 중에서도 엄격한 출결상황으로 훈련을 마치기가 어려움.

라. 법적 제도 및 지원절차로 인한 어려움

- 양육비 소송 시 비용과 시간이 오래 걸림.
 - 판결이 나더라도 미지급시 강제적 조치가 없어 주지 않으면 받지 못함.
 - 미혼부의 법적책임을 강화해야 함.
- 주민 센터에서의 이용에서 담당자가 지원업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담당자의 부정적인 태도로 차별을 경험한 경우가 많음.

바. 자녀 연령별 특성

- 영아 시기에는 심리적 불안정 및 홀로 영아를 양육해야한다는 심리적, 육체적, 경제적 문제가 있음.
- 유아 시기에는 아버지의 부재에 대한 언급이 주로 일어나는 시기라 이에 대한 대처와 자립에 대한 부담이 있음.
- 초등 시기에는 학교에서의 교사나 다른 친구들이 아버지 부재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나 편견으로 인한 어려움, 다른 학부모와의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이 있음.
- 미혼부의 경우 출생신고가 어려운 경우가 있고, 양육지식을 물어볼 곳이 없으며 자조모임이 잘 형성되지 않아, 다른 미혼부와 경험을 공유하기 어려움.

5. 미혼모·부 거점기관 현황 및 사례조사

가. 미혼모·부 초기지원 거점기관 현황

- 미혼모·부자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만 3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 가정에 지원하는 출산·양육지원을 비롯하여, 심리정서 지원, 친자 검사비 지원, 프로그램·자조모임, 자원 연계 등의 사업을 하고 있음.
- 전국 17개 거점센터가 있고, 한 기관당 5,000만원의 동일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음.

나. 미혼모 거점기관 어려움 및 요구사항

- 미혼모 거주 인원을 고려하지 않은 거점기관의 분포, 담당직원 1명이 모든 일을 담당하고 있음.
- 담당자의 임금이 상승하지 못하는 구조로 인한 잦은 인력교체, 미혼모·부 가족과의 라포 형성에 문제를 초래함.
- 지역마다 지원인원과 애로사항이 다르므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일괄적인 지침으로는 운영이 어려움.
 - 지역마다의 특색을 반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시·도의 협조가 필요함.

6. 정책 제언

가. 정책 방향

- 미혼모·부도 양육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 마련이 시급함
- 미혼모·부 지원 거점센터의 확충 및 지원 예산 증대.
- 미혼모·부 재가 양육 가정의 돌봄 지원 확대가 요구됨.
- 미혼모·부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반편견 교육 필요.

나. 자녀 연령별 요구 및 정책 방안

- 임신·출산기 지원이 미혼모 가족 지원중 한부모 가족 지원과 차별화될 수 있는 부분임으로 임신 및 출산기의 지원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음.
 - 임신기 및 출산기에 의료비 지원 및 산모 건강관리 지원강화가 요구됨.
 - 위기 임신에 대한 상담 및 미혼모 지원정보에 대한 정확한 제공 등을 위한 상담창구 지원이 필요.
- 영아기에는 양육하는 미혼모·부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어려움이 큰 시기이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 등에 따른 법률상담이 요구되는 시기이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재가양육 미혼모의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이 시급함.
 - 영아 부모에 대한 심리적 상담 제공이 요구됨.

- 유아기에는 기관 생활 등을 시작하면서, 자녀가 아버지 부재 등을 실감하며, 스트레스가 높아지는 시기임.
 - 비양육부모의 부재에 대한 자녀와의 대화 등에 대한 부모교육과, 기관의 보육교사 대상 반편견 교육 필요함.
 - 미혼모의 자립노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로, 돌봄에 대한 지원 및 자녀 문화생활에 대한 지원 필요함.
- 초등기에는 초등돌봄 등의 돌봄기관 이용이 어려울 경우 아동이 혼자 있는 비율이 높아짐.
 - 이에 초등 오후 돌봄 공백 지원 강화를 위한 양육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우선 순위 도입이 시급함.
 - 또한, 학교의 교사 및 학부모 대상으로 가족에 대한 이해를 위한 교육을 시스템화하여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다. 미혼모·부 생활 점진별 정책 방안

- 주민센터에서의 정확한 정보 제공 및 실질적 양육 지원을 통한 주민센터 및 지원기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함.
- 거점센터 담당자의 임금 구조개선, 실질적으로 참가 가능한 부모교육 활성화 및 미혼모·부 거점기관의 불균형적 분포를 개선하여, 미혼모·부 거점센터의 역할을 증진할 필요가 있음.
- 미혼모·부 가정 지원에 있어 법적, 제도적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취업 및 자립을 위한 실질적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함.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4. 연구의 범위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시대의 변화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와 함께 가구유형이 다양해짐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이해와 지원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통계청(2017)에 따르면 전통적인 가족형태라고 일컬어지는 부부와 자녀, 3대 이상의 가족형태로 이루어진 가구는 전체의 35.5%에 지나지 않으며, 부부만으로 이루어진 가구 16.0%, 1인가구가 28.5%를 차지하며, 부와 자녀, 모와 자녀 등 한부모 가구도 10.9%로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통계청, 2017: 15).

요보호아동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미혼모·부의 자녀는 2011년 2,515명에서 2017년 850명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고¹⁾, 입양아의 절대적 수는 줄어들고 있다²⁾. 미혼모의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요보호 아동 수 중 미혼모·부의 자녀의 수가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것은 미혼모·부가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을 반증한다(박영혜, 2016: 494). 해외입양을 비롯한 입양의 수가 2,439명²⁾에 달했던 2009년에는 미혼모의 자녀양육지원이 해외입양의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하였다(이미정, 2009: 75).

실제로 미혼모의 양육비율이 입양 선택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결혼제도를 기반으로 한 출산을 당연시 여기는 사회 분위기는 많이 바뀌지 않았고, 미혼모·부 가정에 대해 우리 사회는 여전히 차별적이고 배제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다(김희주·조성희·김지혜, 2016: 174).

1) 보건복지부(2018. 5. 17). 2011년~2017년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21, 2018. 11. 16. 인출.

2) 보건복지부(2018. 5. 31). 2008~2017년 국내입양아 수 및 입양비율

http://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MainPrint.do?idx_cd=2708&board_cd=IN DX_001, 2018. 11. 16. 인출, 2018. 11. 16. 인출

2018년 초 언론에서 다루어진 일련의 미혼모의 신생아 유기 관련 사건들이 큰 이슈가 되었다. 본인의 자녀를 주운 아이로 위장하여 신고한 한 미혼모의 사건은 자신의 아이를 지키려는 모성애와 평생 자신과 자녀에게 쏟아질 차별적인 시선을 견디지 못하는 미혼모의 딜레마를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영아 살해 및 영아 유기치사를 판결 받은 59건의 판결문을 분석해본 결과, ‘미혼 출산에 의한 수치심 및 가족에게 알리지 않기 위해서’라는 이유가 전체의 8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한겨레, 2015. 5. 7.). 이처럼 혼인제도 밖에서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데에 있어 수치심을 느끼도록 하는 사회적 분위기,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성정현 외, 2016: 416), 혼외출산으로 인해 단절된 가족 및 인간관계 등으로 삼중, 사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지속되는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하여 정부는 결혼, 출산 장려 및 맞벌이 부부의 돌봄 지원 등을 통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낙태 또는 입양되거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고 유기되는 아이들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편견의 중심에는 결혼을 기반하지 않은 다른 형태의 가족을 문제시 여기고 배척하는 사회의 시선이 존재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결혼, 출산에 대한 젊은 층의 가치관의 변화를 겪고 있다. 현재 미혼인 20-30대를 대상으로 한 결혼 및 혼전임신 등에 대한 가치관을 조사한 결과 ‘결혼 전이라도 성관계를 할 수 있다’라는 의견에는 80.3%의 높은 찬성률을 보였으나, ‘결혼하지 않고도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다’의 의견에는 42.4%의 찬성으로 혼전출산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확인할 수 있다(최효미·유해미·김지현·김태우, 2016: 94). 결혼률이 낮아도 출생률이 낮지 않은 서구문화의 나라들의 이면에는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이해와 정책적 지지가 뒷받침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미혼모·부의 분류가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한부모 가족 내에 ‘미혼자’가 포함되어 있을 뿐, 미혼모에 대해서는 법적인 정의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며, 현재의 지원체계 및 지원대상 선정, 관련 법규 등이 실제 미혼모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의 목적은 양육을 선택한 미혼모·부를 대상으로 임신, 출산, 자녀양육 결심 과정을 포함한 자녀양육 실태를 파악하여, 미혼모·부가 자녀양육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점들을 분석하여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데에 있다. 이러한 지원에는 제도적 지원, 정서적 지원, 경제적 지원이 모두 포함된다. 본 연구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증가하고 있는 미혼모 가족에 대한 수용성을 넓혀, 미혼모이기 전에 한 자녀를 임신하고 출산한 평범한 엄마임을 인정하고, 미혼모이기에 겪는 어려운 상황에 대한 이해를 넓혀 다양한 환경의 가족이 편견과 법적 제약 없이 건강하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본 연구는 돌봄 취약계층으로 고려되는 영유아 및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5개년 연속과제 중 4차년도 연구로, 5개년 연속과제의 내용은 [그림 I-2-1]과 같다.

본 연구인 4차년도 연구 「돌봄 취약계층 맞춤형 육아지원 방안(IV): 미혼모·부 가정의 자녀 양육 실태 및 지원방안」의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혼모·부에 관한 현황 자료 분석 및 선행연구를 통해 미혼모·부 가구 현황과 관련된 쟁점들을 살펴보았다.

둘째, 정부부처 및 미혼모·부 지원 단체나 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미혼모·부 지원정책 및 관련 사업을 살펴보고, 본 연구에서의 양육실태 조사를 통해 현 지원체계에서 보완되어야 할 지원 요구사항 등을 파악한다. 또한 해외사례를 통해 타 문화권에서의 미혼모·부 가정에 대한 지원정책을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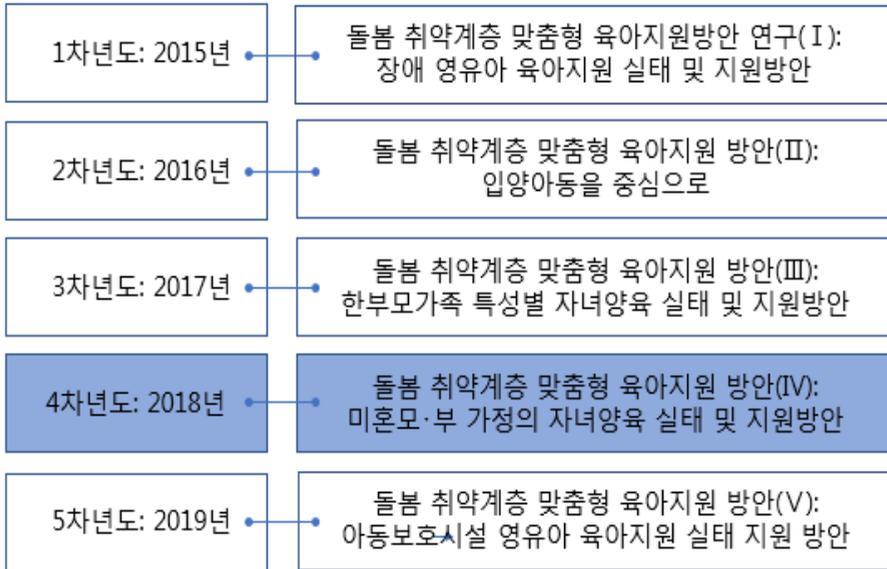
셋째, 미혼모·부 지원 사업 관련 법률(국민기초 생활보장법, 한부모 가족지원법 등)이나 문헌을 분석하고, 법으로 인해 미혼모·부의 출산 및 자녀양육,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고, 미혼모·부 가정에서 요구되는 법률관련 현안을 파악하였다.

넷째, 미혼모 대상으로 자녀양육에 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미혼모·부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미혼모·부 가정의 상황별 지원요구를 파악한다. 영유아기 및 초등학령기 자녀를 둔 미혼모·부, 자녀 연령에 따른 양육 애로점, 육아 지원 요구 등을 파악하였다.

다섯째, 위와 같은 연구내용의 결과를 바탕으로 미혼모·부 가정의 건강한 자녀

양육 및 자립을 위한 육아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미혼모·부의 양육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그림 I-2-1 돌봄 취약계층 맞춤형육아지원 방안 5차년도 연구계획



3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첫째, 미혼모·부 현황 자료 및 통계자료를 수집하였다.

둘째, 미혼모·부 지원현황과 더불어 지역별 미혼모 거점기관 및 미혼모 이용시설 수 등을 파악하여, 전국적 지원현황을 파악하였다.

셋째, 미혼모·부 지원 및 보호 법적근거를 수집하였다.

나. 미혼모 가정 양육실태 조사

미혼모의 양육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미혼모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임신·출산부터 경험해온 자녀양육에서의 어려움과 지원 요구 등을 미혼모 가정 거주 장소, 미

혼모 연령, 자녀 연령 등 가구 특성으로 나누어 시기별 육아에서의 어려움과 정책적 요구를 파악하였다. 본 연구는 2018년 7월 31일 'KICCEIRB-2018-제04호'로 IRB 심의를 통과한 후 조사를 실시하였다.

1) 조사 대상 및 규모

미혼부 가정의 경우 실태조사를 통해 분석이 가능한 수준의 샘플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양육실태 조사는 미혼모 가정만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전국 지역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초등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를 대상으로, 시설이 아닌 재가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재가 양육 미혼모만을 포함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응답자 기본 특성은 <표 I-3-1>과 같다.

조사에 참여한 미혼모의 연령은 30대가 43.3%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으며, 20대 미혼모는 41.7%로 이 중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미혼모가 15.7%, 만 25~29세 미혼모는 26.0%로 나타났다. 만 40세 이상의 미혼모는 15.0%의 비율을 보였다. 미혼모가 양육하고 있는 자녀는 영아가 51.7%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초등학생이 24.7%, 유아가 23.7%로 나타났다. 가구의 구성은 본인과 자녀가 살고 있는 경우가 68.0%, 본인과 자녀 이외의 가족 구성원이 있는 경우는 32.0%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거주 지역은 대도시가 51.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소도시 35.7%, 읍면지역 13.0% 순 이었다. 참여자의 31.3%는 전업주부였으며, 24.7%가 취업 중, 23.3%가 구직 중, 20.7%가 학업 중이라고 응답하였다. 월 평균 가구 소득을 살펴보면 100만원에서 200만원 미만의 소득이 40.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00만원 미만이 38.7%, 200만원 이상이 20.7%의 비율을 보였다.

|| 표 I-3-1 || 조사 참여자 특성

단위: %(명)

구분	백분율(수)	구분	백분율(수)
응답자 현재 연령		현재 취업 및 학업 상태	
만 24세 이하	15.7(47)	취업 중	24.7(74)
만 25~29세	26.0(78)	구직 중	23.3(70)
만 30~39세	43.3(130)	학업 중	20.7(62)
만 40세 이상	15.0(45)	전업주부	31.3(94)
응답자 임신 시 연령		임신 시 취업 및 학업 상태	
만 18세 이하	6.7(20)	취업 중	51.3(153)
만 19~24세	28.7(86)	구직 중	12.3(37)

구분	백분율(수)	구분	백분율(수)
만 25~29세	29.7(89)	학업 중	12.3(37)
만 30~39세	32.3(97)	무직	24.3(73)
만 40세 이상	2.7(8)		
자녀 연령		월 평균 가구 소득	
영아	51.7(155)	100만원 미만	38.7(116)
유아	23.7(71)	100~200만원 미만	40.7(122)
초등학생	24.7(74)	200만원 이상	20.7(62)
가구 구성		거주지역	
본인+자녀	68.0(204)	대도시	51.3(154)
본인+자녀+가족 및 지인	32.0(96)	중소도시	35.7(107)
		읍면지역	13.0(39)
계(수)	100.0(300)	계(수)	100.0(300)

주: 미혼모 양육자원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임.

2) 조사내용

미혼모 대상 설문조사에는 일반적 특성 외 정책지원 경험, 자녀돌봄, 자녀양육, 부모특성, 자녀 아버지 관련, 학업 및 자립 관련 내용을 포함하였다. 설문조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출처를 <표 I-3-2>에 나타내었다.

▮ 표 I-3-2 ▮ 미혼모 가정 설문조사 내용

구분	내용	출처
선정문항	미혼모 여부, 자녀 양육 여부, 거주 지역 자녀의 연령, 성별	-
자녀돌봄	돌봄유형, 기관유형, 기관이용시간, 기관 이용시 등/하교 도와주는 사람, 기관 미이용 이유, 원하는 돌봄 유형,	김은지 외 (2015) ²⁾
	돌봄서비스 인지, 이용여부, 이용의향, 이용만족도, 미이용 사유, 혼자 지내는 시간 및 빈도	
자녀양육	양육 어려움, 양육에 도움을 줄 사람/기관, 양육 시 필요한 정보, 자녀와의 여가활동, 양육행동, 생활환경, 자녀의 매체사용 시간, 자녀와 보내는 시간	김은지 외(2015) ²⁾ 배윤진 외(2016) ⁶⁾ 김미숙 외(2013) ¹⁾
부모특성	양육 효능감, 우울, 부모님과의 관계	김지연 외(2013) ³⁾ 김미숙 외(2013) ¹⁾
자녀 아버지 관련	자녀의 성, 부의 인지 및 양육비 지급관련 경험, 양육비 소송에 필요한 조건	연구진
자녀의 아버지에 대한 인식	아버지 부재 인지, 자녀의 아버지에 대한 질문, 부재로 인한 스트레스 및 원인	연구진

구분	내용	출처
학업 및 자립	현재 상태, 최종 학력, 임신 당시 학업 및 취업상태, 임신으로 인한 자퇴/휴학 및 사직 여부 자립: 경제적 자립도, 자립을 위한 요소, 자립에 방해가 되는 요소	연구진
	현재 취업 및 학업상태: (취업중) 근로형태, 근로시간, 근로경력, 직장 만족도, 근로 시 어려움 (구직중) 구직 경험, 구직 시 어려움, (학업중) 교육 유형 및 수준, 교육비 총당, 학업 시 어려움 (직업훈련) 임신 출산 이후 직업교육 경험, 횟수, 프로그램 명, 훈련기관, 비용, 어려움, 자격증 취득 여부, 자립 도움 여부, 취업 교육이 개선 되어야 할 점	김지연 외 (2013) ³⁾
임신 출산 양육 결정과정	출산 결정 이유, 양육 결정 이유, 임신을 알린 사람 및 반응, 출산 및 양육결정시 도움을 준 사람, 양육결정시 고민 내용	김혜영 외(2009) ⁴⁾
임신기 의료시설 이용	의료시설 방문 시기, 병원 방문 늦은 이유, 산후조리 장소, 정부지원 산후조리 경험 여부, 임신 출산 관련 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 여부, 발급받지 않은 이유,	연구진
사회적 편견	미혼모 차별 정도, 미혼모 및 자녀의 차별 경험, 사회인식개선에 필요한 사업	김혜영 외(2009) ⁴⁾ , 김은지 외(2015) ²⁾
정책지원 경험	정책 프로그램 지원 경험 및 만족도, 부모교육 경험 여부, 부모교육에 필요한 내용, 임신단계별 필요한 지원	김은지 외(2015) ²⁾
일반적 특성	연령, 최종학력, 취업상태, 임신 시 학업 및 취업 상태, 임신으로 인한 자퇴 및 휴학, 퇴직 여부, 자녀 수(자녀 연령, 성별, 출생년도, 출생 시 부모 나이), 가구 수 및 구성, 월평균 수입, 주 수입원, 지출, 채무 여부, 거주 형태, 거주지역	배윤진 외(2016) ⁶⁾ 김혜영 외(2010) ⁵⁾

자료: 1) 김미숙·전진아·하태정·김효진·오미애·정은희·최은진·이봉주·김선숙(2013). 아동종합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526.

2) 김은지·장혜경·황정임·최인희·선보영·김나연·정다은(2015).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서울: 여성정책연구원 pp. 450-460.

3) 김지연·황여정·이준일·방은령·강현철·곽종민·박민영(2013).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Ⅱ: 청소년 한부모 유형 및 생활주기별 대응방안.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pp. 339-351.

4) 김혜영·선보영·김은영·정재훈(2009). 미혼부모의 사회통합방안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pp. 416-425.

5) 김혜영·이미정·이택면·김은지·선보영·장연진(2010). 미혼모의 양육 및 자립실태조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pp. 254, 257, 262, 270-271.

6) 배윤진·김아름·송신영·권지성(2016). 돌봄 취약계층 맞춤형 육아지원 방안 II: 입양아동을 중심으로.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p. 334.

다. 미혼모·부 심층 면담

미혼모 관련 단체의 협조를 통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미혼모·부를 대상으로, 면담자 특성에 따라 그룹을 나누고 심층면담을 실시한다. 자녀 연령별로 그룹을

나누고, 10대 미혼모, 시설거주 경험 미혼모, 양육비 소송관련 경험 미혼모, 미혼부 등으로 그룹별 2-3명 정도 소수로 심층면담이 가능하도록 하고, 면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1:1로 진행한다. 그룹별로 상황별 양육 어려움 및 지원요구 등을 살펴본다. 구체적인 심층면담 그룹과 면담 내용은 <표 I-3-3>, <표 I-3-4>에 나타내었다.

▣ 표 I-3-3 ▣ 심층면담참여자

그룹	심층 면접 그룹 특성	샘플수
자녀 연령별	영아 자녀 둔 미혼모	7
	유아 자녀 둔 미혼모	9
	초등 자녀 둔 미혼모	8
미혼부		1
총계		25

▣ 표 I-3-4 ▣ 심층면담 내용

구분	내용
양육 및 돌봄	주양육자 및 양육 시 어려움, 기관 이용 어려움, 아이와 아버지 부재에 대한 소통, 자녀와 보내는 시간, 아이에게 해주고 싶은 일
임신 및 출산기	임신 시 필요한 도움, 양육결정 동기 및 지지, 임신 및 출산 지원 및 정보 획득 경로
취업 및 자립	취업 및 취업준비 여부, 취업 및 근로 시 어려운 점, 생계 유지 수단, 자립을 위해 필요한 점, 임신 출산 시 취업 및 학업 여부, 직장·학교 내 불이익
인적 네트워크	동거 가족, 부모님과의 관계, 시설 거주 시 양육에 어려운 점, 양육에 도움을 준 사람
법적 제도로 인한 어려움	법적 어려움 경험 여부, 양육비 받고 있는지 여부, 양육비 청구 신청 의향 및 경험, 하지 않은 이유

라. 전문가 자문회의, 정책실무협의회

관련 현장 및 학계 전문가 대상으로 연구 내용 및 방법 관련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또한, 여성가족부의 정책실무자와의 지속적 협의를 통하여, 정책적 현안을 반영하여 정책제언의 실효성 증진시키고, 미혼모 지원을 위한 관련 토론회 참석을 통해 정책 현안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표 I-3-5 전문가 자문, 정책실무협의회 진행일정 및 내용

일시	참석자		자문 및 논의내용
2018. 02	현장전문가 1인 (미혼모협회)	자문회의	- 미혼모·부 지원 상화 파악 및 연구방향 관련 자문
2018. 02	현장전문가 2인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자문회의	- 연구협조 및 미혼모·부 지원 상화 파악
2018. 03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사무관 1인	정책실무 협의회	- 연구방향 공유 및 여가부 진행 정책 및 연구 공유
2018. 04	정책연구 선행연구자 3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문회의	- 미혼모·부 연구방향 관련 자문
2018. 04	현장전문가 3인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미혼모지원네트워크,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자문회의	- 미혼모 지원 실태 및 실무 경험 공유, 조사협조 요청
2018. 05	학계전문가 2인, 원내멘토링	자문회의	- 설문지 검토
2018. 06	미혼모관계자 2인	자문회의	- 설문지 검토
2018. 06	학계전문가 2인, 여성가족부 서기관 1인	중간보고	- 보고서 검토 및 자문
2018. 07	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	자문회의	- 미혼모 지원 정책방향논의
2018. 10	여성가족부 서기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팀장 1인, 현장전문가 2인, 학계전문가 1인	최종보고	- 연구 전반적인 검토 및 정책제언 논의
2018. 12	정책연구 선행연구자 1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1인	정책검토 위원회	- 정책제언 검토 및 제언
2018. 12	학계전문가 4인, 현장전문가 2인, 미혼모 관계자 2인	서면자문	- 정책제언 및 연구결과 활용 방안

4 연구의 범위

가. 미혼모·부에 대한 법적 정의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한부모가족법)에서는 “미혼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미혼모·부로 정의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미혼모부자가족”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모 또는 부가 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이며, 양육 중인 아동은 18세 미만의 자(취학 중인 경우는 22세 미만,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는 병역의무 이행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자)를 의미한다(동법 제4조). 또한 동법에 따르면 24세 이하의 한부모는 “청소년 한부모”로 정의할 수 있으며(동법 제4조 1의 2), 이는 만 9세부터 24세까지를 청소년으로 분류하는 청소년기본법의 연령 분류에 근거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 라. 미혼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 1의2.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2.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3.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4.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5.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의 자를 말한다.

한부모가족법에서는 미혼모·부를 정의함에 있어서 혼인 이력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 여성가족부(2017: 152)에서 지원 대상 가구를 정의함에 있어서 미혼 한부모 가족 여부를 법률상 혼인 기록이 없는 경우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사실혼 관계를 종료한 후 한부모가족이 된 경우 미혼모·부자 가족에 해당하나, 혼인이력이 있고 이혼한 후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는 경우에는 미혼 한부모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7: 152). 또한 서울시의 일부 조례에서는 사실혼 관계와 함께 혼인 이력이 있는 자를 미혼모·부에서 제외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봉구 미혼모·부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혼모”란 결혼(사실혼 관계 또는 혼인이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임신 또는 출산을 하였거나, 출산 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을 말한다.
2. “미혼모 자녀”란 18세 미만의 아동(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한다)으로서 미혼모의 자녀를 말한다.
3. “미혼부”란 결혼을 하지 아니하고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남성을 말한다.

나. 선행연구에 근거한 미혼모·부의 정의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미혼모·부에 대한 법적인 정의는 한부모가족지원법 하위의 정의 외에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본 연구에서의 연구의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 기존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미혼모 관련 용어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았다. 미혼모란 넓은 의미로는 미혼의 상태에서 임신(인공임신 중절 포함)과 출산, 또한 이혼 및 사별 상태에서 임신한 경우 등을 포함하지만(보건복지부, 1999: 30), 김혜영 외(2009: 26)는 미혼모를 ‘혼인관계를 통하지 않은 임신 중 출산한 경우’로 정의하여, 미혼모의 범위를 임신이 출산으로 이어진 경우만을 한정하였다. 하지만 미혼모의 임신중절률이 높은 것을 감안하였을 때, 출산하지 않은 임신부는 제외되어 우리나라에서 미혼모의 수치를 축소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한부모가족지원법상에서의 “청소년 한부모”란 한부모의 조건을 충족하면서,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하는데, 정해숙·최윤정·최자은(2014: 6)이 진행한 ‘미혼모 학습권 지원방안 연구’에서는 기본권으로 학습권을 보장받아야하는 10대 한부모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청소년 한부모”란 용어 대신 학생 미혼모란 용어를 사용하며, 중등교육을 받아야하는 연령대로 십대 미혼모만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서해정·안태운·이현주(2010: 15)는 미혼상태에서 임신 중인 여성 이외에 이미 결혼한 기혼자가 사별, 이혼, 별거 상태에서 법적관계가 아닌 상대와의 관계에서 임신했을 경우에도 미혼모의 범주에 포함하되, 현재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는 제외하는 것으로 미혼모를 정의하였다. 하지만 일부 규정 및 조례에 의하면 이혼 및 사별 등 현재 법적 배우자가 없는 상태이지만 혼인경력이 있을 경우에 미혼모로서의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있어 다양한 상황의 미혼모 상황을 반영하는 법적인 미혼모 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표 I-4-1 | 선행연구에 의한 미혼모 관련 용어

사용 용어	정의	출처	정의 충족조건		
			임신	출산	양육
미혼모	넓은 의미의 미혼모는 미혼의 상태에서 혼전임신 및 출산, 인공임신 중절과 별거, 이혼, 사별상태에서 배우자와 관계없는 아이를 가진 경우까지 포함	보건복지부 ³⁾ (1999: 30), 김혜영 외 ¹⁾ (2009: 25-26)에서 재인용	○		
	법률상 정당한 혼인관계에 의하지 않은 성관계를 통해 자녀를 분만한 여성	김혜영 외 ¹⁾ (2009: 26)		○	
	혼인하지 않고 아이를 임신 또는 출산하여 배우자 없이 혼자서 아이를 양육하며 살아가는 여성	장화숙 ⁵⁾ (2008: 8-9)			○
미혼모부자 가정	법적인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 또는 “부”가 주인 가구로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까지 포함됨)의 아동을 키우고 있는 가정	서해정 외 ⁴⁾ (2010: 15)			○
청소년 한부모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가정 뿐 아니라 현재 임신 중인 청소년, 임신 및 낙태 경험이 있거나 출산 이후 입양 등 양육 포기 경험이 있는 청소년	백혜정 외 ²⁾ (2012: 20)	○		
학생 미혼모	법적으로 혼인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신 중이거나 출산을 경험한 십대여성으로 중등교육을 받을 연령대의 여성	정해숙 외 ⁷⁾ (2014: 6)	○		
	법적으로 미혼의 상태에서 임신 중이거나 출산을 한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학생	제석봉 ⁶⁾ (2008: 1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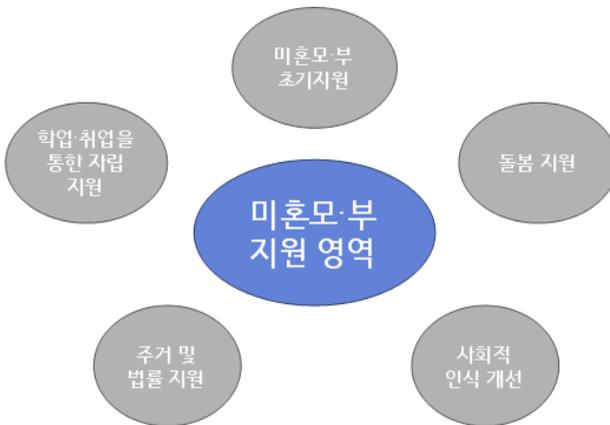
주: *청소년기본법의 연령 규정에 따름(청소년: 9세~24세까지)
 자료: 1) 김혜영·선보영·김은영·정재훈(2009). 미혼부모의 사회통합방안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pp. 25-26.
 2) 백혜정·김지연·김혜영·방은령·방현주(2012).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 I : 총괄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p. 20.
 3) 보건복지부(1999). 여성복지사업안내. p. 30.
 4) 서해정·안태윤·이현주(2010). 경기도 미혼모·부자가족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경기: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p. 15.
 5) 장화숙(2008). 미혼모 지원정책 연구.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8-9.
 6) 제석봉(2008). 학생미혼모 실태조사 연구.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p. 12.
 7) 정해숙·최윤정·최자은(2014). 학생 미혼모 학습권 보장 방안.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p. 6.

본 연구에서는 미혼모가 자녀 출산 후 자발적, 자립적으로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와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시설거주 미혼모도 결국은 재가에서의 건강한 자립을 목적으로 하므로, 본 연구에서 다루는 미혼모의 범위는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임신하여 출산하고, 재가에서 본인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재가 양육 미혼모·부로 한정한다.

다. 본 연구의 주요 초점

미혼모를 포함한 한부모 가족을 위한 지원 제도는 생계지원, 법률지원, 부모교육·자립·취업지원, 주거지원, 자녀 양육 및 교육 지원 등 그 영역과 방법이 다양하다(배운진·조숙인·장문영, 2017: 35-67). 지금까지 미혼모 연구가 시설거주 미혼모를 포함하여 진행되어왔으나, 본 연구에서는 시설거주를 하지 않고 재가에서 양육을 하는 미혼모를 중심으로 양육 및 돌봄 관련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미혼모·부 초기지원, 자립지원 및 법률지원을 통해 미혼모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자 한다.

|| 그림 I-4-1 || 본 연구에서 다루는 미혼모 지원 영역



II

연구의 배경

1. 미혼모·부 가정 현황
2. 국내 미혼모·부 지원 정책
3. 미혼모·부 지원 전달체계
4. 국외 미혼모·부 지원 정책
5. 미혼모·부 관련 선행연구



II. 연구의 배경

1 미혼모·부 가정 현황

미혼모·부는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의 집계가 어렵다. 미혼모·부의 범위에 사실혼 관계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먼저 한부모 가구 중 미혼가구의 수를 살펴보았다. 한부모 가구 중 미혼가구의 수는 모나 부가 법적 혼인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자녀를 혼자 키우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 수치로, 임신 중 출산 후 양육하지 않은 미혼모·부는 집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 전국 미혼모·부 및 자녀수 현황

2015년부터 통계청 인구총조사의 인구부문에서 미혼모부 집계가 신설되어 파악되고 있다. <표 II-1-1>에는 2015-2017년 기준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의 수를 나타내었다. 전국 연령별 미혼모수 현황을 보면 청소년 미혼모(24세 이하)는 전체 미혼모의 10% 정도에 지나지 않고, 대부분 3, 40대 미혼모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I-1-1 전국 연령별 미혼모의 수 현황

단위: 명, %

연도	미혼모 수								
	계	20세 미만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세 이상
2015	24,487 (100)	350 (1.4)	1,929 (7.9)	3,013 (12.3)	4,078 (16.7)	4,761 (19.4)	4,454 (18.2)	3,233 (13.2)	2,669 (10.9)

연도	미혼모 수								
	계	20세 미만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세 이상
2016	23,936 (100)	435 (1.8)	1,979 (8.3)	2,942 (12.3)	3,960 (16.6)	4,853 (20.3)	4,126 (17.2)	3,166 (13.2)	2,475 (10.3)
2017	22,065 (100)	377 (1.7)	1,724 (7.8)	2,507 (11.4)	3,286 (14.9)	4,672 (21.2)	4,010 (18.1)	3,147 (14.3)	2,342 (10.6)

주: 본 표에서 '미혼모·부'는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법적으로 미혼인 모 또는 부'로 정의함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2015~2017 전국 연령별 미혼모의 수 현황,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parentId=A#SelectStatsBoxDiv, 2018. 02. 27. 인출.

또한 <표 II-1-2>에는 전국 미혼부의 수 현황을 나타내었다. 전국의 미혼부의 수는 2016년 기준 9,172명으로 집계되고 있고, 미혼부의 경우 24세 이하의 비율은 4.2%로 매우 낮고, 40-49세의 미혼부가 44.3%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 표 II-1-2 ▣ 전국 연령별 미혼부의 수 현황

단위: 명, %

연도	미혼부의 수								
	계	20세 미만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세 이상
2015	10,601 (100)	84 (0.8)	414 (3.9)	494 (4.7)	1,219 (11.5)	1,931 (18.2)	2,398 (22.6)	2,193 (20.7)	1,868 (17.6)
2016	9,172 (100)	28 (0.3)	355 (3.9)	434 (4.7)	903 (9.8)	1,613 (17.6)	2,041 (22.3)	2,016 (22.0)	1,782 (19.4)
2017	8,424 (100)	10 (0.1)	284 (3.4)	395 (4.7)	719 (8.5)	1,437 (17.1)	1,813 (21.5)	1,964 (23.3)	1,802 (21.4)

주: 본 표에서 '미혼모·부'는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법적으로 미혼인 모 또는 부'로 정의함.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2015~2017 전국 연령별 미혼부의 수 현황,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parentId=A#SelectStatsBoxDiv, 2018. 02. 27. 인출.

통계청에서 제시한 전국 자녀연령별 미혼모·부의 자녀수 현황을 살펴보면 미혼모의 자녀의 경우 4세 미만의 자녀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미혼부의 자녀의 경우에는 5세에서 14세가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II 표 II-1-3 전국 자녀연령별 미혼모·부의 자녀수 현황

단위: 명, %

연도	미혼모의 자녀					미혼부의 자녀				
	계	0-4세	5-9세	10-14세	15세 이상	계	0-4세	5-9세	10-14세	15세 이상
2015	28,905 (100)	9,934 (34.4)	7,676 (26.6)	5,974 (20.7)	5,321 (18.4)	12,563 (100)	2,917 (23.2)	3,505 (27.9)	3,580 (28.5)	2,561 (20.4)
2016	28,905 (100)	9,934 (34.4)	7,676 (26.6)	5,974 (20.7)	5,321 (18.3)	12,563 (100)	2,917 (23.2)	3,505 (27.9)	3,580 (28.5)	2,561 (20.4)
2017	25,938 (100)	7,981 (30.8)	7,720 (29.8)	5,803 (22.4)	4,434 (17.0)	9,900 (100)	1,497 (15.1)	2,745 (27.7)	3,295 (33.3)	2,363 (23.9)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2015~2017 전국 연령별 미혼모·부의 자녀수 현황,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parentId=A#SelectStatsBoxDiv, 2018. 02. 27. 인출.

나. 요보호 아동 및 입양자 중 미혼모 비율

재가 미혼모·부의 비율을 직접적으로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요보호 아동 발생 원인, 입양자 배경 등의 상당부분을 차지했던 미혼모·부 자녀의 수의 추이를 통해, 재가미혼모·부의 증가를 짐작할 수 있다. <표 II-1-4>에서처럼 2009년도에 요보호 아동발생 수 9,028명 중 미혼부모 및 혼외자의 자녀의 경우가 3,070명으로 3분의 1이 넘는 수였으나, 2017년은 요보호아동발생수 4,121명 중 850명이 미혼부모 및 혼외자의 자녀로 전체의 5분의 1을 차지한다. 이는 수적으로도 현저히 줄어들고 비율적으로도 매우 줄어든 수치임을 알 수 있다.

II 표 II-1-4 연도별 요보호 아동 발생 수 및 발생원인

단위: 명

발생원인	연도				
	2009	2011	2013	2015	2017
발생유형 계	9,028	7,483	6,020	4,503	4,121
학대, 부모빈곤, 실직 등	4,994	3,928	3,668	2,866	2,769
비행, 가출, 부랑	707	741	512	360	229
미혼부모, 혼외자	3,070	2,515	1,534	930	850
유기	222	218	285	321	261
미아	35	81	21	26	12

자료: 보건복지부(2018. 5. 17).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21 2018. 11. 16. 인출.

또한 전체 미혼모·부 중 입양을 한 비율은 파악하기 어려우나 전체 입양허가가 난 아동 중에서 미혼모·부의 아동의 비율은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입양통계를 통해 파악이 가능하다. <표 II-1-5>에서 보는 것처럼 총 입양허가 수에서 미혼모·부의 아동이 차지하는 비율은 국내외 모두 80~100%으로 매우 높다. 2016년에는 총 입양 허가 수 자체가 2008년도 대비 34.4%정도로 감소했지만 미혼모·부 아동이 차지하는 비율은 여전히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 표 II-1-5 ■ 국내외 입양허가 아동 수

단위: 명(%)

연도	요보호 아동 발생수	총 입양 허가	국내				국외			
			전체	미혼모/부 아동	유기 아동	결손 가정	전체	미혼모/부 아동	유기 아동	결손 가정
2008 ¹⁾	9,284	2,556	1,306	1,056 (80.9)	86 (8.1)	164 (15.5)	1,250	1,114 (89.1)	10 (0.8)	126 (10.1)
2009 ²⁾	9,028	2,439	1,314	1,116 (84.9)	70 (6.3)	128 (11.5)	1,125	1,005 (89.3)	8 (0.7)	112 (10.0)
2010 ³⁾	8,590	2,475	1,462	1,290 (88.2)	46 (3.6)	126 (9.8)	1,013	876 (86.5)	4 (0.4)	133 (13.1)
2011 ⁴⁾	7,483	2,464	1,548	1,452 (93.8)	34 (2.3)	62 (4.3)	916	810 (88.4)	9 (1.0)	97 (10.6)
2012 ⁵⁾	6,926	1,880	1,125	1,048 (93.2)	19 (1.8)	58 (5.5)	755	696 (92.2)	1 (0.1)	5 (7.7)
2013 ⁶⁾	6,020	922	686	641 (93.4)	24 (3.7)	21 (3.3)	236	228 (96.6)	1 (0.4)	7 (3.0)
2014 ⁷⁾	4,994	1,172	637	578 (90.7)	28 (4.8)	31 (5.4)	535	509 (95.1)	- (0.0)	26 (4.9)
2015 ⁸⁾	4,503	1,057	683	618 (90.5)	54 (8.7)	11 (1.8)	374	358 (95.7)	16 (4.3)	- (0.0)
2016 ⁹⁾	4,592	880	546	481 (88.1)	18 (3.7)	47 (9.8)	334	327 (97.9)	2 (0.6)	5 (1.5)
2017 ¹⁰⁾¹¹⁾	4,121	863	465	417 (89.7)	23 (4.9)	25 (5.4)	398	397 (99.7)	-	1 (0.3)

자료: 1) 보건복지부(2009. 5. 6). 2008년 입양현황.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903&CONT_SEQ=336591&page=1, 2018. 02. 27. 인출.

2) 보건복지부(2010. 2. 9). 2009년 입양현황.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1&CONT_SEQ=264487&page=1, 2018. 02. 27. 인출.

3) 보건복지부(2011. 5. 30). 2010년 입양현황.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903&CONT_SEQ=336875&page=1, 2018. 02. 27. 인출.

4) 보건복지부(2012. 2. 15). 2011년 입양현황.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901&CO

- NT_SEQ=336951&page=1, 2018. 02. 27. 인출.
- 5) 보건복지부(2013. 4. 11). 2012년 국내외 입양현황.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 2018. 02. 27. 인출.
- 6) 보건복지부(2014. 6. 25). 2013년 국내외입양현황.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1&CONT_SEQ=301618&page=1, 2018. 02. 27. 인출.
- 7-9) 보건복지부(2017. 5. 12). 국내외 입양인들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다!, p. 6-7.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39603, 2018. 02. 27. 인출.
- 10) e나라지표, 국내 입양아 수 및 입양 비율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08, 2018. 02. 27. 인출.
- 11) 통계청, 보건복지부, 보호대상아동현황보고 2017,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TX_117341138&conn_path=I3, 2018. 02. 27. 인출.

2 국내 미혼모·부 지원 정책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원하고 있는 미혼모·부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미혼모·부 초기지원, 경제적 지원, 주거 및 시설지원, 학업지원, 양육비 이행지원, 및 지원 기관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가. 미혼모·부 초기 지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에서는 1.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2. 장애인, 노인, 만성질환자 등의 부양 서비스, 3. 취사, 청소, 세탁 등 가사 서비스, 4. 교육·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 5.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이를 근거로 하여 미혼모·부 초기 지원 사업을 지원하여 미혼모·부가 아기를 스스로 양육하고자 할 경우 초기 위기에 대처하고 양육 및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여성가족부, 2017: 306). 이에 따르면 시·도별 1개(서울 2개)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하고, 사업 수행을 위해 상담경력자 등 전담인력 1명을 배치하여, 상담을 통한 정서 지원 및 출산 및 양육 지원, 친자검사비 지원, 교육·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원, 자조모임 운영 지원, 지역 유관기관 연계를 지원한다(여성가족부, 2017: 308-312). 자세한 내용은 <표 II-2-1>와 같다.

표 II-2-1 미혼모·부 초기 지원 사업내용

구분	내용
상담을 통한 정서 지원	임신·출산, 부모 역할 부담 해소, 사회적 편견으로 위축된 자존감 향상, 자립심 강화 등 정서 지원, 주거·양육 등 생활 상담 등
출산 및 양육 지원	지원대상: 시설입소자를 제외한 만 3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부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가구 지원내용: 병원비, 양육용품 지 원 액: 연간 가구당 70만원 이하 지원
친자검사비 지원	아동양육에 대한 책임의식 강화를 위해 친자검사비 지원
교육·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	임신·출산, 자녀양육 등과 관련된 정보 및 서비스 제공, 경제적 자립 지원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최소 연 6회 진행
자조모임 운영 지원	자립 경험 논의 가능한 자조모임 운영 지원 최소 연 6회 진행 1인당 2만원 이내, 모임 1회당 30만원 이내

자료: 여성가족부(2018a). 2018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pp. 308-312.

나. 경제적 지원

한부모가족법 제12조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에 대해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복지급여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미혼모·부가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거나, 청소년 한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추가적인 복지 급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직업훈련비와 훈련기간 중 생계비를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수준은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있다(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또한 한부모가족법에서는 청소년 한부모에 대해서는 교육 지원(동법 제17조의2)과 자립지원(동법 제17조의4)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2018b: 1-2)는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 추가 아동양육비, 아동교육 지원비, 생계비를 지급하며, 청소년 한부모가족에게는 추가로 검정고시 학습비, 고등학생 교육비, 자립촉진 수당을 지원한다. 또한 한부모가족과 청소년 한부모가족 간의 소득인정액에 있어서도 차이를 두고 있다(표 II-2-2참조).

표 II-2-2 | 2018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복지급여 지급기준

구분	종류	지원 대상	지원 금액	'19년 예산안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의 만 14세 미만 자녀 ('19년 만14세 미만 →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13만원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조손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5.41만원	
	생계비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	가구당 월 5만원	
청소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의 자녀	자녀 1인당 월 18만원	자녀 1인당 월 35만원
	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5.41만원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	가구당 월 5만원	
	검정고시 학습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고등학생 교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수업료, 입학금 실비	
	자립촉진 수당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원	

자료: 1) 여성가족부(2018b). 여성가족부 고시 제2017 - 57호, 2018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고시문(안). pp. 1-2.
 2) 여성가족부(2018c). 보도자료_2019년 여성가족부 정부 예산안.

2017년 기준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만 24세 이상 한부모의 경우는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의 소득수준을 가져야했지만, 2018년에는 만 24세 이상 한부모의 경우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는 기준중위소득 72% 이하의 소득수준을 가질 경우 한부모가족 선정기준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변

경되었다(여성가족부, 2018b: 1-2).

또한 2018년에 다양한 미혼모를 포함한 한부모 관련 토론회 개최, ‘모든 아동과 가족에 대한 차별없는 지원(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18)’에 대한 발표에서도 ‘한부모 지원’ 및 ‘비혼·출산·양육’ 등의 지원방안 제시 등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 추진방안(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2018: 14-15)에서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열악한 양육 여건 등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부모의 자립을 보다 현실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대상과 지원 금액을 대폭 인상하도록 제시하였고, 비혼 출산으로 양육하고 있는 가정이 도움 받을 수 있도록 문화개선, 제도개선 등을 제시하였다. <표 II-2-3>에서 이를 정리하였다.

▣ 표 II-2-3 ▣ 모든 아동과 가족에 대한 차별 없는 지원(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18)

구분		내용	
[한부모지원] 아이 낳고 키울 수 있는 여건 조성	필요성	비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열악한 양육여건 등으로 직접 양육이 어려워 유기, 입양 등을 선택하는 현실 개선 필요	
	주요 내용	한부모의 자립을 위한 아동양육비 현실화	
		지원 대상 자녀연령 14→18세로 상향(8만→10만 명) 및 지원액 인상 (13→17만원/청소년 18→25만원)	
기대 효과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을 강화하여 자립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비혼 출산 ·양육] 동등하게 대우받는 여건 확립	필요성	비혼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편견, 차별 등으로 비혼 출산을 선택하기 어려운 현실	
	주요 내용	제도 정비	법령(가족관계등록법, 민법 등), 서식 및 지원 절차상 혼인여부 등에 따른 차별 및 불합리한 제도 발굴개선 추진 부(父)가 자녀 인지시 원칙적으로 종전 성(姓) 사용하도록 개정 추진('18. 下), 주민등록표상 계부·계모 등 표기 개선('18. 下), 사실혼 부부 난입시술 지원('19년) 등

구분		내용	
[비혼 출산·양육] 동등하게 대우받는 여건 확립	주요 내용	문화 개선	사회적 편견, 낙인 등 일상 속 차별 사례 발굴해 포용적 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캠페인 전개 및 반편견 교육 강화 모바일 차별 경험 접수 창구 개설('18.下), 학생 비혼모의 위탁교육기관 이용범위 전국 확대 추진('19년), 신규교원 연수시 반편견 교육 강화('19년) 등
		통합 지원	비혼모 등 경제·사회적 어려운 상황의 임신·출산·양육 관련 통합적 문제해결을 위한 원스톱 상담창구 운영 24시간 위기 임신·출산 상담, 관련기관 연계, 종합정보제공 등
		조사·연구	동거가족, 비혼모·부 등 현황, 지원욕구 등 파악하기 위한 연구 및 통계 구축 등 추진 출생신고 제도 개선 관련 조사연구, 혼인 외 출산·양육의 차별 제도 발굴·개선 연구, 동거 관련 통계 구축 등
	기대 효과	모든 출산이 존중받고 어떤 아들이든 동등하게 대우 받도록 포용성을 제고하는 제도 개선 및 사회적 분위기 조성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18),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 추진방안. pp. 14-15.

표 II-2-4 | 2018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원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2018년 기준 중위소득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참고〉 생계급여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30%)		854,129	1,104,945	1,355,761	1,606,576	1,857,392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 소득 52%	1,480,490	1,915,238	2,349,985	2,784,732	3,219,480
	기준 중위 소득 60%	1,708,258	2,209,890	2,711,521	3,213,152	3,714,784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 소득 60%	1,708,258	2,209,890	2,711,521	3,213,152	3,714,784
	기준 중위 소득 72%	2,049,910	2,651,868	3,253,825	3,855,783	4,457,741

자료: 여성가족부(2018a). 2018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pp. 49-50.

그러나 동법 제12조는 단서 조항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급여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 따라서 미혼모·부 가구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의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경우 동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한부모가족법 제13조에서는 복지 자금의 대여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1. 사업에 필요한 자금, 2. 아동교육비, 3. 의료비, 4. 주택자금 등을 대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14년부터 저소득층 생업자금으로 통합하여 운영되었으며, 2016년부터는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창업·운영자금사업’을 통해 창업·운영자금 등 자활자금을 무담보·무보증으로 소액대출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다. 주거 및 시설 지원

한부모가족법 제 20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동법에 따르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모자가족복지시설과 부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일시지원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로 나뉜다. 출산 후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미혼모의 경우에도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이용의 대상자가 된다(동법 제5조의2).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유형 및 현황은 <표 II-2-5>과 같다.

▣ 표 II-2-5 ▣ 한부모 가족복지시설 유형 및 현황

시설유형 (2018년 기준 시설수)	입소기간 (연장가능 기간)	입소대상	시설 수		입소 정원		
			2017	2018	2017	2018	
모자 가족 복지 시설 (48)	기본생활 지원형	3년 (2년)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족		42	1026 세대	1041 세대
	공동생활 지원형	2년 (1년)	독립적인 가정생활이 어렵고 일정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생활 하면서 자 립을 준비하고자 하는 모자가족		3	52 세대	45 세대
	자립생활 지원형	3년 (2년)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족, 기본생활 지원형에서 퇴소한 모자세대로서 자립준비가 미흡한 모자가족		3	41세대	

시설유형 (2018년 기준 시설수)		입소기간 (연장가능 기간)	입소대상	시설 수		입소 정원	
				2017	2018	2017	2018
부자 가족 복지 시설 (4)	기본생활 지원형	3년 (2년)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부자가족	2		40세대	
	공동생활 지원형	2년 (1년)	독립적인 가정생활이 어렵고 일정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생활 하면서 자 립을 준비하고자 하는 부자가족	2		15 세대	14 세대
미혼모 자가족 복지 시설 (62)	기본생활 지원형	1년 (6개월)	이혼·사별 또는 미혼의 임신여성 및 출 산 후(6개월 미만) 분만혜택과 숙식지원 이 필요한 여성	20	21	515명	544명
	공동생활 지원형	2년 (1년)	3세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로 일정기간 숙식보호와 자립지원을 필요로 하는 여성	38	39	328 세대	330 세대
		2년 (6개월)	출산 후 해당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	1	2	10명	15명
일시지원 복지시설 (11)	6개월 (6개월)	배우자의 학대로 인하여 아동의 건전 양 육과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모와 아동	11*		325명	315명	
한부모가족 복지상담소(4)		한부모가족에 대한 위기·자립상담 및 문 제해결 지원	4*		이용시설		

주: *휴지 및 미운영 시설 각 1개소 포함.
 자료: 여성가족부(2017). 2017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p. 199.
 여성가족부(2018a). 2018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p. 203.

위에서 살펴본 미혼모 및 한부모 가족을 지원하는 복지시설의 분포를 17개 시
 도로 나누어 시설 수를 살펴보았다(표 II-2-6 참고).

▣ 표 II-2-6 ▣ 전국 미혼모 및 한부모 가족복지시설 수

단위: 개소

지역	생활시설									이용시설	
	모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 복지시설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			일시 지원 복지 시설		한부모 가족 복지 상담소
	기본생 활지원	공동생 활지원	자립생 활지원	기본생 활지원	공동생 활지원	기본생 활지원	공동생 활지원	미혼모공동 생활지원			
합계	42	3	3	2	2	21	39	2	11	4	
서울	6	0	0	1	1	6	9	1	1	1	
부산	6	0	0	0	0	2	3	0	0	0	
대구	5	0	0	0	0	1	2	0	1	0	
인천	1	2	0	1	1	1	3	0	1	0	
광주	2	0	0	0	0	1	3	0	0	0	
대전	1	0	0	0	0	1	3	0	1	1	

지역	생활시설									이용시설 한부모 가족 복지 상담소
	모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 복지시설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			일시 지원 복지 시설	
	기본생 활지원	공동생 활지원	자립생 활지원	기본생 활지원	공동생 활지원	기본생 활지원	공동생 활지원	미혼모공동 생활지원		
울산	1	0	0	0	0	1	1	0	1	0
경기	2	0	1	0	0	3	6	0	1	0
강원	1	0	0	0	0	1	1	0	0	0
충북	1	0	1	0	0	0	0	0	0	2
충남	2	0	0	0	0	1	1	0	1	0
전북	4	0	1	0	0	0	1	0	1	0
전남	2	0	0	0	0	1	2	0	0	0
경북	5	1	0	0	0	0	1	0	1	0
경남	2	0	0	0	0	1	2	0	1	0
제주	1	0	0	0	0	1	1	1	1	0

자료: 여성가족부(2017). 2017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pp. 281-282.

한부모가족법 제18조에서는 국민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때에는 한부모가족에게 일정 비율이 우선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여성가족부, 2018a: 230), 공동생활가정형(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여성가족부, 2018a: 289)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주거지원으로 한부모가족 및 미혼모·부자 가족이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을 <표 II-2-7>에 정리하였다. 공동생활가정형(매입임대주택) 주거 지원의 경우 2016년까지는 저소득 미혼모·부 및 저소득 부였던 입주대상이 국토부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 제 55조 1항 제 4호 개정에 따라 저소득 한부모로 변경되어, 2017년부터 모든 저소득 한부모 가족으로 입주대상이 확장되어, 16년까지 입주 대상이 아니었던 미혼 아닌 일반 모자가족도 입주가 가능하게 되었다(여성가족부, 2018a: 290). 그러나 미혼모자가족이 입주 1순위, 부자가족 2순위, 모자가족 3순위이며, 미혼모자가족 아닌 한부모 가족의 경우 전체 수용가능 가구 수의 50%미만인 경우만 입주가 가능하다(여성가족부, 2018a: 294). 공동생활가정형 주거 지원은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며, 주거 이외에도 상담, 자조모임 구성 및 운영, 자립지원 등을 병행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8a: 290).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은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한부모가족 중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5·10년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대상에 한부모 가족을 포함하는 것으로, 지자체에서

는 관할 지역 내 임대주택 건설량의 10% 범위 내에서 특별공급대상을 선정하여 특별공급을 시행한다(여성가족부, 2018a: 230).

Ⅱ 표 II-2-7 Ⅰ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지원대상 및 내용

구분	지원대상 및 입주자 선정	지원내용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주거 지원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 자립의지가 있는 무주택 한부모 가족* ○ 입주요건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으로, 현재 직업이 있거나 학업 수행을 하는 등 자립의지가 확고한 자 ○ 입주 우선 순위 : (1순위) 미혼한부모가족 (2순위) 부자가족 (3순위) 모자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 기간 : 2년 이내, 1회 연장 시 최장 4년 ○ 입주 방식 : 1호당 2가구 이상 입주 원칙 (가족구성원 수 및 자녀 연령 등 필요 시 1호당 1가구 입주 가능) ○ 지원 내용 : 주거비용 중 임대보증금 지원 (관리비 및 공과금 입주자 부담) : 입주자 상담, 자조모임 구성 및 운영, 직업훈련 및 취업 연계 등 자립 지원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내 5·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 건설량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특별공급

주: *국토부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 제 55조 1항 제 4호 개정에 따라 2016년까지 저소득 미혼모·부 및 저소득 부였던 입주대상이 저소득 한부모로 변경됨.

자료: 여성가족부(2018a). 2018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pp. 230-232, 289-291.

라. 학생 미혼모 학업 지원 및 자립지원

1) 학생 미혼모 학업 지속 지원

학생 미혼모 학업 지속을 위한 방안으로 학생 미혼모가 임신 당시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담당교사, 학부모, 또는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대안교육기관으로 위탁교육이 가능하다. 그러나 임신 이전에 이미 학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검정고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정해숙 외, 2014: 79).

미혼모 대안위탁교육은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학업중단을 예방하고자 각 시도 교육청에서 지정한 단기 위탁교육기관에서 청소년 한부모가족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여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학습권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³⁾. 학령기의 임신 및 출산은 청소년기의 일탈 내지 비행의 일환으로 간주되어 기본

3) 여성가족부, 미혼모 대안교육위탁기관 지역별 현황.

http://www.mogef.go.kr/cs/opf/cs_opf_f091.do, 2018. 03. 06. 인출.

적인 학습권을 향유하는데 어려움을 초래한다(정해숙 외, 2014: 25). 그러나 학업중단 시 실업과 빈곤에 노출되기 쉬우며, 이후 자녀에게 빈곤을 대물림할 가능성이 높다(정해숙 외, 2014: 27). 이에 따라 미혼모 위탁형 대안교육기관이 2010년 처음 설립되었으며, 2018년 현재 총 12개의 미혼모 대안교육기관이 운영되고 있다(표 II-2-8 참조). 그러나 이는 전국 17시도의 분포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2013년 18개보다 도리어 감소하였다(정해숙 외, 2014: 5).

▣ 표 II-2-8 ▣ 미혼모 대안교육위탁기관 지역별 현황

지역	학교명	지역	학교명
서울	나래대안학교(애란원)	강원	마리아의집
부산	마리아모성원	충남	새소망의집
대구	가톨릭푸름처	전북	민들레학교
인천	바다의별대안학교(자모원)	전남	성모의집
광주	인애복지원	경남	로템학교
경기	홀트고운학교	제주	무궁화아카데미(애서원)

자료: 여성가족부, 미혼모 대안교육위탁기관 지역별 현황, http://www.mogef.go.kr/cs/opf/cs_opf_f091.do, 2018. 03. 06. 인출.

대안교육기관에서는 교과수업과 비교과수업이 이루어지는데(정해숙 외, 2014: 84), 교과수업의 경우 수업을 듣는 청소년들의 학업수준 차이로 인해 기초학습 중심으로 난이도가 하향 조정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하였다(정해숙 외, 2014: 86). 또한, 교사 수급 문제 등으로 인해, 임산부에게 무리가 되는 일과로 수업이 진행되기도 하며, 인문계와 전문계의 구분이 되지 않고 수업이 이루어져, 원격학교에서 이루어지던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정해숙 외, 2014: 85-87). 비교과수업은 순산체조, 수지침 등의 건강교육, 만들기 교육, 기초수준의 자격증 취득교육, 심리치료프로그램 등 기관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정해숙 외, 2014: 88). <표 II-2-9>에서는 서울 소재 대안교육학교인 나래 대안학교의 교육과정 및 지원내용을 제시하였다.

표 II-2-9 나래대안학교 교육과정 및 지원내용

구분	내용
보통교과	-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중·고등학교 기본 공통과정
대안교과	- 체조, 한국사, 생활과 인성, 특기적성교육, 예술, 진로교육
기타 지원	- 학교 내 생활관 무상 숙식 지원 - 상담 지원 - 복지지원: 병원비, 산후조리, 직업교육비, 산후도우미, 탁아, 아이돌보미, 양육수당, 아기양육용품, 이음식, 예방접종, 해산비, 임대주택, 자립 정착금, 돌, 백일 등 지원 - 주거지원: 애란원 내 시설에서 3~4년 거주 가능(아이도 함께, 제적학교 복귀 이후에도 거주가능) 이후 모자원 또는 전세임대주택 연계 지원

자료: 애란한가족네트워크, 미혼모대안학교, 나래대안학교, 교육과정 안내 <http://www.aeranwon.org/alternative/s04.html>, 2018. 06. 20. 인출.

2) 취업교육을 통한 자립지원 (취업성공패키지)

고용노동부에서는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 대하여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⁴⁾. 취업성공패키지는 대상자에 따라 I 과 II로 구분할 수 있는데, 지원 대상 및 연령은 표와 같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조건부수급자의 경우 별도의 요건 없이 당연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며, 차상위계층, 차차상위 이하 가구원의 경우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⁵⁾.

4)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소개, 사업개요 <http://www.work.go.kr/pkg/succ/content01/businessinfo.do>, 2018. 06. 20. 인출.

5)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소개, 지원대상자, 선정 요건 및 절차 <http://www.work.go.kr/pkg/succ/content02/reqProcess.do>, 2018. 06. 20. 인출.

표 II-2-10 취업성공패키지 대상 및 연령

구분	대상	대상연령
취업성공패키지 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생활수급자 중 조건부수급자 - 차차상위 이하 저소득층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 미혼모·한부모(시설 입소자) - 북한이탈주민 - 니트족 - 특수형태근로자 - FTA 피해 실직자 - 위기청소년 - 여성가장 - 건설일용직 - 맞춤 특기병 	만 18세~만 69세 (위기청소년의 경우 만 15세~만 23세)
취업성공패키지 II	(청년)	만 18세~만 34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졸이하 비진학 청년 - 대졸이상 미취업자 - 고용촉진특별구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 맞춤 특기병 	
	(중장년)	만 35세~만 69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단위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의 가구원으로서 아래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실업급여 수급 종료 이후 미취업자 ②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있으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취업자 ③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자 - 영세자영업자 - 고용촉진특별구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자료: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소개, 지원대상자, 범위 <http://www.work.go.kr/pkg/succ/content02/scope.do>, 2018. 06. 18. 인출.

취업성공패키지는 최장 1년의 기간 내에서 1단계 진단·경로 설정, 1·5단계 취업상담 및 취업알선, 2단계 의욕·능력 증진, 3단계 집중·취업 알선의 단계로 지원하고 있다(그림 II-2-1 참조). 1단계에서는 참여수당으로 패키지 I은 최대 25만원, 패키지 II는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며⁶⁾, 2단계에서는 훈련참여지원수당으로 훈련일수 1일 당 18,000원, 최대 28.4만원과 훈련 장려금 11.6만원을 지급하여 6개월 간 월 최대 40만원을 지원한다.⁷⁾ 3단계에서는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구직촉진수당을 매월 30만원(고등학교 3학년 매월 20만원)을 지원한다.⁸⁾ 또한 패키지 I의 경우 취업 혹은 창업에 성공 시 취업성공수당으로 최대 150만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한다⁹⁾.

6)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소개, 지원금, 참여수당 <http://www.work.go.kr/pkg/succ/content04/partBenefit.do>, 2018. 06. 20. 인출.
 7)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소개, 지원금, 훈련참여수당 <http://www.work.go.kr/pkg/succ/content04/trainBenefit.do>, 2018. 06. 20. 인출.
 8)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소개, 지원금, 청년구직촉진수당 <http://www.work.go.kr/pkg/succ/content04/youngSeekActvAllo.do>, 2018. 06. 20. 인출.

그림 II-2-1 취업성공패키지 지원내용



자료: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지원내용, 개요 <https://www.work.go.kr/pkg/succ/content03/summary.do>, 2018. 06. 18. 인출.

마. 법률 상 지원

1) 미혼모의 양육비 이행확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육비이행법)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지원하여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1조). 동법 제2조에 따르면 “양육비”란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이 아닌 자녀를 보호·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부 또는 모는 혼인상태와 상관없이, 미성년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의식주, 교육 및 건강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최적의 성장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을 명시하고 있으며(동법 제3조 제1항), 따라서 비양육부모는 양육부모와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정하여진 양육비를 양육비 채권자에게 성실히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다만, 비양육부모가 부양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비양육부모의 부모가 지급하여야 한다.)(동법 제3조 제2항).

이에 따라 동법 제7조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을 위해서 건강가정진흥원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두고, 1. 비양육부모와 양육부모의 양육비와 관련한 상담, 2.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3.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4.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 및 양육부모에게 양육비 이전, 5.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9)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소개, 지원금, 취업성공수당 <http://www.work.go.kr/pkg/succ/content04/empSuccBenefit.do>, 2018. 06. 20. 인출.

에 대한 제재조치, 6.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등 연구, 7. 자녀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8. 그 밖에 양육비 채무 이행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하도록 규정하여, 양육비원스톱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양육비 이행에 대한 강제조항의 부재로 소송 후 양육비가 실제 지급되지 않을 경우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없어 이행이 확정되더라도 안정적인 양육비 지급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이행원의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¹⁰⁾. 또한, 미혼모가구의 경우 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인지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인지가 가능하다 할지라도 1~2년의 긴 소송기간¹¹⁾, 승소하더라도 비양육부모의 소득이 150만원 미만일 경우 민사집행법 상의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여 실효성이 없으며(오영나, 2018: 43),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경우 양육비가 소득에 산정되기 때문에 양육비 소송을 꺼리는 등의 문제가 있다(오영나, 2018: 42).

이러한 어려움으로 실제로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가족 중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는 비율은 6.7%에 불과하며¹²⁾, 2015. 3. 25~2018. 12. 31까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이용자 중 미혼 한부모의 이용률은 5.5%에 그쳐(94.1% 이혼 한부모, 0.4% 조손가구)¹³⁾, 2015년 기준 전체 한부모가족 비율 중 미혼 한부모가족 비율인 11.6%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양육비이행소송 접수 건을 살펴보면, 양육비이행원 출범 이래 총 12,393건의 양육비이행소송 접수가 되었고, 이 중 48.56%인 6,018건이 양육비 이행 확약을 받았으며, 접수 대비 19.54%인 2,422건이 실제 양육비를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미혼한부모의 경우 총 접수 761건의 48.75%인 371건이 확약판결을 받아 전체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으나, 실제 양육비 지급률은 9.07%(69건)으로 이혼한부모와 조손가구를 포함한 전체 양육비 이행률에 비교해서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미혼한부모의 경우 이행소송 접수 건 자체도 전체 한부모 가구에 비해서 적으며, 실제 양육비 이행률은 더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10) 11) 베이비뉴스(2018. 05. 30.). 미혼모, '엄마'를 결심하면 '가난' 따라오는 나라 <http://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5324>, 2018. 06. 18. 인출.

12) 청와대, 국민소통 광장, 국민청원 및 제안, 미혼모를 위한 히트 앤드 런 방지법을 만들어주세요. #GIRLS_CAN_DO_ANYTHING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48613?page=8>, 2018. 06. 18. 인출.

13) 양육비이행관리원 공식블로그, 양육비 이행 통계, 2017 뉴스레터 4호 양육비이행관리원 통계 <https://blog.naver.com/pinach01/221156738744>, 2018. 06. 18. 인출.

표 II-2-11 양육비이행원의 양육비 이행지원 성립

단위: 건(%)

구분	양육비이행 청구소송 건수	양육비 지급 확정 건수	양육비지급 건수
전체1)	12,393(100.0)	6,018(48.56)	2,422(19.54)
미혼한부모2)	761(100.0)	371(48.75)	69(9.07)

주: '전체'는 이혼한부모, 미혼한부모, 조손가족 등의 양육비이행원 이용자 모두를 포함함
 자료: 1) 양육비이행관리원 공식블로그, 양육비 이행 통계, 2017 뉴스레터 4호 양육비이행관리원 통계 <https://blog.naver.com/pinacho1/221156738744>, 2018. 06. 18. 인출.
 2) 뉴시스(2018. 04. 01). 낙태하면 죄라면서...미혼모 양육비, 강제할 방법 없나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322_0000260298&clD=10201&plD=10200, 2018. 06. 18.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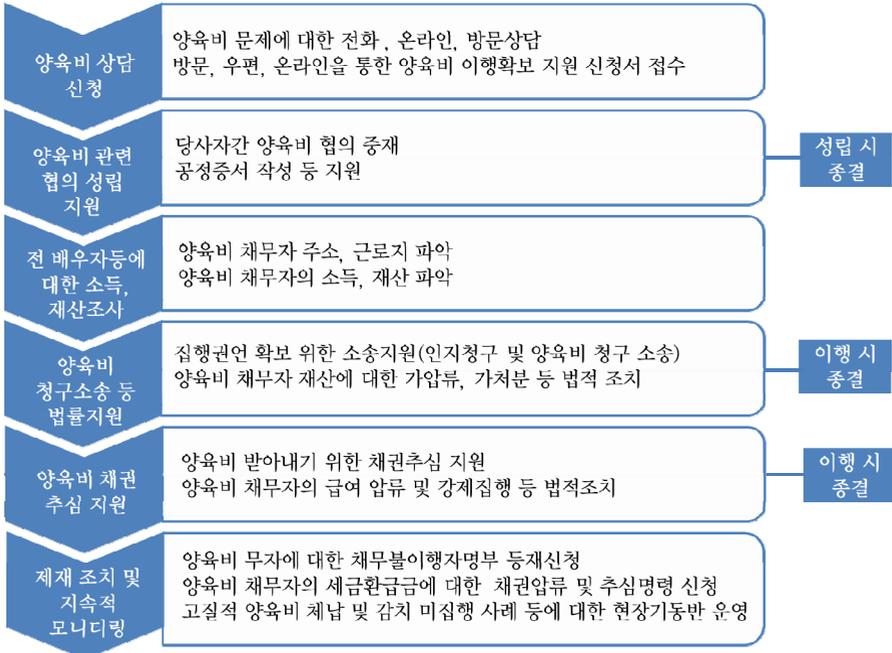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히트 앤드 런 방지법(양육비 대지급 제도)'을 제정해달라는 청원이 21만 7054명의 동의를 받은 바 있다¹⁴⁾. 이에 따라 정부는 미혼모 양육비 지급과 관련하여 실효성 있는 방안 도출을 위해 대지급제를 포함하여 양육비 지원 제도 등을 검토 중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¹⁵⁾.

2) 양육비 청구 절차 정리

양육비 청구 절차는 <그림 II-2-2>와 같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양육비 이행법에 따른 만 19세 미만 자녀양육 한부모·조손 가구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한부모·조손가족에 대해서 양육비 이행 지원 절차 맞춤형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며 미혼모 가족을 포함한다¹⁶⁾. 양육비 청구를 위해서는 비양육부모와 자녀가 법률상 친자관계인 것을 전제로 하므로 미혼 한부모가구의 비양육부모가 자녀와의 친자관계를 확인하는 절차가 포함된다. 자녀가 비양육부모에게 임의인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담 후 인지청구소송부터 양육비 이행 지원 절차가 진행된다.

14) 청와대, 국민소통 광장, 국민청원 및 제안, 미혼모를 위한 히트 앤드 런 방지법을 만들어주세요. #GIRLS_C AN_DO_ANYTHING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48613?page=8>, 2018. 06. 18. 인출.
 15) 청와대, 국민소통 광장, 국민청원 및 제안, 미혼모를 위한 히트 앤드 런 방지법을 만들어주세요. #GIRLS_C AN_DO_ANYTHING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48613?page=8>, 2018. 06. 18. 인출.
 16) 양육비이행관리원, 알림공간, 홍보자료, [행사]2016년 양육비이행관리원 국문 리플릿 <https://www.chil.support.or.kr/lay1/program/S1T35C38/front/board.do?sa=view&val6=2&sno=2378&bid=10&pg=1>에서 2018. 06. 09. 인출.

Ⅱ 그림 II-2-2 Ⅱ 양육비 이행 지원 절차



자료: 양육비이행관리원, 알림공간, 홍보자료, [행사]2016년 양육비이행관리원 국문 리플릿 <https://www.childsupp.ort.or.kr/lay1/program/S1T35C38/front/board.do?sa=view&val6=2&sno=2378&bid=10&pg=1>, 2018. 06. 09. 인출.

3 미혼모·부 지원 전달체계

본 절에서는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부가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받기 위해서 거쳐야하는 지원 전달체계를 정리하고 각 단계에서의 지원개요, 지원내용, 현황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하였다. 미혼모·부 거점기관의 경우는 거점기관 중 3곳의 담당자 면담을 통해 거점기관 사례조사를 포함하였다. 또한 미혼모·부의 지원전달의 경우 민간단체라 할 수 있는 미혼모 당사자 모임 및 미혼모지원 단체들의 역할이 크므로 인해, 미혼모당사자협회에서 제공하는 지원영역도 본 절의 범위에 포함하였음을 밝혀둔다.

가. 지원 전달체계 개요

미혼모·부로서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경로를 통한 지원이 가능하지만 여기에서는 주로 지원대상 선정 등의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구청 및 주민센터, 한부모와 차별된 초기미혼모지원을 제공하는 미혼모 거점센터, 미혼모가 출산지원 및 일시적 거주를 제공받을 수 있는 미혼모·부 가정 거주시설, 보건소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 구청·주민센터

가) 지원개요

구청과 주민센터 등은 정책수요자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공공복지 전달체계이다. 미혼모·부자가 구청 또는 동사무소와 연결되면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정책에의 신청과 수혜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나) 지원내용

중앙정부 사업과 지자체 지원사업의 정책수요자인 미혼모·부 가족의 연결통로의 기능이 구청과 주민센터의 역할이다. 따라서 지자체 사업에 따라 그 지원의 범위와 내용이 다양하다. 2012년에는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을 중심으로 청소년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현황, 부처별 복지사업 현황, 지방자치단체 사업현황 등을 정리한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편람(백혜정 외, 2012)’이 제작되기도 하였다. 지원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미혼모의 지원은 한부모가족 대상 지원 내 포함될 경우가 많고, 특화된 지원은 찾아보기 어렵다.

다) 현황 및 문제점

다면적인 지원 사업들이 마련되고 있지만 정확한 모집단의 추정이 어렵고, 복지사업 내용에서 지역 간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청과 주민센터 등 이용 경험자들은 담당자가 정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등의 어려움이 도출되었다(김은지 외, 2013: 68-69).

2) 미혼모·부자 거점기관¹⁷⁾

가) 지원개요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운영 지원은 미혼모·부자가 현재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거점기관 중심으로 추진 중인 미혼모·부 초기지원사업은 미혼모·부가 아이를 양육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임신초기부터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고, 출산 후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를 포함한다.

이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가족지원서비스)¹⁸⁾에 근거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부자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단, 출산 및 양육지원은 정부 등으로부터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만 3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부자 가구이다.

나) 지원내용

첫째, 온·오프라인 상담, 미혼모·부의 부모상담, 자녀양육 상담을 통한 미혼모·부자의 정서지원이 이루어진다. 둘째, 출산비 및 아이의 입원·예방접종비 등 엄마와 아이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병원비 지원 등의 출산 및 양육지원이 있다. 셋째, 미혼 한부모의 경우 아동양육에 대한 책임의식 공유를 위해 친자검사비를 지원한다. 넷째, 임신·출산·자녀 양육 등과 관련된 생애주기별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다섯째,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 연계 지원-신청 가정에 필요한 기관 및 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한다.

다) 현황 및 문제점

전국에 17개소가 설치 운영 중이다. 서울, 부산, 울산, 충북, 경남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미혼모·부자 거점기관으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한부모가족 지원센터를 통해 활발한 미혼모 지원활동을 추진

17)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의 내용을 토대로 구성함.

<http://www.familynet.or.kr/introduce/business/unmarried/unmarried2.do>, 2018. 06. 04. 인출.

18) 국가법령정보센터, 한부모가족지원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8423&efYd=20161220#0000>, 2018. 06. 05. 인출.

하고 있다.

미혼모 부자 거점기관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양육 미혼모를 대상으로 초기 임신 위기 상황에서부터 자녀양육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성정현 외, 2015: 284). 그러나 전국에 17개의 거점기관 만이 운영되고 있어, 거점기관마다 1명의 담당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과 물리적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담당 인력의 잦은 교체로 이용자의 심리적 거리감과 미혼모·부자 가족 특수성에 대한 이해부족이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성정현 외, 2015: 295).

표 II-3-1 2018 미혼모·부 초기지원사업 수행 기관 명

시도	기관명	시도	기관명
서울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강원	원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나, 너, 우리한가족센터	충북	청주새생명지원센터
부산	부산미혼모부자지원센터	충남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
대구	대구서구건강가정지원센터	전북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인천	인천서구건강가정지원센터	전남	여수시건강가정지원센터
광주	광주남구건강가정지원센터	경북	칠곡군건강가정지원센터
대전	대전건강가정지원센터	경남	경상남도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울산	울산 물푸레	제주	제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경기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자료: 건강가정지원센터, 주요사업, 미혼모·부자 가족, 전국 권역별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운영지원사업 개요, 수행 기관 현황 <http://www.familynet.or.kr/introduce/business/unmarried/unmarried2.do>, 2018. 03. 02. 인출.

3)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가) 지원개요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19조¹⁹⁾에 그 근거를 둔다. 한부모 가족지원법에서는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을 ‘미혼모자가족과 출산 미혼모 등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로 정의하며, 이는 기본생활지원과 공동생활시설로 구분할 수 있다.

19) 국가법령정보센터, 한부모가족지원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8423&efYd=20161220#0000>, 2018. 06. 05. 인출.

나) 지원내용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지원내용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서 기본생활지원은 ‘미혼 여성의 임신·출산 시 안전 분만 및 심신의 건강 회복과 출산 후의 아동의 양육 지원을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주거와 생계를 지원(제5조²⁰)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미혼이 아닌 여성의 임신·출산 시 안전 분만과 출산 후 양육 지원을 포함한다’ 임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2018년 1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괄호안의 내용을 추가하여 지원범위가 확대되는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는 미혼가족 지원에 사회적 관심과 지원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공동생활지원은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 또는 미혼모와 그 출산 아동으로 구성된 미혼모자가족에게 일정 기간 동안 공동생활을 통하여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거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표 II-3-2 미혼모자 가족복지 시설 유형 및 지원내용

시설유형	대상	지원내용	기간(연장)
미혼모자 기본생활지원형	미혼의 임신여성 및 출산 후 (6개월 미만) 보호를 요하는 여성	-숙식무료제공 -분만의료혜택 -자립지원프로그램 실시(직업교육 상담지도)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하는 경비지원(연계 또는 정보제공)	1년 (6개월)
미혼모자 공동생활지원형	2세 미만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숙식무료제공	2년 (1년)
미혼모 공동생활지원형	출산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	-자립프로그램실시(직업교육, 양육교육 등)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지원(연계 또는 정보제공)	2년 (6개월)

자료: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2018 한부모 조기자립을 위한 매뉴얼' p.59 표 내용 중 관련 부분을 발췌함.

다) 현황 및 문제점

2018년 현재 여성가족부 홈페이지²¹⁾에 등록된 기관을 중심으로 지역별 미혼모자 가족복지 기본생활지원은(표 II-3-3 참고) 전국에서 515명에 대해 지원이

20)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 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4.12., 2014.1.21.>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아동의 연령을 초과하는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21)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 2018. 06. 05. 인출.

이루어지고 있다. 미혼모자 가족복지 공동생활지원의 경우는 330세대(표 II-3-4 참고)를 지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이 미혼모자 가족에게 정부지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주요 통로로 기능하고 있고, 이용자들의 만족도도 정부지원기관 중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은지 외, 2013: 117). 반면 이용 시 어려움으로는 ‘공개된 공간에서 자신의 정보를 밝혀야 되는 부분’과 ‘내야하는 행정서류가 너무 많은 것’ 등으로 수렴되었다(김은지 외, 2013: 122).

▣ 표 II-3-3 ▣ 미혼모자 가족복지 기본생활지원 지역별 현황

단위: 명

지역	지원자 수	지역	지원자 수
서울	135	강원	40
부산	67	충남	18
대구	50	전남	12
인천	30	경남	13
광주	30	울산	15
경기	27	제주	44
대전	34	계	515

주: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 주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전체시설현황보기, 모자가족복지시설 중 기본생활지원, http://www.mogef.go.kr/cs/opf/cs_opf_s003.do?mid=old920, 2018. 6. 6. 인출.

▣ 표 II-3-4 ▣ 미혼모자 가족복지 공동생활지원 지역별 현황

단위: 세대

지역	가구세대 수	지역	가구세대 수
서울	80	충남	11
부산	20	전북	5
대구	17	전남	15
인천	33	경북	10
광주	23	경남	22
경기	49	울산	5
대전	23	제주	10
강원	7	계	330세대

주: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 주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전체시설현황보기, 모자가족복지시설 중 공동생활지원, http://www.mogef.go.kr/cs/opf/cs_opf_s003.do?mid=old920, 2018. 6. 6. 인출.

4) 보건소

가) 지원개요

보건소에서는 미혼모의 산전·분만·산후에 필요한 검진 실시하고, 신생아 및 자녀의 건강관리를 지원한다.²²⁾

나) 지원내용

첫째, 청소년 산모에게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등 산전관리 지원이 이루어진다.²³⁾ 2012년 이전에는 만18세 이하 미혼모자시설에 입소한 산모에게만 보조금이 지원되었으나, 2012년부터 만 18세 이하의 모든 청소년산모로 대상자가 확대되었다. 또한 임신 및 출산전후 지원을 위한 『맘편한 카드』는 사회적 노출을 꺼리는 청소년산모의 특성을 고려해 인터넷 신청을 통해 발급이 가능하다. 보건소에서 기형아 검사 등 산전 조기검진도 지원하며 엽산이나 철분제 등을 제공하기도 한다.

둘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한다²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제도는 전문 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 양육을 돕는 지원 사업이다.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출산 후 30일 이내에 있는 산모를 대상으로 하며, 미혼모 산모는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다) 현황 및 문제점

선행연구(김은지 외, 2013)에 따르면, 미혼모들이 보건소를 이용하는 이유는 비용적 측면을 고려하기 때문이며, 청소년 한부모의 산모신생아 도우미, 영양플러스, 출산 전 진료비 등 정부지원을 제공하는 보건소의 이용 경험은 높지 않았다.

22)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35&ccfNo=3&cciNo=2&cnpClsNo=4>, 2018. 06. 06. 인출.

23) 서대문구 공식 블로그 <http://tongblog.sdm.go.kr/1495>, 2018. 06. 06. 인출.

24) 네이버 포스트, KTV 국민방송,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에서 지원받기까지!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5299349&memberNo=4328593&vType=VERTICAL>, 2018. 06. 06. 인출.

이는 관련 지원에 대한 홍보 부족과 보건소에 대해 지니고 있는 불신과 편견에 기인하는 것으로 설명하기도 하였다(김은지 외, 2013: 140-141). 이용자 중 불편 사항은 서비스 제공자의 지원내용 숙지와 이해 부족, 신청 및 지원과정의 복잡성, 제출서류가 많음 등으로 수렴되었다(김은지 외, 2013: 151).

나. 당사자협회 지원 및 활동 사례

1) 한국미혼모가족협회

한국미혼모가족협회는 미혼모당사자가 모여서 결성한 당사자 협회로 2009년 3월 한국미혼모가족협회 설립을 위한 초동모임을 가지고, 당해 캠프, 온라인 카페 개설 및 협회 설립을 위한 준비모임을 결성하였다. 그 후 지금까지 미혼모 당사자 간의 친목을 도모하여, 정서적 지지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현재까지 꾸준히 청소년 미혼모 학습권, 입양특례법, 미혼모의 출산휴가, 베이비박스 상담 등에 대한 토론회 개최 및 이슈화 등 미혼모의 양육 및 생활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해왔다(한국미혼모가족협회, 2017).

▣ 표 II-3-5 ▣ 한국미혼모가족협회 연혁

연도	월	내용
2009년	3월	한국미혼모가족협회 설립을 위한 초동모임
2009년	7월	미스맘마미아 온라인 카페개설
2010년	5월	'입양특례법 개정 촉구 성명서 발표' 참석 및 성명서 발표
2011년	3월	양육미혼모 긴급일시보호쉼터인 '희망을 찾는 터' 오픈
2011년	5월	인식개선 사업인 휴먼라이브러리 시작 제1회 싱글맘의 날 '가족의 재정의: 입양을 넘어 싱글맘 가족 권리보호로!'
2011년	6월	'미혼모 지원정책 개선방안' 국회포럼
2012년	5월	제2회 싱글맘의 날 '새롭게 쓰는 모성권과 아동인권: 입양을 넘어 싱글맘 가족 보호로!'
2012년	9월	월드휴먼브리지 후원 '파구스' KB엔젤맘 국민은행 여의도 지점 오픈
2013년	5월	제3회 싱글맘의 날 '입양인의 원가족과 싱글맘 가족 인권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기념' 국제 컨퍼런스 주관
2014년	3월	'미혼모에게도 출산휴가를' 거리 캠페인
2014년	5월	제4회 싱글맘의 날 '싱글맘도 부모다. 아이를 버리게 만드는 사회에서 키울 수 있는 사회로' 기념 국제 컨퍼런스 주최
2015년	5월	제5회 싱글맘의 날 '힘내라, 엄마들아! 웃어라, 아이들아!' 거리행진, 컨퍼런스 주최

연도	월	내용
2016년	5월	제6회 싱글맘의 날 '만들어주세요! 아동유기와 매매가 없는 세상을' 한강캠페인, 컨퍼런스 주관
2016년	8월	한국미혼모가족협회 사단법인 등록 미혼모차별방지 서울협약 서명
2017년	5월	제7회 싱글맘의 날 '미혼모의 권리는 아동의 인권이다' 여성마라톤대회 캠페인, 컨퍼런스 주관
2017년	9월	긴급일시보호쉼터 '후원음악회&바자회'
2018년	5월	제8회 싱글맘의 날 '미혼모도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
2018년	9월	제2회 긴급일시보호쉼터 '후원음악회&바자회'
2018년	9월	긴급일시보호쉼터(희망을 찾는 터) 2호 오픈

자료: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내부자료(2017). 제 8차 정기총회 (사)한국미혼모가족협회.

주요사업으로는 조직역량강화, 상담 및 지원, 미혼모에 대한 인식개선사업, 교육, 홍보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상담 및 지원 사업으로는 미혼모가정의미혼모와 자녀의 정서적 지원을 위해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 미혼모가족협회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상담이외에 공모사업을 통한 체계적 상담도 이루어지고 있다. 윈드휴먼브리지 엔젤맘 프로젝트, 바보의 나눔 등 공모사업의 도움으로 개인상담이 이루어지고 있고, 토닥 센터를 통한 집단상담도 함께 이루어진다(한국미혼모가족협회, 2017: 6). 또한 일부 병원 등과 협약을 맺고, 임신출산지원 뿐 아니라, 일반진료에 대한 무료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대학생 및 일반시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여, 미혼모에 대한 인식개선사업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기업 및 공모사업의 지원으로 양육코칭을 비롯한 부모교육, 직업교육, 인문학 교육, 여성학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한국미혼모가족협회, 2017: 10).

▣ 표 II-3-6 ▣ 한국미혼모가족협회 2017년 기준 주요 사업

분류	사업 내용
조직역량강화	- 정기모임: 바자회&일일카페, 싱글맘의 날, 여름캠프, 가을운동회, 한부모를 위한 모두하나대축제, 송년회 포함 10회 - 전국네트워크 확장: 상반기(광주, 천안, 원주), 하반기(광주, 천안, 부산)
상담 및 지원	- 개인상담/집단상담/방문상담 - 주거, 생계, 의료지원
인식개선	- 휴먼라이브러리, 캠페인 - 싱글맘의 날(컨퍼런스, 캠페인)
교육	- 부모교육, 여성학, 인문학교육 - 리더십교육 - 직업/창업 교육

분류	사업 내용
재정	- 회원확대, 파구스카페 운영 - 후원기금 모금활동
홍보	- SNS, 홈페이지, 카페, 유튜브

자료: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내부자료(2017). 제 8차 정기총회 (사)한국미혼모가족협회. pp. 1, 5.

또한 기업의 후원을 받아 다양한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엄마의 미래’와 같은 미혼모 적성에 맞는 취업교육 사업, ‘엔젤맘 5차 프로젝트’, ‘트라이앵글프로그램’ 같은 심리정서지원 사업, 그 외에도 미혼모 활동가 양성 프로그램, 아이 공부방 지원 사업 등 다양하고 구체적인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다.

2) 미혼모협회 I'm MoM

대구미혼모가족 협회는 2010년 미혼모가족의 법적, 사회적 권익 향상을 위해 미혼모 당사자들이 만든 단체이다. 한국미혼모 가 협회 대구지부로 시작한 이 단체는 2015년 대구미혼모가족협회로 분리되었고, 이후 매월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미혼모 정서지원을 위한 상담, 정보제공과 지역 사회 연계 서비스 지원, 교육프로그램운영, 휴먼라이브러리, 살아있는 책대여, 정기모임)을 진행하며 미혼모 가족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긴급거주공간인 ‘봄날’을 오픈하였으며 아기의 안전한 출산을 위한 출산용품을 지원해주는 ‘베이비박스’사업을 진행중이다. 베이비박스는 임신 6개월 이후 미혼 임신부나 출산 3개월 이내인 미혼 부모에게 무상으로 개인과 기업의 기부품을 전달하는 사업이다²⁵⁾.

표 II-3-7 미혼모 협회 I'm MoM 2012-2017 활동연혁

연도	월	내용
2012년	10월	한국 미혼모 가족협회 대구지부 창립식
2013년	04월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구지부 사무실 오픈
2015년	06월	미혼임산부 쉼터 “봄날”개소
2015년	12월	대구미혼모가족협회로 분리 독립
2016년	04월	교보생명, 한국여성재단 ‘살림학교’ 시작
2016년	05월	“대구 싱글맘스데이 single mom's Day” 거리 캠페인 실시

25) 미혼모협회 I'm MoM 홈페이지 참고, <https://mihonmo.modoo.at/>, 2018.12.19

연도	월	내용
2016년	5월	휴먼네트워크 “멘토링 활성화지원사업” 실시
2016년	5월	가난으로 엄마와 아이가 헤어지지 않도록 미혼모 가정 지원 물품실 개소
2016년	5월	아기의 안전한 출산을 위한 “베이비박스”사업 실시
2017년	5월	싱글맘스데이 주관
2017년	6월	미혼모 지원제도 강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주관
2017년	6월	대구포천입양아동 진상조사위원회
2017년	5월	DGB 해뜰날 - 엄마와 아이의 웨딩 촬영
2017년	7월	러쉬 채리티팻 선정
2017년	11월	아이와 엄마가 행복한 세상 ‘아이사랑, 나라사랑’ 특강 및 후원
2017년	12월	대구 사회적 경제성과 공유회 “베이비박스를 위한 100일 기부 릴레이”
2017년	12월	엄마와 자녀들의 ‘가족’ 서약식

자료: 미혼모 협회 I'm MoM(2018). 내부자료.

또한 미혼모협회 I'm MoM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기의 안전한 출산을 위한 ‘베이비 박스’ 사업이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며, 본 사업을 통해 미혼모 가족에게 처음 육아를 시작할 때 필요한 물품들을 제공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가족 역량 강화 및 자조모임 활성화, 또한 미혼모 인식 개선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 등도 진행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 표 II-3-8 ▣ 미혼모 협회 I'm MoM 프로그램

프로그램	내용
가족 역량 강화 및 자조 모임 활성화 프로그램	매주 토요일 사랑방 모임
	매월 마지막 토요일 정기모임
	심리치료 - 5가정
	매월 1회 미용서비스
	봉사자와 이이 1:1 매칭 놀이 프로그램
미혼모 인식 개선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	대구 미술 대전 이안민지 작가의 설치미술 - 미혼모자 25가정 참여
	두리모 가족식 - 미혼자 19가정 참가

자료: 미혼모 협회 I'm MoM 내부자료(2018).

3) 변화된미래를만드는 미혼모협회 인트리

변화된미래를만드는 미혼모협회 인트리(이하 인트리)는 2013년 미혼모 여성학 스터디 모임을 기반으로 형성된 미혼모 당사자 단체로서, 미혼모와 그의 자녀의 인권과 사회적 지원향상 및 미혼모의 자존감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인트리, 2017). 또한 인트리는 2013년 2월 여성학 스터디 모임 결성 이후, 미혼모 당사자를 대상으로 성교육강사 양성교육을 실시하였고, 서울 경기권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진행하였다. 그 후 2014년 ‘미혼모에게도 출산휴가를’ 캠페인, 2015년 미혼모의 스토리를 담은 연극 공연 등 미혼모의 경험을 나누고 미혼모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2017년에는 자립매장 카페 인트리를 개장하여, 미혼모 당사자 4명이 직접운영하며, 일자리창출 및 미혼모 자립을 위한 모임장소 제공 등의 역할을 한다. 인트리는 또한 심리상담 및 24시간 긴급상담, 시설 연계 등의 역할 등을 지속하여 해오고 있다.

▣ 표 II-3-9 ▣ 인트리 2013-2017 활동연혁

연도	구분	내용	비고
2013년	교육사업	성교육강사양성교육	여성가족부
		고등학교 성교육강사활동	여성가족부
		당사자 역량강화사업	
2014년	교육사업	당사자 역량강화사업	
	인식개선사업	미혼모에게도 출산휴가를	캠페인
		제4회 싱글맘의 날 국제컨퍼런스	캠페인
		관심병사관련 기자회견 및 캠페인	
	지원사업	위기미혼모 지원사업	
명절, 여름캠프진행			
2015년	교육사업	당사자 역량강화사업	
	인식개선사업	제5회 싱글맘의 날 국제컨퍼런스	
		미혼모휴먼라이브러리 “그녀들이 엄마로 돌아왔다”	서울시한부모가족 지원센터
		연극 제작 및 공연 “특별한 여자들의 특별한 이야기”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	위기미혼모 지원사업	안자코리아
명절, 여름캠프진행			

연도	구분	내용	비고
2016년	교육사업	여성학강좌	
		당사자 역량강화사업	
	인식개선사업	제6회 싱글맘의 날 공동주관	
	지원사업	자립지원사업 뷰티플라이프	마포구고용복지지원센터
		자립교육지원사업	미래포럼
		트라이앵글프로젝트(위기지원)	KDB나눔재단
		삼신상나누기	행복중심생협연합회
2017년	교육사업	여성주의 영화보기	서울시
		당사자 역량강화사업	
	인식개선사업	제6회 싱글맘의 날	
		창작 뮤지컬 참여 “소녀, 노래하다”	액션가면
	자립사업	자립매장 카페 인트리	공동모금회
	지원사업	트라이앵글프로젝트(위기지원)	KDB나눔재단
		서울시 협치사업 (임신초중기위기미혼모지원사업)	서울시
		서울시 성평등지원사업	서울시
		부모교육 및 원가족 상담프로그램	한국여성재단
		명절, 여름캠프진행	

자료: 변화하는 미래를 만드는 미혼모 협회 인트리 내부자료(2017).

4 국외 미혼모·부 지원 정책

미혼모·부 중 청소년 미혼모·부에 초점을 두고 지원정책에 대한 국가 비교 연구(신윤정·이상림·김윤희, 2012)가 이루어졌다. 연구에서는 OECD Family Database와 Eurostat의 통계자료 분석과 문헌자료 분석을 통해 청소년 미혼부모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출산을 기점으로 하여, 청소년 임신 및 출산 예방지원 정책과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정책으로 구분하였다.

가. 국외 미혼모·부 정책 국가 유형별 특징²⁶⁾

예를 들어, 앵글로색슨국가(미국, 영국, 호주)의 경우는 기회와 평등, 개인에 대

26) 신윤정·이상림·김윤희(2012).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I: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국가 비교 연구. pp. 109-110 내용을 정리함.

한 공정성을 강조하는 자유주의 국가이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활발하나, 파트타임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으며, 이혼율과 한부모가족의 비율이 높은 특징을 보인다. 이에 따라 청소년 한부모 정책은 청교도적 보수주의로 금욕과 개인의 의지력을 강조하는 특징을 보인다(신윤정 외, 2012: 110). 그에 비해 북구유럽국가(스웨덴, 덴마크)는 보편적 사회통합과 평등을 강조하는 사회민주주의 국가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 높고 남녀 간 성역할에도 평등이 강조된다. 청소년의 자립을 독려하고 혼외출생 비율이 높다(신윤정 외, 2012: 110).

대륙유럽국가(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독일)는 자유주의와 사회민주주의의 중간 형태로 최근 성역할 유형은 가부장적인 남성생계부양자 모형이다. 청소년 한부모 정책은 의료적 지원정책의 성격을 지녀 의료전문가에 의한 교육과 개입의 동반지원이 중시한다(신윤정 외, 2012: 110). 남부유럽국가(스페인, 이탈리아)는 자유주의와 사회민주주의 조합적인 측면을 지니며 가족 가치를 강조하고 모계주의 경향을 보이며, 결혼, 세대 간 통합 및 협동 등을 중시한다. 청소년 한부모 정책은 결혼 전 금욕과 종교적 교리를 강조하며 국가의 개입은 미약하다(신윤정 외, 2012: 110).

▣ 표 II-4-1 ▣ OECD 국가의 청소년 한부모 정책의 유형별 구분

지리적문화적 구분	복지국가 유형	성역할 유형	가족관계 유형	청소년한부모 정책유형
앵글로색슨 국가 (미국, 영국, 호주)	자유주의형	혼합주의	불안정한 개인주의	청교도적 보수주의
북구유럽국가 (스웨덴, 덴마크)	사회민주주의형	평등주의	안정적인 개인주의	허용적인 자유주의
대륙유럽국가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독일)	조합주의형	가부장주의	불안정한 가족주의	의료적 지원주의
남부유럽국가 (스페인, 이탈리아)	지중해형	모계주의	안정적인 가족주의	잔여주의

자료: Institut d'Etudes Politiques de Bordeaux(2004). Les maternités précoces dans les pays développés: Problèmes, dispositifs, enjeux politiques(신윤정·이상림·김윤희, 2012. p. 109.에서 재인용).

나. 국외 한부모 지원정책의 분류²⁷⁾

한부모 지원정책은 빈곤의 위험에 대응하여 한부모들을 불안정성과 취약성을 해결하려는 사회정책의 목적이 강하다(신윤정 외, 2012: 99). 한부모 지원정책은 주로 근로를 하면서도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을 마련하는 것과, 한부모들의 근로활동을 활성화하여 근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신윤정 외, 2012: 126). 다시 말하면, 수당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직접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경제적 지원정책과 근로활성화를 목표로 자립의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이 그것이다(신윤정 외, 2012: 126).

1) 경제적 지원 정책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볼 때 한부모이기 때문에 지원하기보다는 일정 소득 이하의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지원한다(신윤정 외, 2012: 117). 즉 한부모를 지원이 필요한 대상으로 특정 집단으로 차별화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욱이 가족의 다양성이 인정되는 사회에서 미혼모·부를 주 대상으로 하는 경제적 지원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한부모 지원정책은 가족수당, 자녀양육수당 지원정책과 양육비 대리지급 지원정책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다(신윤정 외, 2012: 117).

먼저 가족수당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 보편적 가족수당으로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며, 한부모만을 대상으로 한부모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신윤정 외, 2012: 117).

자녀양육수당은 한부모의 노동시장 진입을 돕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의 자녀양육 지원정책이다. 프랑스, 핀란드 등은 국가가 수당의 형식으로 자녀양육을 지원하며, 이는 한부모뿐 아니라 모든 가족을 대상으로 한다(신윤정 외, 2012: 119).

양육비 대리지급은 한부모를 특정 대상으로 하는 수당 정책으로 전 배우자나 파트너가 자녀 부양비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국가가 대신 지급해 주는 것이다. 덴마크, 프랑스,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 등은 가족정책의 영역에서 이를 지

27) 1. 국외 지원정책을 OECD 자료 분석에 기초하여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정리함.

2. 신윤정·이상립·김윤희(2012).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 I: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국가 비교 연구. pp. 111-136. 내용을 정리함.

원한다. 영국의 경우는 아동지원국에서 양육비 수준을 결정하고 전 배우자나 파트너로부터 양육비를 받아내어 한부모에게 전달해 주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신윤정 외, 2012: 119).

2) 자립 지원 정책(근로활성화 정책)

근로활성화 정책은 한부모로 하여금 근로를 통해 가족이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 스스로 부담하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신윤정 외, 2012: 132). 한부모의 자립을 지원하고 근로 활성화를 도모함에도 각국의 기본적인 정책 기조의 경향성이 나타난다.

우선 영국과 같은 자유주의 체제에서는 실업자와 사회 최소수당을 받는 사람들에게 노동 제공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경향을 보인다. 경제적 지원에 따른 상별적인 접근방식을 취한다(신윤정 외, 2012: 131). 한부모 정책의 경우도 근로활성화와 함께 조세감면, 영유아 보육지원 등 사회통합 차원에서 이루어지며, 이들에게 근로조건을 부여하여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한부모의 사회적 보호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며 한부모로 하여금 집에서 자녀를 돌보거나 혹은 근로활동을 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신윤정 외, 2012: 132).

미국의 경우는 빈곤가족 한시부조(TANF, Temporary Assistance to Needy Family)에 근로연계나 노동참여가 의무화 되어있다. 한부모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교육이나 훈련활동에 의무적으로 참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TANF 제도에 따르면 2개월 이내에 취업을 해야 하나 일자리를 찾지 못한 경우 2년 동안 자립을 위한 취업훈련이 제공된다(서해정·안태윤·이현주, 2010: 55).

그에 비해 노르웨이, 스웨덴 같은 보편주의 국가에서는 국민과 국가의 상호계약적인 성격이 강해, 한부모에 대해 근로와 연결된 수당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영아보육에 서비스 지원정책도 병행된다. 근로활동에 대한 참여와 높은 수준의 보편적인 수당이 특징이다. 아동에 대한 보육서비스가 제공되고 아동수당도 상당히 후하게 지급된다. 이는 노동정책과 더불어 가족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함이 특징이다. 스웨덴 등은 혼외출산에 대한 사회적 낙인도 구분이 없어 미혼부모 가족은 '아동이 있는 가족'으로 동등하게 복지혜택이 주어진다(서해정 외, 2010: 56).

프랑스는 취업정책을 강조하고 금전적인 부양정책을 혼합하여 중간적 위치에 있다(신윤정 외, 2012: 131). 한부모 수당이 지급되는 기간은 상대적으로 짧고, 한부모들을 노동시장에 편입시키려는 경제적 지원책을 강조한다.

유럽 국가들의 한부모 지원정책은 과거 수당지원정책에서 한부모의 근로를 활성화하는 정책으로 선회하는 경향을 보이며, 보편적인 사회지원 및 가족정책 안으로 한부모 지원정책을 통합시키려는 성격이 강하다.

3) 해외의 미혼모 후견인 체계

독일의 경우 미성년 미혼모는 자녀에게 후견이 필요한 경우 후견법원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녀가 출생하기 이전에 요청할 수 있으며, 자녀 출생 이후에도 이에 대한 효력이 있다(독일민법 제1774조; 조은희, 2018: 19 재인용). 또한, 미성년 부모가 혼인하지 않고 자녀가 출생하였고, 이에 대한 후견이 필요한 경우 아동청소년청이 법정 후견인이 되며, 미성년 미혼부모가 입양을 원하는 경우 입양절차 진행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청에서 정한 후견인이 후견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독일민법 제1751조 제1항 2문, 조은희, 2018: 19 재인용). 이때 후견인은 모든 법적 관점에서 청구권관계자이며, 인지청구, 부양료지급청구 등 모든 형식적인 법률행위에 함께 동참하여 미성년 미혼모를 조력하여 대리권을 행사한다(조은희, 2018: 19).

다. 일본 및 호주의 미혼모 정책사례²⁸⁾

일본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가족모델, 즉 결혼제도를 기반으로 한 출산과 부모 2명이 같이 자녀를 양육하고 가족에 대한 부양책임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 가족형태이다(流石智子, 2016: 178). 따라서 한부모 특히 미혼모·부 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불평등한 사회제도 등이 남아 있다. 일례로 한부모 가구의 소득공제를 민법상 혼인관계가 등록된 세대에 제한하고 미혼 한부모 가구에는 적용하지 않

28) 일본 「10代親の子育て・就学・就業に関する総合的・地域支援開発-日韓の質的縦断調査から」 「研究代表者：東洋大学社会学部教授森田明美」 연구보고서(2016). 4-14. 내용을 정리함.

호주 Families Australia 홈페이지

<https://familiesaustralia.org.au/policies-submissions/current-policy-areas/building-stronger-australian-families/families-in-australia/>

며, 일부 지자체에서 독자적으로 미혼 한부모세대의 세금공제와 보육료 절감을 실행하고 있다(稅制뉴스, 2018. 05. 18.)²⁹⁾. 그러나, 최근 저출산 해결을 위한 사회적, 국가적 노력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청소년기의 임신과 청소년기 부모 또한 양육의 주체로 인식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森田明美, 2016: 7).

반면 호주에서는, 가족관계가 한국에 비해 다양하게 정의된다. 2014년 호주 통계청에 의하면 가족은 “15세 이상이 2명 또는 그 이상의 사람으로 구성되어진 집단으로서, 혈연, 결혼(법적으로 등록된 결혼이나 동거), 입양, 재혼의 형태로 같은 가정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집단으로, 가족은 커플 관계, 한부모-자녀 관계(혈연 관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음)로 형성된다. 따라서, 가구는 하나 이상의 가족을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³⁰⁾. 이에 따르면, 한부모 가족은 법적인 부부관계와 사실혼 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어서 미혼, 기혼만으로는 한부모 가족의 형태를 파악하기 어려우며, 15세 이상의 사람이 아동과 함께 살고 있는 가족(혈연, 비혈연 포함)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한부모 가족을 지원함에 있어서도 독자적인 지원 체계가 아닌 가족 지원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고 있어, 임신·양육지원은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재가 부모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³¹⁾.

이렇듯 우리나라와 비슷한 가족관계와 미혼모 개념을 가지고 있는 일본과 다양한 문화와 가족개념 속에서 법적 혼인신고를 통한 기혼, 미혼모의 개념을 뚜렷이 구분 두지 않고 자녀를 양육하는 호주사회에서도 기본적으로 재가에서 자녀양육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른 시점을 가진 이 두 나라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에

29) 일본 稅制뉴스「どうなる!? 未婚のひとり親世帯への寡婦控除」

<https://nichizei-journal.com/zeimu/%E3%81%A9%E3%81%86%E3%81%AA%E3%82%8B%E3%80%80%E6%9C%AA%E5%A9%9A%E3%81%AE%E3%81%B2%E3%81%A8%E3%82%8A%E8%A6%AA%E4%B8%96%E5%B8%AF%E3%81%B8%E3%81%AE%E5%AF%A1%E5%A9%A6%E6%8E%A7%E9%99%A4/>

30) 호주 통계청 홈페이지,

1286.0 - Family, Household and Income Unit Variables, 2014 <http://www.abs.gov.au/ausstats/abs@.nsf/Lookup/by%20Subject/1286.0~2014~Main%20Features~Underlying%20Concepts~11>, 2018. 10. 01. 인출.

31) 호주 복지부의 사회보장 프로그램(Centre link) 참고함.

①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parenting-payment, <https://www.humanservices.gov.au/individuals/services/centrelink/parenting-payment>, 2018. 10. 22. 인출

②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Family Tax Benefit, <https://www.humanservices.gov.au/individuals/services/centrelink/family-tax-benefit>, 2018. 10. 22. 인출.

서 결혼을 기반하지 않은 다른 형태의 가족을 향한 편견 해결을 위한 방향성 제시와 시설거주 미혼모 중심의 한국 미혼모 정책을 좀 더 포괄적으로 인식하여 재가에서 본인의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지원 제도 확장과 변화를 위한 가능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1) 일본의 한부모(미혼모)지원 사례

후생노동성에서 실시하는 「2017년 전국 한부모세대 조사결과보고서」³²⁾에 따르면 모자세대는 “부(父)가 없는 미혼의 만20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정”, 부자세대는 “모(母)가 없는 미혼의 만20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정”으로 정의하고 있다(후생노동성, 2017: 3). 한부모가 된 이유로는 크게 사별과 생별(이혼·미혼·그 외 유기, 행방불명)로 구분, 미혼모는 한부모라는 큰 범주 안에서 분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후생노동성, 2017: 3).

가) 일본사회의 한부모 현황

2016년 추계된 모자가정은 123.2만 세대, 부자가정은 18.7만 세대이다(후생노동성, 2017: 4). 한부모가 된 이유로는 사별은 모자가정보다 부자가정이 높으며 생별은 모자, 부자가정보다 이혼이 가장 높은 이유이다(후생노동성, 2017: 4). 또한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모 세대는 8.7%로 부자세대 0.5%보다 확연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모자세대 전체에서 미혼모세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높지 않으나 이전의 2006년 6.7%, 2011년 7.8%, 2016년 8.7%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알 수 있다(후생노동성, 2017: 4). 취업형태로는 모자세대는 정규직·종업원(44.2%)과 파트타임·아르바이트(43.8%)가 비슷한 비율로 부자세대의 정규직·종업원(68.2%)에 비해 노동형태가 안정되지 않은 것을 이해할 수 있다(후생노동성, 2017: 12-13).

앞서 언급한 듯 아직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미혼세대에 대한 사회적 수용은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있어 한부모세대의 소득세 공제 등 지원혜택에 미

32) 厚生労働省 (2017), 일본 전국 한부모세대 조사 결과 보고
<https://www.mhlw.go.jp/file/06-Seisakujouhou-11920000-Kodomokateikyoku/0000190327.pdf>
2018. 10. 15. 인출.

혼 한부모세대는 제외되는 등 지원제도에 대한 정책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미혼모가정의 아동이 자신의 부에게 인지 될 경우 아동부양수당을 받지 못하는 법시행령에 관련하여 「인지의 유무에 차별을 두는 것은 헌법위반」이라는 인지된 양육 미혼모의 아동부양수당 청구 행정소송이 1990년대 제기되었다(히가시노 미츠나리(東野充成), 2016: 7). 이에 1998년 일본 정부는 미혼모 가정의 아동이 자신의 부에게 인지되어도 아동부양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³³⁾(히가시노 미츠나리(東野充成), 2016: 8). 이 배경에는 일본 국가가 아동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1994년)으로 인하여 미혼모 가정의 아동의 권리보장, 즉 태어나는 아동이 자신의 부모를 알 권리와 빈곤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 일본 사회에서 아동권리 시점에서도 미혼모지원의 중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했다(아동인권연합(子どもの人権連), 1999: 260). 오사카시(大阪市)에서도 2003년 「아동의 시점」에서 한부모 가정의 아동 복지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였다³⁴⁾(칸바라 후미코(神原文子), 2010: 244-249). 그 결과 한부모 가정의 아동들의 낮은 학력이 직접적으로 취직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중졸(고교중퇴)의 취업률이 만 17세 44%, 만 18세 46%, 고졸의 취업률 55%, 대졸 75%로 취업률이 높지 않았다(神原文子, 2010: 245). 또한 취직하지 않은 아동의 보호자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빈곤의 재생산」이 예상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학교에서의 상담, 사회복지사 배치, 아동의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경제적·인적 지원, 아동학력보장을 위한 효과적 방법, 진로지도 등이 요구되며 무엇보다 아동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지원정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사스가 토모코(流石智子), 2016: 237-255). 이렇듯 일본에서는 한부모지원을 중심으로 미혼모 지원이 전개되고 있으나 최근 증가하는 미혼모세대의 지원을 위한 제도 변화와 한부모지원에서도 경제적 지원과 함께 자자체를 중심으로 아동의 권리의 시점에서 아동 빈곤의 세습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전개되고 있다.

33) 東野充成(2016). 「児童扶養手当政策における母子家庭の差別化」 『九州工業大学研究報告. 人文・社会科学』九州工業大学大学院工学研究院, 64, 1-10.

34) 神原文子(2010). 『子づれシングル』明石書店, 244-249.

나) 일본의 한부모 지원정책 현황³⁵⁾

일본의 한부모 지원은 아동수당 등 보편적 양육지원과 함께 아동부양수당을 중심으로 한 한부모 가족과 아동을 위한 지원이 실시되고 있다.

2002년에 「모자 및 과부 복지법」이 개정되어 모자가정자립지원시책은 국가가 작성한 「모자가정 및 과부의 생활 안정과 향상을 위한 기본방침」과 도도부현이 책정한 「모자과정 및 과부의 생활안정과 향상을 위한 조치에 관련한 계획」에 근거하여 실시되었다(森田明美, 2018: 98). 모리타 아케미(森田明美)는 첫째, 「모자가정」이라는 규정이 「모자가정 및 부자가정」(제6조 4항)으로 변경되어, 모자가정만이 아닌 모든 한부모 가정이 지원 대상으로 포함되었다. 둘째, 모자가정지원은 아동부양수당을 중심으로 한 복지적 지원에서 취업자립지원으로 지원방법이 크게 변화한 시기이며, 아동부양수당을 단계적으로 삭감하여 5년 간 수급 후 반액 이하로 하는 재검토와 생활보호제도에서 모자가산을 폐지하고, 취업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촉진할 수 있도록 방향성이 한층 강화되어 「양육과 생활 지원책」, 「취업지원책」, 「양육비의 확보」, 「경제적 지원책」의 4개 주축으로 이루어진 모자자립지원시책이 실시된 일본의 한부모지원의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하였다(森田明美, 2018: 90). 그 결과 보육소 우선이용, 헬퍼 파견 등에 의한 양육지원 모자가정 등의 취업·자립지원센터사업의 추진과 자립지원프로그램의 책정, 취업훈련, 헤어진 부모의 양육책임의 명확화, 아동부양수당의 소득으로 헤어진 부모의 양육비를 소득으로 가산하는 것과 양육비를 확보하기 위한 지원, 아동부양수당의 감액 등이 실행되었다(森田明美, 2018: 90).

다)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재가 부모 지원: 동경도 세타가야구를 중심으로³⁶⁾

2013년부터 일본 동양대학 복지사회개발연구센터는 「지역에서 생활하는 모자가정을 빈곤으로부터 자립을 위한 생활보호와 아동양육지원의 연계에 관한 연구」를 위해 세타가야구와 공동연구를 실시해왔다. 이는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제2차 연구로, 제1차 연구는 치바현 야치오시를 거점으로 함께 한부모와 아동이 직접

35) 森田明美(2018). 「第5章 ひとり親家庭の生活支援を考える」, 『生活変動と社会福祉』, 放送大学教育振興会, 78 - 100을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함.

36) 東洋大学福祉社会開発研究センター(2018). 当事者主体の相談支援: 世田谷区における母子家庭支援研究 報告書, 東洋大学福祉社会開発センター子どもユニット, pp. 6-9. 를 참고하여 재작성함.

참가 자신의 상황을 정리, 과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지원자와 함께 개발해왔다(동양대학복지사회개발연구센터, 2018: 1-2). 제2기에서는 세타가야구의 생활지원과가 함께 당사자의 생각을 공유하고 이해 할 수 있는 모자지원코디네이터 배치 및 체크리스트 개발을 목적으로 하였다(동양대학복지사회개발연구센터, 2018: 1-2) (표 II-4-2 참고).

■ 표 II-4-2 ■ 동경세타가야구 한부모지원을 위한 체크리스트 내용

체크 리스트 종류	구체적 내용
셀프체크리스트	아이가 속한 사회와의 관계를 알아 보기위한 7세 이상의 초등학교 자녀를 가진 부모 대상: 아이와 자신, 친척, 학교, 친구관계 등 에 관련해 기입하면서 자신과 아이의 관계 이해, 양육 상담 통해 스스로 문제 해결책을 찾아가는 방법
현재 고민과 일 다음목표를 위한 시트(sheet)	현재의 고민과 목표를 기입: 이 시트를 이용 몇 번 상담을 하다 보면 스스로 당사자 스스로 알아가는 방법
지금의 상황을 알 수 있는 시트(sheet)	자신과 관련 있는 어린이집, 부모님, 형제 친구 등을 기입: 본인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스스로 인식, 변화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방법

자료: 東洋大学福祉社会開発研究センター (2018) 当事者主体の相談支援: 世田谷区における母子家庭支援研究報告書, 東洋大学福祉社会開発センター子どもユニット, pp. 6-9. 를 참고하여 재작성함.

이 방법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모자가정뿐 아니라 세타가야구에 있는 모자 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도 실시하여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자신을 파악하고 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모자지원 코디네이터는 「파워관계」가 없는 관계성을 형성하여 당사자와 같이 생각하고 당사자의 생각과 행정직원과의 연결까지 지원에 연결하는 작업을 목적으로 지원을 실시해왔다(동양대학복지사회개발연구센터, 2018: 8). 이 공동연구의 책임자인 동양대학 복지사회개발연구센터장 모리타 아케미(森田明美)교수는 한부모지원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당사자주체의 지원과 방법 모색」으로 모자가정은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있으며 이에 빈곤, 권리, 사회보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횡단적으로 힘을 합쳐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새로운 지원론을 만들어왔다고 이 프로그램을 정의하였다(동양대학 복지사회개발연구센터, 2018: 58-59). 즉, 가정의 형태보다 양육을 하고 있는 가정을 이해하고 아동의 권리의 시점에서 지원과 당사자 주체 지원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다양한 환경의 가족지원에 필요한 요소임을 이해할 수 있다.

2) 호주사회의 한부모 지원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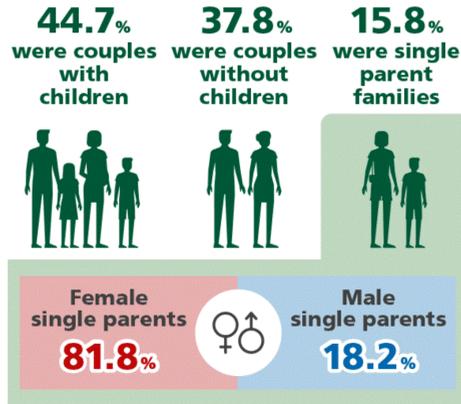
호주사회에서는 가족의 정의가 다양화 되고 있으며 한부모 가족관계 인식도 우리나라처럼 사별, 이혼, 미혼 등으로 구분하기보다는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의 상황과 양육자의 수에 중심을 두고 지원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가) 호주사회의 다양한 가족형태 현황

2016년 호주 통계청은 호주 전역의 가족을 610만으로 집계하였다³⁷⁾. 이 중 44.7%는 부부와 아이들, 37.8%가 아이가 없는 부부, 15.8%가 한부모 가족이었다. 또한, 한부모 가족의 81.8%는 모자녀가족이며, 18.2%가 부자녀가족으로 나타났다(그림 II-4-1 참조). 부부와 아이로 구성된 가족이 가장 일반적인 가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나, 1991년 54%였던 것에 비해 감소하였으며, 아이가 없는 부부와 한부모가족 역시 1991년 각각 32%, 13%였던 것에 비해서 증가하였다³⁸⁾. 또한, 2012-2013년 실시된 조사에 의하면 8백9십만 세대 중, 64%는 결혼 상태로 나타났는데, 그 중 52%는 법적 등록된 결혼, 12%는 동거혼이었다³⁹⁾. 35세 이상의 법적등록 결혼의 경우 2006-2007년 조사의 75%에서 2012-2013년에는 69%로 감소, 또한 결혼 전 파트너와 함께 동거한 후 결혼을 선택한 비율은 2006-2007년 39%로 나타난 것에 비해 2012-2013년에는 46%로 증가하여 호주사회가 결혼 형식에서 자유로워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⁴⁰⁾.

37), 38) 호주 통계청 홈페이지,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Census of Population and Housing: Reflecting Australia - Stories from the Census, 2016, [39\), 40\) Families Australia 홈페이지 <https://familiesaustralia.org.au/policies-submissions/current-policy-areas/building-stronger-australian-families/families-in-australia/>, 2018. 10. 18. 인출.](http://www.abs.gov.au/ausstats/abs@.nsf/Lookup/by%20Subject/2071.0~2016~Main%20Features~Snapshot%20of%20Australia,%202016~2, 2018. 10. 18. 인출.</p></div><div data-bbox=)

Ⅱ 그림 II-4-1 Ⅱ 호주의 가족 현황



자료: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Census of Population and Housing: Reflecting Australia – Stories from the Census, [이처럼 호주사회에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가족형태가 한국보다 다양하며, 한국의 가족형태 기준으로 기혼, 미혼을 명확히 정의하는 것이 어렵다.](http://www.abs.gov.au/ausstats/abs@.nsf/Lookup/by%20Subject/2071.0~2016-Main%20Features~Snapshot%20of%20Australia,%202016-2, 2018. 10. 18. 인출.</p>
</div>
<div data-bbox=)

나) 호주의 한부모 지원정책 현황⁴¹⁾

부모양육수당이 부모나 보호자의 소득과 환경에 따라 아동양육비를 지급하는 경제적 지원수단이다. 아동의 주 양육자(부모, 조부, 양육 보호자)에게 지급되며, 지급 요건은, 1) 한부모로 8세 미만의 자녀를 최소 한 명 이상 양육하는 경우, 2) 배우자가 있고 6세 미만의 자녀를 최소 한 명 이상 양육하는 경우, 3) 본인과 배우자(해당 경우)의 소득과 자산이 특정 금액 이하인 경우, 4)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5) 그 외에 필요에 따라 자격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경우로 분류하고 있다. 구체적 지급 금액은 한부모는 768.50AU\$, 배우자가족 496.70AU\$, 그리고 배우자가 있으나 병 등의 이유 혹은 일시적으로 별거하고 있는 경우 595.10AU\$를 2주에 한번 복지사무소로부터 지급 받는다⁴²⁾. 또한, 최연소 자녀가 6세 이

41) 호주 복지부 홈페이지,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parenting-payment, <https://www.humanservices.gov.au/individuals/services/centrelink/parenting-payment>, 2018. 10. 18. 인출.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음.

42) ① 지급 금액은 매년 3월 20일, 9월 20일 갱신됨. 본문의 금액은 2018. 9. 20 기준임.

② 호주 복지부 홈페이지,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Parenting Payment, How much you can get,

상인 한부모의 경우에는 직업계획을 세우고, 고용 서비스 담당자를 만나는 등 상호의무요건을 충족하여야 수급을 유지할 수 있다⁴³⁾.

표 II-4-3 호주의 한부모 지원

구분		내용
가족지원수당 ¹⁾	PART A	1) 0~15세 아동, 2) 16~19세 아동 중 정규 교육/ 트레이닝을 받거나 면제 승인 받은 경우 자녀 각각에 대해서 지급
	PART B	1) 13세 이하 피부양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에게 지급 2) 한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양육자가 16세 이하, 정규 교육을 받는 16~18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에게 지급
건강지원 카드 (Health Care Card) ²⁾		저렴한 의료 서비스, 교육 및 교통수단 혜택 등
거주지 보조비 지급 ³⁾		아동 수에 따라 다른 금액의 지원금을 2주마다 지급

자료: 1) 호주 복지부 홈페이지,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Family Tax Benefit, <https://www.humanservices.gov.au/individuals/services/centrelink/family-tax-benefit>, 2018. 10. 22. 인출.
2) 호주 복지부 홈페이지,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Health Care Card, What the benefits are, <https://www.humanservices.gov.au/individuals/services/centrelink/health-care-card/who-can-get-card/what-benefits-are>, 2018. 10. 22. 인출.
3) 호주 복지부 홈페이지,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Rent Assistance, Who can get it, <https://www.humanservices.gov.au/individuals/services/centrelink/rent-assistance/eligibility-payment-rates/who-can-get-it>, 2018. 10. 22. 인출.

다) 호주의 청소년 한부모 지원제도

호주에서는 청소년 부모를 대상으로 한 문제점과 지원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2017년 국가 아동위원회에서 청소년 부모의 지원 및 초기 개입 서비스를 아동의 권리의 시점에서 분석을 목적으로 실시한 십대부모연구 결과 보고서를 통해 호주사회에서 청소년 부모들이 경험하는 편견과 문제점 그리고 경제적 빈곤 등의 심각성을 이해할 수 있다(Australian Human Rights Commission, 2017: 1-4).

이 내용에 따르면, 2015년 15-19세 여성 1000명 중 11.9명이 십대에 출산을 경험하였으며, 이는 호주전체 출산 인구 중 2.8%이다(Australian Human Rights Commission, 2017: 3). 십대에 임신한 여성은 사회경제적 상황이 낮을수록

<https://www.humanservices.gov.au/individuals/services/centrelink/parenting-payment/how-much-you-can-get>, 2018. 10. 22. 인출.

43) 호주 복지부 홈페이지,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Mutual obligation requirements, <https://www.humanservices.gov.au/individuals/enablers/mutual-obligation-requirements/29751>, 2018. 10. 15. 인출

더 많으며, 원주민과 시골에서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난다(Australian Human Rights Commission, 2017: 3). 또한 십대 미혼모(single mom)는 전체 십대 미혼모(single mom) 중 1%이지만 양육수당 수령자는 전체 싱글맘 중 3%로 나타나, 경제적 독립이 어려움을 알 수 있다(Australian Human Rights Commission, 2017: 4). 또한, 많은 십대 부모들이 편견으로 인해서 학교, 가정, 친구, 공동체 안에서 사회적 수치심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Australian Human Rights Commission, 2017: 12).

Heidi Hoffmann와 Sergi Vidal(2017: 34-35)은 이런 십대 부모에게는 임신과 출산 직후의 초기 개입이 효과적이며, 십대 부모가 집중적 지원과 상담, 자립교육 등을 통해 교육적 성공을 얻을 수 있으며, 그들이 직면한 문제 중심으로 한 지원프로그램이 높은 효율성과 관련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 부모의 지원 시스템을 호주 Wyoong지역의 통합적 청소년 부모지원 모델인 Young Parents' Hub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Young Parents' Hub는 청소년 부모 중심 지원기관으로 양육 청소년 부모 교육⁴⁴⁾, 자립을 위한 취업⁴⁵⁾, 상담⁴⁶⁾, 놀이방⁴⁷⁾ 등 한곳에서 원스톱(One-Stop) 지원 받을 수 있는 지역거점 기관이다. 많은 민간교육, 사회복지 기관과 공적인 서비스가 연계되어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재단 St. Philip's Christian College와 연계하여 통합적 학업이 중심적인 지원 프로그램으로 NES(A NSW Education standards Authority)코스인 중 3과정부터 고 3과정까지 지원하여 필요하면 HSC의 교육과 요리, 생활습관 등 기본적인 부모교육도 실시하고 있다⁴⁸⁾. 이는 한부모에 국한되지 않고, 청소년 부모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청소년 부모의 자립과 양육지원에 민간과 공적 지원이 협력한 이용자 중심의 지원체계이다.

44) YoungParents'Hub 홈페이지, Education Services, DALE Young Parents' School
<https://www.youngparentshub.com/dale-young-parents-school>, 2018 10. 15. 인출

45) YoungParents'Hub 홈페이지, Pathways Courses,
<https://www.youngparentshub.com/pathways-1/>, 2018 10. 15. 인출

46) YoungParents'Hub 홈페이지, Referral Services,
<https://www.youngparentshub.com/referral-services-1/>, 2018 10. 15. 인출

47) YoungParents'Hub 홈페이지, Early Learning Education,
<https://www.youngparentshub.com/early-learning-education/>, 2018 10. 15. 인출

48) YoungParents'Hub 홈페이지, Education Services,
<https://www.youngparentshub.com/education-1/>, 2018 10. 15. 인출

5 미혼모·부 관련 선행연구

미혼모 가정은 부의 부재로 자녀양육에 있어 양부모 가정과 다른 애로사항과 법적 특수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선행연구를 통하여 미혼모 가구의 자녀 관련 요인 및 법적 이슈, 지원체계 관련의 선행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미혼모 관련 연구는 정책연구기관 및 학계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미혼모 관련한 주제 요인에 따라 여성학, 아동학, 가족학, 법학, 간호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심을 갖고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 연구기관에서 수행된 연구로는 2012, 2013년에 거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협동으로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를 2012년, 2013년 2년에 걸쳐 진행하였고, 그 외에도 미혼부 법적 책임관련, 학생미혼모의 학습권 보장 등 주요 주제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표 II-5-1 미혼모 관련 정책연구 연구내용 정리

구분	연구 방법	연구대상	연구내용						
			학업 및 자립	피임 및 성교육	양육 입양 선택	양육 실태	거주 및 시설	심적 요인	미혼 부와 관계
정해숙 외 (2014) ⁷⁾	설문	- 미혼모 위탁형 대안교육기관 대상							
	면담	- 심대 미혼모 29명, 미혼모 학업지원 업무 담당자 20명	●						
김지연 외 (2013) ²⁾	설문	- 양육 또는 임신 중 청소년 한부모(24세 이하) 378명 - 일반 청소년 6,543명 및 학부모 510명 인식조사	●	●	●	●			
	면담	- 청소년 한부모 중 미혼모 15명(양육, 입양 포함), 미혼부 5명							
백혜정 외 (2012) ⁵⁾	설문	- 낙태, 입양, 출산 경험 청소년(24세이하) 미혼모 465명	●	●		●	●		
	면담	- 시설 및 재가 청소년 한부모 35명, 청소년 미혼모 어머니 2명							

구분	연구 방법	연구대상	연구내용							
			학업 및 자립	피임 및 성교육	양육 및 양육 선택	양육 실태	거주 및 시설	심적 요인	미혼 부와 관계	
김은지 외 (2012) ¹⁾	설문	- 임신, 낙태, 출산, 입양 및 양육을 경험한 24세 이하 청소년 457명	●	●	●				●	●
	면담	- 청소년미혼모 12명, 청소년 남성 5명								
서해정 외 (2010) ⁶⁾	설문	- 경기도 양육 미혼모·부 327가족		●	●			●		
	면담	- 시설거주 및 재가 양육미혼모 7명								
김혜영 외 (2010) ⁴⁾	설문	- 시설, 재가 포함 미혼모 727명	●			●				●
	면담	- 영유아, 취학아동 가진 미혼모 4명씩 8명								
김혜영 외 (2009) ³⁾	설문	- 시설, 재가 포함 미혼모 571명		●	●	●	●	●	●	●
	면담	- 미혼모 45명, 미혼부 5명								

자료: 1) 김은지·김동식·최인희·선보영·황경란·이재연(2012).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 I: 청소년한부모의 발생과정에 따른 예방 및 지원정책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pp. 31-37.
 2) 김지연·황여정·이준일·방은령·강현철·곽종민·박민영(2013).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II: 청소년 한부모 유형 및 생활주기별 대응방안.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pp. 69-71, 143-145, 244-248.
 3) 김혜영·선보영·김은영·정재훈(2009). 미혼부모의 사회통합방안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pp. 13-17.
 4) 김혜영·이미정·이택면·김은지·선보영·장연진(2010). 미혼모의 양육 및 자립실태조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pp. 11-12.
 5) 백혜정·김지연·김혜영·방은령·김현주(2012).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 I: 총괄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pp. 11-12, 95.
 6) 서해정·안태윤·이현주(2010). 경기도 미혼모·부자가족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경기: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pp. 7-9, 93-95.
 7) 정해숙·최윤정·최자은(2014). 학생 미혼모 학습권 보장 방안.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pp. 9-12.

가. 미혼모 가구의 자녀양육 관련 요인

미혼모 가정의 양육에 대한 연구물에서는 미혼모의 우울 및 양육스트레스, 삶의 행복도 등에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보았다. 백혜정·김지연(2013)은 시설거주 및 재가 청소년미혼모 254명을 대상으로 미혼모의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청소년 한부모의 출산 당시 환경의 열악성이 출산 후 우울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양육태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백혜정·김지연, 2013: 105-106). 환경의 열악성은 출산 시 조산여부, 출산 후 정기산후검진, 산후조리 정도, 신체 및 정신적 후유증 정도를 측정하였고(백혜정·김지연, 2013: 100), 이

러한 조건이 좋지 않을수록 우울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백혜정·김지연, 2013: 109). 또 다른 우울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주관적 건강인식, 사회적 지지가 있는데, 건강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일수록, 타인 및 가족으로부터의 지지가 낮을수록 미혼모의 우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박화옥, 2017: 154).

이경숙·노정숙·김수진(2017)에서는 비록 샘플수의 한계가 있었지만 미혼모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의 우울, 상태불안, 양육스트레스를 살펴보았으나, 해당 변인들에 대해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영아와의 상호작용 시에는 미혼모가 영아에게 통제행동, 침해 행동을 더 많이 하고, 체념, 무력감, 걱정 등을 더 많이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이경숙 외, 2017: 474-481).

안재진·김지혜(2006)는 14-39세의 시설거주 미혼모를 대상으로 양육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는데, 미혼모의 연령, 원가족과의 관계, 미혼부와의 관계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안재진·김지혜, 2006: 617-619). 구체적으로는 미혼모의 연령과 미혼부의 지지가 높을수록 양육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았고, 직업이 있으면서 가족과 함께 사는 미혼모일수록 양육을 선택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안재진·김지혜, 2006: 617-619). 조지용(2016)은 입양을 결정하였다가 양육을 재결정한 미혼모를 대상으로 자녀양육 경험에 대한 질적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뜻하지 않은 임신으로 생활과 감정의 큰 변화를 겪고, 미혼부의 책임회피, 원가족과의 소원한 관계로 어려움을 겪으며, 자녀양육시 겪게 될 사회적 비난, 경제적 어려움 등을 예상하여 입양을 결정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가족들의 태도변화, 자식에 대한 모성애 등을 이유로 양육을 재결정하였다(조지용, 2016: 234-235). 이러한 과정에는 사회 활동 참여 등으로 자신감 회복하고 미혼부에 대한 감정을 정리하는 등의 심리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조지용, 2016: 234-235).

또한 양육을 선택한 미혼모와 입양을 선택한 미혼모의 특성을 비교한 연구에서는 양육을 선택한 미혼모의 경우 임신인지가 빠르고, 미혼모의 연령이 높으며,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 정서적지지 및 복지서비스 경험이 높았다(이은주·최규련, 2014: 254-258). 최승희(2008)는 우울과 비슷한 부정적 심리적 상태로 미혼모에 슬픔, 좌절, 대처능력 등에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는데, 친구의 지지가 낮을수록, 자존감이 낮을수록 좌절이 높았으며, 미혼부의 입양 압력이 높을수록 대처

에 어려움이 있었다(최승희, 2008: 216). 미혼부의 변심이나 입양결정에 대한 압력이 미혼모의 심리적인 상태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미혼부와외의 관계 및 결정이 미혼모에게 큰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최승희, 2008: 217-218).

또한 미혼모가 양육을 하면서 겪는 차별경험에 대한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미혼모가 양육결정으로 원가족으로부터 단절을 경험하고, 임신, 출산으로 기존직장을 그만두거나 구직활동에서 차별을 경험, 취업의 장벽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였다(김희주·권중희·최형숙, 2012: 135-136). 또한 미혼모라는 사실을 안 후 지인들이 떠난 경험, 그로 인한 자녀에 대한 차별에 대한 우려 등으로 미혼모는 초등자녀 입학 이후 미혼모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다른 학부모와의 거리를 두고, 이로 인해 주변사람들과의 관계에 제약을 받는 어려움이 나타났다(김희주 외, 2012: 140).

나. 미혼모·부 가족의 법적 이슈

이충은(2017)은 한부모가족 실태 및 정책 현황을 분석하고 외국의 지원정책과 비교법적 분석을 하였다. 국내의 한부모가족 지원은 주로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대상자에게 집중되어 있고, 현실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금액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설운영과 관련하여 지역 간 지원규모가 달라 입소자간 형평성 문제,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 및 학업 지원의 부족, 소득보장과 양육 병행의 어려움 등을 문제로 들고 있다(이충은, 2017: 141). 이에 따라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한 역량 강화 방안 마련, 최저보장수준 이하가 아니더라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를 포괄하는 지원 대상의 확대, 한부모 복지자금 대출기준 완화, 한부모가족 지원 기관의 전문성 확보 등을 제시하고 있다(이충은, 2017: 148-149).

1)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지급

민법 제974조에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생계를 같이하는 기타 친족 간에는 서로 부양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부모의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에 대해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양육비 지급의무의 법적 근거에 대한 학설이 나뉘고 있

다(이미정 외, 2011: 45-47). 민법 제913조를 법적 근거로 보는 설은 양육비 지급 의무가 친권자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보호·교양의 권리의무 중 경제적 급부의무에 포함된다고 본다(이미정 외, 2011: 46). 이에 따르면 친권자가 아닌 자는 양육비 지급 의무가 없다는 한계가 있다(이미정 외, 2011: 46). 두 번째 설은 양육비 지급 의무가 제974조 직계혈족 간 부양의무에 근거한다고 보는 설로, 친권의 유무와 관계없이 양육비 지급의무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지만, 일반 친족 간의 부양의무이므로, 부양의 정도에 한계가 있다(이미정 외, 2011: 46). 마지막으로 부모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의무는 친자관계에 근거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존속하는 것으로 특별한 명문의 근거가 필요하지 않는다는 설이 있다(이미정 외, 2011: 46) 이에 따르면 부모는 자녀가 태어난 때부터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며, 자녀는 출생 시부터 부모에게 부양청구권을 갖는다(김상용, 2011: 207; 이미정 외, 2011: 46에서 재인용). 따라서 비양육 부모에 대한 양육비 청구권은 부양청구권이며, 양육부모의 양육비 지급 청구는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자녀를 대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이미정 외, 2011: 46-47).

미혼모 중에는 자녀의 부가 양육비 지급으로 인해 친권을 획득하는 것을 우려하여 양육비 청구를 꺼리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판례는 ‘아빠 또는 엄마와 미성년 자녀 사이의 친밀도’를 고려하며,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동안 자녀를 누가 양육했는지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이미정 외, 2011: 56). 또한 미혼모가 미혼부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고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판례는 미혼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서울가정법원 2011.6.22. 선고 2009드합13538 판결). 이는 인지청구권이 본인의 일신 전속권이며 포기할 수 없는 권리이기 때문에, 양육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에도 불구하고 그 각서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서울가정법원 2011.6.22. 선고 2009드합13538 판결). 또한, 민법 제860조에 따르면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에는 그 인지로 인한 효력이 출생 시로 소급하므로, 부는 자녀의 출생 이후부터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과거의 양육비 청구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과거의 양육비 청구는 모가 자식을 부양할 고유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부에게 청구하지 못한다는 입장이었으나(대법원 1967. 5. 8. 선고 79므66므40판결; 대법원 1976. 6. 22. 선고 75므17, 18판결; 대법원1985. 6. 11. 선고 84다카1536판결), 대법원 1994. 5. 13. 92

스21 전원합의체 결정에 의해서 인지 이전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해졌다(이미정 외, 2011: 64).

2) 낙태법 및 출생신고 관련

신옥주(2016)는 미혼모가 낙태와 출산, 양육과 입양 사이에서의 갈등(임신·출산갈등)의 가장 큰 원인을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차별로 두고 이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을 위한 법제 개선 필요성을 서술하였다. 임신과 낙태에서의 갈등에 있어서 낙태금지와 관련하여 태아의 생명권을 우월적 기본권으로 보아 모의 재생산권인 아기를 낳지 않을 권리가 지나치게 제한되고 있다고 보고 두 기본권 간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신옥주, 2016: 238). 이에 따라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 낙태정당화사유의 확장 혹은 독일과 같은 임신 12주 내의 상담조건부 낙태를 허용을 제안하고 있다(신옥주, 2016: 238-239). 또한 미혼모의 아동양육에 있어서 경제적 궁핍과 사회적 편견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하면서, 입양 결정 전 1주일의 숙려기간에 미혼모에게 비용을 지급하며, 아동복지시설의 아동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기초수급자로 지정되어 생계비를 받는 점, 양육 미혼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미혼모의 소득수준에 따르지만, 입양가정에게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입양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정부가 미혼모의 양육보다 입양기관 및 입양아동에 대해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있어 입양을 촉진시키는 것처럼 보인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신옥주, 2016: 243).

소라미(2016: 6-7)에서는 아동인권의 관점에서 출생신고제도의 문제점을 바라보면서 미혼부에 의한 출생신고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다. 현행법상 혼외자에 대한 출생신고의무자는 ‘모’이며, ‘부’가 혼외자를 단독으로 출생신고 하는 경우 인지의 효력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 제2항). 그러나 인지신고를 위해서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동법 제55조 제1항 제3조) 모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 출생신고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소라미, 2016: 6-7). 이에 모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으나(동법 제57조 제2항), 이에 대한 판례가 갈려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소라미, 2016: 7)⁴⁹⁾. 이에 대해서는 2017. 9. 18. 김수민의원 대표발의로 전부 또

는 일부를 알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부가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석이 가능하도록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상태이다⁵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은 이외에도 정춘숙의원 대표 발의로 2017. 6. 23.에 발의한 개정안도 계류 중이다. 이는 출생신고 기재사항 중 자녀의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별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다양한 가족 형태가 존재하는 현재 사회에서 혼인 중 출생자와 혼외자를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으로 제안이유를 서술하고 있다⁵¹⁾.

3) 미성년 미혼모·부의 성년의제 및 친권⁵²⁾

우리 민법 제826조의2는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 혼인연령인 만 18세가 된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 혼인이 가능하며, 혼인 시 성년으로 의제되어 독립성을 가지게 된다(민법 제807조, 제808조). 이는 혼인한 미성년자가 행위무능력자인 경우 여러 법적 거래관계에 혼란이 생기기 때문이며, 독자적인 혼인생활 및 자녀에 대해 친권을 행사하도록 함이다(조은희, 2018: 8). 미성년 미혼모의 경우에도 독자적인 법률행위가 불가하여 오는 생활에서의 어려움, 자녀에 대한 친권 행사 등을 이유로 성년의제에 대한 필요성이 존재한다(조은희, 2018: 3).

조은희(2018)는 이에 대해서 프랑스와 독일의 예를 들어서 비교법적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성년의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는데 이는 혼인의 여부

49) 의정부지방법원 2015. 12. 10자 2015호기298,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12. 29.자 결정 2015호기291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에 따르면 친모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경우는 동법 제57조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나, 의정부지방법원 2016. 1. 20.자 2015브60 결정에서는 친모의 일부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제2항의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였다.

50) 의안정보시스템, [2009459]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의원 등 12인)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P1T7M0B9Q1Q8Q1L4Q4I3A2P7P1M2O5&ageFrom=20&ageTo=20, 2018. 02. 27 인출.

51) 의안정보시스템, [200756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2인)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H1U7B0S6Z2O3B1B7M1S1M2L9C7D6L9&ageFrom=20&ageTo=20, 2018. 02. 27 인출.

52) 조은희(2018). 미성년 미혼모의 권리보호를 위한 소고: 미성년 미혼모의 성년의제와 친권 및 양육권을 중심으로. (편), 미혼모 법적 지위 개선을 위한 민법 개정 토론회 자료집. (pp. 3-24). 김상희 국회의원실·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와 행위능력의 유무는 본질적으로 다른 기준에 의한 것이며, 혼인 여부에 따라 성년의제를 하지 않는 것이 미성년자의 권익 보호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조은희, 2018: 11). 프랑스의 경우 미성년자도 만 16세에 달한 때에는 친권으로부터 해제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부모 중 일방, 부모 쌍방의 청구와 미성년자 본인의 의견을 청취하여 후견법관이 선고한다(프랑스 민법 제477조). 조은희(2018)는 독일의 경우와 같이 미성년 미혼모·부에게 성년의제를 부여할 경우 미성년자의 이익을 위해 성년의제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도 부모의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어서 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현행 민법은 미성년 미혼모·부의 행위능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에 따라 미성년 미혼모의 자에 대한 친권은 미성년자의 부모가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민법 제910조). 이 경우 미혼모·부의 부모와 미혼모·부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특히, 조부모가 입양을 원하고, 미성년 미혼모·부가 입양을 원하지 않는 경우 미성년 미혼모·부의 의사가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조은희, 2018: 15). 또한 미성년 미혼모·부의 경우 원가족과 단절 등으로 인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조부모의 친권행사는 미성년 미혼모·부의 자녀의 권리행사에 있어서 긍정적이지 못하다(조은희, 2018: 15).

조은희(2018: 17)는 위와 같은 문제를 지적하면서 미성년 미혼모·부의 친권이 조부모에게 있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고, 미성년 부모에 대한 친권 규정을 신설할 것과, 가정법원이 미성년 미혼모·부에 대해서 민법 제928조 미성년후견제도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 제928조에는 미성년 미혼모·부의 후견개시를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문 시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조은희, 2018: 20).

4) 자녀의 성 결정의 문제

민법 제781조는 부성주의원칙을 채택하고 있어, 자녀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며,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 한하여 모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항). 또한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협의할 수 없거나 이루어지

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5항). 이에 따라 통상적으로 부성주의원칙이 적용되어 인지된 자녀에게는 부의 성이 적용되며 예외적으로 합의한 경우에만 종전의 성을 사용하고 있다(신옥주, 2018: 32). 우리나라와 달리 독일의 경우 부의 인지를 위해서는 모의 동의가 필요하며, 인지 후에도 원칙적으로 모의 성을 유지한다(신옥주, 2018: 29).

신옥주(2018: 32)는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민법 제781조 제5항을 개정하여 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원칙적으로 종전의 성을 사용하며, 부모의 합의에 따라 부의 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방안, 제1항의 단서에 혼인신고 시 외에 혼인의 출생자의 인지시를 추가하는 방안, 제1항을 개정하여 자녀의 성을 부모가 합의하여 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인지의 경우 독일과 같이 인지 시 모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신옥주, 2018: 32).

다. 미혼모 지원전달체계 관련

미혼모 지원전달체계 관련 연구들은 정책의 전달자의 입장에서 또는 정책수요자의 입장에서의 어려움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김희주, 2015; 성정현 외, 2016)와 지원전달체계의 문제와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연구(성정현·김지혜·신옥주, 2015; 이용우, 2017; 홍봉선·남미애, 2011)들이 이루어졌다.

먼저, 지원전달체계와 관련하여 미혼모 대상 심층면담을 통해 도출된 어려움은 다음의 몇 가지로 수렴된다. 무엇보다 큰 어려움은 미혼모들에게 정책을 제공하는 의료진, 주민센터 공무원, 자녀의 보육교사를 포함하는 사회로부터의 편견, 차별의 경험이다. 둘째, 미혼모 관련 정책에 대한 전달체계 담당자의 정책파악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셋째, 필요한 정보의 부족과 어디서 얻어야 하는지 접근이 어렵다는 것이다. 넷째, 개인정보 보호가 무시되는 경우를 경험한다. 다섯째, 신청절차와 방법이 쉽지 않고,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많다. 이렇듯 많은 연구에서 수렴되는 어려움은 미혼모 지원 개선방안을 어느 부분에서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해 시사점을 제공한다.

미혼모 지원전달체계에 대한 연구(김은지 외, 2013; 성정현·김지혜·신옥주, 2015; 홍봉선·남미애, 2011)들은 최근 청소년학, 사회복지 및 행정학적 측면에서 지원시스템의 개선, 체계구축 등에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김은지 외(2013)는

청소년 한부모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사회 지원체계모형 개발을 위해 공공전달체계로의 구청과 주민센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상담기관을 포함하는 기타서비스 기관으로 지원체계를 구분하여 그 이용현황과 연계에 대해 청소년 미혼 한부모 대상 설문조사와 면담을 실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공공전달체계 내 전담팀 또는 전담인력 배치, 미혼모 온라인 상담 창구 설치,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기능강화 및 연계네트워크 활성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정보제공 및 연계 기능강화,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와의 연계 등을 제시하였다. 성경현 외(2015)는 미혼모 관련 법제도 및 서비스 현황 파악, 미혼모 대상 심층면담을 통해 미혼모 임신출산위기지원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연구는 ‘임신출산위기지원콜센터’ 설립, 미혼모 통합사례관리 시스템 정비, 기존 거점기관의 기능과 역할의 확대, 미혼모 지원시스템에 대한 홍보 다양화 등을 지원체계 개선방안으로 제안하였다. 청소년양육미혼모의 지원을 생태체계적 입장에서 정리하고 개선안을 찾으려는 노력(홍봉선·남미애, 2011)도 시도되었다. 청소년양육미혼모가 처한 환경을 문화, 규범 가치 등의 거시체계, 관련 지원 정책의 방향성 및 서비스 프로그램 등의 외체계, 학교와 교사와의 관계 및 지역사회의 지지 등의 중간체계, 미혼모의 원가족 및 아기 아버지 등을 미시체계로 구체화하여 각 환경 체계에서의 지원 강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는 미혼모와 그 자녀를 둘러싼 환경을 종합적으로 조망 가능하게 하여 관련된 전체 지원을 구조화하고 다양한 지원의 중복과 사각지대를 검토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료된다.

자녀의 양육을 선택하는 미혼모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는 연구들(박영숙, 2008; 이용우, 2017)도 보고되었다. 박영숙(2008: 18-19, 24-25)은 양육 의지를 지닌 미혼모도 경제적 자립이 어려우면 포기하게 됨에 주목하며 미혼모의 자립을 돕기 위해 가정위탁과 연계한 서비스의 제공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자녀의 양육을 선택하는 미혼모가 증가와 미혼모의 인구사회적 특성이 과거에 비해 향상되는 지원정책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문제제기(이용우, 2017: 102)도 이루어졌다. 이용우(2017)는 한국 사회에서 이루어진 미혼모 지원 정책을 검토하고, 200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입양이 아닌 자녀양육지원으로 정책 기조가 변화하였다고 하였다. 하지만, 그 지원의 수준은 크게 변화하지 않아, 미혼모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에 미혼모의 생애 전반을 고려한 맞춤형 지

원을 위한 민간NGO 단체와의 협력을 제안하기도 하였다(이용우, 2017: 112).

라. 국외 정책 사례

미혼모부 가정을 지원하는 정책에 대한 국가 비교 연구들은 미혼모부 가정의 법적 기초에 대한 연구와 관련 정책에 대한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미혼모 관련 인권 및 법제 관련 연구(신옥주, 2016; 조은희, 2011)들이 이루어졌다. 조은희(2011)의 연구에서는 미혼모의 법적 지위를 논의하면서 혼인, 가족, 미혼모 가족 범주를 정의하고, 미혼모 가족 현황, 법적 기초에 대해 분석하였다. 인지청구권, 자의 성, 친권, 양육권, 부양청구권, 면접교섭권 등 구체적인 미혼모 법적 지원 관련 사항에 대해 독일의 제도를 비교 제시하며 개선방안을 구체화하였다. 현행 민법이 혼중자와 혼외자를 차별하지는 않지만 이들이 처한 특수 상황을 고려하여 미혼모와 그 자를 위한 법제도적 보완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신옥주(2016)는 미혼모를 위한 법적 토대가 공고하게 구축되어 있는 독일의 사례를 통해 그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미혼모가 처하게 되는 갈등 현실을 임신출산 단계, 양육 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하면서 그 지원법제의 부족한 부분을 도출하였다. 독일 관련법과 국내 관련법의 비교검토를 통해 베이비박스 설치용인, 가족관계법상 가족관계증명서 제도개선, 낙태처벌법 강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한부모 가족의 양육비 이행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에 대한 국가 간 비교 연구(김은지, 2013)도 수행되었다. OECD 주요국가의 자료를 토대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체계를 이행확보 지원기구와 선지급 수당도입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OECD 주요 국가들은 이 두 가지 제도를 도입한 경우가 많았으나, 그 제도의 추진 양상은 국가가 지닌 복지정책의 추진 방향성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연구는 각국 제도의 비교를 토대로 한국에서의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기구 설치와 선지급수당의 도입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청소년 한부모, 미혼가족에 초점을 둔 국가 간 비교연구들(남부현, 2010; 신윤정·이상림·김윤희, 2012)도 수행되었다. 청소년 한부모가족을 지원하기위한 종합연구 중 그 지원정책에 대한 국가 비교연구(신윤정 외, 2012)에서는 OECD 국가 자료 분석과 관련 논문 등의 문헌분석을 통해, 유럽국가의 복지국가 유형을 구분 제시하고, 그 유형별 국가들

의 청소년 한부모 정책 추진 내용을 고찰하였다. 연구는 그 사회 구성원들이 동의하는 가치에 준하여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정책이 수립됨에 따라 청소년 한부모 문제를 대하는 정책에서도 국가 간 차이로 표출됨을 보여주었다. 또한 한부모 정책은 경제적 가족지원과 근로활성화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강조하였고, 청소년 한부모정책은 출산 이전의 임신과 출산예방책과 한부모가 된 후 지원정책으로 접근되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미국의 십대 미혼모를 위한 사회복지체계와 서비스에 초점을 둔 연구(남부현, 2010)는 학교를 중퇴하고 직업을 갖지 못해 빈곤에 처하기 쉬운 미혼모에 대한 다양한 미국 내 지원제도를 소개하였다. 대안학교 차원에서의 십대 미혼모를 위한 교육, 직업훈련, 부모교육 프로그램과 자원봉사자의 참여가 활성화된 가족지원 서비스 프로그램도 안내하였다. 이를 토대로 사회복지, 가족정책 수준에서 미혼십대에 대한 정책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미혼모 복지정책을 중심으로 영국과 한국의 정책을 비교한 연구(전재희, 2017)도 수행되었다. 연구에서는 미혼모에 대한 복지정책을 상담 및 프로젝트 지원 정책, 교육 및 훈련 지원서비스, 각종 급여 및 수당지원 정책, 취업지원 정책, 주거 지원 정책, 의료지원 정책이라는 틀로 범주화하고 영국과 한국의 관련제도를 비교하였다.

III

미혼모 자녀 양육 및 자립실태

1. 응답자 특성
2. 자녀 돌봄 및 양육 특성
3. 취업 및 자립 관련 특성
4. 임신·출산기 경험
5. 정책 지원 경험 및 요구
6. 소결



Ⅲ. 미혼모 자녀 양육 및 자립실태

본 연구에서는 미혼모의 자녀 양육 현황과 겪고 있는 어려움 등 지원요구를 살펴보기 위해 시설인 아닌 재가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재가 양육 미혼모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대상은 출산 당시와 현재 미혼인 상태로 영아, 유아, 초등학생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미혼모로 정하였다. 본 설문조사는 온라인 설문 설계 및 오류 수정 과정을 거쳐 8월 6일부터 8월 31일까지 4주간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은 변화된 미래를 만들어가는 미혼모 협회 인트리, 미혼모협회 I'm MoM, 한국미혼모가족협회,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회원대상 및 17개 미혼모거점기관 담당자를 통한 설문조사에 대한 조사협조를 통해 이루어졌다. 본 장에서는 자녀양육 어려움과 지원 현황 및 요구 등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1 응답자 특성

가. 응답자 학력 및 취업 상태

1) 학력 및 취업여부

응답자의 최종 학력을 자세히 살펴보면 <표 III-1-1>와 같다. 고등학교 졸업이 46.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학교 졸업이 27.0%, 대학교 재학 또는 휴학이 14.0%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8.4%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보였다. 전 연령에서 고등학교 졸업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연령이 어릴수록 학력이 낮은 경향성이 나타났다. 만 24세 이하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이 57.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학교 재학 또는 휴학이 19.1%, 고등학교 중퇴 또는 재학이

14.9% 순으로 나타났다. 만 25~29세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이 53.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학교 졸업이 24.4%, 대학교 재학 또는 휴학이 14.1% 순이었다. 만 30~39세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이 39.2%, 대학교 졸업이 32.3%, 대학교 재학 또는 휴학이 14.6% 순으로 나타났다. 만 40세 이상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이 44.4%, 대학교 졸업이 40.0% 대학교 재학 또는 휴학이 6.7% 순서를 보였다. 또한, 학력이 높아질수록 ‘취업중’, ‘구직중’인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성을 보였다.

|| 표 III-1-1 || 최종 학력

단위: %(명)

구분	중학교 졸업 이하	고등학교 중퇴 또는 재학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재학 또는 휴학	대학교 졸업	대학원 재학 이상	계(수)
전체	4.3	7.3	46.7	14.0	27.0	0.7	100.0 (300)
어머니 연령							
만 24세 이하	4.3	14.9	57.4	19.1	4.3	0.0	100.0 (47)
만 25~29세	5.1	2.6	53.8	14.1	24.4	0.0	100.0 (78)
만 30~39세	3.8	9.2	39.2	14.6	32.3	0.8	100.0 (130)
만 40세 이상	4.4	2.2	44.4	6.7	40.0	2.2	100.0 (45)
$X^2(df)$			30.652(15)**				
취업 및 학업 상태							
취업중	1.4	1.4	41.9	16.2	37.8	1.4	100.0 (74)
구직중	4.3	8.6	50.0	7.1	28.6	1.4	100.0 (70)
학업중	1.6	4.8	33.9	33.9	25.8	0.0	100.0 (62)
전업주부	8.5	12.8	56.4	4.3	18.1	0.0	100.0 (94)
$X^2(df)$			53.760(15)***				

주: 미혼모 양육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임신 시 학력을 살펴보면, 고등학교 졸업이 48.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학교 졸업 이상이 26.7%의 순서로 나타났다. 83.6%의 비율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었으며, 16.4%이 고등학교 재학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 당시 중학교 중퇴나 고등학교 중퇴인 경우도 10.0% 정도로 나타났다.

|| 표 III-1-2 || 임신 시 학력

단위: %(명)

구분	중학교 재학 중	중학교 중퇴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재학중	고등학교 중퇴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재학 중	대학교 졸업 이상	계(수)
전체	0.7	2.3	2.7	3.0	7.7	48.2	8.7	26.7	100.0 (300)

구분	중학교 재학 중	중학교 중퇴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재학중	고등학교 중퇴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재학 중	대학교 졸업 이상	계(수)
어머니 연령									
만 24세 이하	4.3	0.0	6.4	14.9	19.1	40.4	10.6	4.3	100.0 (47)
만 25~29세	0.0	3.8	3.8	2.6	5.1	55.1	14.1	15.4	100.0 (78)
만 30~39세	0.0	1.5	1.5	0.0	7.7	46.9	6.9	35.4	100.0 (130)
만 40세 이상	0.0	4.4	0.0	0.0	0.0	48.9	2.2	44.4	100.0 (45)
$X^2(df)$				86.656(21)***					
취업 및 학업 상태									
취업중	0.0	0.0	4.1	0.0	4.1	47.3	5.4	39.2	100.0 (74)
구직중	1.4	1.4	2.9	4.3	5.7	47.1	10.0	27.1	100.0 (70)
학업중	1.6	1.6	0.0	4.8	6.5	43.5	16.1	25.8	100.0 (62)
전업주부	0.0	5.3	3.2	3.2	12.8	53.2	5.3	17.0	100.0 (94)
$X^2(df)$				33.484(21)*					

주: 미혼모 양육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임신 당시 취업 상태를 살펴보면 취업 중이었던 경우가 58.2%로 가장 높았으며, 무직이 27.8%, 취업준비 및 구직 중인 경우가 14.1%로 나타났다. 임신 시 학력이 높을수록 임신 당시 취업하고 있는 비율이 높은 경향성을 보였으며, 임신 당시 대졸 이상인 경우 취업률이 63.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졸인 경우 무직이 62.5%로 가장 많았다.

▮ 표 III-1-3 ▮ 임신 당시 취업상태

단위: %(명)

구분	취업 중	취업준비 및 구직 중	무직	계(수)
전체	58.2	14.1	27.8	100.0 (263)
취업 및 학업 상태				
취업중	67.1	7.1	25.7	100.0 (70)
구직중	62.7	22.0	15.3	100.0 (59)
학업중	52.1	18.8	29.2	100.0 (48)
전업주부	51.2	11.6	37.2	100.0 (86)
$X^2(df)$		14.599(6)*		
임신 시 학력				
중학교 중퇴	57.1	14.3	28.6	100.0 (7)
중학교 졸업	37.5	0.0	62.5	100.0 (8)
고등학교 중퇴	39.1	13.0	47.8	100.0 (23)
고등학교 졸업	59.3	17.2	23.4	100.0 (145)
대학교 졸업 이상	63.7	10.0	26.2	100.0 (80)
$X^2(df)$		13.458(8)*		

주: 미혼모 양육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임신 당시 취업 중이었던 응답자를 대상으로 임신으로 인해서 퇴직을 경험했는지에 대해서 물어본 결과 81.7%가 임신으로 인한 퇴직하였다고 응답하였고, 학력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를 통해서 미혼모가 임신 시 취업 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운 것을 알 수 있다.

표 III-1-4 임신으로 인한 퇴직 여부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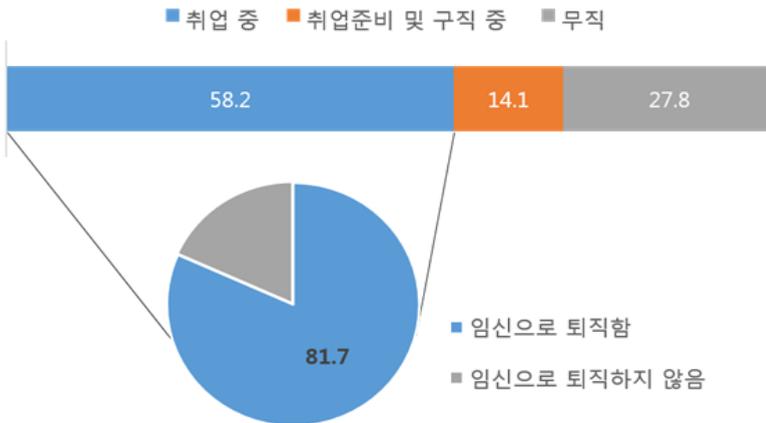
구분	그렇다	아니다	계(수)
전체	81.7	18.3	100.0 (153)
임신 시 학력			
중학교 중퇴	100.0	0.0	100.0 (7)
중학교 졸업	66.7	33.3	100.0 (8)
고등학교 중퇴	88.9	11.1	100.0 (23)
고등학교 졸업	80.2	19.8	100.0 (145)
대학교 졸업 이상	82.4	17.6	100.0 (80)
$\chi^2(df)$	1.799(4)		

주: 미혼모 양육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III-1-1 임신 당시 취업상태 및 임신으로 인한 퇴직

단위: %



임신 시 학업 중이었던 응답자를 대상으로 임신으로 인해서 자퇴를 하거나 휴학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물었을 때, 59.5%의 응답자가 임신으로 인해서 자

퇴 혹은 휴학을 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대학교 재학 중인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학력 수준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중학교의 경우 의무교육임에도 불구하고 50.0%가 자퇴 또는 휴학을 경험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표 III-1-5 임신으로 인한 자퇴 또는 휴학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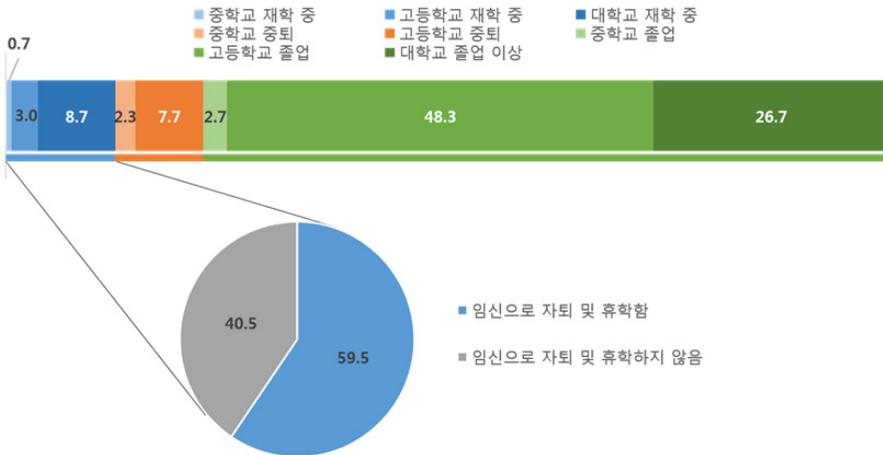
구분	단위: %(명)		
	그렇다	아니다	계(수)
전체	59.5	40.5	100.0 (37)
임신 시 학력			
중학교 재학 중	50.0	50.0	100.0 (2)
고등학교 재학 중	33.3	66.7	100.0 (9)
대학교 재학 중	69.2	30.8	100.0 (26)
$\chi^2 (df)$	3.653(2)		

주: 미혼모 양육자원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III-1-2 임신 당시 학업상태 및 임신으로 인한 자퇴 및 휴학

단위: %



다음으로는 응답자의 임신 시 학력과 현재의 학력을 비교해서 살펴보았다. 임신 시 중학교 재학 중이었던 경우에는 고등학교 중퇴 혹은 재학이 100.0%로 나타났으나, 임신 시 중학교 중퇴였던 경우에는 85.7%가 중졸 이하, 14.3%가 고졸로 나타나 중학교 중퇴의 학력에서 크게 학력 수준이 나아지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임신 시 중졸 이었던 미혼모는 62.5%가 중졸 이하, 고등학교 중퇴 및 재학이 12.5%, 고졸인 경우 25.0%로 나타났다. 임신 시 고등학교 재학 중이었던 경우에는 55.6%가 고졸, 대학 재학 및 휴학이 33.3%, 대졸이 11.1%로 나타났으며, 고등학교 중퇴나 휴학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임신 시 고등학교 중퇴였던 경우는 60.9%가 고등학교 중퇴로 남았으며 13.0%가 대학 재학 및 휴학이 13.0%, 대졸이 4.3%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졸업의 경우 83.4%가 고졸, 대학 재학 및 휴학이 12.4%, 대졸이 1.4%로 대부분 고졸의 학력에 머무른 것을 알 수 있다. 대학교 재학 중인 경우는 53.8%가 대학 재학 및 휴학, 26.9%가 대졸로 나타났으며 19.2%의 경우 고졸로 나타났다. 대학교 졸업 이상의 경우 87.5%가 대졸, 1.2%가 대학원 재학 이상의 학력으로 나타났다.

일부 응답 오류로 인해서 임신 시 학력이 최종 학력보다 낮게 응답한 경우가 있으나, 임신 시 학력과 현재 학력을 비교하여 보면 전반적으로 임신 시 학력과 비교해서 현재 학력이 크게 학력이 상승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중학교 재학 및 고등학교 재학 중 임신한 경우에는 100.0% 해당 학교급을 졸업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학교 중퇴, 고등학교 중퇴의 경우에는 학력 수준이 중졸이하와 고등학교 중퇴 및 재학에 머무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미성년 미혼모가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과 학교 밖 미혼모가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 표 III-1-6 || 임신 시 학력 X 현재 학력

단위: %(명)

임신 시 학력	최종 학력						계(수)
	중졸이하	고등학교 중퇴 및 재학	고졸	대학 재학 및 휴학	대졸	대학원 재학 이상	
중학교 재학 중	0.0	100.0	0.0	0.0	0.0	0.0	100.0(2)
중학교 중퇴	85.7	0.0	14.3	0.0	0.0	0.0	100.0(7)
중학교 졸업	62.5	12.5	25.0	0.0	0.0	0.0	100.0(8)
고등학교 재학 중	0.0	0.0	55.6	33.3	11.1	0.0	100.0(9)
고등학교 중퇴	8.7	60.9	13.0	13.0	4.3	0.0	100.0(23)
고등학교 졸업	0.0	2.1	83.4	12.4	1.4	0.7	100.0(145)
대학교 재학 중	0.0	0.0	19.2	53.8	26.9	0.0	100.0(26)
대학교 졸업 이상	0.0	2.5	3.8	5.0	87.5	1.2	100.0(80)

주: 미혼모 양육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임.

임신 시 취업 및 학업 상태와 현재의 취업 및 학업 상태를 비교해보면 임신 시 취업 중이었던 경우 30.7%가 취업 중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8.8%가 무직, 24.2%가 구직 중, 16.3%가 학업 중이었다. 임신 시 구직 중이었던 경우에는 35.1%가 구직 중, 27.0%가 무직, 24.3%가 학업 중, 13.5%가 취업 중 순으로 나타났다. 임신 시 무직이었던 경우에는 43.8%가 무직, 24.7%가 취업 중, 19.2%가 학업 중, 12.3%가 구직 중 순이었다.

▣ 표 III-1-7 ▣ 임신 시 취업 및 학업 X 현재 취업 및 학업

단위: %(명)

임신 시 취업 및 학업	현재 취업 및 학업				계(수)
	취업 중	구직 중	학업 중	무직	
취업 중	30.7	24.2	16.3	28.8	100.0(153)
구직 중	13.5	35.1	24.3	27.0	100.0(37)
학업 중	10.8	29.7	37.8	21.6	100.0(37)
무직	24.7	12.3	19.2	43.8	100.0(73)

주: 미혼모 양육자원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임.

나. 응답자 소득 및 지출 상태

응답자에게 월평균 수입을 월 평균 소득, 정부 및 보조금 지원 금액, 부모 및 친척, 형제 등으로부터 받는 용돈, 자녀의 아버지로부터 받는 양육비의 항목으로 나누어 질문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III-1-8>, [그림 III-1-3]와 같다.

월 평균 소득을 살펴보면, 월 평균 소득이 있는 경우는 35.3%, 106명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소득이 있는 경우 평균 금액은 108.2만원, 소득이 없는 경우를 포함하면 38.2만원으로 나타났다. 정부 및 보조금을 받는 경우는 전체의 80.7%, 242명으로 나타났다. 보조금을 받는 경우 평균은 62.8만원, 전체의 평균은 50.6만원으로 나타났다. 부모 및 친척, 형제 등으로부터 받는 용돈은 받는 경우는 9.0%, 27명으로 받는 경우 19.7만원, 전체의 평균은 1.8만원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아버지로부터 받는 양육비는 받는 경우가 7.3%, 22명으로 받는 경우에는 평균 33만원을 받고 있었으나, 전체의 평균으로는 2.4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III-1-8 영역별 월평균 수입

단위: %, 만원, (명)

구분	월 평균 근로소득		정부 및 보조금 지원 금액			부모 및 친척, 형제 등으로부터 받는 용돈		(자녀 아버지로부터 받는) 양육비		
	있음 (N=300)	평균 수	있음 (N=300)	평균 수	수	있음 (N=300)	평균 수	있음 (N=300)	평균 수	수
전체	35.3	108.2 (106)	80.7	62.8 (242)	9.0	19.7 (27)	7.3	33.0 (22)		
자녀구분										
영아	21.3	107.5 (33)	85.2	62.3 (132)	11.6	21.2 (18)	10.3	28.3 (16)		
유아	46.5	100.6 (33)	74.6	68.6 (53)	7.0	10.2 (5)	5.6	60.0 (4)		
초등학생	54.1	115.2 (40)	77	58.5 (57)	5.4	24.8 (4)	2.7	16.5 (2)		
F		.555(2)		.966(2)		.910(2)		3.802(2)*		
가구 구성										
본인+자녀	33.8	104.7 (69)	80.4	69.3 (164)	5.4	17.3 (11)	5.9	26.6 (12)		
본인+재닛가족 및 자인	38.5	114.9 (37)	81.2	49.1 (78)	16.7	21.4 (16)	10.4	40.6 (10)		
t		.721(1)		15.482(1)***		.329(1)		1.743(1)		
월 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19.8	40.3 (87)	82.8	60.6 (96)	6.9	6.9 (8)	7.8	20.0 (9)		
100~200만원 미만	40.2	115.0 (190)	82.0	74.3 (100)	7.4	32.4 (9)	4.9	33.3 (6)		
200만원 이상	54.8	144.4 (250)	74.2	42.3 (46)	16.1	18.5 (10)	11.3	49.29 (7)		
F		37.604***		12.128(2)***		5.928(2)**		3.212(2)		
취업 및 학업 상태										
취업중	91.9	129.3 (68)	55.4	25.7 (41)	2.7	15.0 (2)	13.5	32.5 (10)		
구직중	37.1	79.5 (26)	88.6	52.8 (62)	15.7	20.8 (11)	7.1	51.6 (5)		
학업중	9.7	77.0 (6)	90.3	78.4 (56)	11.3	28.7 (7)	3.2	35.0 (2)		
전업주부	6.4	25.3 (6)	88.3	77.9 (83)	7.4	13.3 (7)	5.3	14.4 (5)		
F		12.711(3)***		28.777(3)***		.586(3)		2.103(3)		

주: 미혼모 양육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응답자의 월 평균 지출을 월 평균 생활비, 주거/관리비, 교통/통신비, 교육보육비, 의료비, 저축보험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월 평균 생활비는 107.6만원으로 나타났다. 주거/관리비의 경우 28.5만원으로 나타났으며, 교통/통신비는 10.9만원으로 나타났다. 교육보육비는 67.0%가 지출하고 있었으며, 지출하는 경우 평균은 17.4만원, 전체 평균은 11.6만원이었다. 의료비는 지출하고 있는 경우가 64.3%로 나타났으며 지출자 평균 9.2만원, 전체 평균 5.9만원을 지출하고 있었다. 저축이나 보험으로 지출하고 있는 경우는 71.0%로 지출자 평균 20.4만원, 전체 평균 14.5만원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1-3 월 평균 소득

단위: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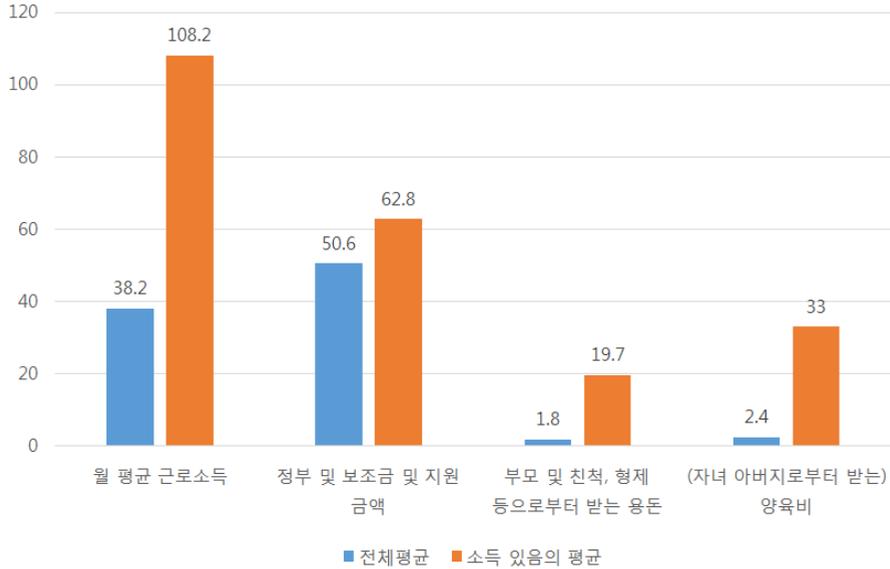


표 III-1-9 영역별 월평균 지출

단위: 만원, %, (명)

구분	월 평균 생활비	주거/관리비	교통/통신비	교육/보육비		의료비		저축보험	
	평균 (N=300)	평균 (N=300)	평균 (N=300)	있음 (N=300)	평균 수	있음 (N=300)	평균 수	있음 (N=300)	평균 수
전체	107.6	28.5	10.9	67.0	17.4 (201)	64.3	9.2 (193)	71.0	20.4 (114)
자녀구분									21.3 (49)
영아	101.0	27.0	10.1	48.4	13.6 (75)	63.0	9.8 (92)	73.5	20.3 (50)
유아	116.1	32.1	14.2	91.6	18.1 (65)	63.6	10.6 (53)	69.0	18.6 (213)
초등학생	113.3	28.1	9.5	82.4	21.3 (61)	71.8	6.33 (48)	67.5	20.4
<i>F</i>	2.0	0.9	6.8**(a)		6.833(2)***		3.026(2)*		.428(2)
가구 구성									
본인+자녀	96.6	27.1	10.8	67.7	16.1 (138)	60.8	8.8 (124)	68.7	18.9 (140)
본인+자녀+가족 및 지인	131.2	31.6	11.2	65.6	20.1 (63)	71.9	9.8 (69)	76.0	23.3 (73)
<i>t</i>	-4.0***	-1.2	-0.4		4.245(1)*		.587(1)		3.075(1)*
월 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79.7	20.9	9.1	57.7	15.3 (67)	56.9	8.0 (66)	67.2	14.9 (78)
100~200만원 미만	111.1	30.9	12.2	72.9	16.7 (89)	65.6	8.8 (80)	80.5	21.8 (86)
200만원 이상	152.9	38.0	12.0	72.6	21.8 (45)	75.8	11.4 (47)	79.0	26.8 (49)
<i>F</i>	36.9***(a)	9.4***(a)	4.4*		3.982(2)*		1.901(2)		7.97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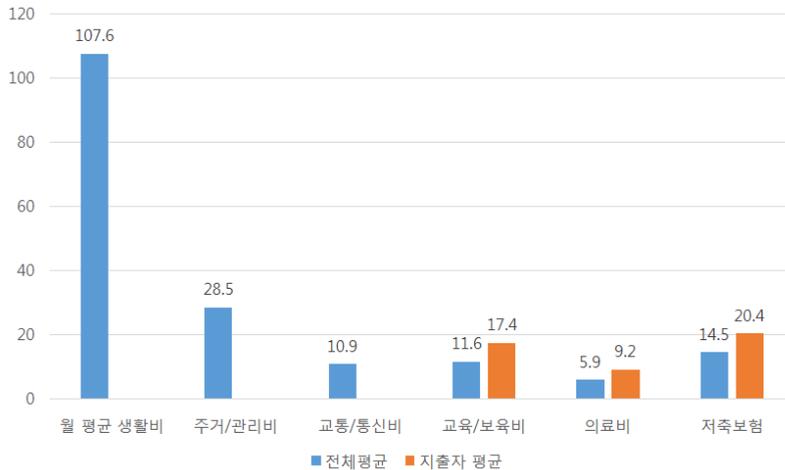
구분	월 평균 생활비	주거/관리비	교통/통신비	교육/보육비		의료비		저축보험	
	평균 (N=300)	평균 (N=300)	평균 (N=300)	있음 (N=300)	평균 수	있음 (N=300)	평균 수	있음 (N=300)	평균 수
취업 및 학업 상태									
취업중	123.3	35.9	11.9	63.0	21.2 (54)	75.7	8.7 (56)	75.6	25.3 (56)
구직중	96.8	25.0	11.0	75.7	15.6 (53)	65.7	6.6 (46)	65.7	17.4 (46)
학업중	99.3	24.0	11.7	66.2	15.4 (41)	62.9	9.5 (39)	75.8	20.2 (47)
전업주부	108.8	28.2	9.5	56.4	16.9 (53)	55.3	11.6 (52)	68.1	18.6 (64)
F	2.8*	2.9*	1.3		2.391(3)*		2.433(3)*		2.185(3)*

주: 미혼모 양육자원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III-1-4 월평균 지출

단위: 만원



응답자의 채무 상황을 살펴보면, 채무가 있는 경우가 66.3%로 나타났다. 생활비로 인해서 채무가 발생하였다는 응답은 55.3%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보증금으로 인한 채무가 17.1%, 의료비 5.0%, 보육/교육비 1.0%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로 응답한 경우에는 학자금 대출, 통신비 미납, 아이 아버지로 인한 채무, 출산 전 채무, 사기 등의 응답이 있었다. 채무 이유는 자녀의 연령에 따라서 차이를 나타냈는데 초등학교생의 경우 보육/교육비로 인한 채무 응답이 있었으며, 유아의 경우 의료비가 다른 연령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 연령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타났는데 만 24세 이하의 경우 생활비로 인한 채무가 높게 나타났으며, 어머니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의료비로 인한 채무가 증가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유의하지는 않지만 본인과 자녀와 사는 경우 보증금으로 인한 채무가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 표 III-1-10 || 채무 여부 및 이유

단위: %(명)

구분	채무 있음 (N=300)	생활비	보증금	의료비	보육/교 육비	기타	계(수)
전체	66.3	55.3	17.1	5.0	1.0	21.6	100.0 (199)
자녀구분							
영아	61.9	53.1	14.6	2.1	0.0	30.2	100.0 (96)
유아	67.6	58.3	12.5	10.4	0.0	18.8	100.0 (48)
초등학생	74.3	56.4	25.5	5.5	3.6	9.1	100.0 (55)
$\chi^2 (df)$		20.513(8)**					
어머니 연령							
만 24세 이하	42.6	75.0	5.0	0.0	0.0	20.0	100.0 (20)
만 25~29세	73.1	42.1	22.8	1.8	0.0	33.3	100.0 (57)
만 30~39세	68.5	59.6	15.7	2.2	2.2	20.2	100.0 (89)
만 40세 이상	73.3	54.5	18.2	21.2	0.0	6.1	100.0 (33)
$\chi^2 (df)$		37.099(12)***					
가구 구성							
본인+자녀	67.2	54.0	21.2	5.8	1.5	17.5	100.0 (137)
본인+자녀+가족 및 지인	64.6	58.1	8.1	3.2	0.0	30.6	100.0 (62)
$\chi^2 (df)$		9.305(4)					
취업 및 학업 상태							
취업중	74.3	58.2	20.0	5.5	0.0	16.4	100.0 (55)
구직중	61.4	58.1	20.9	0.0	0.0	20.9	100.0 (43)
학업중	67.7	57.1	14.3	7.1	0.0	21.4	100.0 (42)
전업주부	62.8	49.2	13.6	6.8	3.4	27.1	100.0 (59)
$\chi^2 (df)$		11.044(12)					

주: 미혼모 양육자원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응답자의 주거형태를 자가, 전세, 월세, 무상거주로 나누어서 물어보았을 때, 월세가 53.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세가 21.7%, 무상이 13.7%, 자가가 11.0% 순으로 나타났다. 주거형태는 거주 지역에 따라서 차이를 보였는데, 읍면 지역의 경우 자가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중소도시의 경우 전세가 높게 나타났다. 자녀구분에서도 차이를 나타냈는데, 영아의 경우 자가와 무상의 비율이 다른 연령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으며, 자녀 연령이 높아질수록 전세 비율이 증가하였다. 또한 가족구성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였는데, 본인과 자녀 둘이 사는 경우 그 외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 비해서 전세 및 월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소득에 있

어서도 2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자가의 비율이 월등이 높게 나타났으며 200만 원 미만의 경우 전세 및 월세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무상의 경우 무상으로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 물었을 때, 가족의 집, 정부지원 시설, 친구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1-11 주거형태

단위: %(명)					
구분	자가	전세	월세	무상	계(수)
전체	11.0	21.7	53.7	13.7	100.0 (300)
거주지역					
대도시	8.4	18.8	54.5	18.2	100.0 (154)
중소도시	9.3	28.0	54.2	8.4	100.0 (107)
읍면지역	25.6	15.4	48.7	10.3	100.0 (39)
$X^2(df)$		17.066(6)**			
자녀구분					
영아	16.1	20.0	46.5	17.4	100.0 (155)
유아	2.8	22.5	64.8	9.9	100.0 (71)
초등학생	8.1	24.3	58.1	9.5	100.0 (74)
$X^2(df)$		15.777(6)*			
가구 구성					
본인+자녀	4.9	27.5	57.4	10.3	100.0 (204)
본인+자녀+가족 및 지인	24.0	9.4	45.8	20.8	100.0 (96)
$X^2(df)$		38.315(3)***			
월 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4.3	23.3	56.0	16.4	100.0 (116)
100~200만원 미만	4.9	29.5	59.0	6.6	100.0 (122)
200만원 이상	35.5	3.2	38.7	22.6	100.0 (62)
$X^2(df)$		68.039(6)***			

주: 미혼모 양육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다. 양육비 지급 현황

자녀의 아버지로부터 양육비를 지급 받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지급 받은 적 없다는 응답이 82%로 주류를 이루었다. 지급받고 있다는 경우가 11.3%, 과거에 지급받았으나 현재는 받고 있지 않은 경우가 6.7%로 나타났다.

|| 표 III-1-12 || 양육비 수급 여부

단위: %(명)

구분	지금 받고 있다	과거에는 지금 받았으나 현재는 받고 있지 않다	지금 받은 적 없다	계(수)
전체	11.3	6.7	82.0	100.0 (300)

주: 미혼모 양육자원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법적으로 양육비 이행확보 절차를 진행한 경험이 있는지 질문하였다. 진행한 경험이 있다는 경우는 12.7%에 불과하고 87.3%가 경험이 없었다.

|| 표 III-1-13 || 양육비 이행확보절차 진행 경험

단위: %(명)

구분	그렇다	아니다	계(수)
전체	12.7	87.3	100.0 (300)

주: 미혼모 양육자원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만약 어떤 조건이 바뀐다면 양육비소송을 진행 할 의향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소송할 의향이 없다는 경우가 31.7%로 가장 많았고, 양육비를 받더라도 수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제도 변경하는 방안에 24.2%, 양육비 이행에 대한 법적 구속력 강화하는 방안에 21.3%, 소송절차에서 친권 및 성이 바뀌지 않도록 제도 변경에 13.8%가 동의하였다. 양육비 소송 기간 단축(4.2%), 양육비 소송 시 비용 단축(1.7%)에는 동의 정도가 극히 낮았다.

|| 표 III-1-14 || 양육비 소송 시 변경이 필요한 조건

단위: %(명)

구분	소송 의향없음	수급 미지장	법적 구속력 강화	친권 및 성 미변경	기간 단축	비용 단축	기타	계(수)
전체	31.7	24.2	21.3	13.8	4.2	1.7	3.3	100.0 (240)

주: 미혼모 양육자원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아버지가 자녀가 있음을 알고 있는 지, 자녀가 아버지에게 인지되어 있는 지를 질문하였다. 인지되어있지 않은 경우가 46.3%, 아이 아버지가 자발적으로 인지한 임의 인지의 경우가 46%로 거의 비슷한 비율로 조사되었다. 법원에 인지청구를 통해 강제 인지된 경우도 7.7%였다.



표 III-1-15 자녀 아버지의 자녀 인지 여부

구분	인지 여부			계(수)
	인지되어 있지 않음	임의 인지되어 있음	강제 인지되어 있음	
전체	46.3	46.0	7.7	100.0 (300)

주: 미혼모 양육자원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2 자녀 돌봄 및 양육 특성

가. 영유아 자녀 돌봄

1) 영유아 돌봄 유형 및 기관 이용

자녀의 양육과 관련하여 미취학 자녀를 주로 어떻게 돌보고 있는지에 대해 중 복응답으로 확인한 결과이다. 어머니가 직접 돌보고 있다는 비율이 91.6%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의 기관을 이용한다는 비율도 41.2%에 달했다. 조부모가 돌봐주는 경우가 17.7%, 아이돌보미 이용은 9.7%으로 나타났다. 자녀 연령에 따라 돌봄 유형에 특징적인 면이 나타나 영아의 경우에는 조부모 의 돌봄의 비율(21.9%)이, 유아인 경우에는 기관이용의 비율(60.6%)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동거 가족의 있는 경우 조부모 돌봄(34.6%)과 형제자매 및 친인척의 돌봄 비율(12.3%)이 높고, 월 평균가구소득이 높아지면서 기관 이용 과 조부모 돌봄의 비율이 높았다.

표 III-2-1 미취학 자녀 돌봄 유형 (복수응답)

구분	돌봄 유형								
	내가 직접 돌봄	기관 이용	조부모 돌봄	건강가 정센터 아이돌 보미	형제자 매 및 친인척	사설 학원	민간 양육도 우미	기타	(수)
전체	91.6	41.2	17.7	9.7	6.2	4.0	0.4	1.8	(226)
거주지역									
대도시	93.6	37.6	13.8	12.8	5.5	2.8	0.9	1.8	(109)
중소도시	89.2	43.4	18.1	7.2	4.8	6.0	0.0	2.4	(83)
읍면지역	91.2	47.1	29.4	5.9	11.8	2.9	0.0	0.0	(34)
자녀 연령									
영아	91.6	32.3	21.9	9.0	6.5	0.6	0.6	1.9	(155)
유아	91.5	60.6	8.5	11.3	5.6	11.3	0.0	1.4	(71)

구분	내가 직접 돌봄	기관 이용	조부모 돌봄	건강가정센터 아이돌보미	형제자매 및 친인척	사설 학원	민간 양육도우미	기타	(수)
가구 구성									
본인+자녀	93.8	40.7	8.3	13.8	2.8	4.8	0.7	2.8	(145)
본인+자녀+가족 및 지인	87.7	42.0	34.6	2.5	12.3	2.5	0.0	0.0	(81)
월 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96.6	28.4	6.8	6.8	3.4	5.7	1.1	0.0	(88)
100~200만원 미만	90.0	44.4	16.7	14.4	4.4	4.4	0.0	4.4	(90)
200만원 이상	85.4	58.3	39.6	6.3	14.6	0.0	0.0	0.0	(48)
취업 및 학업 상태									
취업중	80.4	71.7	30.4	15.2	15.2	0.0	0.0	4.3	(46)
구직중	91.5	51.1	17.0	10.6	2.1	8.5	2.1	0.0	(47)
학업중	94.3	49.1	18.9	17.0	3.8	5.7	0.0	3.8	(53)
전업주부	96.3	12.5	10.0	1.3	5.0	2.5	0.0	0.0	(80)

주: 미혼모 양육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임.

미취학 자녀가 현재 이용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 살펴보면, 응답자의 86.2%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유치원은 12.6%, 반일제 학원을 1.1%의 순서이다. 어린이집 중에서도 민간어린이집(34.5%)과 가정어린이집(27.6%)의 이용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소득에 상관없이 사립유치원의 이용정도는 매우 낮았다.

■ 표 III-2-2 ■ 미취학 자녀 이용하는 기관 유형

단위: %(명)

구분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	국공립 유치원	기타 어린이집	사립 유치원	반일제 학원	계(수)
전체	34.5	27.6	18.4	9.2	5.7	3.4	1.1	100.0 (87)
자녀 연령								
영아	34.0	42.6	17.0	0.0	4.3	2.1	0.0	100.0 (47)
유아	35.0	10.0	20.0	20.0	7.5	5.0	2.5	100.0 (40)
$\chi^2(df)$	19.899(6)**							
월 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39.1	26.1	26.1	4.3	0.0	0.0	4.3	100.0 (23)
100~200만원 미만	36.8	23.7	15.8	13.2	7.9	2.6	0.0	100.0 (38)
200만원 이상	26.9	34.6	15.4	7.7	7.7	7.7	0.0	100.0 (26)
$\chi^2(df)$	10.445(12)							

주: 미혼모 양육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임.



기관 이용 시 자녀의 등하원 시각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전체 평균을 중심으로 등원의 경우는 8시 31분~9시 사이가 40.2%로 가장 많았고, 9시 01분~9시 30분 20.7%, 8시 01~8시 30분 사이가 18.4%로 나타나 8시 01분~9시 30분 사이(79.3%)에 약 80.0%가 집중되어 있었다. 하원의 경우 17시 01분~18시 사이 31%, 16시 01분~17시 사이 25.3%로 집중되어 있다. 이를 2015년 보육실태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면 미혼모 자녀의 경우에 등원시간은 보육실태 결과 보다 다소 이르고, 하원시간은 더 늦는 경향을 보인다.

어머니가 취업 중인 경우 등원은 7시 31분부터 8시 사이에 21.2%, 8시 01분부터 8시 30분 사이 21.2%, 8시 31분부터 9시 사이 33.3%, 9시 01분부터 9시 30분 사이 21.2%로, 이 시간대에 밀집된 형태를 보인다. 하원은 17시 01분~18시 사이 33.3%, 18시 01분~19시 사이 24.2%로 집중되어있고 19시 이후도 15.2%로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미혼모 자녀가 비미혼모 자녀보다 더 오랜 시간 기관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취업 미혼모의 자녀가 가장 긴 시간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준다.

표 III-2-3 (미취학 자녀) 기관 등하원 시각

단위: %(명)

등원 시각							하원 시각						
구분	취업 중	구직 중	학업 중	전업 주부	전체	2015 전체*	구분	취업 중	구직 중	학업 중	전업 주부	전체	2015 전체*
7:30 까지	0.0	4.5	0.0	0.0	1.1	1.3	14:00 까지	3.0	0.0	0.0	0.0	1.1	1.8
7:31~ 8:00	21.2	0.0	12.5	0.0	11.5	4.3	14:01~ 15:00	0.0	0.0	12.5	25.0	5.7	8.0
8:01~ 8:30	21.2	18.2	20.8	0.0	18.4	15.0	15:01~ 16:00	9.1	13.6	12.5	37.5	13.8	37.6
8:31~ 9:00	33.3	50.0	29.2	75.0	40.2	34.7	16:01~ 17:00	15.2	31.8	33.3	25.0	25.3	31.9
9:01~ 9:30	21.2	22.7	25.0	0.0	20.7	31.3	17:01~ 18:00	33.3	36.4	29.2	12.5	31.0	12.0
9:31~ 10:00	3.0	4.5	12.5	25.0	8.0	12.4	18:01~ 19:00	24.2	9.1	8.3	0.0	13.8	5.3
10:01 이후	0.0	0.0	0.0	0.0	0.0	1.0	19:01 이후	15.2	9.1	4.2	0.0	9.2	1.7
계 (수)	100.0 (33)	100.0 (22)	100.0 (24)	100.0 (8)	100.0 (87)	100.0 (1,745)	계 (수)	100.0 (33)	100.0 (22)	100.0 (24)	100.0 (8)	100.0 (87)	100.0 (1,745)

주: 1) 미혼모 양육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임.

2)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의 '이용기관별 영유아 등·하원 시각'의 전체에 해당하는 값임.
자료: 김은설 외(2015).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 129

자녀의 등원과 하원 시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도움 없이 어머니 혼자 한다는 경우(등원 88.5%, 하원 82.8%)가 가장 많았고, 조부모, 아이돌보미의 순서로 나타났다. 미혼모 가족과 자녀이외의 동거 거주인이 있는 경우 등하원 시 조부모의 동행비율이 높았다.

■ 표 III-2-4 ■ (미취학 자녀) 등하원 동행자

단위: %(명)

구분	등원				하원				계(수)
	본인	조부모	아이 돌보미	기타	본인	조부모	아이 돌보미	기타	
전체	88.5	5.7	3.4	2.3	82.8	9.2	2.3	1.1	100.0 (87)
자녀 연령									
영아	87.2	8.5	2.1	2.1	80.9	14.9	2.1	2.1	100.0 (47)
유아	90.0	2.5	5.0	2.5	85.0	2.5	2.5	0.0	100.0 (40)
$\chi^2(df)$		1.907(3)				9.219(4)			
가구 구성									
본인+자녀	89.5	1.8	5.3	3.5	86.0	1.8	3.5	1.8	100.0 (57)
본인+자녀+가족 및 자인	86.7	13.3	0.0	0.0	76.7	23.3	0.0	0.0	100.0 (30)
$\chi^2(df)$		7.234(3)				13.843(4)**			
취업 및 학업 상태									
취업중	78.8	12.1	9.1	0.0	75.8	18.2	3.0	0.0	100.0 (33)
구직중	90.9	4.5	0.0	4.5	86.4	4.5	0.0	4.5	100.0 (22)
학업중	95.8	0.0	0.0	4.2	87.5	4.2	4.2	0.0	100.0 (24)
전업주부	100.0	0.0	0.0	0.0	87.5	0.0	0.0	0.0	100.0 (8)
$\chi^2(df)$		11.558(9)				10.486(12)			

주: 미혼모 양육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미취학 자녀를 기관을 보내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질의한 결과, ‘기관에 보내는 것이 안심이 되지 않아서(43.6%)’라고 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비용에 대한 부담(29.3%)’도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자녀연령별로 보면, 영아의 경우에 기관에 보내는 것이 안심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50.5%)이 가장 많지만, 유아의 경우에는 자부담해야하는 교육·보육비용에 대한 부담(46.4%)이 월등히 높고, 갈 수 있는 기관에 대기자가 많아서(21.4%), 기관에 보내는 것이 안심이 되지 않아서(17.9%)의 순서로 나타났다. 소득별로 살펴보면, 소득에 상관없이 비용부담이 크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기타가 13.5%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는데, 사유로는 ‘아이가 어려서’, ‘아이가 아파서’, ‘의지와 상관없이 한부모임이 드러나서’ 등의 사유가 포함되어 있었다.

표 III-2-5 미취학 자녀 기관 미이용 사유

단위: %(명)

구분	안심되지 않아서	비용 부담	대기자 많아서	가정양육 수당	입학 거부/ 차별 경험	기타	계(수)
전체	43.6	29.3	7.5	5.3	0.8	13.5	100.0 (133)
자녀 연령							
영아	50.5	24.8	3.8	6.7	0.0	14.3	100.0 (105)
유아	17.9	46.4	21.4	0.0	3.6	10.7	100.0 (28)
χ^2 (df)			23.884(5)***				
월 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46.0	33.3	4.8	3.2	1.6	11.1	100.0 (63)
100~200만원 미만	40.0	24.0	12.0	8.0	0.0	16.0	100.0 (50)
200만원 이상	45.0	30.0	5.0	5.0	0.0	15.0	100.0 (20)
χ^2 (df)			6.093(10)				
취업 및 학업 상태							
취업중	30.8	38.5	15.4	0.0	0.0	15.4	100.0 (13)
구직중	30.4	30.4	13.0	8.7	0.0	17.4	100.0 (23)
학업중	40.7	22.2	18.5	0.0	3.7	14.8	100.0 (27)
전업주부	51.4	30.0	0.0	7.1	0.0	11.4	100.0 (70)
χ^2 (df)			22.470(15)				

주: 미혼모 양육자원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미혼모 어머니들에게 이용하기 바라는, 선호하는 대한 돌봄 유형에 대해서 질 의하였다. 어머니가 직접 돌보기 희망한다는 비율이 49.6%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기관을 이용하고자 한다는 비율 20.4%, 조부모가 돌보아주기 바라는 경우 9.3%, 아이 돌보미가 돌보아주기 바라는 경우 7.5% 등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현재 주로 이용하는 돌봄 유형에 대해 중복응답으로 살펴 본 결과와 비교해 볼 때 그 선호하는 돌봄의 유형 순서가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이렇듯 미혼모 어머니의 직접 돌봄에의 요구가 높다는 결과는 미혼모 양육 지원 시 어머니의 직접 양육을 돕는 양육지원에 강조점을 두어야 함을 시사한다.

표 III-2-6 미취학 자녀-선호하는 돌봄 유형

단위: %(명)

구분	내가 직접 돌봄	기관 이용	조부모 돌봄	아이 돌보미	사설 학원	민간 양육 도우미	형제자매 및 친인척	계(수)
전체	49.6	20.4	9.3	7.5	7.1	4.4	1.8	100.0 (226)
거주지역								
대도시	45.0	22.0	10.1	9.2	7.3	5.5	0.9	100.0 (109)
중소도시	56.6	19.3	8.4	4.8	4.8	2.4	3.6	100.0 (83)

구분	내가 직접 돌봄	기관 이용	조부모 돌봄	아이 돌보미	사설 학원	민간 양육도우미	형제자매 및 친인척	계(수)
읍면지역 $\chi^2(df)$	47.1	17.6	8.8	8.8	11.8	5.9	0.0	100.0 (34)
자녀 연령								
영아	49.7	19.4	10.3	9.0	3.9	5.2	2.6	100.0 (155)
유아	49.3	22.5	7.0	4.2	14.1	2.8	0.0	100.0 (71)
$\chi^2(df)$				11.915(6)				
어머니 연령								
만 24세 이하	40.9	20.5	11.4	15.9	9.1	2.3	0.0	100.0 (44)
만 25~29세	50.7	17.9	16.4	6.0	6.0	3.0	0.0	100.0 (67)
만 30~39세	54.3	20.7	5.4	5.4	4.3	5.4	4.3	100.0 (92)
만 40세 이상	43.5	26.1	0.0	4.3	17.4	8.7	0.0	100.0 (23)
$\chi^2(df)$				27.051(18)				
가구 구성								
본인+자녀	51.7	20.0	6.9	6.2	8.3	4.8	2.1	100.0 (145)
본인+자녀+가족 및 지인	45.7	21.0	13.6	9.9	4.9	3.7	1.2	100.0 (81)
$\chi^2(df)$				5.007(6)				
월 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53.4	15.9	6.8	11.4	8.0	4.5	0.0	100.0 (88)
100~200만원 미만	50.0	22.2	10.0	3.3	6.7	3.3	4.4	100.0 (90)
200만원 이상	41.7	25.0	12.5	8.3	6.3	6.3	0.0	100.0 (48)
$\chi^2(df)$				14.230(12)				
취업 및 학업 상태								
취업중	54.3	21.7	6.5	2.2	13.0	0.0	2.2	100.0 (46)
구직중	46.8	29.8	10.6	8.5	2.1	2.1	0.0	100.0 (47)
학업중	45.3	13.2	7.5	9.4	9.4	11.3	3.8	100.0 (53)
전업주부	51.3	18.8	11.3	8.8	5.0	3.8	1.3	100.0 (80)
$\chi^2(df)$				22.674(18)				

주: 미혼모 양육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2) 영유아 대상 서비스 이용

영유아 대상 돌봄 서비스를 중심으로 서비스 인지여부, 이용여부, 이용의향,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 그 만족 정도를 살펴보았다(표 III-2-7 참조). 먼저 서비스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보면 아이돌봄서비스(93.4%), 시간제보육(86.7%), 어린이집 시간연장정보육(80.5%) 등의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가 높았다. 그에 비해 공동육아나눔터(34.1%), 유치원 방과후 과정(45.1%), 어린이집 휴일 보육(46%), 어린이집 24시간 보육(59.7%) 등에 대해서는 인지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알고 있다고 답한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이용한 경험이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이용한 비율은 어린이집 시간연장형 보육(30.8%), 시간제 보육(27.6%), 유치원 방과후 과정(20.6%)등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또한 알고 있다고 답하였으나 현재 이용경험이 없다는 어머니들에게 향후 이용할 의향을 살펴본 결과, 어린이집 시간연장형 보육(64.3%), 아이돌봄 서비스(64.0%), 유치원 방과후 과정(61.7%), 시간제보육(60.6%) 등에 대해 60.0% 이상의 응답자가 이용의사를 밝혔다.

이용 경험이 있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이용만족도를 ‘매우 만족한 경우’ 5점, ‘매우 불만족한 경우’ 1점의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공동육아나눔터(2.6점), 어린이집 24시간 보육(3.0점)등이 비교적 낮은 만족도를 보인 반면 그 외 서비스는 3.5점을 상회하는 만족 정도를 보였다.

▮ 표 III-2-7 ▮ 영유아 대상 서비스 인지 여부, 이용 여부 및 의향, 만족도

단위: %(명)/%, 점, (명)

구분	인지 여부 (N=226)		이용 여부 (인지여부 알고 있음 만 응답)		이용 의향 (현재 이용하지 않는 사람만 응답)		이용 만족도	
	알고 있음	(수)	이용 함	(수)	있음	(수)	①+② 불만족	④+⑤ 만족 평균 (수)
1) 시간제보육	86.7	(196)	27.6	(54)	60.6	(87)	13.0	59.3 3.7 (54)
2) 어린이집 시간연장형 보육	80.5	(182)	30.8	(56)	64.3	(81)	8.9	62.5 3.9 (56)
3) 어린이집 24시간 보육	59.7	(135)	3.7	(5)	24.6	(32)	40.0	40.0 3.0 (5)
4) 어린이집 휴일보육	46.0	(104)	11.5	(12)	44.6	(41)	16.7	66.7 3.9 (12)
5) 유치원 방과후 과정	45.1	(102)	20.6	(21)	61.7	(50)	4.8	47.6 3.7 (21)
6) 아이돌봄 서비스	93.4	(211)	17.1	(36)	64.0	(112)	11.1	75.0 3.9 (36)
7) 공동육아나눔터	34.1	(77)	9.1	(7)	47.1	(33)	28.6	14.3 2.6 (7)

주: 1) 미혼모 양육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임.
2) 미취학 자녀를 둔 226명을 대상으로 질문

III-2-1 영유아 대상 서비스 이용만족도

단위: 점



주: <표 III-2-7>를 그림으로 표현함.

미취학 자녀를 둔 미혼양육모를 대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를 질의하였다. 돌봄 선생님 및 다른 아이들로부터의 차별경험 때문에(15.4%), 이용가능한 시간이 없거나 시간이 짧아서(14.3%), 돌봐줄 사람이 있어서(12.6%), 돌봄의 질에 대한 불만족 때문에(10.9%), 아이가 어려 필요성을 못 느껴서(10.8%) 등 여러 가지 이유가 공존하였다.

III-2-8 (미취학 자녀) 아이돌봄 서비스 미이용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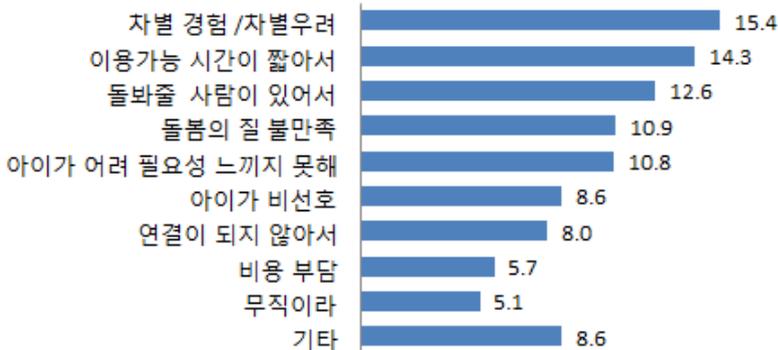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차별	짧은이용 시간	돌봄인력 있음	질 불만족	아이 어려	아이 비선호	연결 어려움	비용 부담	무직 기타	계(수)
전체	15.4	14.3	12.6	10.9	10.8	8.6	8.0	5.7	8.6	100.0(175)

주: 미혼모 양육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임.

III-2-2 (미취학 자녀) 아이돌봄 서비스 미이용 사유

단위: %



주: <표 III-2-8>를 그림으로 표현함.

3) 영유아 돌봄 공백

자녀가 성인이나 보호자 없이 혼자 있었던 경험이 있었는지에 대해 질의하였다. 전혀 없었다는 응답이 92.0%로 대다수를 차지하기는 하였으나, 그럼에도 1년에 1~2회 3.1%, 한 달에 1~2회 2.7% 등도 나타났다. 2013년 아동종합실태조사(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3: 73) 결과 중 한부모의 경우 미취학 자녀 대상 자녀 혼자 있는 시간 있다는 응답이 14.2%와 비교할 때 낮게 나타남은 영유아를 양육 중인 미혼모라는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녀의 연령별로 결과에 차이를 보여 영아에 비해 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1년에 1~2회(8.5%), 한 달에 1~2회(7.0%) 등 자녀를 혼자 두었던 경험의 비율이 높았다.

표 III-2-9 (미취학 자녀) 자녀가 집에 혼자 있었던 경험

단위: %(명)

구분	전혀 없다	1년에 1-2회	1년에 4-5회	한 달에 1-2회	한 달에 3-4회	주 2회 이상	계(수)
전체	92.0	3.1	0.9	2.7	0.4	0.9	100.0 (226)
거주지역							
대도시	91.7	2.8	0.9	2.8	0.9	0.9	100.0 (109)
중소도시	92.8	3.6	0.0	3.6	0.0	0.0	100.0 (83)
읍면지역	91.2	2.9	2.9	0.0	0.0	2.9	100.0 (34)
$\chi^2(df)$			7.113(10)				
자녀 연령							
영아	96.1	0.6	1.3	0.6	0.6	0.6	100.0 (155)
유아	83.1	8.5	0.0	7.0	0.0	1.4	100.0 (71)
$\chi^2(df)$			19.678(5)**				
가구 구성							
본인+자녀	93.1	2.1	0.7	3.4	0.7	0.0	100.0 (145)
본인+자녀+가족 및 지인	90.1	4.9	1.2	1.2	0.0	2.5	100.0 (81)
$\chi^2(df)$			6.704(5)				

주: 미혼모 양육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나. 초등학생 자녀 돌봄

1) 초등학생 돌봄 유형 및 기관 이용

초등학생 자녀를 둔 경우 방과 후에 주로 어떤 방법으로 돌봄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복수응답으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 사설학원을 이용하는 경우(44.6%), 초등학교 방과후 과정(43.2%), 어머니의 직접 돌봄(41.9%) 등이 주로 이용하는 방법

으로 나타났다.

Ⅱ 표 III-2-10 Ⅱ (초등학생 자녀) 방과 후 돌봄 유형(복수응답)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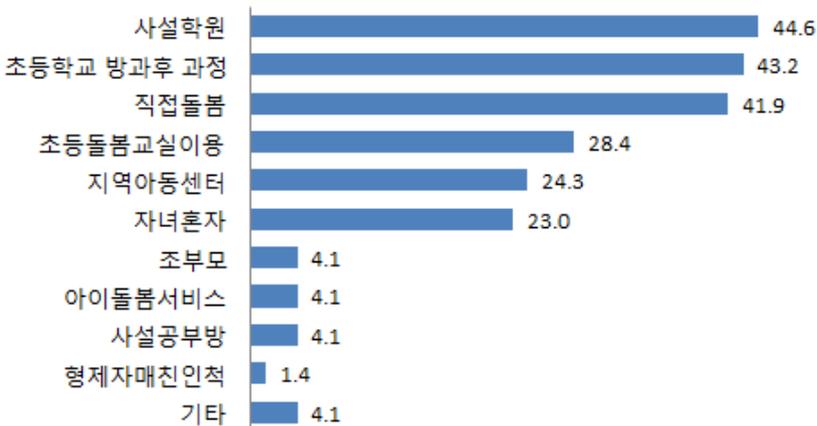
구분	사설 학원	초등 방과후 과정	직접 돌봄	초등 돌봄교실 이용	지역 아동 센터	자녀 혼자	조부모	아이 돌봄 서비스	사설 공부방	형제자매 및 친인척	기타 (수)
전체	44.6	43.2	41.9	28.4	24.3	23.0	4.1	4.1	4.1	1.4	4.1 (74)

주: 미혼모 양육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임.

현재의 상황(취업, 기관대기, 비용, 가족과의 관계)과 관계없이 초등자녀의 방과후 돌봄의 수단으로 가장 이용하고 싶은 것에 대해 1순위와 2순위로 조사하였다. 1순위와 2순위를 합산한 결과는 사설학원의 이용 55.4%로 가장 높았고, 어머니 직접 돌봄을 희망하는 비율이 43.2%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다음은 초등학교 방과후 과정 이용(29.7%), 초등 돌봄교실(21.6%), 지역아동센터(21.6%)의 순서이다. 이는 직접 돌봄에의 희망이 가장 높았던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경우와 비교할 때 초등학생 어머니들에게서는 사설학원이용에의 선호가 높음은 자녀의 학습지원에의 요구가 증가한 결과로 해석된다.

Ⅱ 그림 III-2-3 Ⅱ (초등학생 자녀) 방과 후 돌봄 유형(복수응답)

단위: %



주: <표 III-2-11>를 그림으로 표현함.

표 III-2-11 (초등학생 자녀) 선호하는 방과 후 돌봄 유형: 1+2순위

단위: %(명)

구분	직접 돌봄	초등 돌봄 교실	초등 방과 후 과정	조부 모	형제 자매 및 친 인척	아이 돌봄 서비스	민간 양육 도우미	지역 아동 센터	자녀 혼자	사설 공부방	사설 학원 이용	기타 (수)
전체	43.2	21.6	29.7	4.1	2.7	6.8	1.4	21.6	6.8	5.4	55.4	1.4 (74)
거주지역												
대도시	35.6	22.2	37.8	4.4	2.2	6.7	2.2	15.6	4.4	6.7	60.0	2.2 (45)
중소도시	45.8	25.0	12.5	4.2	4.2	4.2	0.0	37.5	12.5	4.2	50.0	0.0 (24)
읍면지역	100.0	0.0	40.0	0.0	0.0	20.0	0.0	0.0	0.0	0.0	40.0	0.0 (5)
어머니 연령												
만 24세 이하	33.3	66.7	33.3	0.0	0.0	33.3	0.0	0.0	0.0	0.0	33.3	0.0 (3)
만 25~29세	36.4	45.5	36.4	9.1	0.0	9.1	0.0	27.3	0.0	0.0	36.4	0.0 (11)
만 30~39세	44.7	13.2	28.9	2.6	2.6	2.6	2.6	26.3	10.5	5.3	57.9	2.6 (38)
만 40세 이상	45.5	18.2	27.3	4.5	4.5	9.1	0.0	13.6	4.5	9.1	63.6	0.0 (22)
가구 구성												
본인+자녀	42.4	18.6	30.5	1.7	1.7	6.8	1.7	27.1	6.8	6.8	54.2	1.7 (59)
본인+자녀+가족 및 지인	46.7	33.3	26.7	13.3	6.7	6.7	0.0	0.0	6.7	0.0	60.0	0.0 (15)
월 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32.1	28.6	39.3	0.0	0.0	3.6	3.6	25.0	7.1	7.1	53.6	0.0 (28)
100~200만원 미만	46.9	15.6	25.0	0.0	0.0	12.5	0.0	28.1	3.1	6.3	59.4	3.1 (32)
200만원 이상	57.1	21.4	21.4	21.4	14.3	0.0	0.0	0.0	14.3	0.0	50.0	0.0 (14)
취업 및 학업 상태												
취업중	60.7	7.1	25.0	3.6	3.6	7.1	3.6	17.9	10.7	0.0	60.7	0.0 (28)
구직중	26.1	43.5	21.7	4.3	4.3	8.7	0.0	30.4	0.0	13.0	47.8	0.0 (23)
학업중	44.4	33.3	22.2	0.0	0.0	11.1	0.0	11.1	11.1	0.0	66.7	0.0 (9)
전업주부	35.7	7.1	57.1	7.1	0.0	0.0	0.0	21.4	7.1	7.1	50.0	7.1 (14)

주: 미혼모 양육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임.

초등학생 자녀의 등하원 시각에 대한 조사하였다. 전체 평균을 중심으로 등원 시각은 8시 31분~9시 사이가 79.7%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8시 01~8시30분 사이가 13.5%로 나타나 8시 01분~9시 사이에 약 93%가 집중되어 있었다. 하원의 경우는 등원시간에 비해 분산된 형태를 보여 15시 01분~17시 사이 36.5%, 14시 전 24.3%, 14시 01분~15시 사이 21.6%로 나타났다.

등원과 하원시각을 중심으로 취업 미혼모의 초등 자녀와 전업주부 미혼모 초등 자녀의 결과를 비교해 보면 취업이나 학업중인 어머니의 자녀가 긴 시간 학교에 있음을 알 수 있다.

Ⅱ 표 III-2-12 Ⅱ (초등학생 자녀) 등하교 시간

단위: %(명)

등원 시간						하원 시간					
구분	취업중	구직중	학업중	전업주부	전체	구분	취업중	구직중	학업중	전업주부	전체
8:00 전	0.0	0.0	22.2	7.1	4.1	14:00 전	25.0	21.7	33.3	21.4	24.3
8:01~8:30	21.4	0.0	33.3	7.1	13.5	14:01~15:00	21.4	21.7	22.2	21.4	21.6
8:31~9:00	78.6	100.0	44.4	71.4	79.7	15:01~17:00	42.9	34.8	0.0	50.0	36.5
9:00 이후	0.0	0.0	0.0	14.3	2.7	17:01~18:00	0.0	8.7	22.2	7.1	6.8
-	-	-	-	-	-	18:00 이후	10.7	13.0	22.2	0.0	10.8
계 (수)	100.0 (28)	100.0 (23)	100.0 (9)	100.0 (14)	100.0 (74)	계 (수)	100.0 (28)	100.0 (23)	100.0 (9)	100.0 (14)	100.0 (74)

주: 미혼모 양육자원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임.

초등학생 자녀의 등하원을 도와주는 사람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등·하원 상황 모두에서 초등 자녀 혼자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등원의 경우 자녀 혼자 하는 경우 56.8%, 어머니가 함께하는 경우 35.1%로 이 두 가지 경우가 92%에 달하여 대부분을 차지한다. 하원의 경우는 자녀 혼자 67.6%, 셔틀버스 동승자 12.2%, 어머니 9.5% 등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셔틀버스의 비율이 10.0%를 상회함은 방과후 다양한 사교육 학원의 셔틀버스를 이용하기 때문으로 유추할 수 있다.

Ⅱ 표 III-2-13 Ⅱ (초등학생 자녀) 등하원 동행자

단위: %(명)

구분	등원					하원						계(수)
	자녀 혼자	본인	아이 돌보미	셔틀 동승자	기타	자녀 혼자	셔틀 동승자	본인	조부 모	아이 돌보미	기타	
전체	56.8	35.1	1.4	1.4	5.4	67.6	12.2	9.5	2.7	1.4	6.8	100.0 (74)
거주지역												
대도시	53.3	37.8	2.2	0.0	6.7	64.4	11.1	11.1	4.4	2.2	6.7	100.0 (45)
중소도시	62.5	33.3	0.0	0.0	4.2	75.0	12.5	4.2	0.0	0.0	8.3	100.0 (24)
읍면지역	60.0	20.0	0.0	20.0	0.0	60.0	20.0	20.0	0.0	0.0	0.0	100.0 (5)
$\chi^2 (df)$			15.595(8)*					4.387(10)				
가구 구성												
본인+자녀	59.3	33.9	1.7	1.7	3.4	71.2	10.2	10.2	0.0	1.7	6.8	100.0 (59)
본인+자녀+가족 및 자인	46.7	40.0	0.0	0.0	13.3	53.3	20.0	6.7	13.3	0.0	6.7	100.0 (15)
$\chi^2 (df)$			3.160(4)					9.791(5)				

구분	등원					하원					계(수)	
	자녀 혼자	본인	아이 돌보미	서툴 동승자	기타	자녀 혼자	서툴 동승자	본인	조부모	아이 돌보미		기타
취업 및 학업 상태												
취업중	50.0	42.9	3.6	0.0	3.6	75.0	7.1	10.7	3.6	3.6	0.0	100.0 (28)
구직중	56.5	43.5	0.0	0.0	0.0	60.9	17.4	8.7	4.3	0.0	8.7	100.0 (23)
학업중	77.8	0.0	0.0	11.1	11.1	66.7	22.2	0.0	0.0	0.0	11.1	100.0 (9)
전업주부	57.1	28.6	0.0	0.0	14.3	64.3	7.1	14.3	0.0	0.0	14.3	100.0 (14)
$\chi^2(df)$	18.058(12)					9.818(15)						

주: 미혼모 양육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2) 초등학생 대상 서비스 이용 및 미이용 사유

초등학생 자녀가 방과 후 이용하는 돌봄서비스 기관이나 돌봄인력에 대해 인지 여부, 이용여부, 이용의향, 이용만족도 등을 조사하였다. 인지여부를 살펴보면, 초등돌봄교실 98.6%, 초등 방과 후 과정 97.3%, 지역아동센터 89.2%, 아이돌봄 서비스 82.4%의 순서로 나타나 초등자녀의 돌봄지원 제도에 대한 어머니들의 인지도가 매우 높음을 보여준다. 알고 있다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이용여부를 질의한 결과 초등 방과 후 과정에의 이용이 84.7%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초등돌봄교실 39.7%, 지역아동센터 33.3%, 아이돌봄서비스 8.2%의 순서로 나타났다. 알고 있지만 이용하지 않는 경우 향후 이용의사를 확인한 결과에서도 초등 방과후 과정에의 이용의사가 72.7%로 가장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미혼모 자녀들의 초등학교 방과후 과정에의 선호와 의존도가 높음을 보여준다.

▣ 표 III-2-14 ▣ 초등학생 대상 서비스 인지 여부, 이용 여부 및 의향,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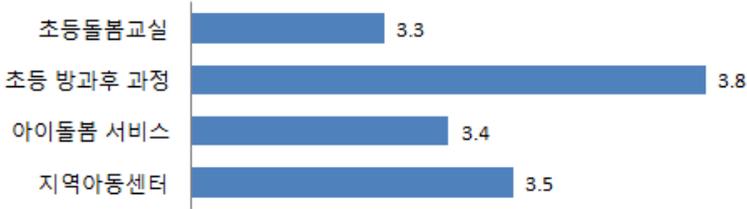
단위: %(명)/ %, 점, (명)

구분	인지 여부 (N= 74)		이용 여부 (N=알고있음 응답자)		이용 의향 (N=이용함 미응답자)		이용 만족도		
	알고 있음	(수)	이용함	(수)	있음	(수)	①+② 불만족	④+⑤ 만족	평균 (수)
1) 초등돌봄교실	98.6	(73)	39.7	(29)	56.8	(25)	24.1	41.4	3.3 (29)
2) 초등 방과후 과정	97.3	(72)	84.7	(61)	72.7	(8)	8.2	59.0	3.8 (61)
3) 아이돌봄 서비스	82.4	(61)	8.2	(5)	46.4	(26)	20.0	40.0	3.4 (5)
4) 지역아동센터	89.2	(66)	33.3	(22)	43.2	(19)	18.2	54.5	3.5 (22)

주: 미혼모 양육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임.

|| 그림 III-2-4 || 초등학교 대상 서비스 만족도

단위: 점



주: <표 III-2-14>를 그림으로 표현함.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조사하였다. 자녀가 좋아하지 않아서라는 응답(25%)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짧은 운영시간 20.5%, 고학년이라 받아주지 않아서 15.9%, 돌봄의 질에 대한 불만 때문에 13.6% 등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 표 III-2-15 || (초등학교 자녀) 초등돌봄교실 미이용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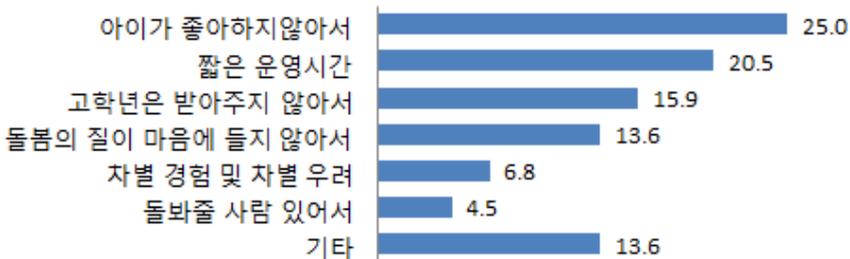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아이 비선호	짧은 운영시간	고학년 이용 불가	돌봄의 질 불만족	차별 경험 및 차별 우려	돌봐줄 사람 있어서	기타	계(수)
전체	25.0	20.5	15.9	13.6	6.8	4.5	13.6	100.0 (44)

주: 미혼모 양육자원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임.

|| 그림 III-2-5 || (초등학교 자녀) 초등돌봄교실 미이용 사유

단위: %



주: <표 III-2-15>를 그림으로 표현함.

초등 자녀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아이가 좋아하지 않아서 라는 응답이 28.6%, 돌봄의 질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23.2%, 대기가

길어서 17.9% 등이 주요 이유로 조사되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초등학생보다는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선호가 높은 서비스임을 알 수 있다.

▮ 표 III-2-16 ▮ (초등학생 자녀) 아이돌봄 서비스 미이용 사유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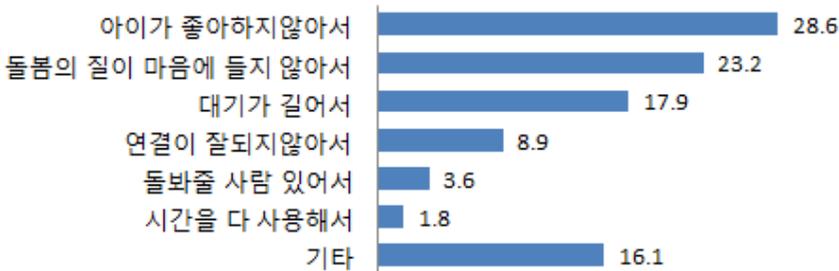
구분	아이가 좋아하지 않아서	돌봄의 질이 마음에 들지 않아	대기가 길어서	연결이 잘 되지 않아서	돌봐줄 사람 있어서	시간을 다 사용해서	기타	계(수)
전체	28.6	23.2	17.9	8.9	3.6	1.8	16.1	100.0 (56)
취업 및 학업 상태								
취업중	32.0	24.0	16.0	8.0	0.0	0.0	20.0	100.0 (25)
구직중	37.5	31.3	12.5	6.3	0.0	0.0	12.5	100.0 (16)
학업중	0.0	0.0	28.6	28.6	28.6	0.0	14.3	100.0 (7)
전업주부	25.0	25.0	25.0	0.0	0.0	12.5	12.5	100.0 (8)
$\chi^2(df)$	29.993(18)*							

주: 미혼모 양육자원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 그림 III-2-6 ▮ (초등학생 자녀) 아이돌봄 서비스 미이용 사유

단위: %



주: <표 III-2-16>를 그림으로 표현함.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동의 어려움’이 25.0%, ‘아이가 좋아하지 않아서’가 25.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취약계층이 이용한다는 이미지가 싫어서’가 22.7% 로 그 다음 높은 이유로 나타났다. 학교에서 지역아동센터까지의 이동이 초등자녀에게 어렵게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Ⅱ 표 III-2-17 Ⅱ (초등학생 자녀) 지역아동센터 미이용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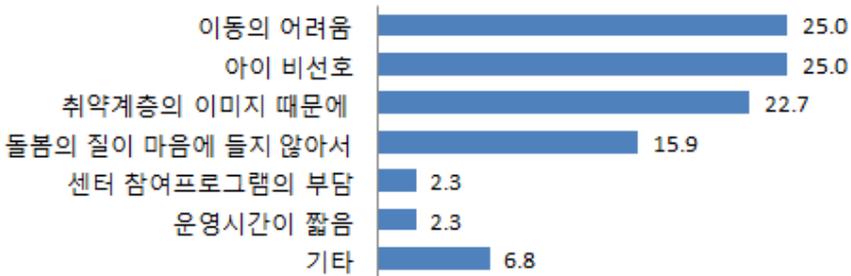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이동 어려움	아이 비선호	취약계층 이미지	돌봄의 질이 마음에 들지 않음	센터 참여 프로그램 부담	운영 시간 짧음	기타	계(수)
전체	25.0	25.0	22.7	15.9	2.3	2.3	6.8	100.0 (44)

주: 미혼모 양육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임.

Ⅱ 그림 III-2-7 Ⅱ (초등학생 자녀) 지역아동센터 미이용 사유

단위: %



주: <표 III-2-17>를 그림으로 표현함.

3) 초등학생 돌봄 공백

초등학생 자녀가 성인 보호자 없이 혼자 있었던 경험이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전혀 없다는 경우가 27%로 가장 높기는 하였으나, 그 다음은 주 2~4회가 21.6%, 한 달에 1~2회도 14.9%, 1년에 1~2회는 13.5% 등으로 영유아에 비해 월등히 혼자 지낸 경험의 비율이 높았다. 이 결과는 저학년과 고학년의 경우가 차이를 보이리라 예상된다.

2013년 아동종합실태조사(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383) 결과와 비교해 보면 혼자 있는 시간 거의 없다가 6-8세 74.7%, 9-11세 54.1%로 나타나 미혼모의 자녀가 혼자 있었던 경험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보여준다. 이는 2017년 한부모 대상 연구결과(배운진 외, 2017: 73)와 비교하였을 때, 초등대상 자녀가 혼자 있는 시간이 54.3%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미혼모 자녀의 혼자 있었던 경험의 비율은 여전히 높아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Ⅱ 표 III-2-18 Ⅱ (초등학생 자녀) 자녀가 집에 혼자 있었던 경험

단위: %(명)

구분	전혀 없다	1년에 1-2회	1년에 4-5회	한 달에 1-2회	한 달에 3-4회	주 2회-4회	주 5일 이상	계(수)
전체	27.0	13.5	6.8	14.9	9.5	21.6	6.8	100.0 (74)
가구 구성								
본인+자녀	25.4	10.2	6.8	16.9	10.2	23.7	6.8	100.0 (59)
본인+재취가족 및 지인	33.3	26.7	6.7	6.7	6.7	13.3	6.7	100.0 (15)
취업 및 학업 상태								
취업중	21.4	7.1	3.6	14.3	3.6	32.1	17.9	100.0 (28)
구직중	34.8	13.0	13.0	17.4	8.7	13.0	0.0	100.0 (23)
학업중	11.1	22.2	11.1	11.1	22.2	22.2	0.0	100.0 (9)
전업주부	35.7	21.4	0.0	14.3	14.3	14.3	0.0	100.0 (14)
$\chi^2 (df)$	20.943(18)							

주: 미혼모 양육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초등자녀가 성인의 보호 없이 혼자 있었던 경우라고 응답한 어머니들에게 1회에 혼자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조사하였다. 1시간 이상 3시간 미만이라는 응답이 47.7%로 가장 많았다. 3시간 이상 5시간 미만 20.5%, 30분 이상 1시간 미만 18.2%, 5시간 이상도 13.6%로 나타났다.

Ⅱ 표 III-2-19 Ⅱ (초등학생 자녀) 자녀가 집에 혼자 있는 시간

단위: %(명)

구분	30분 이상 1시간 미만	1시간 이상 3시간 미만	3시간 이상 5시간 미만	5시간 이상	계 (수)
전체	18.2	47.7	20.5	13.6	100.0 (44)
어머니 연령					
만 24세 이하	50.0	50.0	0.0	0.0	100.0 (2)
만 25~29세	20.0	20.0	40.0	20.0	100.0 (5)
만 30~39세	10.0	65.0	25.0	0.0	100.0 (20)
만 40세 이상	23.5	35.3	11.8	29.4	100.0 (17)
$\chi^2 (df)$	13.158(9)				
가구 구성					
본인+자녀	18.4	50.0	21.1	10.5	100.0 (38)
본인+재취가족 및 지인	16.7	33.3	16.7	33.3	100.0 (6)
$\chi^2 (df)$	2.336(3)				
취업 및 학업 상태					
취업중	15.0	50.0	20.0	15.0	100.0 (20)
구직중	25.0	50.0	25.0	0.0	100.0 (12)
학업중	33.3	50.0	16.7	0.0	100.0 (6)
전업주부	0.0	33.3	16.7	50.0	100.0 (6)
$\chi^2 (df)$	11.076(9)				

주: 미혼모 양육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초등학생 자녀가 혼자 있게 되는 상황으로는 직장에서 피치 못하게 야근을 하게 될 때 또는 주말에 일을 해야 하는 경우라는 응답이 50.0%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은 돌봄의 공백으로 매일 혼자 있어야 하는 시간이 있다는 경우가 25.0%, 집 안에 급한 불일이 생기는 경우 11.4%, 지인을 만나러 가는 경우 6.8%, 돌봄 제공하기로 한 사람의 약속 미이행 2.3% 등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미혼모 어머니의 취업 상황에서 야간이나 주말에 돌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쉬움을 보여주며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표 III-2-20 ▣ (초등학생 자녀) 자녀가 집에 혼자 있게 되는 상황

단위: %(명)

구분	야근 및 주말 근무	돌봄공백	집 앞에 불일	지인 만남	돌봄기관 및 사람의 약속미이행	기타	계	(수)
전체	50.0	25.0	11.4	6.8	2.3	4.5	100.0	(44)
어머니 연령								
만 24세 이하	50.0	0.0	0.0	0.0	50.0	0.0	100.0	(2)
만 25~29세	40.0	20.0	20.0	20.0	0.0	0.0	100.0	(5)
만 30~39세	50.0	30.0	15.0	0.0	0.0	5.0	100.0	(20)
만 40세 이상	52.9	23.5	5.9	11.8	0.0	5.9	100.0	(17)
$X^2(df)$			26.910(15)*					
가구 구성								
본인+자녀	50.0	23.7	13.2	7.9	0.0	5.3	100.0	(38)
본인+자녀+가족 및 지인	50.0	33.3	0.0	0.0	16.7	0.0	100.0	(6)
$X^2(df)$			8.105(5)					
취업 및 학업 상태								
취업중	65.0	30.0	5.0	0.0	0.0	0.0	100.0	(20)
구직중	41.7	33.3	8.3	16.7	0.0	0.0	100.0	(12)
학업중	33.3	16.7	33.3	0.0	16.7	0.0	100.0	(6)
전업주부	33.3	0.0	16.7	16.7	0.0	33.3	100.0	(6)
$X^2(df)$			30.773(15)**					

주: 미혼모 양육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다. 양육 어려움 및 도움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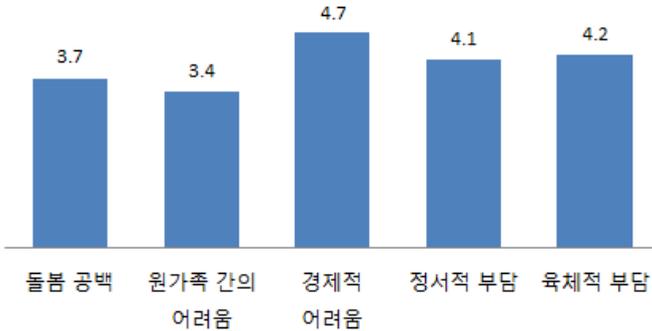
1) 양육 어려움

어머니들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체감되는 어려움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로 제시된 5점 척도로 답한 결과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어려움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경제적 어려움이 4.7점으로 가장 크게 체

감되는 부분이었고 다음은 육체적 부담감(4.2점), 정서적 어려움(4.1점)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오히려 원가족과의 어려움(3.4점)이나 돌봄의 공백(3.7점) 부분은 체감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그림 III-2-8 || 자녀양육 어려움 정도

단위: 점



주: 미혼모 양육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임.

자녀양육 시 체감되는 어려움의 정도를 평균을 중심으로 집단별로 비교해 보면 유아자녀를 둔 경우 정서적 부담감(4.3점)이 영아(3.9점)나 초등자녀를 둔 경우(4.1점)보다 높았고, 원가족과의 어려움도 유아 자녀를 둔 경우(3.8점)에 가장 높았고, 돌봄공백으로 인한 어려움도 유아 자녀를 둔 경우(4.0점)에 가장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기에 양육의 부담이 급증하는 시기임을 보여준다. 이는 영아기에 는 주로 기초생활 수급에 의존하여 어머니가 직접 양육을 하는 경우가 많고, 유아 기부터는 미혼모의 자립에 초점을 두어, 현재의 미혼 양육모에 대한 지원이 36개월을 기점으로 달라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생기게 되는 부담으로 볼 수 있다.

|| 표 III-2-21 || 자녀 양육 시 겪는 어려움

단위: 점

구분	육체적 부담	정서적 부담	경제적 어려움	원가족 간 어려움	돌봄공백	(수)
전체	4.2	4.1	4.7	3.4	3.7	(300)
자녀구분						
영아	4.2	3.9	4.7	3.2	3.5	(155)
유아	4.3	4.3	4.7	3.8	4.0	(71)
초등학생	4.2	4.1	4.8	3.4	3.9	(74)
F	0.3	4.3*	0.7	5.1**	5.4**(a)	

구분	육체적 부담	정서적 부담	경제적 어려움	원가족 간 어려움	돌봄공백	(수)
가구 구성						
본인+자녀	4.3	4.1	4.7	3.4	3.8	(204)
본인+자녀+가족 및 지인	4.1	4.1	4.7	3.3	3.5	(96)
<i>t</i>	1.1	-0.3	0.2	1.2	2.1*	
월 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4.3	4.1	4.8	3.3	3.8	(116)
100~200만원 미만	4.2	4.0	4.7	3.5	3.8	(122)
200만원 이상	4.1	4.1	4.6	3.2	3.5	(62)
<i>F</i>	1.4	0.4	3.5*(a)	1.2	1.5	
취업 및 학업 상태						
취업중	4.0	3.9	4.6	3.4	3.9	(74)
구직중	4.3	4.1	4.8	3.4	3.9	(70)
학업중	4.2	4.1	4.7	3.3	3.7	(62)
전업주부	4.3	4.2	4.8	3.4	3.5	(94)
<i>F</i>	2.8*	0.8	3.3*(a)	0.1	2.5	

주: 미혼모 양육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임.

2) 양육 도움 사람 및 기관

이렇듯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나 기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응답자의 절반이 부모(51.0%)라고 답하였고, 형제자매 및 친인척(12.3%)이 그 다음으로 나타나, 미혼모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원가족에 의지하는 비율(63.3%)이 높음을 보여준다. 미혼모 지원을 위해 원가족의 역량 강화에 주목해야 함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원가족이나 친인척이외에도 미혼모 거점기관(8.7%), 다른 미혼모 지인(8.0%), 미혼모 당사자 단체(6.7%), 친구(6.3%)의 순서로 들도 미혼모들이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자녀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이는 부분으로 영아자녀를 둔 경우에는 원가족과 친인척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비율(69.7%)이 높으나, 자녀가 성장하며 점차 다른 미혼모 친구, 친구나 지원단체 등으로부터 도움 받는다는 비율이 증가하여 그 도움의 범위가 확대됨을 알 수 있다. 어머니들의 사회적 관계가 자녀의 성장과 함께 점진적으로 확대됨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하다.

당연한 결과이지만 미혼모와 자녀이외의 가족이 함께 사는 가구에서 부모로부터 도움 받는다는 비율(78.1%)이 미혼모와 자녀 가구(38.2%)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또한, 소득에 따라 차이를 보여 200만원 이상 가구에서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는다는 비율(83.9%)이 그 이하 소득가구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III-2-22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나 기관

단위: %(명)

구분	부모	형제 자매 및 친인척	미혼모 거점기관 포함 정부기관	다른 미혼모 지인	미혼모 당사자 단체	친구	종교 단체	직장 동료 및 상사	기타	계	(수)
전체	51.0	12.3	8.7	8.0	6.7	6.3	2.0	0.3	4.7	100.0	(300)
자녀구분											
영아	59.4	10.3	7.7	5.8	4.5	7.1	1.9	0.6	2.6	100.0	(155)
유아	47.9	8.5	8.5	7.0	7.0	5.6	4.2	0.0	11.3	100.0	(71)
초등학생	36.5	20.3	10.8	13.5	10.8	5.4	0.0	0.0	2.7	100.0	(74)
$X^2(df)$				31.001(16)*							
가구 구성											
본인+자녀	38.2	14.7	10.8	10.3	9.3	8.3	2.5	0.5	5.4	100.0	(204)
본인+자녀+가족 및 지인	78.1	7.3	4.2	3.1	1.0	2.1	1.0	0.0	3.1	100.0	(96)
$X^2(df)$				43.334(8)***							
월 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40.5	13.8	8.6	8.6	12.9	6.0	3.4	0.0	6.0	100.0	(116)
100~200만원 미만	44.3	12.3	13.1	11.5	4.1	8.2	1.6	0.8	4.1	100.0	(122)
200만원 이상	83.9	9.7	0.0	0.0	0.0	3.2	0.0	0.0	3.2	100.0	(62)
$X^2(df)$				50.912(16)***							
취업 및 학업 상태											
취업중	63.5	13.5	4.1	10.8	2.7	4.1	0.0	0.0	1.4	100.0	(74)
구직중	50.0	8.6	7.1	7.1	8.6	7.1	4.3	1.4	5.7	100.0	(70)
학업중	48.4	14.5	11.3	11.3	6.5	4.8	0.0	0.0	3.2	100.0	(62)
전업주부	43.6	12.8	11.7	4.3	8.5	8.5	3.2	0.0	7.4	100.0	(94)
$X^2(df)$				27.744(24)							

주: 미혼모 양육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임.

3) 자녀 양육 시 필요한 정보

자녀를 양육하면서 가장 필요로 하는 정보에 대해 정부 지원에 대한 정보(34.7%), 연령별 자녀양육 방법(20.3%), 아동 정서적 문제시 심리 상담 정보(17.3%) 등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미혼모들이 정부지원에의 필요도가 높은 상황에서 최근 정책의 변화가 빠른 시기이므로 정확한 정보 안내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자녀연령별 양육방법에 대한 요구도 20.0%를 상회하였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 양육법, 부모 역량강화를 위한 방법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

|| 표 III-2-23 || 자녀 양육 시 필요한 정보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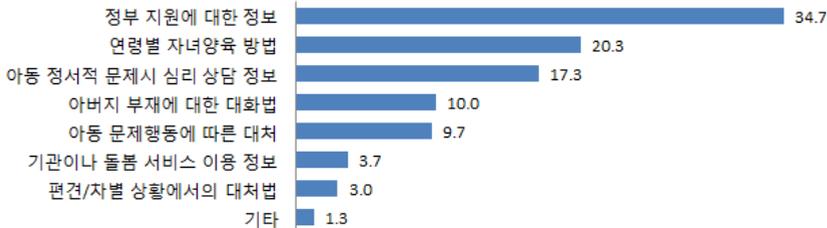
구분	정부 지원에 대한 정보	연령별 자녀양육 방법	아동 심리 상담 정보	아버지 부재에 대한 대화법	아동 문제 행동 대처법	기관 및 돌봄 서비스 이용 정보	편견/차별 상황 대처법	기타	계	(수)
전체	34.7	20.3	17.3	10.0	9.7	3.7	3.0	1.3	100.0	(300)

주: 미혼모 양육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임.

출산 직후에 가장 필요한 정보와 도움의 내용은 어떤 것인지 조사하였다. 실제 양육 시 필요한 기술 위주의 교육(33.3%)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사회보장 서비스에 대한 정보(31.0%), 주거 정보(17.0%), 자신감 회복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7.0%), 취업 교육 및 구직 정보(5.3%), 양육비 소송 및 법률관련 정보(5.3%), 자녀 아버지 및 원가족과의 관계 관련 상담(1.0%)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는 역으로 보면 미혼모들이 출산직후 양육 실재에 대한 부분에서 부담이 가장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 그림 III-2-9 || 자녀 양육 시 필요한 정보

단위: %



주: <표 III-2-23>를 그림으로 표현함.

|| 표 III-2-24 || 출산 직후 필요한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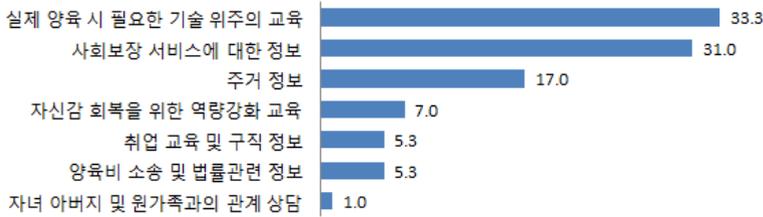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양육기술 교육	사회보장 서비스 정보	주거 정보	역량강화 교육	취업 교육 및 구직	양육비 소송 및 법률관련	자녀 아버지 및 원가족과의 관계 상담	계	(수)
전체	33.3	31.0	17.0	7.0	5.3	5.3	1.0	100.0	(300)

주: 미혼모 양육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임.

그림 III-2-10 출산 직후 필요한 정보

단위: %



주: <표 III-2-24>를 그림으로 표현함.

라. 아버지 부재 인지 및 스트레스 여부

1) 아버지 부재 인지

자녀가 아버지의 부재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질문하였다. 모르고 있다는 응답이 38.3%로 가장 높았고, 아버지의 존재에 대해 알고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경우는 21.7%, 알고 있는 것 같다는 경우가 17.7%, 모르고 있는 것 같다는 경우가 12.3%, 알고 있지만 혼란스러워 한다는 경우가 10%의 순서로 나타났다. 자녀가 성장할수록 모른다는 비율이 감소하고 알고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어머니의 연령에 따른 집단 차이도 보이는데 이는 자녀의 성장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전업주부의 집단에서 모른다는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표 III-2-25 자녀의 아버지 부재 인지 여부

단위: %(명)

구분	알고 상황을 받아들임	알고 있으나 혼란스러움	알고 있는 것 같음	모르고 있는 것 같음	모른다	계(수)
전체	21.7	10.0	17.7	12.3	38.3	100.0 (300)
자녀구분						
영아	3.2	1.9	14.2	17.4	63.2	100.0 (155)
유아	31.0	14.1	26.8	11.3	16.9	100.0 (71)
초등학생	51.4	23.0	16.2	2.7	6.8	100.0 (74)
$\chi^2(df)$						147.150(8)***
어머니 연령						
만 24세 이하	6.4	6.4	12.8	6.4	68.1	100.0 (47)
만 25~29세	17.9	3.8	17.9	23.1	37.2	100.0 (78)

구분	알고 상황을 받아들임	알고 있으나 혼란스러움	알고 있는 것 같음	모르고 있는 것 같음	모른다	계(수)
만 30~39세	23.8	13.1	20.0	10.8	32.3	100.0 (130)
만 40세 이상	37.8	15.6	15.6	4.4	26.7	100.0 (45)
$X^2(df)$	43.473(12)***					
취업 및 학업 상태						
취업중	31.1	17.6	21.6	10.8	18.9	100.0 (74)
구직중	24.3	10.0	28.6	12.9	24.3	100.0 (70)
학업중	21.0	6.5	17.7	14.5	40.3	100.0 (62)
전업주부	12.8	6.4	6.4	11.7	62.8	100.0 (94)
$X^2(df)$	51.096(12)***					

주: 미혼모 양육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자녀가 아버지에 대해 질문하거나 보고 싶다고 한 적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이다. 찾지 않았다는 응답이 54.7%, 찾은 적이 있다는 경우가 45.3%로 나타났다. 자녀가 성장하면서, 어머니의 연령이 많아지면서 아버지를 찾는다는 비율이 월등히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취업 또는 구직 중인 집단에서 아버지를 찾는다는 비율이 높았다.

■ 표 III-2-26 ■ 자녀가 아버지를 찾은 경험

구분	그렇다	아니다	계(수)	단위: %(명)
전체	45.3	54.7	100.0	(300)
자녀구분				
영아	17.4	82.6	100.0	(155)
유아	73.2	26.8	100.0	(71)
초등학생	77.0	23.0	100.0	(74)
$X^2(df)$	101.039(2)***			
어머니 연령				
만 24세 이하	17.0	83.0	100.0	(47)
만 25~29세	44.9	55.1	100.0	(78)
만 30~39세	48.5	51.5	100.0	(130)
만 40세 이상	66.7	33.3	100.0	(45)
$X^2(df)$	23.986(3)***			
취업 및 학업 상태				
취업중	64.9	35.1	100.0	(74)
구직중	50.0	50.0	100.0	(70)
학업중	40.3	59.7	100.0	(62)
전업주부	29.8	70.2	100.0	(94)
$X^2(df)$	21.801(3)***			

주: 미혼모 양육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자녀가 아버지에 대해 질문하거나 보고 싶다고 한 적이 있었다고 응답한 경우에 그 시기가 언제였는지 자녀의 당시 만 나이로 확인하였다. 만 3~5세 라는 경우가 43.4%로 가장 많았고, 만 5세 이후가 32.4%, 만 3세 이전이 24.3%로 나타났다. 그 시기는 1세에서 10세로 다양하며 평균은 만 3.8세로 나타나 주로 유아기에 아버지에 대해 물어보거나 찾는 시기로 알 수 있다.

▮ 표 III-2-27 ▮ 자녀가 아버지를 처음 찾은 시기

구분	3세 전	3~5세	5세 이후	평균	단위: %(명)	
					계(수)	
전체	24.3	43.4	32.4	3.8세	100.0	(1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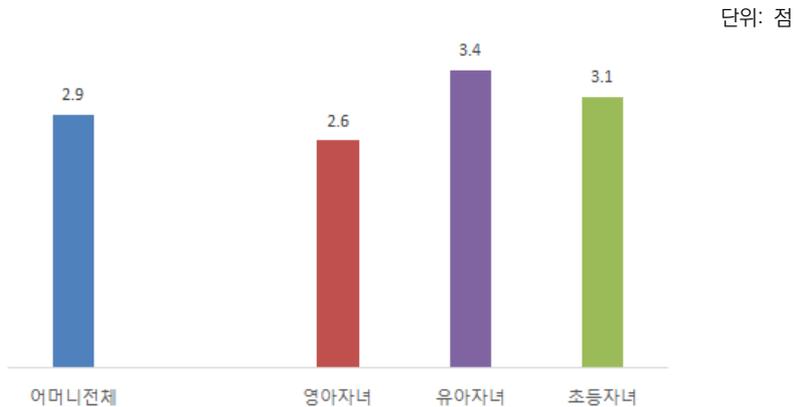
주: 미혼모 양육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2) 아버지 부재에 대한 스트레스 정도

자녀에게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으로 인해 어머니 본인이 현재 스트레스와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지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 평균 2.9점으로 대략 '보통이다' 정도의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아기에 자녀가 주로 아버지에 대한 언급을 하기 때문에 유아기 자녀를 둔 집단에서 영아 자녀를 둔 경우보다 그 스트레스와 심리적 어려움의 정도가 높았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영아자녀를 둔 어머니들 혹은 24세 이하 어머니의 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 그림 III-2-11 ▮ 아버지 부재에 대한 어머니의 스트레스 정도



주: <표 III-2-28> 중 일부를 그림으로 표현함.

표 III-2-28 아버지 부재에 대한 어머니의 스트레스 및 심리적 어려움

단위: %(명),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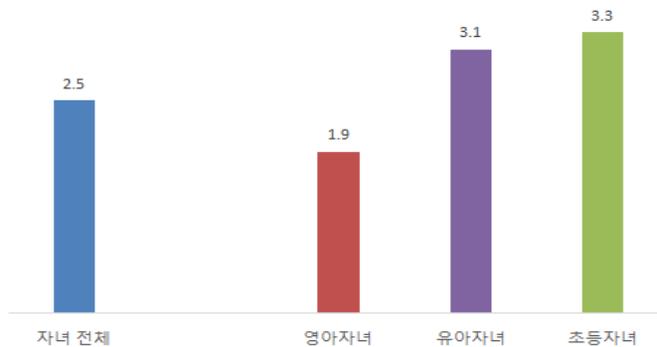
구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계(수)	평균
전체	21.3	20.7	19.3	23.3	15.3	100.0 (300)	2.9
자녀구분							
영아	31.6	20.0	14.2	22.6	11.6	100.0 (155)	2.6
유아	7.0	22.5	22.5	22.5	25.4	100.0 (71)	3.4
초등학생	13.5	20.3	27.0	25.7	13.5	100.0 (74)	3.1
$\chi^2 (df)/F$	27.953(8)***						7.9***(a)
어머니 연령							
만 24세 이하	46.8	14.9	19.1	4.3	14.9	100.0 (47)	2.3
만 25~29세	19.2	24.4	16.7	24.4	15.4	100.0 (78)	2.9
만 30~39세	15.4	20.8	20.0	27.7	16.2	100.0 (130)	3.1
만 40세 이상	15.6	20.0	22.2	28.9	13.3	100.0 (45)	3.0
$\chi^2 (df)/F$	28.316(12)**						4.5**

* p < .05, ** p < .01, *** p < .001.

또한 아버지가 없는 것으로 인해 자녀가 현재 스트레스와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지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 평균 2.5점으로 대략 ‘보통이다’와 ‘별로 그렇지 않다’ 중간 정도의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경우 3.3점으로 가장 높았고, 유아 3.1점, 영아 1.9점으로 조사되었고, 어머니의 연령이 만 40세 이상 집단인 경우 3.6점으로 가장 높았다. 취업 중인 경우 3.0점으로 다소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초등자녀를 둔 경우 취업한 어머니가 많아 이와 관련되어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림 III-2-12 아버지 부재에 대한 자녀의 스트레스 정도

단위: %



주: <표 III-2-29> 중 일부를 그림으로 표현함.

표 III-2-29 아버지 부재로 인한 자녀의 스트레스 및 심리적 어려움

단위: %(명), 점

구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알지 못한다	계(수)	평균
전체	26.3	23.7	11.3	19.0	8.3	11.3	100.0 (300)	2.5
거주지역								
대도시	26.0	20.8	11.7	22.1	12.3	7.1	100.0 (154)	2.7
중소도시	24.3	25.2	11.2	17.8	3.7	17.8	100.0 (107)	2.4
읍면지역	33.3	30.8	10.3	10.3	5.1	10.3	100.0 (39)	2.1
$\chi^2(d.f)/F$			17.346(10)					3.2*(a)
자녀구분								
영아	40.6	23.9	9.0	5.8	2.6	18.1	100.0 (155)	1.9
유아	9.9	29.6	12.7	35.2	11.3	1.4	100.0 (71)	3.1
초등학생	12.2	17.6	14.9	31.1	17.6	6.8	100.0 (74)	3.3
$\chi^2(d.f)/F$			86.784(10)***					41.5***(a)
어머니 연령								
만 24세 이하	55.3	23.4	8.5	4.3	4.3	4.3	100.0 (47)	1.7
만 25~29세	35.9	23.1	7.7	17.9	5.1	10.3	100.0 (78)	2.3
만 30~39세	17.7	28.5	13.1	20.0	7.7	13.1	100.0 (130)	2.7
만 40세 이상	4.4	11.1	15.6	33.3	20.0	15.6	100.0 (45)	3.6
$\chi^2(d.f)/F$			59.036(15)***					17.7***(a)
취업 및 학업 상태								
취업중	17.6	21.6	9.5	28.4	13.5	9.5	100.0 (74)	3.0
구직중	20.0	28.6	21.4	17.1	5.7	7.1	100.0 (70)	2.6
학업중	29.0	24.2	8.1	22.6	3.2	12.9	100.0 (62)	2.4
전업주부	36.2	21.3	7.4	10.6	9.6	14.9	100.0 (94)	2.3
$\chi^2(d.f)/F$			31.293(15)**					4.0**

주: 미혼모 양육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아버지가 없는 것으로 인해 자녀가 현재 스트레스와 심리적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그 원인이 어디서 기인하는 지에 대해 더 질문하였다. 복수응답의 결과 학교나 기관의 친구들로 인해서라는 응답이 56.1%로 가장 많았고, 보육기관이나 학교 선생님이라는 경우가 32.9%, 아이 친구들의 부모라는 경우는 31.7%, 조부모 등 친척이라는 경우 20.7%, 공공기관 및 지원기관이라는 경우가 8.5%로 조사되었다.

표 III-2-30 자녀가 겪는 스트레스 및 심리적 어려움의 원인(복수응답)

단위: %(명)

구분	학교나 기관의 친구들	보육/교육 기관이나 학교 선생님	아이 친구들의 부모	조부모 등 친척들	공공기관 및 지원기관	기타	(수)
전체	56.1	32.9	31.7	20.7	8.5	18.3	(82)
자녀 연령							
영아	15.4	53.8	38.5	7.7	15.4	23.1	(13)
유아	63.6	24.2	33.3	21.2	6.1	21.2	(33)
초등학생	63.9	33.3	27.8	25.0	8.3	13.9	(36)
가구 구성							
본인+자녀	53.3	35.0	30.0	20.0	10.0	18.3	(60)
본인+자녀+가족 및 지인	63.6	27.3	36.4	22.7	4.5	18.2	(22)
월 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59.3	40.7	29.6	29.6	14.8	14.8	(27)
100~200만원 미만	45.5	27.3	30.3	12.1	6.1	24.2	(33)
200만원 이상	68.2	31.8	36.4	22.7	4.5	13.6	(22)
취업 및 학업 상태							
취업중	67.7	22.6	32.3	16.1	6.5	16.1	(31)
구직중	50.0	43.8	31.3	18.8	6.3	6.3	(16)
학업중	43.8	43.8	31.3	12.5	18.8	31.3	(16)
전업주부	52.6	31.6	31.6	36.8	5.3	21.1	(19)

주: 미혼모 양육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임.

마. 자녀의 생활환경

1) 여가활동의 종류와 이용 빈도

자녀와 함께하는 여가활동의 종류와 이용 빈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미혼모가족에서 가장 빈번한 여가활동은 운동 및 나들이임을 알 수 있다. 미혼모 가족의 경우와 비교를 위해 2013년 아동종합실태조사의 결과를 참고하면 운동이나 나들이를 제외하고는 여가활동 대부분에서 미혼모 가족이 ‘전혀 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높았다.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경우의 비율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응답 미혼모 중 외식은 12.7%, 쇼핑은 16.0%, 여행은 35.7%, 영화나 공연 관람은 37.7%,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관람에 대해서는 43.0%가 전혀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한다고 하였다.

표 III-2-31 자녀 동행 여가 활동 빈도

단위: %(명)

구분	① 전혀 하지 않는다	② 1년에 1~2회	③ 1년에 5~6회	④ 한 달에 1~2회	⑤ 한 달에 3~4회	계	(수)	2013 아동실태 ¹⁾
운동 및 나들이	8.7	18.0	15.0	33.7	24.7	100.0	(300)	8.0
영아	11.6	14.2	9.7	32.9	31.6	100.0	(155)	9.2
유아	4.2	19.7	25.4	29.6	21.1	100.0	(71)	3.8
초등학생	6.8	24.3	16.2	39.2	13.5	100.0	(74)	6.8
χ^2 (df)	22.735(8)**							
외식	12.7	14.0	15.0	41.0	17.3	100.0	(300)	5.5
영아	20.0	10.3	8.4	44.5	16.8	100.0	(155)	14.8
유아	4.2	16.9	25.4	38.0	15.5	100.0	(71)	3.9
초등학생	5.4	18.9	18.9	36.5	20.3	100.0	(74)	6.0
χ^2 (df)	28.730(8)***							
쇼핑	16.0	22.3	26.0	29.3	6.3	100.0	(300)	9.0
영아	21.9	14.8	21.3	33.5	8.4	100.0	(155)	15.7
유아	11.3	25.4	32.4	26.8	4.2	100.0	(71)	6.6
초등학생	8.1	35.1	29.7	23.0	4.1	100.0	(74)	11.8
χ^2 (df)	23.997(8)**							
여행	35.7	45.7	12.3	6.3	0.0	100.0	(300)	15.5
영아	41.3	40.0	10.3	8.4	0.0	100.0	(155)	18.1
유아	38.0	46.5	8.5	7.0	0.0	100.0	(71)	9.8
초등학생	21.6	56.8	20.3	1.4	0.0	100.0	(74)	21.4
χ^2 (df)	17.816(6)**							
영화나 공연 관람	37.7	31.0	17.3	12.3	1.7	100.0	(300)	20.1
영아	63.2	22.6	3.9	8.4	1.9	100.0	(155)	-
유아	15.5	38.0	29.6	14.1	2.8	100.0	(71)	28.8
초등학생	5.4	41.9	33.8	18.9	0.0	100.0	(74)	25.8
χ^2 (df)	104.606(8)***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관람	43.0	37.3	12.7	5.7	1.3	100.0	(300)	32.0
영아	56.8	31.0	6.5	5.2	0.6	100.0	(155)	-
유아	29.6	39.4	18.3	9.9	2.8	100.0	(71)	24.9
초등학생	27.0	48.6	20.3	2.7	1.4	100.0	(74)	35.9
χ^2 (df)	33.540(8)***							

주: 1) 미혼모 양육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임.

2) 2013 아동종합실태조사의 '아동과의 여가활동' 항목의 '전혀 하지 않는다'에 응답한 비율임.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3). 아동종합실태조사. pp. 151-156.

2) 식생활 및 여가 환경

미혼모 가족의 생활환경 중 식생활에 대해 '먹을 것이 충분치 않아 식사량 줄이거나 식사를 거른 적이 있다.', '하루에 적어도 한 번은 육류 또는 생선을 섭취'

취한다.’,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를 매일 섭취한다.’, ‘인스턴트 식품(예: 라면, 햄버거 등) 등을 주 3회 이상 먹는다.’ 등의 질문으로 살펴보았다.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질문하였고 ‘보통이다’를 제외하고 ‘그렇다’ 또는 ‘그렇지 않다’로 구분한 결과가 <표 III-2-32>이다.

먹을 것이 충분치 않아 식사의 양을 줄이거나 식사를 거른 적이 있다고 응답자의 29.3%가 답하였다. 특히 가구소득이 낮은 경우 그 비율이 높았다. 하루에 적어도 한 번은 육류 또는 생선을 섭취하는지에 대해 섭취하지 못한다는 응답비율이 37.3%로 섭취한다는 경우 31.0%보다 다소 높았다.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를 매일 섭취하는지에 대해서도 섭취하지 못한다는 응답비율이 48.7%로 섭취한다는 경우 22.7%보다 월등하게 높았다. 인스턴트식품을 주 3회 이상 먹는지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비율이 31.0%, 그렇지 않다는 비율이 44.7%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미혼모 가족의 생활환경 이 중 식생활은 먹을 것이 없어 식사를 거를 정도는 아니지만 육류나 생선, 신선한 과일과 채소의 섭취는 충분하지 않은 상태임을 보여준다.

■ 표 III-2-32 ■ 자녀의 식생활

단위: %(명)

구분	(1)		(2)		(3)		(4)		(수)
	① 그렇지 않다	② 그렇다	① 그렇지 않다	② 그렇다	① 그렇지 않다	② 그렇다	① 그렇지 않다	② 그렇다	
전체	50.7	29.3	37.3	31.0	48.7	22.7	44.7	31.0	(300)
자녀 연령									
영아	54.8	23.2	34.8	33.5	45.8	25.2	51.6	23.9	(155)
유아	46.5	40.8	47.9	23.9	60.6	19.7	39.4	35.2	(71)
초등학생	45.9	31.1	32.4	32.4	43.2	20.3	35.1	41.9	(74)
$\chi^2(df)$	11.884(8)		7.491(8)		10.166(8)		18.161(8)*		
가구 구성									
본인+자녀	49.0	32.8	38.7	30.4	48.5	20.6	45.1	34.8	(204)
본인+자녀+가족 및 지인	54.2	21.9	34.4	32.3	49.0	27.1	43.8	22.9	(96)
$\chi^2(df)$	5.897(4)		1.248(4)		4.204(4)		12.049(4)*		
월 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41.4	36.2	48.3	19.8	60.3	10.3	44.0	36.2	(116)
100~200만원 미만	53.3	27.9	33.6	36.1	41.8	27.0	43.4	31.1	(122)
200만원 이상	62.9	19.4	24.2	41.9	40.3	37.1	48.4	21.0	(62)
$\chi^2(df)$	15.718(8)*		24.732(8)**		23.530(8)**		6.496(8)		

구분	(1)		(2)		(3)		(4)		(수)
	① 그렇지 않다	② 그렇다	① 그렇지 않다	② 그렇다	① 그렇지 않다	② 그렇다	① 그렇지 않다	② 그렇다	
취업 및 학업 상태									
취업중	66.2	17.6	27.0	40.5	31.1	35.1	50.0	27.0	(74)
구직중	47.1	32.9	35.7	34.3	51.4	20.0	45.7	30.0	(70)
학업중	51.6	27.4	32.3	33.9	48.4	25.8	41.9	40.3	(62)
전업주부	40.4	37.2	50.0	19.1	60.6	12.8	41.5	28.7	(94)
$\chi^2 (df)$	18.008(12)		19.858(12)		25.271(12)*		9.402(12)		

주: 1) 미혼모 양육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임.

- 2) (1) 먹을 것이 충분치 않아 식사의 양을 줄이거나 식사를 거른 적이 있다.
- (2) 하루에 적어도 한 번은 육류 또는 생선을 섭취한다.
- (3)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를 매일 섭취한다.
- (4) 인스턴트 식품(예: 라면, 햄버거 등) 등을 주 3회 이상 먹는다.

* $p < .05$, ** $p < .01$, *** $p < .001$.

미혼모 가족의 생활환경 중 문화와 여가에 대한 부분을 ‘아동의 연령과 발달수준에 맞는 책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 ‘정기적인 여가활동을 하고 있다.’,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게임이나 기구들이 있다.’, ‘야외활동을 할 수 있는 기구들이 있다.’ 등의 질문으로 살펴보았다.

자녀의 연령과 발달수준에 맞는 책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 응답자의 50.7%가 그렇지 못하다고 답하였는데, 어머니가 전업주부인 집단에서 특히 그 비율(71.3%)이 높았다. 정기적인 여가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는 16.3%에 불과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가 65.0%에 달했다. 영아(81.9%)와 유아 자녀(66.2%)를 둔 경우 여가활동이 어렵다는 응답 비율이 초등학생 자녀(28.4%)를 둔 경우보다 유의하게 높은 경향을 보였다. 월 가구소득이 100만원 미만 가구와 전업주부인 집단에서 특히 여가활동이 어렵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게임이나 기구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응답이 33.3%로 다소 높았다. 야외활동을 할 수 있는 기구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응답이 57.7%로 높게 나타났다. 이 비율은 영아 자녀를 둔 집단(69.7%)에서,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가구 집단(74.1%)에서, 전업주부 집단(73.4%)에서 다른 경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표 III-2-33 자녀의 여가생활 환경

단위: %(명)

구분	(5)		(6)		(7)		(8)		(수)
	① 그렇지 않다	② 그렇다	① 그렇지 않다	② 그렇다	① 그렇지 않다	② 그렇다	① 그렇지 않다	② 그렇다	
전체	50.7	20.3	65.0	16.3	33.3	31.7	57.7	21.3	(300)
자녀 연령									
영아	55.5	19.4	81.9	5.8	33.5	31.6	69.7	16.1	(155)
유아	47.9	14.1	66.2	12.7	32.4	29.6	46.5	22.5	(71)
초등학생	43.2	28.4	28.4	41.9	33.8	33.8	43.2	31.1	(74)
$\chi^2(df)$	15.522(8)*		79.726(8)***		12.171(8)		42.017(8)***		
가구 구성									
본인+자녀	49.0	20.1	60.8	18.6	31.9	33.8	56.9	22.1	(204)
본인+자녀+가족 및 지인	54.2	20.8	74.0	11.5	36.5	27.1	59.4	19.8	(96)
$\chi^2(df)$	1.348(4)		7.464(4)		3.190(4)		0.667(4)		
월 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57.8	17.2	71.6	13.8	43.1	23.3	74.1	12.9	(116)
100~200만원 미만	50.0	21.3	59.8	19.7	27.9	40.2	51.6	26.2	(122)
200만원 이상	38.7	24.2	62.9	14.5	25.8	30.6	38.7	27.4	(62)
$\chi^2(df)$	10.704(8)		20.134(8)**		14.837(8)		26.499(8)***		
취업 및 학업 상태									
취업중	40.5	23.0	50.0	23.0	20.3	43.2	36.5	31.1	(74)
구직중	51.4	21.4	64.3	18.6	35.7	28.6	60.0	24.3	(70)
학업중	30.6	30.6	61.3	16.1	30.6	37.1	56.5	25.8	(62)
전업주부	71.3	10.6	79.8	9.6	43.6	21.3	73.4	8.5	(94)
$\chi^2(df)$	40.146(12)***		37.237(12)***		25.784(12)*		40.502(12)***		

주: 1) 미혼모 양육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임.

- 2) (5) 아동의 연령과 발달수준에 맞는 책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
- (6) 정기적인 여가활동을 하고 있다
- (7)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게임이나 기구들이 있다.
- (8) 야외활동을 할 수 있는 기구들이 있다

* p < .05, ** p < .01, *** p < .001.

3) 자녀의 동영상 시청 시간 및 독서 시간

미혼모 가족의 자녀들이 하루 동안 어떤 매체를 이용하는지 주중과 주말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먼저 주중 하루 동안의 동영상 시청 시간을 살펴보면, 1~3시간미만이 37.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30분~1시간미만이 24.3%로 많았다. 3시간 이상 시청하는 경우도 16.3%에 달하였다. 동영상 시청 시간을 살펴보면 유아와 초등학생 자녀들이 영아보다 더 오랫동안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취업중이나 학업중인 집단에서 그 외의 경우보다 동영상 시청 시간이 길게 나타났다. 주말에는 주중 보다 하루 이용시간이 많이 증가하여 3시간 이상이

35.0%, 1~3시간미만이 31.7%로 조사되었다. 주말에도 유아와 초등학생의 시청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가 많아 길었고, 특히 어머니가 취업 중인 집단에서 주말 시청 시간이 긴 경향을 보였다.

표 III-2-34 자녀의 동영상 시청 시간

단위: %(명)

구분	주중					주말					계 (수)
	전혀 안함	30분 미만	30분~ 1시간 미만	1~3 시간 미만	3시 간 이상	전혀 안함	30분 미만	30분~ 1시간 미만	1~3 시간 미만	3시 간 이상	
전체	9.7	12.3	24.3	37.3	16.3	7.7	10.3	15.3	31.7	35.0	100.0(300)
거주지역											
대도시	11.7	12.3	25.3	37.0	13.6	6.5	12.3	18.8	30.5	31.8	100.0(154)
중소도시	9.3	12.1	23.4	34.6	20.6	9.3	9.3	12.1	30.8	38.3	100.0(107)
읍면지역	2.6	12.8	23.1	46.2	15.4	7.7	5.1	10.3	38.5	38.5	100.0(39)
$\chi^2(df)$			5.749(8)					6.555(8)			
자녀구분											
영아	13.5	16.1	22.6	29.7	18.1	11.6	14.2	19.4	27.7	27.1	100.0(155)
유아	5.6	11.3	21.1	46.5	15.5	1.4	9.9	15.5	28.2	45.1	100.0(71)
초등학생	5.4	5.4	31.1	44.6	13.5	5.4	2.7	6.8	43.2	41.9	100.0(74)
$\chi^2(df)$			17.381(8)*					28.863(8)***			
가구 구성											
본인+자녀	10.3	14.2	23.5	35.3	16.7	7.4	12.3	13.2	30.9	36.3	100.0(204)
본인+자녀+가족 및 지인	8.3	8.3	26.0	41.7	15.6	8.3	6.3	19.8	33.3	32.3	100.0(96)
$\chi^2(df)$			3.014(4)					4.610(4)			
월 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11.2	15.5	23.3	30.2	19.8	7.8	14.7	15.5	28.4	33.6	100.0(116)
100~200만원 미만	12.3	11.5	21.3	41.0	13.9	9.8	7.4	12.3	36.9	33.6	100.0(122)
200만원 이상	1.6	8.1	32.3	43.5	14.5	3.2	8.1	21.0	27.4	40.3	100.0(62)
$\chi^2(df)$			13.463(8)					10.218(8)			
취업 및 학업 상태											
취업중	1.4	9.5	31.1	47.3	10.8	2.7	4.1	6.8	41.9	44.6	100.0(74)
구직중	8.6	8.6	32.9	31.4	18.6	5.7	10.0	12.9	40.0	31.4	100.0(70)
학업중	9.7	16.1	19.4	41.9	12.9	3.2	12.9	24.2	24.2	35.5	100.0(62)
전업주부	17.0	14.9	16.0	30.9	21.3	16.0	13.8	18.1	22.3	29.8	100.0(94)
$\chi^2(df)$			27.460(12)**					35.146(12)***			

주: 미혼모 양육자원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미혼모 가족의 자녀들이 하루 동안 독서 시간을 주중과 주말로 구분하여 살펴 보았다. 먼저 주중 독서 시간을 살펴보면, 30분미만이 38.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30분~1시간미만이 30.7%로 많았고 독서를 전혀 안한다는 비율도 19.7%

로 나타났다. 독서 시간은 주말에도 주중과 유사한 이용시간을 보였다.

|| 표 III-2-35 || 자녀의 독서 시간

단위: %(명)

구분	주중					주말					계(수)
	전혀 안함	30분 미만	30분~1시간 미만	1~3시간 미만	3시간 이상	전혀 안함	30분 미만	30분~1시간 미만	1~3시간 미만	3시간 이상	
전체	19.7	38.3	30.7	10.0	1.3	20.3	33.3	31.0	13.0	2.3	100.0(300)
취업 및 학업 상태											
취업중	10.8	40.5	37.8	10.8	0.0	16.2	31.1	35.1	16.2	1.4	100.0(74)
구직중	18.6	27.1	38.6	14.3	1.4	24.3	21.4	31.4	20.0	2.9	100.0(70)
학업중	12.9	40.3	33.9	11.3	1.6	6.5	35.5	40.3	14.5	3.2	100.0(62)
전업주부	31.9	43.6	17.0	5.3	2.1	29.8	42.6	21.3	4.3	2.1	100.0(94)
$\chi^2(df)$	28.287(12)**					31.235(12)**					

주: 미혼모 양육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이처럼 동영상 시청과 독서 등의 소요 시간 조사결과는 아동의 여가 활동이 독서보다는 동영상 시청에 비중이 큼을 보여준다.

바. 부모의 양육행동

1) 자녀와의 놀이시간

어머니들이 자녀와 하루에 일대일로 이야기하고 놀아주는 시간에 대해 조사하였다. 30분 이상 1시간 미만이라는 응답이 3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30분미만 27.7%, 1시간 이상 3시간미만 20.7%의 순으로 나타났다. 영아 자녀를 둔 경우보다 유아와 초등학생 자녀를 둔 집단에서, 어머니의 연령이 높은 집단에서 자녀와의 놀이시간이 시간이 유의하게 짧은 경향을 보였다.

|| 표 III-2-36 || 자녀와의 놀이시간

단위: %(명)

구분	전혀 안함	30분 미만	30분 이상 1시간 미만	1시간 이상 3시간 미만	3시간 이상	계(수)
전체	2.3	27.7	35.0	20.7	14.3	100.0 (300)
자녀구분						
영아	0.0	13.5	34.2	27.7	24.5	100.0 (155)
유아	1.4	45.1	35.2	15.5	2.8	100.0 (71)

구분	전혀 안 함	30분 미만	30분 이상 1시간 미만	1시간 이상 3시간 미만	3시간 이상	계(수)
초등학생 $\chi^2(df)$	8.1	40.5	36.5	10.8	4.1	100.0 (74)
			69.292(8)***			
어머니 연령						
만 24세 이하	0.0	14.9	40.4	19.1	25.5	100.0 (47)
만 25~29세	2.6	21.8	24.4	30.8	20.5	100.0 (78)
만 30~39세	1.5	30.8	38.5	18.5	10.8	100.0 (130)
만 40세 이상 $\chi^2(df)$	6.7	42.2	37.8	11.1	2.2	100.0 (45)
			34.339(12)***			

주: 미혼모 양육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자녀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빈도를 조사한 결과, 주 5일 이상 함께 한다는 응답이 67.0%로 가장 많았다. 주 1~2일 15.3%, 주 3~4일이 14.0% 이나 전혀 함께 하지 않는다는 비율도 3.7%로 조사되었다. 이례적으로 전업주부 집단에서 전혀 함께 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8.5%로 높았다.

▮ 표 III-2-37 ▮ 자녀와 함께 저녁 식사하는 빈도

구분	전혀 안 함	주 1~2일	주 3~4일	주 5일 이상	계(수)
전체	3.7	15.3	14.0	67.0	100.0 (300)
취업 및 학업 상태					
취업중	0.0	23.0	23.0	54.1	100.0 (74)
구직중	2.9	14.3	12.9	70.0	100.0 (70)
학업중	1.6	14.5	6.5	77.4	100.0 (62)
전업주부 $\chi^2(df)$	8.5	10.6	12.8	68.1	100.0 (94)
		23.725(9)**			

주: 미혼모 양육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어머니가 전혀 저녁식사를 함께 하지 못하는 경우에 자녀가 주로 저녁식사를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살펴보았다. 주로 자녀가 혼자 먹는다는 응답이 35.1%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자녀의 조부모(22.8%), 어린이집(17.5%), 자녀돌봄기관(14.0%) 등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II-2-38 자녀가 함께 저녁을 먹는 사람 또는 장소

단위: %(명)

구분	주로 자녀 혼자	자녀의 조부모	어린 이집	자녀 돌봄 기관	아이 돌보미	민간 양육 도우미	기타	계(수)
전체	35.1	22.8	17.5	14.0	5.3	1.8	3.5	100.0 (57)
거주지역								
대도시	29.4	20.6	20.6	11.8	8.8	2.9	5.9	100.0 (34)
중소도시	36.8	26.3	15.8	21.1	0.0	0.0	0.0	100.0 (19)
읍면지역	75.0	25.0	0.0	0.0	0.0	0.0	0.0	100.0 (4)
$X^2(df)$	8.656(12)							
자녀구분								
영아	26.9	30.8	26.9	3.8	7.7	3.8	0.0	100.0 (26)
유아	50.0	16.7	25.0	0.0	8.3	0.0	0.0	100.0 (12)
초등학생	36.8	15.8	0.0	36.8	0.0	0.0	10.5	100.0 (19)
$X^2(df)$	24.968(12)*							
가구 구성								
본인+자녀	41.5	2.4	24.4	19.5	7.3	2.4	2.4	100.0 (41)
본인+자녀+가족 및 지인	18.8	75.0	0.0	0.0	0.0	0.0	6.3	100.0 (16)
$X^2(df)$	37.322(6)***							
월 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46.2	15.4	19.2	11.5	3.8	3.8	0.0	100.0 (26)
100~200만원 미만	23.5	5.9	23.5	29.4	11.8	0.0	5.9	100.0 (17)
200만원 이상	28.6	57.1	7.1	0.0	0.0	0.0	7.1	100.0 (14)
$X^2(df)$	23.027(12)*							
취업 및 학업 상태								
취업중	23.5	35.3	23.5	11.8	0.0	0.0	5.9	100.0 (17)
구직중	41.7	8.3	25.0	16.7	0.0	8.3	0.0	100.0 (12)
학업중	20.0	10.0	20.0	20.0	30.0	0.0	0.0	100.0 (10)
전업주부	50.0	27.8	5.6	11.1	0.0	0.0	5.6	100.0 (18)
$X^2(df)$	27.594(18)							

주: 미혼모 양육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2) 자녀 양육에 대한 인식 및 행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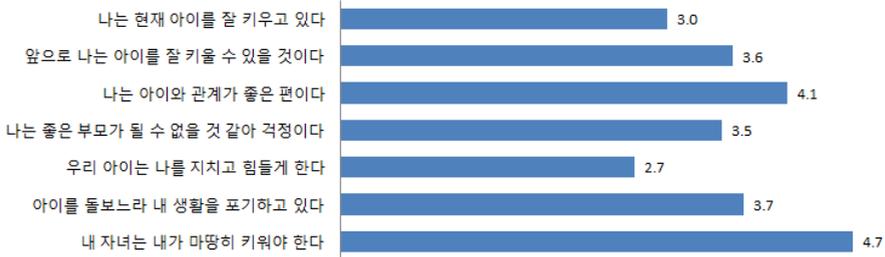
어머니들에게 현재 자녀를 기르면서 어떻게 양육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지에 대해 다음의 진술문들에 대한 동의 정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먼저 '나는 현재 아이를 잘 키우고 있다.'고 생각하는 지에 대해 보통이다(3점) 정도의 동의를 보였다. '앞으로 나는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 것이다.'라는 질문에는 3.6점으로 현재보다 미래에의 양육을 잘하겠다는 의지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동의 정도가 이 두 문항 모두에서 저조한 경향을 보였

다. ‘나는 아이와 관계가 좋은 편이다.’라는 자녀와의 관계인식에 대해서는 4.1점으로 ‘그런 편이다’라고 인지하고 있었다. 특히 영아자녀를 두 어머니 집단에서 다른 경우보다 높아 자녀와의 관계에 만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나는 좋은 부모가 될 수 없을 것 같아 걱정이다.’라는 염려에는 3.5점의 동의를 보였는데 전업주부 집단에서 이 염려가 다른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 ‘우리 아이는 나를 지치고 힘들게 한다.’는 양육부담에는 2.7점으로 동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전업주부 집단의 동의 정도가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 ‘아이를 돌보느라 내 생활을 포기하고 있다.’는 문항에는 3.7점으로 미혼모로 자녀를 양육하기 때문에 어머니 자신의 생활을 포기함에 약간 동의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 문항 또한 전업주부 집단의 동의 정도가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 마지막으로 ‘내 자녀는 내가 마땅히 키워야 한다.’는 문항에는 4.7점의 높은 동의를 보였다. 이는 설문 대상이 미혼모이지만 입양 또는 양육포기의 권유를 거절하고 어머니가 양육하는 것을 선택한 어머니들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 그림 III-2-13 ■ 자녀 양육에 대한 인식

단위: 점



주: <표 III-2-39> 중 일부를 그림으로 표현함.

■ 표 III-2-39 ■ 자녀 양육에 대한 인식

단위: %(명), 점

구분	(1)	(2)	(3)	(4)	(5)	(6)	(7)
전체	3.0	3.6	4.1	3.5	2.7	3.7	4.7
자녀구분							
영아	3.2	3.7	4.3	3.5	2.6	3.9	4.8
유아	2.7	3.2	3.8	3.7	2.9	3.6	4.6
초등학생	3.1	3.7	3.9	3.3	2.6	3.4	4.8
F	6.7**	7.7***	12.9***	1.7	1.7	3.7*	3.0*(a)

구분	(1)	(2)	(3)	(4)	(5)	(6)	(7)
가구 구성							
본인+자녀	3.0	3.5	4.0	3.5	2.7	3.7	4.7
본인+자녀+가족 및 지인	3.1	3.8	4.2	3.6	2.6	3.7	4.7
<i>t</i>	-1.1	-2.1*	-1.9	-0.6	0.7	0.4	0.1
월 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3.0	3.6	4.1	3.5	2.8	3.9	4.6
100-200만원 미만	3.0	3.5	4.1	3.6	2.7	3.6	4.8
200만원 이상	3.1	3.8	4.2	3.5	2.5	3.6	4.8
<i>F</i>	0.3	2.6	0.6(a)	0.7	1.5	3.1*	2.0(a)
취업 및 학업 상태							
취업중	3.0	3.7	4.1	3.4	2.5	3.3	4.8
구직중	3.2	3.7	4.2	3.3	2.6	3.7	4.8
학업중	3.1	3.6	4.1	3.5	2.6	3.5	4.7
전업주부	2.9	3.5	4.0	3.8	3.0	4.2	4.7
<i>F</i>	1.3	1.2	0.4(a)	4.1**	3.3*	10.7***(a)	0.8

주: 1) 미혼모 양육자원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임.

- 2) (1) 나는 현재 아이를 잘 키우고 있다, (2) 앞으로 나는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 것이다,
 (3) 나는 아이와 관계가 좋은 편이다, (4) 나는 좋은 부모가 될 수 없을 것 같아 걱정이다,
 (5) 우리 아이는 나를 지치고 힘들게 한다, (6) 아이를 돌보느라 내 생활을 포기하고 있다,
 (7) 내 자녀는 내가 마땅히 키워야 한다

3) 전혀 그렇지 않다 = 1점, 별로 그렇지 않다 = 2점, 보통이다 = 3점, 약간 그렇다 = 4점, 매우 그렇다 = 5점

* $p < .05$, ** $p < .01$, *** $p < .001$.

초등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학부모로서 교사와의 면담, 학부모 행사, 부모교육 프로그램 등 실제 자녀의 양육관련 참여에 대해 다음 <표 III-2-40>의 질문으로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미혼모들은 자녀의 선생님과 교사의 면담에 참여하는 경향(4.1점)을 보였고, 자녀가 친구들과 놀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참여(3.7점)하기도 하지만 자녀친구 부모들과의 모임이나(2.6점), 기관이나 지역사회 부모교육프로그램에의 참여(3.0점)는 저조한 것을 알 수 있다. 면담과정에서 어머니들은 자녀 친구 부모들의 편견으로 함께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과 혼자 자녀를 기르기 위해 취업 상황인 경우가 많아 부모교육에 참여할 기회가 적다고 하였다.

표 III-2-40 초등학교 부모의 양육관련 참여

단위: %(명), 점

구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계(수)	평균
1) 나는 자녀의 선생님(들)과의 면담에 참석한다.	2.7	9.5	17.6	17.6	52.7	100.0(74)	4.1
2) 나는 자녀 친구들의 부모들이 모이는 모임/연수 등의 행사에 참석한다.	25.7	29.7	17.6	13.5	13.5	100.0(74)	2.6
3) 나는 자녀의 기관 및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한다.	20.3	10.8	28.4	25.7	14.9	100.0(74)	3.0
4) 나는 자녀가 자녀의 친구들과 함께 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참석하기 위해 노력한다.	8.1	6.8	28.4	24.3	32.4	100.0(74)	3.7

3) 어머니의 우울 정도

어머니의 우울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지난 한 달 동안 자주 기분이 처지거나 우울하거나 희망이 없다는 느낌으로 고민하고 있다’, ‘지난 한 달 동안 자주 일상적인 활동에 흥미나 즐거움의 감소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의 두 가지 질문으로 조사하였다. ‘지난 한 달 동안 자주 기분이 처지거나 우울하거나 희망이 없다는 느낌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 며칠 동안 고민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42.7%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거의 매일 24.0%, 일주일 이상 17.7%, 전혀 없다는 응답이 15.7%로 조사되었다. 자녀 연령, 부모님 동거 여부, 소득 수준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연령이 어릴수록 거의 매일이 높게 나타났으며, 전업주부 집단에서 거의 매일이라는 응답의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지난 한 달 동안 자주 일상적인 활동에 흥미나 즐거움의 감소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의 질문에 대해서는 며칠 동안 고민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40.3%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거의 매일 21.3%, 전혀 없다는 응답이 19.3%, 일주일 이상 19%로 조사되었다. 이 결과도 전업주부 집단에서 거의 매일이라는 응답의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전업주부 집단이 양육효능감도 부족하고 우울감도 높은 경향을 보인다.

표 III-2-41 | 우울감에 대한 인식

단위: %(명)

구분	1) 지난 한 달 동안 자주 기분이 처지거나 우울하거나 희망이 없다는 느낌으로 고민하고 있다				2) 지난 한 달 동안 자주 일상적인 활동에 흥미나 즐거움의 감소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				계(수)
	전혀 없음	며칠 동안	일주일 이상	거의 매일	전혀 없음	며칠 동안	일주일 이상	거의 매일	
전체	15.7	42.7	17.7	24.0	19.3	40.3	19.0	21.3	100.0 (300)
어머니 연령									
만 24세 이하	23.4	23.4	14.9	38.3	14.9	34.0	25.5	25.5	100.0 (47)
만 25~29세	15.4	42.3	14.1	28.2	16.7	44.9	11.5	26.9	100.0 (78)
만 30~39세	14.6	43.8	23.1	18.5	23.8	33.8	23.8	18.5	100.0 (130)
만 40세 이상	11.1	60.0	11.1	17.8	15.6	57.8	11.1	15.6	100.0 (45)
$\chi^2 (df)$		20.768(9)*				17.238(9)*			
월 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12.1	45.7	12.9	29.3	14.7	43.1	16.4	25.9	100.0 (116)
100~200만원 미만	22.1	36.9	21.3	19.7	26.2	37.7	15.6	20.5	100.0 (122)
200만원 이상	9.7	48.4	19.4	22.6	14.5	40.3	30.6	14.5	100.0 (62)
$\chi^2 (df)$		12.169(6)				13.593(6)*			
취업 및 학업 상태									
취업중	23.0	44.6	21.6	10.8	18.9	50.0	21.6	9.5	100.0 (74)
구직중	14.3	40.0	17.1	28.6	21.4	38.6	17.1	22.9	100.0 (70)
학업중	14.5	56.5	19.4	9.7	21.0	53.2	19.4	6.5	100.0 (62)
전업주부	11.7	34.0	13.8	40.4	17.0	25.5	18.1	39.4	100.0 (94)
$\chi^2 (df)$		31.572(9)***				36.10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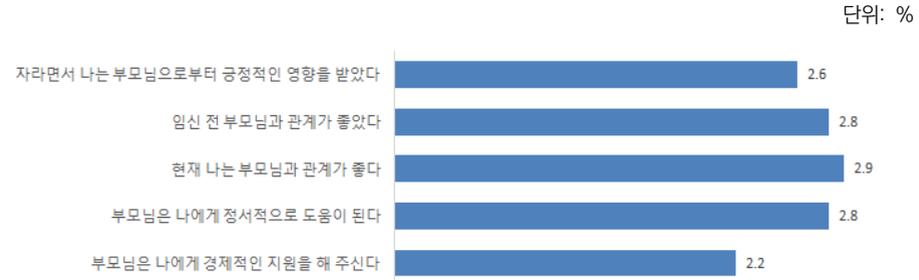
주: 미혼모 양육자원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미혼모들에게 자신의 부모님과과의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진술된 문항으로 동의 정도를 5점 척도로 살펴보았다. 진술된 다섯 개의 문항 모두에서 ‘보통이다(3점)’에 못 미치는 동의를 보였다.

‘현재 나는 부모님과 관계가 좋다(2.9점)’, ‘임신 전 부모님과 관계가 좋았다(2.8점)’, ‘부모님은 나에게 정서적으로 도움이 된다(2.8점)’, ‘자라면서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다(2.6점)’, ‘부모님은 나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해 주신다(2.2점)’의 순서로 높은 동의를 보였다.

■ 그림 III-2-14 ■ 부모와의 관계 인식



주: <표 III-2-42> 중 일부를 그림으로 표현함.

사는 지역, 취업상태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현재 미혼모와 그 자녀 이외의 가족구성원이 함께 사는 집단에서 부모의 관계인식에서 긍정적 경향을 보였다. 이는 역으로 관계가 좋기 때문에 함께 살고 있어 나타난 차이로 해석된다. 또한 가구소득이 200만원 이상인 집단에서 부모의 관계인식에서 긍정적 경향을 보였다.

■ 표 III-2-42 ■ 부모와의 관계 인식

단위: 점

구분	(1)	(2)	(3)	(4)	(5)
전체	2.6	2.8	2.9	2.8	2.2
자녀구분					
영아	2.7	2.9	3.1	3.0	2.4
유아	2.4	2.6	2.7	2.5	1.9
초등학생	2.6	2.6	2.7	2.6	2.0
F	1.7	1.1	3.5*	4.8**	4.3*(a)
어머니 연령					
만 24세 이하	2.9	2.9	3.4	3.1	2.5
만 25~29세	2.6	2.7	2.8	2.7	2.1
만 30~39세	2.5	2.7	2.9	2.8	2.2
만 40세 이상	2.7	2.7	2.6	2.6	1.7
F	0.9	0.3	3.1*	1.3	3.0*
가구 구성					
본인+자녀	2.6	2.5	2.7	2.5	1.8
본인+자녀+가족 및 지인	2.7	3.2	3.3	3.3	2.8
t	-1.2	-3.9***	-4.1***	-4.4***	-6.0***
월 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2.5	2.7	2.7	2.6	1.9
100~200만원 미만	2.5	2.5	2.8	2.6	2.0
200만원 이상	2.9	3.4	3.5	3.5	3.0
F	2.4(a)	9.0***(a)	8.6***	9.8***	19.4***

구분	(1)	(2)	(3)	(4)	(5)
취업 및 학업 상태					
취업중	2.8	3.0	3.2	3.0	2.4
구직중	2.7	2.8	2.9	2.8	2.2
학업중	2.5	2.8	2.9	2.8	2.1
전업주부	2.4	2.5	2.7	2.5	1.9
<i>F</i>	1.5	2.0	1.9	1.8	1.8

주: 1) 미혼모 양육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임.

- 2) (1) 자라면서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다.
- (2) 임신 전 부모님과 관계가 좋았다.
- (3) 현재 나는 부모님과 관계가 좋다.
- (4) 부모님은 나에게 정서적으로 도움이 된다.
- (5) 부모님은 나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주신다.

* $p < .05$, ** $p < .01$, *** $p < .001$.

3 취업 및 자립 관련 특성

본 절에서는 자립에 대한 생각과 취업중, 구직중, 취업준비중 등의 자립 상황에 따른 어려움을 살펴보았다.

가. 자립에 대한 생각

자립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스스로가 평가하는 경제적 안정 여부를 물었다. 스스로 경제적 안정이 되었다고 생각하는지의 질문에 대해 ‘매우 그렇다’에 응답한 사람은 한명도 없었으며, ‘약간 그렇다’ 3.0%, ‘보통이다’에 11.0%가 응답하였고, ‘전혀 그렇지 않다’에 응답한 사람이 55.0%로 과반수가 넘었다. 그룹별로는 소득수준별, 취업유무별로 유의미한 응답차이가 나타났는데, 소득수준 100만원 이하의 소득의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에 응답한 정도가 62.1%로 높게 나타났으며, 취업상태에서 전업주부의 경우 72.3%, 구직중인 경우 61.4%로 취업중인 경우의 33.8%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내어, 구직중이거나, 양육을 하느라 구직조차 어려운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경제적인 불안정 수준이 매우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III-3-1 경제적 안정 여부

단위: %(명), 점

구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계(수)	평균
전체	55.0	31.0	11.0	3.0	0.0	100.0 (300)	1.6
월 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62.1	30.2	6.9	0.9	0.0	100.0 (116)	1.5
100~200만원 미만	49.2	36.1	11.5	3.3	0.0	100.0 (122)	1.7
200만원 이상	53.2	22.6	17.7	6.5	0.0	100.0 (62)	1.8
$\chi^2(df)/F$			12.918(6)*				3.8*(a)
취업 및 학업 상태							
취업중	33.8	37.8	21.6	6.8	0.0	100.0 (74)	2.0
구직중	61.4	31.4	5.7	1.4	0.0	100.0 (70)	1.5
학업중	46.8	40.3	11.3	1.6	0.0	100.0 (62)	1.7
전업주부	72.3	19.1	6.4	2.1	0.0	100.0 (94)	1.4
$\chi^2(df)/F$			35.489(9)***				10.6***

주: 미혼모 양육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다음은 자립을 위해 필요한 요소를 살펴보았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수급자의 비율이 매우 높고, 수급자의 경우 소득이 발생할 경우 지원이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립을 위해 필요한 요소 1순위로 '정부지원을 받으면서 소득인정' 이 44.0%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주거지원 확대가 17.7%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고, 자녀돌봄 공백 해소가 16.0%로 나타났다.

표 III-3-2 자립을 위해 필요한 요소: 1순위

단위: %(명)

구분	정부지원을 받으며 소득 인정	주거 지원 확대	자녀 돌봄 공백 해소	전일제 정규직 취업	차별 해소	다양한 취업교육 지원	높은 학력	계(수)
전체	44.0	17.7	16.0	11.0	6.3	3.0	2.0	100.0 (300)

주: 미혼모 양육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임.

자립을 위한 최소 학력수준을 물었을 때 2-3년제 전문대 졸업이상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29.3% 정도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졸업이 28.3% 정도, 그리고 학력과 자립은 무관하다는 의견이 27.7%로 그 다음을 이었다. 어머니 연령으로는 학업중인 경우 2-3년제 전문대 졸업 및 4년제 대학교 졸업이상이 필요하다는 수가 40.3%, 21.0%로 높게 나타났고, 전업주부인 경우 고등학교 졸업을 자립에 필요한 최소 학력수준으로 꼽는 비율이 39.4%로 가장 높았다.

표 III-3-3 자립을 위한 최소 학력 수준

단위: %(명)

구분	학력과 자립은 무관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2~3년제 전문대 졸업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	계(수)
전체	27.7	0.7	28.3	29.3	14.0	100.0 (300)
어머니 연령						
만 24세 이하	12.8	0.0	46.8	31.9	8.5	100.0 (47)
만 25~29세	25.6	1.3	26.9	26.9	19.2	100.0 (78)
만 30~39세	36.9	0.8	23.8	26.9	11.5	100.0 (130)
만 40세 이상	20.0	0.0	24.4	37.8	17.8	100.0 (45)
$X^2 (df)$			21.997(12)*			
취업 및 학업 상태						
취업중	25.7	0.0	32.4	32.4	9.5	100.0 (74)
구직중	37.1	1.4	17.1	25.7	18.6	100.0 (70)
학업중	19.4	0.0	19.4	40.3	21.0	100.0 (62)
전업주부	27.7	1.1	39.4	22.3	9.6	100.0 (94)
$X^2 (df)$			25.271(12)*			

주: 미혼모 양육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다음은 미혼모로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겪은 경험을 물어본 결과이다. ‘소득 발생 시 줄어드는 기초생활수급 지원으로 자립의지가 생기지 않는다.’는 문항의 58.3%, 미혼모로서 취업 시 편견, 차별로 취업이 되지 않는다는 문항의 43.3%가 ‘그렇다’에 응답하였다. ‘긴급자녀 돌봄 상황 및 자녀 기관이용 후 돌봄공백으로 직장을 그만 둔 경험이 있다’ 문항에는 41.0%가 ‘그렇다’에 응답하였다.

표 III-3-4 미혼모로서의 경제활동 경험

단위: %(명)

구분	(1)	(2)	(3)	(4)	(5)	계(수)
전체	58.3	43.3	41.0	21.3	12.7	100.0(300)
거주지역						
대도시	59.1	48.7	46.8	25.3	14.9	100.0(154)
중소도시	55.1	37.4	35.5	18.7	10.3	100.0(107)
읍면지역	64.1	38.5	33.3	12.8	10.3	100.0(39)
$X^2 (df)$	1.535(4)	12.965(4)*	4.504(4)	4.755(4)	2.112(4)	
자녀구분						
영아	53.5	33.5	22.6	9.0	4.5	100.0(155)
유아	59.2	59.2	60.6	38.0	18.3	100.0(71)
초등학생	67.6	48.6	60.8	31.1	24.3	100.0(74)
$X^2 (df)$	8.150(4)	14.503(4)**	51.667(4)***	35.789(4)***	32.031(4)***	

구분	(1)	(2)	(3)	(4)	(5)	계(수)
어머니 연령						
만 24세 이하	57.4	40.4	27.7	19.1	12.8	100.0(47)
만 25~29세	53.8	41.0	35.9	21.8	11.5	100.0(78)
만 30~39세	60.0	42.3	46.2	18.5	6.9	100.0(130)
만 40세 이상	62.2	53.3	48.9	31.1	31.1	100.0(45)
$\chi^2(df)$	2.213(6)	3.959(6)	9.698(6)	3.608(6)	18.211(6)**	
가구 구성						
본인+자녀	55.9	44.6	42.6	21.6	13.7	100.0(204)
본인+자녀+가족+자민	63.5	40.6	37.5	20.8	10.4	100.0(96)
$\chi^2(df)$	12.611(2)**	1.098(2)	1.203(2)	0.380(2)	1.014(2)	
월 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60.3	48.3	43.1	22.4	13.8	100.0(116)
100~200만원 미만	50.8	36.9	41.0	17.2	12.3	100.0(122)
200만원 이상	69.4	46.8	37.1	27.4	11.3	100.0(62)
$\chi^2(df)$	16.327(4)**	3.610(4)	4.405(4)	2.821(4)	1.172(4)	
취업 및 학업 상태						
취업중	54.1	40.5	47.3	21.6	14.9	100.0(74)
구직중	54.3	47.1	55.7	28.6	15.7	100.0(70)
학업중	62.9	40.3	35.5	17.7	8.1	100.0(62)
전업주부	61.7	44.7	28.7	18.1	11.7	100.0(94)
$\chi^2(df)$	11.293(6)	4.605(6)	32.174(6)***	22.413(6)**	14.25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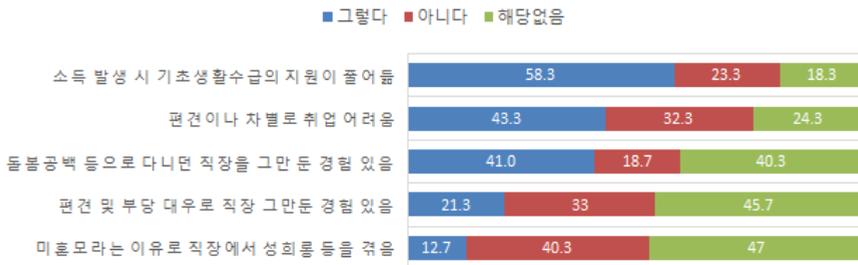
주: 1) 미혼모 양육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임.

- 2) (1) 소득 발생 시 기초생활수급의 지원이 줄어드는 지원체계 때문에 자립의지가 생기지 않는다.
- (2) 미혼모로서 취업 시 편견이나 차별로 취업이 되지 않는다.
- (3) 취업 후에도 긴급 자녀 돌봄 상황 및 자녀 기관 이용 후 자녀를 보줄 사람이 없어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둔 경험이 있다.
- (4) 취업한다고 하더라도 미혼모에 대한 편견 및 부당한 대우로 직장을 그만둔 경험이 있다.
- (5) 미혼모라는 이유로 직장에서 성희롱 등을 겪은 적이 있다.

* p < .05, ** p < .01, *** p < .001.

Ⅱ 그림 III-3-1 Ⅱ 미혼모로서의 경제활동 경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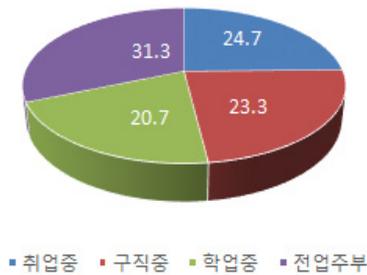
주: <표 III-3-4> 중 일부를 그림으로 표현함.

나. 취업, 구직, 학업 여부에 따른 어려움 파악

본 연구 조사대상 300명 중 취업, 구직, 학업, 전업주부로 나누어 비율을 살펴본 결과 전업주부가 31.3%, 취업중 24.7%, 구직중 23.3%, 학업중 20.7%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취업중, 구직중, 학업중인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하여 각각의 상황에 따른 어려움을 파악하였다.

|| 그림 III-3-2 || 취업, 구직, 학업 상태

단위: %



주: 미혼모 양육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임.

1) 취업중

응답자 300명 중 74명인 24.7%가 현재 취업중으로, 그 중 전일제 취업인 경우가 67.6%, 시간제 취업중인 경우가 32.4%로 나타났다. 그 중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시간제 취업이 70.0%인 반면, 소득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2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전일제 취업이 각각 72.2%, 75.0%로 전일제 취업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표 III-3-5 || 근로시간 형태

구분	근로시간 형태		단위: %(명)	
	전일제	시간제	계(수)	
전체	67.6	32.4	100.0	(74)
자녀구분				
영아	62.5	37.5	100.0	(24)
유아	63.6	36.4	100.0	(22)
초등학생	75.0	25.0	100.0	(28)
$\chi^2(df)$	1.142(2)			

구분	전일제	시간제	계(수)	
월 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30.0	70.0	100.0	(10)
100~200만원 미만	72.2	27.8	100.0	(36)
200만원 이상	75.0	25.0	100.0	(28)
$\chi^2 (df)$	7.502(2)*			

주: 미혼모 양육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자녀 연령별로 모의 출퇴근 시각을 알아본 결과 초등학생의 경우 8-9시 사이에 출근을 하는 비율이 전체의 64.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7:30이전에 출근하는 비율도 17.9%로 꽤 높게 나타났다. 영아의 경우는 58.4%의 어머니가 8:30분 전에 출근하고, 10시 이후에 29.2%정도가 높게 나타나 출근시간대가 양분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퇴근시각의 경우 초등학생의 경우 저녁 7시 이후 퇴근하는 비율이 42.9%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유아의 경우는 저녁 6:01-7:00 사이가 40.9%로 나타났다.

▮ 표 III-3-6 ▮ 자녀 연령별 모의 출퇴근 시각

단위: %(명)

구분	출근 시각				구분	퇴근 시각			
	영아	유아	초등 학생	전체		영아	유아	초등 학생	전체
7:30 전	16.7	4.5	17.9	13.5	14:00 전	20.8	9.1	21.4	17.6
7:31~8:00	16.7	31.8	7.1	17.6	14:01~15:00	0.0	0.0	0.0	0.0
8:01~8:30	25.0	9.1	46.4	28.4	15:01~16:00	4.2	4.5	3.6	4.1
8:31~9:00	8.3	22.7	17.9	16.2	16:01~17:00	0.0	13.6	0.0	4.1
9:01~9:30	4.2	13.6	3.6	6.8	17:01~18:00	16.7	13.6	10.7	13.5
9:31~10:00	0.0	0.0	3.6	1.4	18:01~19:00	20.8	40.9	21.4	27.0
10:00 이후	29.2	18.2	3.6	16.2	19:00 이후	37.5	18.2	42.9	33.8
계 (수)	100.0 (24)	100.0 (22)	100.0 (28)	100.0 (74)	계 (수)	100.0 (24)	100.0 (22)	100.0 (28)	100.0 (74)

주: 미혼모 양육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임.

현재 일자리에서 근무한 기간을 물어보았을 때, 6개월 미만이 39.2%, 1년 이상에서 3년 미만이 28.4%, 6개월-1년 미만이 14.9%로 높게 나타났고, 5년 이상은 8.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 표 III-3-7 || 현재 일자리 근무 기간

단위: %(명)

구분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계(수)
전체	39.2	14.9	28.4	9.5	8.1	100.0 (74)

주: 미혼모 양육자원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임.

40.5%가 '보통이다', 35.1%가 '만족한다'로 나타나, 대부분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 않았으며, 읍면 지역의 경우에 '매우 만족한다'의 비율이 조금 높게 나타났다.

|| 표 III-3-8 || 현재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①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② 만족하지 않는다	③ 보통이다	④ 만족한다	⑤ 매우 만족한다	계(수)	평균
전체	4.1	13.5	40.5	35.1	6.8	100.0 (74)	3.3
거주지역							
대도시	0.0	18.4	39.5	36.8	5.3	100.0 (38)	3.3
중소도시	12.5	8.3	41.7	33.3	4.2	100.0 (24)	3.1
읍면지역	0.0	8.3	41.7	33.3	16.7	100.0 (12)	3.6
$\chi^2 (df)/F$			9.837(8)				1.2
월 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0.0	30.0	60.0	10.0	0.0	100.0 (10)	2.8
100~200만원 미만	5.6	8.3	41.7	36.1	8.3	100.0 (36)	3.3
200만원 이상	3.6	14.3	32.1	42.9	7.1	100.0 (28)	3.4
$\chi^2 (df)/F$			7.890(8)				1.5

주: 미혼모 양육자원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 표 III-3-9 || 업무 시 느끼는 어려움

단위: %(명)

구분	저임금	자녀 양육 시간 부족	육체 피로	근무시간 돌봄시간 맞지 않음	찾은 긴급 돌봄 상황 발생으로 업무 지장	업무 및 업종 불만족	미혼모 편견과 차별	기타	없음	계(수)
1순위	35.1	29.7	20.3	4.1	10.8	-	-	-	-	100.0 (74)
1+2순위	58.1	48.6	39.2	24.3	18.9	4.1	1.4	2.7	1.4	198.7 (74)

주: 미혼모 양육자원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임.

그림 III-3-3 업무 시 느끼는 어려움

단위: %



주: <표 III-3-9> 중 일부를 그림으로 표현함.

2) 구직중

응답자 300명 중 70명인 23.3%가 현재 구직 중으로, 구직활동 빈도로는 2-3회가 31.4%로 가장 높고, 4-5회가 18.6%, 그리고 10회 넘게 지원해본 경험이 있는 경우가 12.9%로 꽤 높게 나타났다.

표 III-3-10 구직 활동 빈도

단위: %(명)

구분	경험 없음	1회	2~3회	4~5회	6~10회	10회 초과	계(수)
전체	21.4	7.1	31.4	18.6	8.6	12.9	100.0 (70)
거주지역							
대도시	30.6	5.6	25.0	16.7	11.1	11.1	100.0 (36)
중소도시	14.3	7.1	39.3	17.9	7.1	14.3	100.0 (28)
읍면지역	0.0	16.7	33.3	33.3	0.0	16.7	100.0 (6)
$\chi^2(df)$			7.102(10)				
자녀 연령							
영아	27.6	10.3	27.6	20.7	3.4	10.3	100.0 (29)
유아	16.7	5.6	27.8	22.2	11.1	16.7	100.0 (18)
초등학생	17.4	4.3	39.1	13.0	13.0	13.0	100.0 (23)
$\chi^2(df)$			4.740(10)				

주: 미혼모 양육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구직 활동 시 어려운 점으로는 ‘아이돌봄으로 시간 선택에 제한이 있어서’가 40.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자녀를 돌보면서 취업 준비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가 24.3%, 경력, 학력, 자격이 맞는 일을 찾지 못해서가 17.1%로 그 다음을 이었다. ‘미혼모에 대한 편견으로 취업이 되지 않는 다는 의견은’ 4.3% 정도로 직접적 편견경험은 많지 않더라도, 혼자 자녀 양육을 도맡아야 하기 때문에 업무시간에 대한 제약을 많이 받아 직업 선택에 제한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그림 III-3-4 ■ 구직 활동 시 어려운 점



주: <표 III-3-11> 중 일부를 그림으로 표현함.

그룹별 비교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하지만 부모와 함께 사는 집단보다 자녀와 둘이 사는 집단에서 ‘아이 돌봄으로 인한 시간선택 제한’과 ‘경력 및 학력에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함’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표 III-3-11 ■ 구직 활동 시 어려운 점

단위: %(명)

구분	아이 돌봄으로 시간선택 제한	경력, 학력, 자격이 맞는 일자리 못해	자녀를 기관에 맡기지 못하여	미혼모에 대한 편견	취업 정보 부족	기타	계(수)
전체	40.0	24.3	17.1	7.1	4.3	2.9	100.0 (70)
자녀구분							
영아	37.9	34.5	10.3	6.9	3.4	3.4	100.0 (29)
유아	50.0	11.1	11.1	11.1	0.0	5.6	100.0 (18)
초등학생	34.8	21.7	30.4	4.3	0.0	4.3	100.0 (23)
$\chi^2(df)$	11.246(12)						

구분	아이 돌봄으로 시간선택 제한	시간적 여유부족	경력, 학력, 자격이 맞는 일자리 찾지 못해	자녀를 기관에 맡기지 못하여	미혼모에 대한 편견	취업 정보 부족	기타	계(수)
가구 구성								
본인+자녀	41.2	23.5	15.7	9.8	2.0	2.0	5.9	100.0 (51)
본인+자녀+가족 및 지인	36.8	26.3	21.1	0.0	10.5	5.3	0.0	100.0 (19)
$\chi^2 (df)$	6.220(6)							

주: 미혼모 양육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3) 학업중

앞서 제시한 [그림 III-3-2]에 의하면, 응답자 300명 중 62명인 20.7%가 학업중으로 나타났다. 그 중 교육유형으로는 53.2%가 오프라인, 46.8%가 온라인을 통해 학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III-3-12 ▮ 교육 유형

구분	오프라인	온라인	계(수)
전체	53.2	46.8	100.0 (62)
어머니 연령			
만 24세 이하	78.6	21.4	100.0 (14)
만 25~29세	62.5	37.5	100.0 (16)
만 30~39세	36.4	63.6	100.0 (22)
만 40세 이상	40.0	60.0	100.0 (10)
$\chi^2 (df)$	7.380(3)		
월 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69.0	31.0	100.0 (29)
100~200만원 미만	28.6	71.4	100.0 (21)
200만원 이상	58.3	41.7	100.0 (12)
$\chi^2 (df)$	8.139(2)*		

주: 미혼모 양육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또한, 학업중 응답자를 대상으로 교육 수준을 조사한 결과, 대학교가 58.1%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기타가 33.9%, 검정고시를 포함한 고등학교 수준이 6.5%, 중학교 수준이 1.6%로 나타났다.

표 III-3-13 교육 수준

단위: %(명)

구분	중학교 (검정고시 포함)	고등학교 (검정고시 포함)	대학교	기타	계(수)
전체	1.6	6.5	58.1	33.9	100.0 (62)
자녀구분					
영아	0.0	5.4	48.6	45.9	100.0 (37)
유아	6.3	6.3	62.5	25.0	100.0 (16)
초등학생	0.0	11.1	88.9	0.0	100.0 (9)
$\chi^2(df)$		10.346(6)			
가구 구성					
본인+자녀	0.0	4.9	51.2	43.9	100.0 (41)
본인+자녀+가족 및 지인	4.8	9.5	71.4	14.3	100.0 (21)
$\chi^2(df)$		6.990(3)			
월 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0.0	3.4	41.4	55.2	100.0 (29)
100~200만원 미만	4.8	4.8	76.2	14.3	100.0 (21)
200만원 이상	0.0	16.7	66.7	16.7	100.0 (12)
$\chi^2(df)$		14.43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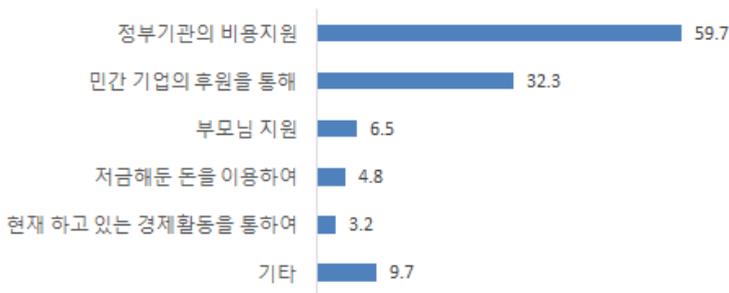
주: 미혼모 양육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교육비 충당방법을 복수응답으로 물어보았는데, 정부기관의 비용지원이 59.7%로 가장 높았고, 민간 기업의 후원이 32.3%로 다음을 차지했으며, 부모님 지원이나 개인 비용으로 교육비를 충당하고 있다는 답변은 총 8.0%로 복수응답임에도 10.0%가 채 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경우 정부나 민간의 지원을 통해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II-3-5 교육비 충당 방법(복수응답)

단위: %



주: <표 III-3-14> 중 일부를 그림으로 표현함.

표 III-3-14 교육비 총당 방법(복수응답)

단위: %(명)

구분	정부기관 비용지원	민간 기업 후원	부모님 지원	저금	경제활동	기타	(수)
전체	59.7	32.3	6.5	4.8	3.2	9.7	(62)
자녀 연령							
영아	56.8	32.4	10.8	5.4	2.7	8.1	(37)
유아	56.3	37.5	0.0	6.3	0.0	12.5	(16)
초등학생	77.8	22.2	0.0	0.0	11.1	11.1	(9)
가구 구성							
본인+자녀	70.7	31.7	2.4	7.3	2.4	9.8	(41)
본인+자녀+가족 및 지인	38.1	33.3	14.3	0.0	4.8	9.5	(21)
월 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65.5	31.0	0.0	3.4	3.4	10.3	(29)
100~200만원 미만	52.4	38.1	9.5	9.5	4.8	14.3	(21)
200만원 이상	58.3	25.0	16.7	0.0	0.0	0.0	(12)

주: 미혼모 양육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임.

학업 유지로 인한 어려움은 ‘육체적 피로’라고 응답한 경우가 43.5%로 가장 많았으며, 자녀 양육시간 부족이 ‘14.5%’, 자녀 돌봐줄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12.9%’로 주 이유로 나타났다.

그림 III-3-6 학업으로 인한 어려움



주: <표 III-3-15> 중 일부를 그림으로 표현함.

표 III-3-15 학업 유지 시 겪는 어려움

단위: %(명)

구분	육체 피로	양육 시간 부족	돌봄인력 구하기 어려움	직업 전망	경제 활동 제약	학업 내용	편견과 차별	기타	계(수)
전체	43.5	14.5	12.9	9.7	6.5	4.8	3.2	4.8	100.0 (62)
자녀구분									
영아	48.6	13.5	13.5	8.1	5.4	2.7	5.4	2.7	100.0 (37)
유아	37.5	12.5	18.8	12.5	6.3	6.3	0.0	6.3	100.0 (16)
초등학생	33.3	22.2	0.0	11.1	11.1	11.1	0.0	11.1	100.0 (9)
χ^2 (df)				6.862(14)					
어머니 연령									
만 24세 이하	57.1	14.3	7.1	14.3	7.1	0.0	0.0	0.0	100.0 (14)
만 25~29세	37.5	25.0	12.5	0.0	6.3	6.3	6.3	6.3	100.0 (16)
만 30~39세	50.0	9.1	13.6	9.1	9.1	4.5	0.0	4.5	100.0 (22)
만 40세 이상	20.0	10.0	20.0	20.0	0.0	10.0	10.0	10.0	100.0 (10)
χ^2 (df)				14.264(21)					
월 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34.5	20.7	13.8	6.9	10.3	6.9	3.4	3.4	100.0 (29)
100~200만원 미만	42.9	9.5	14.3	9.5	4.8	4.8	4.8	9.5	100.0 (21)
200만원 이상	66.7	8.3	8.3	16.7	0.0	0.0	0.0	0.0	100.0 (12)
χ^2 (df)				9.119(14)					

주: 미혼모 양육자원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다. 직업교육 경험

직업 교육을 받은 경험으로는 ‘그렇다’라는 응답이 51%로 과반수가 넘었다. 그 이유로는 복수응답으로 ‘자격증을 취득하려고’가 87.6%, ‘조건부 수급자이므로 생계급여 수급을 위해’라는 응답이 30.7%로 대다수의 응답을 차지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경우 취업교육을 받은 경험이 71.6%로 가장 많았고, 본인과 자녀만 살고 있을 경우 51.4%로 더 높게 나타났고, 취업상태가 취업중이거나 학업중인 경우 취업교육을 받은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16 직업교육 받은 경험 및 이유

단위: %(명)

구분	그렇다 (N=300)	자격증 취득	조건부 수급자	주변인 독려	기관 입소 대기 순위 및 점수	기타	(수)
전체	51.0	87.6	30.7	6.5	0.7	8.5	(153)
자녀구분							
영아	32.9	88.2	27.5	9.8	2.0	7.8	(51)
유아	69.0	87.8	30.6	4.1	0.0	8.2	(49)

구분	그렇다 (N=300)	자격증 취득	조건부 수급자	주변인 독려	기관 입소 대기 순위 및 점수	기타	(수)
초등학생 χ^2 (df)	71.6 48.915(4)***	86.8	34.0	5.7	0.0	9.4	(53)
어머니 연령							
만 24세 이하	46.8	81.8	40.9	9.1	0.0	4.5	(22)
만 25~29세	51.3	82.5	45.0	2.5	2.5	7.5	(40)
만 30~39세	45.4	93.2	23.7	5.1	0.0	11.9	(59)
만 40세 이상 χ^2 (df)	71.1 13.602(6)*	87.5	18.8	12.5	0.0	6.3	(32)
가구 구성							
본인+자녀	51.4	87.2	29.1	8.5	0.0	8.5	(117)
본인+재취+가족 및 자인 χ^2 (df)	37.5 14.059(2)***	88.9	36.1	0.0	2.8	8.3	(36)
취업 및 학업 상태							
취업중	60.8	91.1	26.7	8.9	0.0	8.9	(45)
구직중	54.3	92.1	31.6	2.6	0.0	5.3	(38)
학업중	64.5	80.0	32.5	5.0	2.5	10.0	(40)
전업주부 χ^2 (df)	31.9 22.825(6)***	86.7	33.3	10.0	0.0	10.0	(30)

주: 미혼모 양육자원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참여했던 직업훈련 프로그램으로는 컴퓨터 활용교육이 37.9%로 가장 많았고, 바리스타 교육, 피부미용, 간호조무사 등의 교육이 17.0%, 15.7%, 10.9%의 비율로 그 뒤를 이었다. 기타로는 제과제빵, 직업상담사, 천연비누, 디퓨저 제조, 세무회계 등이 포함되어 있다.

▮ 표 III-3-17 ▮ 참여했던 직업훈련 프로그램 종류(복수응답)

단위: %(명)

구분	컴퓨터 활용 교육	바리스타 교육	피부미용 교육	간호조 무사	네일아트 교육	조리사	보육 교사	기타	(수)
전체	37.9	17.0	15.7	10.9	7.2	7.1	4.5	23.8	(153)

주: 미혼모 양육자원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임.

복수응답으로 직업훈련을 받은 기관을 물어보았는데, 공공직업 훈련기관을 통한 경우가 42.5%로 가장 많았고, 사설 학원이 27.5%, 미혼모 관련 시설을 통한 경우가 23.5%, 여성인력 개발 센터를 통한 경우가 19.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직업훈련을 받은 기관으로는 공공직업훈련기관이 42.5%로 가장 높았고, 사설 학원이 27.5%, 미혼모 관련 시설 제공하는 직업훈련이 23.5%로 높았고, 여성 인력개

발센터 또는 여성회관에서 훈련을 받은 경우도 19.6%로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 표 III-3-18 ■ 직업훈련 받은 기관(복수응답)

단위: %(명)

구분	공공직업 훈련기관	사설 학원	미혼모 관련 시설	여성인력 개발센터 또는 여성회관	통신 강좌	직장 또는 근무 장소	기타	(수)
전체	42.5	27.5	23.5	19.6	5.9	2.0	5.9	(153)
거주지역								
대도시	42.7	23.2	31.7	20.7	6.1	1.2	3.7	(82)
중소도시	44.8	29.3	17.2	15.5	6.9	0.0	10.3	(58)
읍면지역	30.8	46.2	0.0	30.8	0.0	15.4	0.0	(13)
자녀 연령								
영아	45.1	19.6	37.3	11.8	2.0	5.9	3.9	(51)
유아	34.7	32.7	18.4	26.5	4.1	0.0	8.2	(49)
초등학생	47.2	30.2	15.1	20.8	11.3	0.0	5.7	(53)
가구 구성								
본인+자녀	43.6	26.5	23.1	18.8	6.8	2.6	6.0	(117)
본인+자녀+가족 및 자인	38.9	30.6	25.0	22.2	2.8	0.0	5.6	(36)
월 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46.3	23.9	31.3	16.4	4.5	0.0	4.5	(67)
100~200만원 미만	37.3	30.5	18.6	22.0	8.5	3.4	10.2	(59)
200만원 이상	44.4	29.6	14.8	22.2	3.7	3.7	0.0	(27)

주: 미혼모 양육자원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임.

직업훈련 비용의 경우 정부나 공공기관을 통한 취업교육을 많이 받은 것과 관련하여, 정부나 공공기관 지원이 66.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미혼모 당사자 협회를 통한 지원이 13.7%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그룹별 차이를 살펴보면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정부나 공공기관 지원의 직업훈련을 높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도시의 경우 미혼모 당사자협회를 통한 지원이 많이 나타났다. 또한, 가족과 같이 사는 경우도 부모님이 직업훈련비용을 지불한 경우는 많지 않았고, 소득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3-19 직업훈련 비용 부담 방법

단위: %(명)

구분	정부나 공공기관 지원	미혼모 당사자 협회 지원	미혼모 거주시설 지원	본인 부담	부모님 (가족, 친지) 부담	기타	계(수)
전체	66.7	13.7	9.8	6.5	2.0	1.3	100.0 (153)
거주지역							
대도시	58.5	23.2	8.5	6.1	2.4	1.2	100.0 (82)
중소도시	72.4	3.4	13.8	8.6	1.7	0.0	100.0 (58)
읍면지역	92.3	0.0	0.0	0.0	0.0	7.7	100.0 (13)
χ^2 (df)			22.754(10)*				
자녀 연령							
영아	49.0	17.6	21.6	3.9	3.9	3.9	100.0 (51)
유아	71.4	16.3	4.1	6.1	2.0	0.0	100.0 (49)
초등학생	79.2	7.5	3.8	9.4	0.0	0.0	100.0 (53)
χ^2 (df)			24.164(10)**				
어머니 연령							
만 24세 이하	63.6	4.5	27.3	0.0	4.5	0.0	100.0 (22)
만 25~29세	77.5	2.5	7.5	7.5	2.5	2.5	100.0 (40)
만 30~39세	67.8	16.9	3.4	8.5	1.7	1.7	100.0 (59)
만 40세 이상	53.1	28.1	12.5	6.3	0.0	0.0	100.0 (32)
χ^2 (df)			26.212(15)*				
가구 구성							
본인+자녀	67.5	10.3	12.0	6.8	1.7	1.7	100.0 (117)
본인+자녀+가족 및 자인	63.9	25.0	2.8	5.6	2.8	0.0	100.0 (36)
χ^2 (df)			7.630(5)				

주: 미혼모 양육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직업훈련 시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전체 취업훈련 경험자 중 37.3%가 취업 교육 동안 자녀돌봄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응답하였고, 26.8%가 취업교육 후 취업 이 우려된다고 응답하였으며, 13.7%는 적합한 프로그램이 없다는 것이 어려움이라고 답하였다. 따라서 취업훈련을 할 당시에 양육을 하면서 직업훈련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돌봄지원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표 III-3-20 직업훈련 시 겪는 어려움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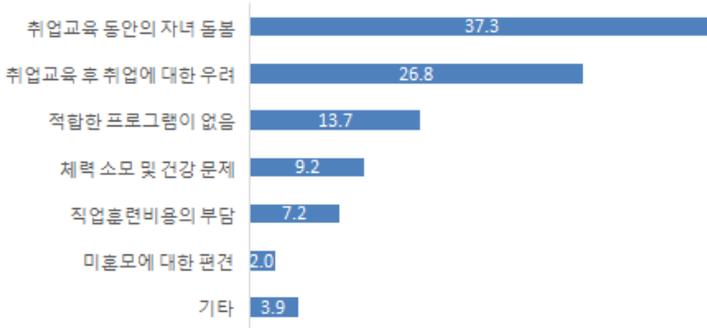
구분	취업교육 동안 자녀돌봄	취업교육 후 취업 우려	적합한 프로그램 없음	체력소모 및 건강문제	직업훈련 비용부담	미혼모에 대한 편견	기타	계(수)
전체	37.3	26.8	13.7	9.2	7.2	2.0	3.9	100.0 (153)

주: 미혼모 양육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 그림 III-3-7 || 직업훈련 시 겪는 어려움

단위: %



주: <표 III-3-20> 중 일부를 그림으로 표현함.

취업 훈련을 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 51.6%가 자격증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자격증 활용 여부를 물었을 때는 39.2%가 ‘그렇다’고 하였다. 취업훈련을 통해 경험자의 반 정도가 자격증을 취득하지만 자격증 활용 비율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재 취업중인 응답자들의 자격증 유무와 자격증 활용여부를 보면, 취업중인 응답자의 68.9%가 취업훈련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그 중 51.6%가 자격증을 활용하여 일을 하고 있어, 보다 활용성 높은 교육과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한다면 미혼모의 취업 및 자립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표 III-3-21 || 취업훈련을 통해 자격증 유무 및 활용여부

단위: %(명)

구분	자격증 유무		자격증활용여부		
	있다	(수)	그렇다	아니다	계 (수)
전체	51.6	(153)	39.2	60.8	100.0 (79)
자녀구분					
영아	41.2	(51)	28.6	71.4	100.0 (21)
유아	46.9	(49)	43.5	56.5	100.0 (23)
초등학생	66.0	(53)	42.9	57.1	100.0 (35)
$X^2 (df)$	7.069(2)*		1.368(2)		
취업 및 학업 상태					
취업중	68.9	(45)	51.6	48.4	100.0 (31)
구직중	52.6	(38)	45.0	55.0	100.0 (20)
학업중	45.0	(40)	22.2	77.8	100.0 (18)
전업주부	33.3	(30)	20.0	80.0	100.0 (10)
$X^2 (df)$	10.108(3)*		6.008(3)		

주: 미혼모 양육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취업교육의 개선점으로는 직업훈련이 훈련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 후 실제 취업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49.7%로 가장 높았고, '다양한 취업교육 분야'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28.1%, '전문성 강화'가 16.3%로 그 뒤를 이었다.

표 III-3-22 취업교육의 개선점

단위: %(명)

구분	직업훈련 후 취업 지원	다양한 교육 분야	전문성 강화	교육운영 및 관리	강사의 자질	기타	계(수)
전체	49.7	28.1	16.3	3.9	1.3	0.7	100.0 (153)

주: 미혼모 양육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4 임신·출산기 경험

가. 임신 출산 양육 결정과정

출산을 결정하게 된 주된 이유에 대해 어머니들에게 임신하였을 당시의 기억을 회상하며 응답하도록 하였다. 나의 아이이므로 출산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 고민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53.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임신 중절을 고려했으나 결심을 할 수 없어서(15%), 출산을 고민하였으나 아기 아버지와 함께 키우기로 약속해서 결심(10%), 임신중절하려 했으나 비용이 없어서(7%), 임신 중절 시기를 놓쳐서(6%), 가족 등 주변의 강한 양육 지지(3.7%) 등의 순서로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III-4-1 출산 결정의 주된 사유

단위: %(명)

구분	나의 아이이므로	임신중절 고려했으나 결심 할 수 없어서	아이아버지와 함께 양육하고 자함	임신 중절 비용	중절 시기 놓침	주변의 강한 양육 지지	최근 미혼모 인식변화	기타	계(수)
전체	53.7	15.0	10.0	7.0	6.0	3.7	0.7	4.0	100.0 (300)
임신 시 연령									
만 18세 이하	60.0	10.0	10.0	10.0	0.0	5.0	0.0	5.0	100.0 (20)
만 19~24세	46.5	16.3	11.6	10.5	7.0	3.5	1.2	3.5	100.0 (86)
만 25~29세	56.2	15.7	10.1	6.7	5.6	2.2	0.0	3.4	100.0 (89)
만 30세 이상	56.2	14.3	8.6	3.8	6.7	4.8	1.0	4.8	100.0 (105)
$\chi^2 (df)$									9.297(21)

구분	나의 아이이므로	임신중절을 고려했으나 결심 할 수 없어서	아이아버지와 함께 양육하고 자함	임신중절 비용	중절 시기 놓침	주변의 강한 양육 지지	최근 미혼모 인식변화	기타	계(수)
임신 시 학업 상태									
취업중	56.2	15.7	5.2	8.5	5.9	3.3	0.0	5.2	100.0 (153)
구직중	48.6	8.1	10.8	8.1	13.5	10.8	0.0	0.0	100.0 (37)
학업중	43.2	16.2	21.6	10.8	0.0	0.0	2.7	5.4	100.0 (37)
무직	56.2	16.4	13.7	1.4	5.5	2.7	1.4	2.7	100.0 (73)
$X^2 (df)$	35.801(a)*								

주: 미혼모 양육자원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임.

* $p < .05$.

III-4-1 출산 결정의 주된 사유

단위: %



주: <표 III-4-1> 중 일부를 그림으로 표현함.

혼자 아이를 키우게 된 주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임신사실을 알고 아이 아버지가 책임과 만남을 회피하여서’라는 응답이 46.3%에 달했다. 다음은 ‘자녀 양육을 함께 하다 이후에 아이 아버지의 변심과 무책임으로’가 17.3%로 나타났으며, ‘출산 당시 이미 사귀는 사이가 아니어서 연락하지 않는 상태였다’는 경우가 12.0%, ‘아이 아버지는 함께 키우기를 바랐으나, 내가 그 사람과 결혼할 생각이 없어서 헤어진 경우’가 9.7%, ‘임신 당시 함께 키우기로 했으나 가족의 반대 때문’이 5.3%로 조사되었다.

표 III-4-2 혼자 육아하게 된 주된 사유

단위: %(명)

구분	부의 책임 및 만남 회피	함께 양육 이후 부의 변심	사귀는 사이 아님	결혼할 생각 없어 헤어짐	함께 양육 고려했으나 가족 반대	기타	계(수)
전체	46.3	17.3	12.0	9.7	5.3	9.3	100.0 (300)
임신 시 연령							
만 18세 이하	35.0	20.0	5.0	10.0	15.0	15.0	100.0 (20)
만 19~24세	44.2	15.1	17.4	9.3	4.7	9.3	100.0 (86)
만 25~29세	44.9	19.1	10.1	9.0	5.6	11.2	100.0 (89)
만 30세 이상	51.4	10.5	3.8	17.1	10.5	6.7	100.0 (105)
$\chi^2(df)$			11.171(15)				
임신 시 학업 상태							
취업중	49.0	12.4	5.9	13.1	11.8	7.8	100.0 (153)
구직중	45.9	2.7	2.7	27.0	16.2	5.4	100.0 (37)
학업중	32.4	13.5	5.4	21.6	16.2	10.8	100.0 (37)
무직	47.9	5.5	5.5	19.2	8.2	13.7	100.0 (73)
$\chi^2(df)$			16.009(15)				

주: 미혼모 양육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임.

어머니들이 임신 사실을 알리고 난 뒤 주위의 반응에 대해 조사하였다. 먼저 아이 아버지와 부모, 친한 친구의 경우에 무엇보다 낙태를 권유했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아이 아버지는 낙태를 권유하고(37.3%), 양육 권유(25.7%), 만남 회피(20%)의 순서로 높은 반응의 양상을 보였다. 부모의 경우는 낙태 권유(30.7%), 입양 권장(20.0%), 알리지 않음(18.0%), 양육 권유(16.7%)의 순서이다. 형제자매의 경우는 양육 권유가 23.0%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알리지 않음(20.7%), 낙태 권유(19.7%), 입양 권장(13.0%)의 순서로 나타났다, 친한 친구는 낙태 권유(29.0%), 양육 권유(23.7%), 알리지 않음(20.3%), 입양 권장(11.3%)의 순서이다. 아이 아버지의 반응이 낙태 권유와 만남 회피 등의 비율이 높아 다른 경우와 차이를 보임이 뚜렷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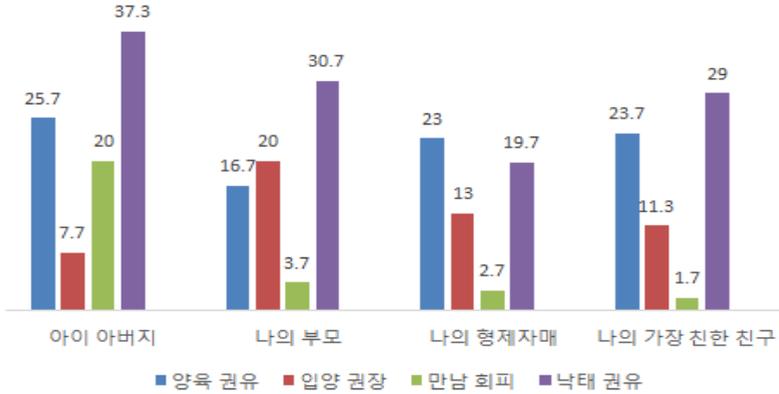
표 III-4-3 임신에 대한 주변 반응

단위: %(명), 점

구분	양육 권유	입양 권장	만남 회피	낙태 권유	알리지 않음	해당없음	계(수)
1) 아이 아버지	25.7	7.7	20.0	37.3	9.3	-	100.0 (300)
2) 나의 부모	16.7	20.0	3.7	30.7	18.0	11.0	100.0 (300)
3) 나의 형제자매	23.0	13.0	2.7	19.7	20.7	21.0	100.0 (300)
4) 나의 가장 친한 친구	23.7	11.3	1.7	29.0	20.3	14.0	100.0 (300)

|| 그림 III-4-2 || 임신에 대한 주변 반응

단위: %



주: <표 III-4-3> 중 일부를 그림으로 표현함.

어머니가 출산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준 사람에 대해서는 ‘없다’는 응답이 43.3%로 가장 많았다. 출산결정이 미혼모 어머니 본인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다음으로는 부모 16.7%, 시설 또는 기관 상담원 13.7%, 친구 7.0%, 형제자매 6.0%, 아이 아버지 3.7%의 순서로 나타났다.

|| 표 III-4-4 || 출산 결정 시 도움을 준 사람

단위: %(명)

구분	없음	나의 부모	시설 또는 기관 상담원	나의 친구	나의 형제자매	아이 아버지	종교인	미혼모 동료 경험자	직장 동료 및 상사	아이 아버지의 가족	나의 학교 선생	기타	계(수)
	전체	43.3	16.7	13.7	7.0	6.0	3.7	2.7	2.3	1.0	0.7	0.3	2.7
임신 시 연령													
만 18세 이하	50.0	15.0	15.0	0.0	5.0	10.0	0.0	0.0	0.0	0.0	5.0	0.0	100.0(20)
만 19~24세	39.5	18.6	12.8	14.0	3.5	5.8	2.3	2.3	0.0	1.2	0.0	0.0	100.0(86)
만 25~29세	49.4	11.2	16.9	4.5	4.5	1.1	1.1	4.5	2.2	1.1	0.0	3.4	100.0(89)
만 30세 이상	40.0	20.0	13.7	4.8	9.5	2.9	2.7	2.3	1.0	0.0	0.0	2.7	100.0(105)
$\chi^2(df)$													51.310(33)*
임신 시 학업 상태													
취업중	47.7	15.0	11.8	8.5	5.9	2.6	1.3	3.3	1.3	0.0	0.0	2.6	100.0(153)
구직중	45.9	24.3	5.4	0.0	2.7	0.0	10.8	5.4	0.0	0.0	0.0	5.4	100.0(37)
학업중	35.1	10.8	24.3	5.4	10.8	8.1	0.0	0.0	0.0	2.7	2.7	0.0	100.0(37)
무직	37.0	19.2	16.4	8.2	5.5	5.5	2.7	0.0	1.4	1.4	0.0	2.7	100.0(73)
$\chi^2(df)$													50.396(33)*

주: 미혼모 양육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미혼 어머니들이 입양을 보내거나 양육을 포기하지 않고 양육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준 사람에 대해서도 출산 결정 시와 유사하게 ‘없다’는 응답이 38.7%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부모 25%, 시설 또는 기관 상담원 10.3%, 친구 8%, 형제자매 6.3%, 미혼모 경험자 5.7%의 순서로 나타났다.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미혼모 경험자가 자녀양육 결정에 영향 미쳤다는 응답은 추후 미혼모를 위한 지원 시 미혼모 경험자가 지원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 표 III-4-5 ▣ 양육 결정 시 도움을 준 사람

단위: %(명)

구분	없음	나의 부모	시설 또는 기관 상담원	나의 친구	나의 형제 자매	미혼모 경험자	종교 인	아이 아버지	직장 동료 및 상사	기타	계(수)
전체	38.7	25.0	10.3	8.0	6.3	5.7	2.0	1.0	1.0	2.0	100.0 (300)
어머니 연령											
만 18세 이하	55.0	25.0	5.0	0.0	10.0	0.0	0.0	5.0	0.0	0.0	100.0 (20)
만 19~24세	33.7	29.1	10.5	17.4	3.5	3.5	2.3	0.0	0.0	0.0	100.0 (86)
만 25~29세	40.4	19.1	14.6	4.5	7.9	7.9	1.1	0.0	2.2	2.2	100.0 (89)
만 30세 이상	38.1	26.7	7.6	4.8	6.7	6.7	2.9	1.9	1.0	3.8	100.0 (105)
$\chi^2 (df)$						38.697(27)					
취업 및 학업 상태											
취업중	42.5	24.2	11.1	6.5	4.6	6.5	1.3	0.0	1.3	2.0	100.0 (153)
구직중	27.0	32.4	5.4	8.1	8.1	5.4	10.8	0.0	0.0	2.7	100.0 (37)
학업중	40.5	21.6	8.1	10.8	8.1	5.4	0.0	5.4	0.0	0.0	100.0 (37)
무직	35.6	24.7	12.3	9.6	8.2	4.1	0.0	1.4	1.4	2.7	100.0 (73)
$\chi^2 (df)$						35.713(27)					

주: 미혼모 양육자원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자녀를 양육하기로 결정하던 당시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이었는지 질문하였다. 경제적 문제라고 답한 경우가 76.3%로 다른 무엇보다도 큰 고민이었고, 다음은 사회의 냉대와 주위의 시선(9.0%), 주거문제(5.3%), 가족과의 관계(5.0%)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임신 당시 어머니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집단에서 경제적 문제와 사회적 냉대와 주위 시선이라는 응답비율이 다른 경우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다. 임신 당시 구직 중이었던 경우 경제적 문제에의 응답비율이 더 높았고, 학업 중인 경우에는 사회적 냉대와 주위 시선 응답비율이 다른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III-4-6 양육 결정 시 가장 큰 고민거리

단위: %(명)

구분	경제적 인 문제	사회의 냉대와 주위의 시선	주거 문제	가족과 의 관계	아이 아버지 와의 관계	학업 또는 진로 문제	기타	계(수)
전체	76.3	9.0	5.3	5.0	2.3	1.0	1.0	100.0 (300)
임신 시 연령								
만 18세 이하	65.0	10.0	0.0	10.0	5.0	10.0	0.0	100.0 (20)
만 19~24세	77.9	5.8	8.1	7.0	0.0	1.2	0.0	100.0 (86)
만 25~29세	75.3	7.9	6.7	4.5	4.5	0.0	1.1	100.0 (89)
만 30세 이상	78.1	12.4	2.9	2.9	1.9	0.0	1.9	100.0 (105)
$\chi^2(df)$				34.006(18)*				
임신 시 학업 상태								
취업중	75.2	9.8	5.9	4.6	2.6	0.0	2.0	100.0 (153)
구직중	86.5	2.7	8.1	0.0	2.7	0.0	0.0	100.0 (37)
학업중	70.3	13.5	0.0	8.1	0.0	8.1	0.0	100.0 (37)
무직	76.7	8.2	5.5	6.8	2.7	0.0	0.0	100.0 (73)
$\chi^2(df)$				34.245(18)*				

주: 미혼모 양육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나. 임신기 의료시설 이용 및 산후조리

임신시기 의료검진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언제 처음으로 태아의 검진을 위해 의료 시설을 방문하였는지 조사하였다. 임신 9주 이전에 병원을 찾았다는 응답이 46.3%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임신 9주~13주(20.3%), 임신 14주~24주(14%), 임신 25주~33주(13.3%), 임신 34주 이후(2.3%), 출산 때까지 가지 않음(3.7%)의 순서로 나타났다. 임신 13주까지 66.6%가 병원을 찾았다는 결과는 고무적이나, 약 4%에 달하는 미혼모가 출산 전에 전혀 병원을 찾지 않았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표 III-4-7 태아 검진을 위한 의료시설 첫 방문 시기

단위: %(명)

구분	임신 9주 이전	임신 9주~13주	임신 14주~24주	임신 25주~33주	임신 34주 이후	출산 까지 가지 않음	계(수)
전체	46.3	20.3	14.0	13.3	2.3	3.7	100.0 (300)
임신 시 연령							
만 18세 이하	25.0	25.0	15.0	35.0	0.0	0.0	100.0 (20)
만 19~24세	43.0	19.8	11.6	15.1	3.5	7.0	100.0 (86)
만 25~29세	49.4	19.1	16.9	10.1	1.1	3.4	100.0 (89)
만 30세 이상	50.5	21.0	13.3	10.5	2.9	1.9	100.0 (105)
$\chi^2(df)$				18.403(15)			

구분	임신 9주 이전	임신 9주~13주	임신 14주~24주	임신 25주~33주	임신 34주 이후	출산 까지 가지 않음	계(수)
임신 시 학업 상태							
취업중	46.4	20.3	15.7	10.5	2.6	4.6	100.0 (153)
구직중	37.8	27.0	18.9	10.8	2.7	2.7	100.0 (37)
학업중	43.2	21.6	10.8	18.9	0.0	5.4	100.0 (37)
무직	52.1	16.4	9.6	17.8	2.7	1.4	100.0 (73)
$X^2(df)$							10.662(15)

주: 미혼모 양육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임신 14주 이후에 처음 병원을 찾았다고 응답한 미혼모들을 대상으로 의료시설에 늦게 가거나 찾지 않은 이유에 대해 살펴보았다. 병원비가 없어서라는 응답이 34.0%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출산여부를 결정하지 못해서 16.0%, 병원에 가기가 두려워서 14.0%, 임신 사실을 다른 사람이 알게 될까봐 9.0%, 아이 아버지와와의 관계 정리 등의 이유로 4.0% 등으로 나타났다.

표 III-4-8 의료시설 방문 지체 사유

단위: %(명)

구분	병원비 없어서	출산여부 결정 못 함	두려워서	임신 사실 노출 우려	아이 부와 관계 정리	기타	계(수)
전체	34.0	16.0	14.0	9.0	4.0	23.0	100.0 (100)
임신 시 연령							
만 18세 이하	40.0	30.0	10.0	10.0	0.0	10.0	100.0 (10)
만 19~24세	37.5	12.5	15.6	15.6	6.3	12.5	100.0 (32)
만 25~29세	39.3	7.1	21.4	3.6	0.0	28.6	100.0 (28)
만 30~39세	6.7	6.7	6.7	23.3	23.3	33.3	100.0 (30)
$X^2(df)$							16.905(15)
임신 시 학업 상태							
취업중	35.3	15.7	11.8	9.8	3.9	23.5	100.0 (51)
구직중	38.5	7.7	7.7	7.7	7.7	30.8	100.0 (13)
학업중	23.1	23.1	30.8	7.7	0.0	15.4	100.0 (13)
무직	34.8	17.4	13.0	8.7	4.3	21.7	100.0 (23)
$X^2(df)$							6.488(15)

주: 미혼모 양육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출산 후 산후조리 장소에 대해 조사한 결과, 산후조리를 하지 못했다는 경우가 응답자의 28.3%이고, 미혼모 시설이라는 경우가 23%, 산후조리원 18.3%, 부모님 집 14.7%, 나의 집 13.3%, 형제자매의 집 2.0%, 친구의 집 0.3%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표 III-4-9 산후조리 장소

단위: %(명)

구분	산후조리 못함	미혼모 시설	산후조리원	부모님 집	나의 집	형제 자매 집	친구 집	계(수)
전체	28.3	23.0	18.3	14.7	13.3	2.0	0.3	100.0 (300)
임신 시 연령								
만 18세 이하	20.0	15.0	0.0	5.0	0.0	25.0	35.0	100.0 (20)
만 19~24세	11.6	16.3	10.5	1.2	1.2	25.6	33.7	100.0 (86)
만 25~29세	16.9	12.4	12.4	2.2	0.0	28.1	28.1	100.0 (89)
만 30세 이상	22.9	16.2	24.8	15.2	19.0	1.9	0.0	100.0 (105)
$\chi^2(df)$				20.378(18)				
임신 시 학업 상태								
취업중	26.8	24.2	21.6	14.4	12.4	0.7	0.0	100.0 (153)
구직중	29.7	10.8	18.9	18.9	16.2	5.4	0.0	100.0 (37)
학업중	32.4	18.9	18.9	13.5	13.5	2.7	0.0	100.0 (37)
무직	28.8	28.8	11.0	13.7	13.7	2.7	1.4	100.0 (73)
$\chi^2(df)$				15.049(18)				

주: 미혼모 양육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산후조리 시 정부지원 산후도우미의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도움을 받았다는 경우는 13.2%에 불과하였다. 임신 당시 연령이 높은 30대 미혼모들이 정부의 산후도우미를 이용한 경우가 26.3%인 반면, 24세 이하 연령에서는 전혀 이용 경험이 없었다. 정부 지원정책에 대한 홍보와 안내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III-4-10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이용 여부

단위: %(명)

구분	도움을 받았다	도움을 받지 않았다	계(수)
전체	13.2	86.8	100.0 (91)
임신 시 연령			
만 18세 이하	0.0	100.0	100.0 (4)
만 19~24세	0.0	100.0	100.0 (25)
만 25~29세	8.3	91.7	100.0 (24)
만 30~39세	26.3	73.7	100.0 (38)
$\chi^2(df)$		10.621(3)*	
임신 시 학업 상태			
취업중	19.0	81.0	100.0 (42)
구직중	0.0	100.0	100.0 (15)
학업중	0.0	100.0	100.0 (11)
무직	17.4	82.6	100.0 (23)
$\chi^2(df)$		5.565(3)	

주: 미혼모 양육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정부지원 산후도우미의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는 미혼모를 대상으로 정보의 습득경로를 조사하였다. 일반 블로그 및 미혼모 인터넷 카페에서 정보를 얻은 경우가 41.7%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주민센터로 25.0%, 미혼모 시설 8.3%, 정부 정보 제공 사이트 8.3%의 순이다.

표 III-4-11 정부지원 산후도우미에 대한 정보 습득 경로

단위: %(명)

구분	블로그 및 인터넷 미혼모 카페	주민 센터	미혼모 시설	정부 사이트	기타	계(수)
전체	41.7	25.0	8.3	8.3	16.7	100.0 (12)
임신 시 연령						
만 25~29세	0.0	50.0	0.0	0.0	50.0	100.0 (2)
만 30세 이상	50.0	20.0	10.0	10.0	10.0	100.0 (10)
$\chi^2 (df)$			3.600(4)			
임신 시 학업 상태						
취업중	62.5	12.5	0.0	12.5	12.5	100.0 (8)
무직	0.0	50.0	25.0	0.0	25.0	100.0 (4)
$\chi^2 (df)$			6.750(4)			

주: 미혼모 양육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임신 및 출산 비용 지불 방법은 복수응답으로 받았을 때,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했다는 응답이 71.3%로 가장 높았고, '월급 및 저축'이 37.7%, '미혼모 시설 및 지원 단체의 도움'이 36.0%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부모의 도움으로 출산비용을 지불했다는 응답이 18.7%정도였다. 임신 당시 연령으로 25세 이상의 경우는 '월급 및 저축'을 이용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임신 시 취업중일 경우, 월급 및 저축, 무직이나 학업중일 경우는 미혼모 시설 및 지원 단체를 통한 도움을 받는 경우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현재 자녀 연령으로 초등학교생의 경우 국민행복카드 이용률이 낮은 이유는 국민행복카드(구 고운맘카드)를 통한 임신, 출산 비용지원이 2009년 이후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 임신 및 출산을 한 경우는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없었음을 감안한 해석이 필요하다.

Ⅱ 표 III-4-12 Ⅱ 임신 및 출산 비용 지불 방법(복수응답)

단위: %(명)

구분	국민행복 카드	월급 및 저축	미혼모 시설 및 지원단체	부모 도움	아이 아버지	대출	기타	(수)
전체	71.3	37.7	36.0	18.7	5.0	3.7	6.0	(300)
임신 시 연령								
만 18세 이하	75.0	10.0	35.0	20.0	5.0	0.0	0.0	(20)
만 19~24세	74.4	25.6	44.2	17.4	3.5	1.2	8.1	(86)
만 25~29세	59.6	47.2	39.3	16.9	4.5	4.5	4.5	(89)
만 30세 이상	78.1	47.6	26.7	21.0	6.7	5.7	6.7	(105)
임신 시 취업상태								
취업중	75.2	47.7	31.4	18.3	3.9	3.9	4.6	(153)
구직중	70.3	35.1	21.6	29.7	2.7	0.0	10.8	(37)
학업중	70.3	27.0	43.2	13.5	10.8	0.0	2.7	(37)
무직	64.4	23.3	47.9	15.1	5.5	4.1	5.5	(73)
자녀 연령								
영아	81.3	36.8	36.8	24.5	3.9	3.9	6.5	(155)
유아	71.8	39.4	32.4	14.1	9.9	2.8	4.2	(71)
초등학생	50.0	37.8	37.8	10.8	2.7	4.1	6.8	(74)

주: 미혼모 양육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국민행복카드의 발급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의 85.0%는 발급을 받았고, 약 15.0%는 발급받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국민행복카드의 발급받지 않은 미혼모를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해 질의하였다. 2008년 이후 고운맘 카드가 도입되었으므로 출산 당시 임신 및 출산 지원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7.8%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그런 카드가 있는지 알지 못해서 31.1%, 출산결정을 하지 못한 상태이어서가 11.1%, 그런 카드가 있는 것은 알았지만 발급받는 방법을 몰라서가 6.7%, 당시 미성년이어서 서류발급이 제한되어서가 2.2% 등의 이유가 확인되었다.

미혼모의 연령을 중심으로 비교해 보면 임신 당시 18세 이하의 어린 연령 집단에서 카드와 지원이 있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비율과 미성년자 서류제한으로 인한 비율이 높았고, 만 19~24세의 집단에서는 출산을 결정하지 못해서, 만 30세 이상 집단에서는 출산 당시 임신 및 출산 지원이 없어서라는 이유가 많았다.



표 III-4-13 국민행복카드 발급 여부

단위: %(명)

구분	없다 (N=300)	존재 모름	발급 받는 법 모름	미성년자 서류제한	출산 미결정	출산 시 미지원	기타	계(수)
전체	15.0	31.1	6.7	2.2	11.1	37.8	11.1	100.0 (45)
임신 시 연령								
만 18세 이하	10.0	50.0	0.0	50.0	0.0	0.0	0.0	100.0 (2)
만 19~24세	12.8	27.3	18.2	0.0	27.3	18.2	9.1	100.0 (11)
만 25~29세	20.2	33.3	5.6	0.0	5.6	44.4	11.1	100.0 (18)
만 30세 이상	13.3	28.6	0.0	0.0	7.1	50.0	14.3	100.0 (14)
χ^2 (df)	2.856(3)			31.662(15)**				
임신 시 학업 상태								
취업중	13.7	28.6	9.5	0.0	14.3	38.1	9.5	100.0 (21)
구직중	18.9	71.4	0.0	0.0	0.0	14.3	14.3	100.0 (7)
학업중	13.5	40.0	20.0	0.0	20.0	20.0	0.0	100.0 (5)
무직	16.4	8.3	0.0	8.3	8.3	58.3	16.7	100.0 (12)
χ^2 (df)	.823(3)			16.627(15)				

주: 미혼모 양육자원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5 정책 지원 경험 및 요구

가. 미혼모 차별 경험

미혼모 차별 경험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1.7%가 ‘매우 심각하다’, 44.3%가 ‘심각한 편이다’라고 응답하여 전체의 76.0%가 매우 심각하거나 심각하다고 응답하여, 미혼모가 느끼는 차별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특히 자녀가 영유아 시기보다 초등학생 시기에 차별수준을 높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연령이 높을수록 차별을 심각하게 느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III-5-1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수준

단위: %(명), 점

구분	① 전혀 없다	② 별로 없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심각한 편이다	⑤ 매우 심각하다	계(수)	평균
전체	0.7	3.0	20.3	44.3	31.7	100.0 (300)	4.0
자녀구분							
영아	1.3	3.2	24.5	43.9	27.1	100.0 (155)	3.9
유아	0.0	4.2	22.5	42.3	31.0	100.0 (71)	4.0
초등학생	0.0	1.4	9.5	47.3	41.9	100.0 (74)	4.3
χ^2 (df)			12.429(8)				5.2**

구분	① 전혀 없다	② 별로 없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심각한 편이다	⑤ 매우 심각하다	계(수)	평균
어머니 연령							
만 24세 이하	2.1	4.3	34.0	44.7	14.9	100.0 (47)	3.7
만 25~29세	1.3	1.3	20.5	39.7	37.2	100.0 (78)	4.1
만 30~39세	0.0	4.6	16.2	47.7	31.5	100.0 (130)	4.1
만 40세 이상	0.0	0.0	17.8	42.2	40.0	100.0 (45)	4.2
χ^2 (df)			18.876(12)				4.2**

주: 미혼모 양육자임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 표 III-5-2 ▮ 사회적 차별 경험

단위: %(명), 점

구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계(수)	평균
1) 혼전 임신 이후, 직장 또는 학교에서 권고사직이나 자퇴를 강요받은 적이 있다	43.0	17.3	16.0	13.7	10.0	100.0 (300)	2.3
2) 나는 미혼모라는 이유로 주민센터 또는 구청 이용 시 냉대를 받은 적이 있다	25.3	20.3	15.7	24.0	14.7	100.0 (300)	2.8
3) 나는 미혼모라는 이유로 주민센터 또는 구청 이용 시 개인정보를 보호받지 못한 적이 있다	30.7	25.0	19.7	12.7	12.0	100.0 (300)	2.5
4) 나는 미혼모라는 이유로 보육기관 이용 시 불이익을 당한 적이 있다	37.7	27.0	17.3	9.3	8.7	100.0 (300)	2.2
5) 나는 미혼모라는 이유로 임신·출산 시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이용하지 못한 적이 있다	38.3	28.7	18.7	6.7	7.7	100.0 (300)	2.2
6) 주거 계약 시, 미혼모라는 이유로 월세나 전세 계약을 거부당한 적이 있다	52.3	27.0	12.3	3.3	5.0	100.0 (300)	1.8
7) 병원, 보건소 등 의료기관 이용 시 담당자로부터 미혼모에 대한 모욕적인 내용의 말을 들은 적이 있다	41.3	26.3	13.7	8.7	10.0	100.0 (300)	2.2
8) 미혼모라는 이유로 남성에게 데이트를 거절당한 적이 있다	53.3	15.3	12.0	7.7	11.7	100.0 (300)	2.1
9) 미혼모라는 이유로 사귀는 남성의 가족들이 교제를 반대한 적이 있다	47.7	12.3	16.7	9.3	14.0	100.0 (300)	2.3
10) 내가 미혼모임을 밝힌 후, 주변 사람들이 나와 연락을 끊은 적이 있다	37.0	14.7	16.0	19.7	12.7	100.0 (300)	2.6
11) 미혼모라는 이유로 자녀의 학부모모임에 초대받지 못한 적이 있다	50.7	20.3	17.0	5.3	6.7	100.0 (300)	2.0
12) 미혼모라는 이유로 가족의 의사결정과정에서 내 의견이 무시당한 적이 있다	39.0	19.7	14.7	13.0	13.7	100.0 (300)	2.4
13) 나는 미혼모라는 이유로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내 의견이 무시당한 적이 있다	43.3	24.3	14.3	10.0	8.0	100.0 (300)	2.2
14) 미혼모임이 알려진 후, 직장이나 학교동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다	46.7	21.3	15.3	8.3	8.3	100.0 (300)	2.1
15) 미혼모를 성적으로 부도덕한 사람으로 비난	30.3	15.0	14.0	19.3	21.3	100.0 (300)	2.9

구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계(수)	평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16) 미혼모가 아이를 양육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19.3	10.7	14.3	26.3	29.3	100.0 (300)	3.4
17) 미혼모라는 이유로, 나의 장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17.0	9.0	16.3	25.7	32.0	100.0 (300)	3.5
18) 미혼모라는 이유로, 사람들이 나의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20.0	13.7	14.7	19.7	32.0	100.0 (300)	3.3
19) 내가 미혼모이기 때문에 혼전임신을 한 것에 대해 비난 받은 적이 있다	17.3	14.3	19.3	19.7	29.3	100.0 (300)	3.3
20) 미혼모라는 이유로 재능이나 능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26.7	18.7	19.3	16.3	19.0	100.0 (300)	2.8
21) 사회의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보다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은 적이 있다	14.7	9.3	12.0	28.7	35.3	100.0 (300)	3.6

주: 미혼모 양육자원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임.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물었을 때는 미혼부의 법적 책임 강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41.3%에 달했다. 미혼모의 자립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35.3%로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미혼모 차별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12.7%로 높게 나타났다. 그룹 차이를 살펴보면, 영아 자녀를 둔 응답자가 미혼부의 법적 책임강화를 가장 크게 느끼고 있었고, 초등학생 자녀를 둔 응답자는 미디어를 통한 캠페인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다른 자녀연령 그룹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 표 III-5-3 ▣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

단위: %(명)

구분	미혼부의 법적 책임 강화	미혼모의 자립지원 강화	미혼모차별 법·제도 개선	미디어를 통한 대국민 공공 캠페인	가족 관계개선 및 이웃교류 프로그램	계(수)
전체	41.3	35.3	12.7	8.0	2.7	100.0 (300)
자녀구분						
영아	47.1	37.4	10.3	3.2	1.9	100.0 (155)
유아	38.0	35.2	15.5	9.9	1.4	100.0 (71)
초등학생	32.4	31.1	14.9	16.2	5.4	100.0 (74)
$\chi^2(df)$			18.605(8)*			

구분	미혼부의 법적 책임 강화	미혼모의 자립지원 강화	미혼모차별 법·제도 개선	미디어를 통한 대국민 공공 캠페인	가족 관계개선 및 이웃교류 프로그램	계(수)
어머니 연령						
만 24세 이하	31.9	44.7	17.0	4.3	2.1	100.0 (47)
만 25~29세	52.6	30.8	11.5	3.8	1.3	100.0 (78)
만 30~39세	39.2	36.2	13.8	9.2	1.5	100.0 (130)
만 40세 이상	37.8	31.1	6.7	15.6	8.9	100.0 (45)
$\chi^2 (df)$			21.472(12)*			
취업 및 학업 상태						
취업중	29.7	36.5	10.8	16.2	6.8	100.0 (74)
구직중	44.3	37.1	14.3	4.3	0.0	100.0 (70)
학업중	46.8	32.3	6.5	11.3	3.2	100.0 (62)
전업주부	44.7	35.1	17.0	2.1	1.1	100.0 (94)
$\chi^2 (df)$			26.991(12)**			

주: 미혼모 양육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나. 미혼모 지원 정책 경험

미혼모 가구가 주로 지원받고 있는 지원정책들은 한부모 가족이 받을 수 있는 혜택, 저소득 가구가 받을 수 있는 혜택 등 다양한 기준에 의해서 받게 되는데, 각각 가구의 소득 및 상황에 따라 지원 자격이 달라지지만, 각각의 다양한 지원 정책을 얼마나 지원받았고, 지원받고 있으며, 만족도는 어떤지 알아보았다.

저소득 한부모 지원은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가 53.3%이고, 과거에는 받았으나 현재 받고 있지 않는 가구가 17.3%를 보였다. 저소득 한부모가 받을 수 있는 아동양육비를 받거나 받고 있는 비율은 전체 저소득 한부모 비율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저소득 한부모 비율과 아동양육비 수혜비율은 꽤 높음에도, 학용품비, 출산 의료비 지원 및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은 현재 및 과거에 이용경험이 있는 가구가 각각 14.0%, 12.0%, 8.4%로 15.0%도 채 되지 않았다. 특히 36개월 이하 자녀를 둔 저소득 한부모에 해당하는 미혼모가 받을 수 있는 미혼모·부 초기지원 수혜 비율도 현재 받고 있는 가구가 9.0%, 받은 경험이 있는 가구가 11.3%로 낮은 편으로 나타났으나 3.5점의 만족도를 보여, 꽤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또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도 이용률은 현재, 과거 각각 4.7%, 3.7%로 낮게 나타나나, 3.7점의 만족도로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응답자 중 정부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61.0%로 과반수 이상임을 알 수 있

으며, 정부지원임대주택 거주, 주거비 지원 등도 각각 43.3%, 41.0%로 꽤 높은 비율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스포츠강좌이용권/문화 바우처 제공(46.3% 이용 중) 및 방과후 보육료 지원(20.7% 이용 중) 등 아동의 수업 외 여가 및 교육에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각각 3.5점, 3.7점의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 표 III-5-4 ■ 지원 프로그램 이용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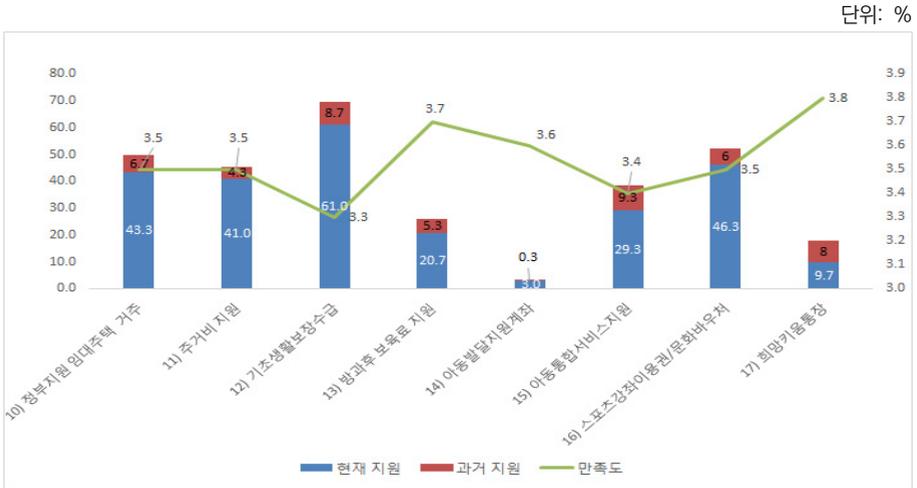
단위: %(명), 점

구분	① 현재 지원받고 있음	② 과거 받았으나 현재 받지 않음	③ 지원 경험 없음	계 (수)	만족도 평균
1) 법정한부모 자격	53.3	17.3	29.3	100.0 (300)	2.8
2) 저소득한부모 아동양육비	44.7	24.3	31.0	100.0 (300)	2.9
3) 저소득한부모 학용품비	13.3	0.7	86.0	100.0 (300)	3.0
4)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4.7	7.3	88.0	100.0 (300)	3.7
5)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4.7	3.7	91.7	100.0 (300)	3.4
6) 미혼모·부 초기지원	9.0	11.3	79.7	100.0 (300)	3.5
7)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사업	6.7	7.3	86.0	100.0 (300)	3.0
8)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	7.7	2.3	90.0	100.0 (300)	3.3
9)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10.3	24.3	65.3	100.0 (300)	2.9
10) 정부지원 임대주택 거주	43.3	6.7	50.0	100.0 (300)	3.5
11) 주거비 지원	41.0	4.3	54.7	100.0 (300)	3.5
12) 기초생활보장수급	61.0	8.7	30.3	100.0 (300)	3.3
13) 방과후 보육료 지원	20.7	5.3	74.0	100.0 (300)	3.7
14) 아동발달지원계좌	3.0	0.3	96.7	100.0 (300)	3.6
15) 아동통합서비스지원	29.3	9.3	61.3	100.0 (300)	3.4
16) 스포츠강좌이용권/문화바우처	46.3	6.0	47.7	100.0 (300)	3.5
17) 희망키움통장	9.7	8.0	82.3	100.0 (300)	3.8

주: 1) 미혼모 양육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임.

2) 매우 불만족=1점, 약간불만족=2점, 보통=3점, 약간만족=4점, 매우만족=5점.

그림 III-5-1 저소득층 대상 지원 프로그램 이용 경험



주: <표 III-5-4> 중 저소득층 대상 지원프로그램 이용경험을 그림으로 표현함.

그림 III-5-2 한부모 대상 지원 프로그램 이용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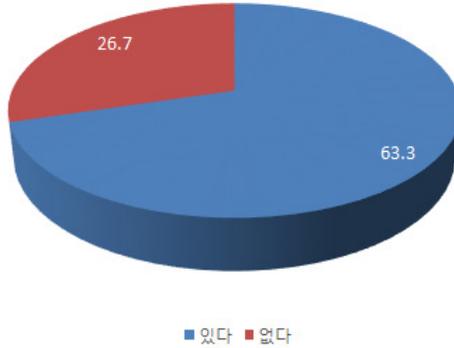
주: <표 III-5-4> 중 한부모 대상 지원 프로그램 지원을 그림으로 표현함.

다. 부모교육 경험

부모교육 경험에 대해 물어보았다. 전체 응답자의 63.3%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2017년 진행된 한부모 대상 연구에서는 부모교육 참여 경험이 있다고 한 응답자가 44.3%였던 것에 비해(배운진·조숙인·장문영, 2017: 138), 상당히 높은 수치이다.

그림 III-5-3 미혼모가 된 이후 부모교육 참여 경험

단위: %



주: <표 III-5-5> 중 일부를 그림으로 표현함.

집단별로 살펴보았을 때, 대도시 일수록 부모교육 참여 경험이 높았고, 초등학교 자녀를 둔 경우 참여경험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보다 자녀와 둘이 살 경우 부모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높았다. 또한 소득 200만원 이하의 경우 200만원 이상의 경우보다 부모교육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부모교육 참여 경험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참여유형을 물었을 때, ‘미혼모 관련 단체에서 교육을 받았다’는 응답이 62.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미혼모 거점기관에서의 교육이 41.1%, 미혼모 거점기관 외 정부기관에서의 교육도 21.6%로 정부기관에서 받는 교육이 62.7% 정도로 높게 나타났고,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에서의 교육은 24.2%로 나타났다.

표 III-5-5 미혼모가 된 이후 부모교육 참여 경험

단위: %(명)

구분	있다	계(수)	미혼모 관련 단체	미혼모 거점기관	학교나 유치원·어린이집	미혼모 거점기관 외 정부기관	기타	(수)
전체	63.3	100.0 (300)	62.1	41.1	24.2	21.6	1.6	(190)
거주지역								
대도시	75.3	100.0 (154)	61.2	43.1	23.3	21.6	0.0	(116)
중소도시	56.1	100.0 (107)	65.0	43.3	20.0	18.3	5.0	(60)
읍면지역	35.9	100.0 (39)	57.1	14.3	50.0	35.7	0.0	(14)
$\chi^2(df)$	24.605(2)***							

구분	있다	계(수)	미혼모 관련 단체	미혼모 거점 기관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	미혼모 거점기관 외 정부기관	기타	(수)
자녀구분								
영아	48.4	100.0 (155)	58.7	48.0	13.3	16.0	4.0	(75)
유아	76.1	100.0 (71)	70.4	35.2	31.5	25.9	0.0	(54)
초등학생	82.4	100.0 (74)	59.0	37.7	31.1	24.6	0.0	(61)
χ^2 (df)	31.484(2)***							
어머니 연령								
만 24세 이하	63.8	100.0 (47)	50.0	46.7	20.0	10.0	3.3	(30)
만 25~29세	52.6	100.0 (78)	65.9	51.2	22.0	24.4	2.4	(41)
만 30~39세	61.5	100.0 (130)	66.3	32.5	20.0	17.5	1.3	(80)
만 40세 이상	86.7	100.0 (45)	59.0	43.6	38.5	35.9	0.0	(39)
χ^2 (df)	14.631(3)**							
가구 구성								
본인+자녀	72.1	100.0 (204)	59.9	43.5	22.4	22.4	1.4	(147)
본인+자녀+가족 및 자인	44.8	100.0 (96)	69.8	32.6	30.2	18.6	2.3	(43)
χ^2 (df)	20.900(1)***							
월 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69.8	100.0 (116)	58.0	49.4	21.0	18.5	2.5	(81)
100~200만원 미만	64.8	100.0 (122)	63.3	35.4	24.1	25.3	1.3	(79)
200만원 이상	48.4	100.0 (62)	70.0	33.3	33.3	20.0	0.0	(30)
χ^2 (df)	8.177(2)*							
취업 및 학업 상태								
취업중	74.3	100.0 (74)	69.1	40.0	32.7	21.8	0.0	(55)
구직중	70.0	100.0 (70)	61.2	44.9	24.5	20.4	2.0	(49)
학업중	77.4	100.0 (62)	64.6	43.8	18.8	20.8	2.1	(48)
전업주부	40.4	100.0 (94)	50.0	34.2	18.4	23.7	2.6	(38)
χ^2 (df)	31.72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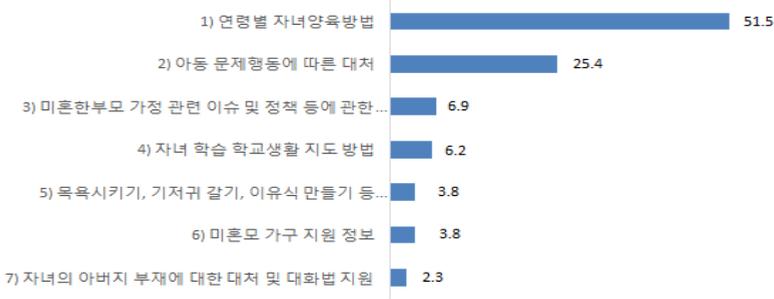
주: 미혼모 양육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부모교육 경험이 있는 사람 중 부모교육이 도움이 되었느냐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에 응답한 사람은 68.4%였으며, 도움이 되었다고 한 사람을 대상으로 부모교육 영역별 도움 정도를 물었다. 그 중 연령별 자녀 양육방법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51.5%였고, 아동 문제행동에 따른 대처가 25.4%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현재 미혼모·부를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이 다양하지 않고, 기본적인 자녀양육방법에 국한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도움정도가 낮게 나타난 영역에 대해서도 교육 필요성을 강구해볼 필요가 있다.

|| 그림 III-5-4 || 부모교육 영역별 도움 정도

단위: %, n= 130



주: 미혼모 양육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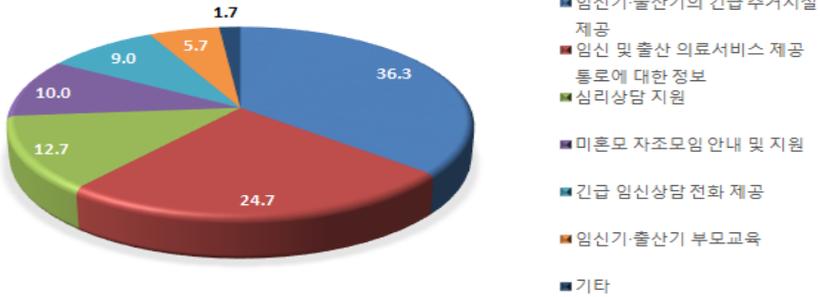
라. 미혼모 시기별 정책 요구

미혼모에 대한 지원 정책이 임신기, 출산기, 양육기 등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미혼모에 필요한 정책 요구를 ‘임신기·출산기’와 ‘양육기’로 나누어 물어보았다. 임신기·출산기 지원을 위해 보완되어야 하는 서비스 중 가장 중요한 서비스로 1순위만 선택하게 했을 때, 응답자의 36.3%가 ‘임신기, 출산기의 긴급주거시설 제공 필요’를 선택하였다. 또한 ‘임신 및 출산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24.7%, 심리상담 지원이 12.7%로 높게 나타났다.

그룹별로 살펴보면 어머니 연령이 어릴수록, 본인과 자녀만 살고 있는 경우, 소득이 낮을수록, 학업중인 경우, 긴급주거시설제공이 필요한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III-5-5 임신기·출산기 지원을 위해 보완되어야 할 지원 서비스

단위: %, n=300



주: <표 III-5-6> 중 일부를 그림으로 표현함.

III-5-6 임신기·출산기 지원을 위해 보완되어야 할 지원 서비스

단위: %(명)

구분	긴급 주거시설 제공	의료 서비스 제공정보	심리 상담 지원	미혼모 자조모임 안내 및 지원	긴급 임신상담 전화	부모 교육	기타	계(수)
전체	36.3	24.7	12.7	10.0	9.0	5.7	1.7	100.0 (300)
어머니 연령								
만 24세 이하	42.6	19.1	8.5	12.8	8.5	6.4	2.1	100.0 (47)
만 25~29세	46.2	19.2	12.8	11.5	6.4	2.6	1.3	100.0 (78)
만 30~39세	28.5	32.3	13.1	6.2	11.5	6.2	2.3	100.0 (130)
만 40세 이상	35.6	17.8	15.6	15.6	6.7	8.9	0.0	100.0 (45)
$X^2(df)$				20.308(18)				
가구 구성								
본인+자녀	38.7	22.5	12.7	9.8	9.8	5.4	1.0	100.0 (204)
본인+자녀+가족 및 지인	31.3	29.2	12.5	10.4	7.3	6.3	3.1	100.0 (96)
$X^2(df)$				4.535(6)				
월 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44.0	19.8	14.7	6.9	8.6	4.3	1.7	100.0 (116)
100~200만원 미만	32.8	28.7	10.7	12.3	9.0	5.7	0.8	100.0 (122)
200만원 이상	29.0	25.8	12.9	11.3	9.7	8.1	3.2	100.0 (62)
$X^2(df)$				10.232(12)				
취업 및 학업 상태								
취업중	29.7	24.3	12.2	21.6	8.1	4.1	0.0	100.0 (74)
구직중	38.6	27.1	11.4	4.3	11.4	5.7	1.4	100.0 (70)
학업중	48.4	9.7	16.1	8.1	4.8	11.3	1.6	100.0 (62)
전업주부	31.9	33.0	11.7	6.4	10.6	3.2	3.2	100.0 (94)
$X^2(df)$				36.308(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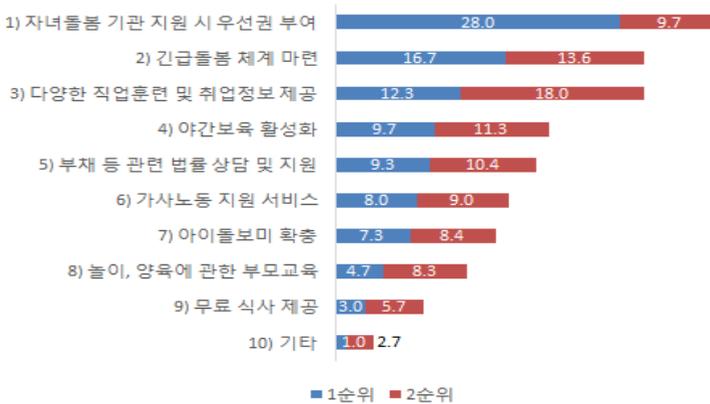
주: 미혼모 양육자원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다음으로 양육기 지원을 위해 보완되어야 할 지원서비스를 1순위, 2순위를 살펴본바, 1순위 기준으로 ‘자녀 돌봄 기관 지원 시 우선권 부여’가 28.0%로 가장 보완되어야 할 지원서비스로 꼽았다. 그 다음으로 긴급 돌봄 체계 마련, 다양한 직업훈련 및 취업정보 제공이 16.7%, 12.3%로 그 뒤를 이었다. ‘다양한 직업 훈련 및 취업정보 제공’도 2순위로 선택한 응답자가 18.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돌봄과 함께 취업에 대한 관심도 높은 것을 알 수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그림 III-5-6** ▮ 양육기 지원을 위해 보완되어야 할 지원 서비스

단위: %, n=300



주: <표 III-5-7> 중 일부를 그림으로 표현함.

양육기 지원을 위해 보완되어야 할 서비스를 자녀연령별로 1, 2순위를 분석해 본 결과 자녀돌봄 기관 지원 시 우선권 부여는 초등학교 자녀를 포함한 모든 연령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학교 수업 이후 초등돌봄교실 등의 방과 후 돌봄지원 시 우선권 부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2순위를 포함하여 살펴보면 영아 자녀의 경우 다양한 취업교육 및 취업정보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유아 부모는 긴급돌봄 체계 마련에 대한 요구, 그리고 초등자녀를 둔 경우는 ‘가사노동 지원’ 및 ‘무료식사 제공’ 등의 서비스에 요구가 높아 자녀 연령별로 요구되는 서비스가 다를 수 있고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표 III-5-7 양육기 지원을 위해 보완되어야 할 지원 서비스

단위: %(명)

구분	(1) 돌봄 기관 우선 순위	(2) 긴급 돌봄 체계 마련	(3) 다양 한 취업 정보	(4) 야간 보육 활성 화	(5) 법률 상담 및 지원	(6) 가사 노동 지원	(7) 아이 돌보 미확 충	(8) 부모 교육	(9) 무료 식사 제공	기타	계(수)
1순위	28.0	16.7	12.3	9.7	9.3	8.0	7.3	4.7	3.0	1.0	100.0 (300)
자녀구분											
영아	27.7	17.4	11.0	9.0	11.0	7.7	8.4	5.2	2.6	0.0	100.0 (155)
유아	25.4	21.1	14.1	8.5	7.0	12.7	4.2	2.8	0.0	4.2	100.0 (71)
초등학생	31.1	10.8	13.5	12.2	8.1	4.1	8.1	5.4	6.8	0.0	100.0 (74)
$\chi^2(df)$											25.652(18)
1+2순위	37.7	30.3	30.3	21.0	19.7	17.0	15.7	13.0	8.7	3.7	- (300)
자녀구분											
영아	38.1	31.0	29.7	20.6	20.6	16.1	13.5	14.2	8.4	3.2	- (155)
유아	36.6	36.6	23.9	21.1	21.1	14.1	26.8	11.3	2.8	4.2	- (71)
초등학생	37.8	23.0	37.8	21.6	16.2	21.6	9.5	12.2	14.9	4.1	- (74)
$\chi^2(df)$											25.652(18)

주: 1) 미혼모 양육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임.

- 2) (1)자녀돌봄 기관 지원 시 우선권 부여, (2) 긴급돌봄 체계 마련,
- (3) 다양한 직업훈련 및 취업정보 제공, (4) 야간보육 활성화,
- (5) 부채 등 관련 법률 상담 및 지원, (6) 가사노동 지원 서비스,
- (7) 아이돌보미 확충, (8) 놀이, 양육에 관한 부모교육,
- (9) 무료 식사 제공

6 소결

미혼모들의 자녀양육 현황과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을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지원요구를 구체화하고 지원방안에의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통해 다음의 시사점을 제언한다.

첫째, 미혼모 어머니가 직접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의 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 미혼모의 양육과 돌봄에서 대한 결과는 어머니 혼자 1인 다역을 감당하면서 고군분투하는 상황을 보여준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기관의 이용과 조부모의 돌봄이 병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자녀를 직접 돌본다는 응답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자녀 기관 등하원의 동행자도 어머니 본인이며, 미혼모의 자녀들이 다른 아동들보다 더 오랜 시간 기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미혼모의 취업으로 인한 결과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혼모들은 선호하는 돌봄에 대해서 직접 돌보기 바란다는 응답이 50.0%에 달했

다. 혼자 자녀를 기르고 있는 미혼모들이 직접 돌봄이 어렵지 않도록 양육관련 정책이 수요자의 요구에 맞게 섬세하게 구성되어야 한다.

둘째, 미혼모 자녀들이 혼자 있는 시간이 생기지 않도록 긴급돌봄 지원이 필요하다. 자녀가 성인이나 보호자 없이 혼자 있었던 경험에 대해 영유아의 약 8.0%, 초등학생에서는 73.0%는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야간 및 주말 근무 등의 이유로 자녀를 혼자 둘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하지만 무엇보다 우선 되어야하는 것이 아동들의 안전임을 고려할 때 긴급 돌봄지원에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미혼모 자녀들에 대한 초등학교에서의 돌봄 제공 기회가 확보될 필요가 있다. 미혼모들의 경우 초등학교 자녀가 방과 후에 이용하는 돌봄서비스 중 초등학교에서의 초등 방과 후 과정과 초등돌봄교실의 선호가 뚜렷했다. 이는 자녀의 돌봄 공백 해소 뿐 아니라 학교라는 교육기관에의 신뢰에 기초한 결과로 보인다. 초등 방과 후 과정 등은 사교육에 비해 비용 부담도 적고, 학교 밖에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학교는 안전하다고 여기는 것이다.

넷째,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양육 부담 완화에 관심이 필요하다. 미혼모들은 양육 과정에서 경제적인 면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였다. 특히 유아기 자녀를 둔 집단에서 정서적 부담, 원가족과의 관계, 돌봄의 공백 등으로 인한 어려움의 정도가 다른 집단보다 높아 이 시기가 양육 부담이 급증하는 시점임을 보여준다. 현재의 미혼모 지원정책이 영아기는 어머니의 직접양육을 지향하나 점차 자립을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전환 시점이 36개월인 경우가 많아 이를 기점으로 어머니들의 양육 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다섯째, 미혼모의 양육과정에서 지원적 역할을 위한 원가족의 역량 강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혼모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청할 대상이 원가족이라는 경우가 50% 이고, 특히 어린 영아시기에는 원가족 의존도가 높다는 결과이다. 미혼모 가구가 되는 과정에서 원가족과의 갈등이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기는 하나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지지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도 원가족임을 고려할 때, 사회적 편견 극복 위한 상담지원, 부모교육 기회 안내 등 원가족의 역량강화에 관심이 필요하다.

여섯째, 효율적인 정책 전달을 위해 자녀의 성장에 따라 미혼모 지원의 접점이

달라져야 한다. 미혼모 대상 설문결과에서 자녀가 영아인 경우에는 원가족, 친구 등에 의존이 많았으나 자녀가 성장하며 점차 다른 미혼모 친구, 친구나 지원 단체 등으로 그 도움의 범위가 확대됨을 알 수 있었다. 미혼모들의 사회적 관계가 자녀의 성장과 함께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지원정책의 계획 시 이를 반영한 접근이 필요하다.

일곱째, 최근의 미혼모 관련 정책의 변화가 급격함을 고려하여 정책 안내에 주력해야 한다. 미혼모들은 자녀를 양육하면서 가장 필요로 하는 정보가 정부 지원에 대한 정보라고 답하였다. 미혼모의 정부지원에의 필요도가 높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3차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방안이 시행되면서 미혼모 관련정책 개선 부분이 많아 미혼모 당사자 뿐 아니라 전달체계에도 이에 대한 홍보와 안내를 요한다. 이런 의미에서 여성가족부에서 미혼모 정책안내서의 마련은 매우 시의적절한 대응으로 사료된다.

여덟째, 미혼모를 위해 양육에의 실제적 기술과 방법을 중심으로 한 출산 전 양육지원 교육기회 확대가 필요하다. 미혼모들은 부모교육 시 실제 양육에 필요한 기술 위주의 교육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았다. 당사자 단체 등을 통해 양육 경험이 있는 미혼모 선배와의 멘토 멘티 관계 형성 등을 통한 교육기회 확대를 계획할 수 있다.

아홉째, 미취업 상태 미혼모들의 우울감 해소와 양육스트레스 해소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설문결과 전업주부 미혼모들의 경우 양육 역량도 떨어지고, 현재 및 미래 양육 자신감도 적고, 우울감도 큰 상황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영아 자녀를 기르는 동안에 취업이 어렵고 미혼모로의 적응이 수월하지 않고 어머니로서 자녀를 양육함도 부담스런 상태이기 쉽다. 전업주부 미혼모, 영아자녀를 둔 미혼모 이에 대한 상담 지원이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

열 번째, 아이 아버지의 책임감 강화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요구된다. 혼자 자녀를 키우게 된 이유가 아이 아버지의 책임 회피와 변심 등 무책임한 대응으로 인해서라는 경우가 65%에 달했다. 또한 아이의 임신 사실을 알고 난 뒤의 반응도 낙태권유와 만남회피 등 부적절한 대응의 비율이 57.6%였다. 이러한 부적절한 대응의 기저에 작용하는 무책임감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열한 번째, 미혼모들이 건강하게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조기검진, 산전관

리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미혼모 세 명 중 한 명이 임신 14주 이후에 첫 검진을 받았고, 전혀 받지 못한 경우도 3.7%였다. 출산의 결정과 아이 아버지와 관계의 어려움으로 일찍 병원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산전 관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조기검진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열두 번째, 미혼모에게 자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본 조사의 응답자의 61.0%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소득이 발생할 경우 당장의 수급이 줄어들고, 동시에 자녀를 돌봐줄 사람을 찾아야 하는 상황과 맞물리기 때문에, 어린 자녀를 두고 쉽게 소득이 생기는 일을 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또한 취업중의 어려움 중에 '자녀 양육시간 부족(48.6%)', 구직중의 어려움 중 '자녀 돌봄으로 시간 선택에 제한이 있어서(40.0%)'. 취업 교육의 어려움의 1순위가 '취업교육동안의 자녀 돌봄(37.3%)' 인 것을 보았을 때, 자립노력에 있어서 돌봄 문제는 매우 중대한 문제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부모로서 자녀를 키우고 양육함에 있어, 가장 절실한 부분은 돌봄의 영역이다. 현재 한부모 가족 우선순위가 적용되고 있지만, 기관의 대기 상황에 따라, 초등의 경우 돌봄대상 기준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돌봄의 우선순위가 되지 못하는 상황이 있어, 상황을 고려한 지원이 필요하다.

IV

미혼모·부 가정 양육의 어려움 및 지원요구

1. 심층 면담 개관
2. 양육의 어려움
3. 취업 및 자립의 어려움
4. 법적 제도 및 지원절차로 인한 어려움
5. 인적네트워크 및 지원 요구
6. 자녀 연령별 특성
7. 소결



IV. 미혼모·부 가정의 양육의 어려움 및 지원요구

본 장에서는 미혼모·부의 자녀양육 지원방안 마련에 정책 미혼모·부의 요구를 충분히 담기 위해서 심층면담을 진행하였고, 그 내용을 내용별로 자녀 연령별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주제별로는 미혼모·부 당사자 입장에서 겪는 돌봄의 어려움, 차별 경험, 법적 제도의 문제점, 인적 네트워크, 아버지/어머니 부재에 대한 대화, 자립노력, 지원 요구사항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또한 자녀 연령별로 영아 자녀, 유아자녀, 초등자녀 시기로 나누어 시기별로 겪는 어려움의 차이를 파악한다. 또한 미혼부의 상황에서 미혼모와는 다른 어려움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1 심층 면담 개관

가. 면담 참여자 특성

본 연구에서는 심층면담으로 영아자녀를 둔 미혼모 7명, 유아자녀를 둔 미혼모 9명, 초등자녀를 둔 미혼모 8명을 비롯하여, 미혼부 1명까지 25명의 미혼모·부 가정을 면담하였다. 각 사례의 면담자의 연령, 학력, 취업상태, 자녀의 나이와 성별, 그리고 기관 유무 등을 <표 IV-1-1>에 나타내었다. 미혼부의 경우 자조모임의 참석을 거의 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 미혼부의 면담을 한 사례만 진행했던 관계로, 미혼모의 면담 결과를 중심으로 정리되었다. 따라서 설명 중 대상을 '미혼모'라고 지칭하고, 미혼부의 양육 특성은 6절 라항에 따로 분석하였음을 밝혀둔다.

표 IV-1-1 심층면담 참여자 특성

사례	연령	학력	취업상태	자녀특성	기관
영아1	만33세	고졸	미취업	만1세, 여아	직접돌봄
영아2	만36세	고졸	미취업	만3세	직접돌봄
영아3	미기입	대 휴/재학	미취업(심신장애)	만3세	어린이집
영아4	만 32세	대졸	미취업	만1세, 여아	직접돌봄
영아5	만 20세	고 중퇴	미취업	만0세, 여아	어린이집
영아6	만 20세	고졸	미취업	만1세, 남아	어린이집
영아7	만 30세	고졸	취업	만3세, 여아	어린이집
유아1	만31세	고졸	취업(비정규직)	만6세, 남아	어린이집
유아2	만37세	대재	취업(비정규직)	만3세, 여아	미기입
유아3	만33세	대재	미취업(취업훈련)	만3세, 남아	어린이집
유아4	만39세	대졸	취업(전일제)	만5세, 여아	유치원
유아5	미기입	대재	미취업(훈련, 구직난, 돌봄)	만4세, 남아	어린이집
유아6	미기입	대재	미취업	만5세, 여아	어린이집
유아7	만28세	대졸	미취업(구직난)	만3세, 남아	어린이집
유아8	만36세	대졸	취업(시간제)	만4세, 여아	유치원
유아9	만37세	고졸	취업(전일제)	만4세, 남아	어린이집
초등1	만45세	대중	미취업(심신장애)	만10세, 여아	초등학교
초등2	만28세	고졸	취업 중(비정규)	만7세, 남아	초등학교
초등3	만38세	대학재학	미취업(훈련, 학업)	만11세, 여아	초등학교
초등4	만37세	대졸	취업(시간제)	만9세, 남아	초등학교
초등5	만36세	고졸	취업(시간제)	만9세, 남아	초등학교
초등6	만39세	대졸	취업(전일제)	만8세, 남아	초등학교
초등7	만42세	대졸	미취업(훈련)	만12세, 남아	초등학교
초등8	만30세	고졸	미취업(돌봄)	만10세, 남아	초등학교
미혼부1	만27세	고졸	미취업(돌봄)	만2세, 남아	직접돌봄

2 양육의 어려움

본 절에서는 미혼모로서 임신, 출산, 양육을 거치며 겪은 어려움에 대해 언급하였다. 현재 가장 어려운 점은 자녀의 돌봄 문제, 또한 기관 이용에 있어서의 어려움, 아버지 부채를 자녀에게 설명해야하는 어려움, 그리고 미혼모로서 임신 출산 기의 경제적 어려움, 지원 정보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 등을 본 절에 담았다.

가. 자녀 돌봄

미혼모로서 겪은 어려움은 많지만 현재 가장 시급하고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어려움은 자녀 돌봄에 관한 문제였다. 자녀 돌봄의 어려움은 일반가정에게도 맞벌이 가정에게도 어려운 문제이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많지만,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면서도 양육도 혼자 도맡아야 하는 미혼모에게 자녀 돌봄은 ‘주변의 도움 없이 모든 것을 혼자서’ 해결해야한다는 것에서 오는 어려움이 가장 컸다.

1) 긴급돌봄 및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의 어려움

자녀를 돌보기 위해 취업을 하지 않고 생계지원을 받고 지내는 어머니들도 많았지만, 취업하여 일을 하는 경우는 돌봄에 대한 어려움을 크게 호소하였다. 유치원은 토요일에는 문을 열지 않기 때문에, 주말 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방학이 있는 경우 돌봄이 어렵다고 하였다. 한 응답자는 돌봄 공백이 있어, 6세 자녀를 며칠을 TV를 틀어주고 일을 하고 오는 등 유아 자녀를 혼자 집에 둔 적도 있었다고 할 정도로, 한부모로서 기관에 돌봄이 어려운 경우는 그야말로 돌봄 공백이 생기는 상황을 알 수 있다.

유치원은 방학 있어서 못 보내겠더라고요. (유아 7)

(유치원 방학동안) 출근하면 티비 틀어놓고 갔다오고 채려놓고 갔다오고 그랬어요. 또 내 휴가 기간이랑도 맞더라고요. 그래서 2~3일만. (유아 8)

미혼모의 경우 혼자 자녀를 돌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엄마가 근무 중이거나, 시간이 되지 않을 때에는 아이의 스케줄에 맞추어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 상황이다. 긴급돌봄이 필요하거나, 기관 돌봄 후, 주말 등에 돌봄이 필요할 경우, 많은 어머니들이 사용가능한 돌봄 지원 중 가장 소비자 맞춤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아이돌보미를 고려하지만, 이용에 대한 비용 부담과 대기시간, 긴급이용의 어려움 등이 이유로 이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담당공무원이 아이돌보미 사용 조건을 미숙지함으로 인해 아이돌보미를 사용할 수 없는 사례도 있었다.

맨날맨날하게 되면... (아이돌봄서비스)애기 보는데 한 달에 10만 원 이상이 든대요. (초등 2)

저는 일할 때는 수급자 아니었다가 일 그만 두니까 수급자 해주더라고요. 그게 수급자면 돌보미를 불러도 다른 사람 4000원이면 2000원 이래요. 근데 차상위인 사람은 4000원 다 내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단지 수급자 아니라는 이유로 4000원 다 내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출근을 해도 돌보미를 부를 수 없는 거예요. (유아 7)

아이돌봄을 쓰기가 힘든 거예요. 진짜 너무 힘들어서 아이돌봄 신청을 하려고 했더니 일을 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돌도 안 된 애기가. 인천이고 서울이고 경기도. (어린이집 보내면서) 돌봄이 된다고 들었는데 동사무소 직원이 안된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는 거예요. (중략) 그래서 확인했더니 되네요 하면서 그 일 쟁이를 반년동안 했어요. (영아 4)

(아이돌봄 사용 사유에) 육아스트레스 해당 있는데 안된대요. OO구청에서 (영아 6)

어머니나 아이가 아플 때 긴급돌봄이 필요하나 부모와 사이가 좋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모나 형제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고, 긴급상황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지인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 혼자 아이들을 돌보는 미혼모의 큰 어려움 중 하나였다.

애가 아파도 그런데 엄마 아파도. 제가 아파서 120에 전화를 했어요. 열이 너무 나서 애를 케어를 할 수가 없으니까 아이돌봄서비스를 받고 싶다고 했더니 대기가 너무 많아서 기다리래요. 그래서 결국에는 진짜 하기 싫었는데 엄마한테 전화했어요....(중략).. 병원 가서 내일 당장 나올 수 있는 가장 독한 약을 달라고. 그래서 (엄마 대신 온) 동생은 저희 집 온지 2시간 만에 갔어요. ...(중략)... 애를 일찍 재우고 빨리 나아가 된다고 몸에 좋은 거 막 먹고. 왜냐면 내가 나아가지 내일 아이를 보잖아요. 그때 진짜 절실하게 느꼈어요. 나 아프고 애가 아플 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영아 7)

아이돌봄서비스 특징이 한집에 가면 그 집을 쪽 간다는 전제조건하에 한 달 전에 미리 신청을 받아요. 근데 이렇게 긴급한 경우가 생기면 가실 수 있는 선생님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꾸준히 일을 가시는 선생님이 있는 반면에 꾸준히 못 가지지만 긴급지원으로 자기가 시간이 될 때마다 일 하실 수 있는 선생님을 따로 배치해서 인력풀을 따로 하는 게 맞는 건데 계속 한 가지 시스템으로 운영하니까. (초등 3)

2) 취업모와 기관이용의 딜레마

기초생활수급을 받으면서 자녀를 보육·교육기관에 보내려면 일을 해야하고, 일을 하지 않을 경우는 보육·교육기관에 보내지 않고 직접양육을 하여야, 양육 조건 수급자로 기초생활수급이 가능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자녀

를 돌보면서 취업준비를 하는 것에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녀를 돌보면서도 취업준비를 할 수 있는 실질적 유예기간 마련이 요구된다.

어린이집에 가서 순번을 처음에 정할 때, 차상위 신청하고, 애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일을 할 거니까 맞벌이 신청하고 다 했는데, 맞벌이 서류를 떼 오라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서류를 떼 오래요. 근데 제가 여태껏 애를 데리고 있느냐고 일을 못 했잖아요. “그럼 저는 서류가 없는데요?” 그랬더니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애를 언제 어린이집에 보내죠?”. 어린이집에 애를 보내려면 서류가 있어야 되는데, 서류를 떼려면 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유예 이런 게 없냐. 내가 애를 보내야지 면접이라도 보러 다니는데.” 유모차 끌고 면접 보러 갈 수는 없잖아요. 내가 애를 유모차 끌고 가서 “애를 봐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안 되냐고 물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국 못 보냈어요. (초등 1)

나. 기관 및 학교 경험

1) 기관이용 및 돌봄이용의 우선순위

지역마다, 경험에 차이가 조금씩 있었으나, 기관이용이나 돌봄이용의 우선순위에서 미혼모를 포함한 한부모 가족이 맞벌이 가족에 순위가 밀리기도 하고, 한부모 가정을 우선시 하지 않고 맞벌이, 한부모, 조손가족 등을 동등하게 추첨을 하여 돌봄대상을 뽑는다고 하였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양쪽의 부모가 있고, 조부모의 도움도 가능하지만, 한부모, 조손가족 등은 정말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돌봄대상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럼요. 혹시 그거 아세요? 돌봄도 추첨이에요 요즘에는. 엄마가 정해진 시간에 가서 추첨을 해야 돼요. 애가 할머니하고 딱 둘이 사는데 할머니가 치매끼가 있어도 돌봄을 못 받아요. 추첨에서 떨어지면. (초등 1)

그 추첨까지는 그나마 낫다고 생각해요. 복불복이니까. 근데 항상 맞벌이우선, 그 다음이 저소득층, 한부모, 조손가정. 어떤 기사를 봐도 이 순서가 틀리지가 않아요. (초등 1)

저소득층이라는 게 저소득을 증빙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증빙하는 금액이 굉장히 작잖아요. 최저생계비 60%여야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 금액이 한 부모로 치면 얼마 안 되는데, 그 금액을 넘어서면 저소득층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한부모는 외벌이라도 안 되는 거죠. (대표)

자녀가 기관을 이용하기 시작하면서, 기관에서 만나는 선생님, 다른 아이들, 다

른 아이들의 학부모 등 많은 관계 속에서 여러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자녀 친구들의 부모와의 관계, 자녀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부당한 경험을 하기도 하고, 기관에서의 활동 및 행사 중에 아버지 참여, 가족에 대한 이야기 등으로 인해 곤란함을 겪는 일도 있었다.

2) 상대적으로 느끼는 아버지의 부재

자녀가 기관을 다니면서 가족에 대해서 배우고, 유치원의 경우 반에 붙여두기 위해 가족사진을 가져오게 하고, 아버지의 날 등의 행사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러한 상황은 미혼모 가족의 자녀에게 아빠가 없음을 느끼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고 하였다. 엄마랑 둘이 지낼 때는 아빠의 부재를 크게 인지하지 못하고 잘 지내지만, 기관에서 다른 아이들이 아빠와 한 일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에서, 아빠를 포함한 가족에 대해서 배우면서 상대적으로 느끼는 것이라고 하였다.

어릴 때는 잘 모르잖아요. 아빠 꿈은 똥똥해 배워오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그래서 가족 소개하고 그럴 때는 몰랐는데 작년까지는 괜찮았는데 올해 항상 3월에 커리큘럼 내에 가족사진이 있어요. 가족사진을 꼭 가져오라고 해요. 그러면 아이의 안정감이 느껴진다나 뭐라나. 그래서 작년에는 모든 사진을 다 보냈어요. 아빠가 빠진. 할머니 할아버지. 잘 모르게. 누가 볼 때는 잘 모르잖아요. (유아 8)

저도 사진 보낼 때는 꼭 제 남동생. 남들을 잘 모르잖아요. (유아 9)

사실 저랑 있을 때는 못 느끼는데, 친구들이랑 있거나 마트를 가도 아빠가 카트를 끌고 목마를 태우고 그럴 때 상대적으로 느끼는 거지. 저희 공간에 있을 때는 아빠의 공백이 큰가? 자기들끼리 아빠랑 어디갔어 이럴 때 느끼는 거지. (유아 8)

OO이랑 엄마랑 제일 예쁘게 나온 사진을 보내자 그래서 그걸 보냈거든요. 우리 엄마 예쁘지 공주같지. 이러면 하얀색 입고 자기도 하얀 드레스 입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보기에도 아빠가 찍어줬어 이럴 수 있으니까. 선생님한테는 따로 OO이 상황 아시니 이 부분을 많이 얘기 안하고 지나갔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항상 3월~4월이 제일 힘들더라고요. 또 그 때 되면 참가수업도 있고. (유아 8)

다. 자녀와의 시간 및 대화

1) 체력 부족으로 자녀와 질 높은 시간을 갖지 못함

많은 어머니의 경우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놀아주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을 가지고 있었다. 아이와 하고 싶은 일로는 마트가기, 서점가기 등 사소한 일들이었지만, 놀아줄 시간이 거의 없고 체력의 한계로 몸으로 놀아주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을 호소하였다.

그냥 아이가 얘기하면 그게 소원, 작은 거라도 애는 저랑 마트 가는 거 좋아하고 서점가는 거 좋아하는데, 근데 진짜 일 끝나고 집에 가거나 주말에도 이제 일 있고 막 이러면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정말 진짜 작은 거예요. 마트 가거나 서점가는 거. 정말 소박한데 들어줄 수가 없어. (유아 4)

저도 평소엔 못해주고 방학이라서 최대한 놀아주려고 하는데 제 체력이 많이 딸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체력이 좀 길러져서 이렇게 몸으로 더 놀아주고 싶어요. (유아 6)

또한 체력의 한계와 혼자 아이를 돌보는 것의 어려움으로 아이를 혼자 내버려 두거나 아이에게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는 경우가 있어, 정말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상황에 사용할 수 있는 돌봄구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애가 안 자니까 그 짜증이 다 애한테 가잖아요. 그게 안 좋더라고요. 내가 아프면 그 화가 자꾸 애한테 가니까 ‘내가 지금 애를 키우는 게 맞는 건가?’ 그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애를 일찍 재우고 빨리 나아야 된다고 몸에 좋은 거 막 먹고. 왜냐면 내가 나아야지 내일 아이를 보잖아요. ..(중략).. 다음날 되면 애는 아무렇지 않게 “엄마~~” 그러니까 ‘이래서 돌봐주는 사람이 필요하구나.’ 그때 진짜 절실하게 느꼈어요. 나 아프고 애가 아플 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영아 7)

제가. 거의 방치하다시피 어린이집 보내고, 오면 안 놀아주고 그냥 우유 먹이고 밥 먹이고 안 놀아주고. 어디 놀러가지도 않고, 사람들 만나지도 않고 누가 찾아도 문 열어달라고 해도 안 열고. 진짜 거의 방치하다시피 아예 집에 틀어박혀서 살았거든요? 근데 그 때가 제일 미안해요 정말. 아무 것도 해주지도 않았을 때. ..중략..집에서만 틀어박혀 있고. 진짜 그 때는 정말 많이 해줬어야 되는데 못 해주게 너무 아쉽고 정말 말이라도 빨리 빨리 시켜줬다면 지금 막 호기심도 많았을 것 같은 아인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게 미안하고... (초등 2)

(제가) 아플 때 봐줄 사람이 정말 없었어요. 하다못해 등하원이라도 해줬으면 보내고 폭 짖을텐데. 애는 옆에 방치돼서 혼자 놓고 있고 저는 자고 있고... (영아 6)

2) 아버지 부재에 대한 대화

자녀가 성장하면서 아버지의 존재에 대한 질문이 증가하는데, 사실대로 이야기 해야 할 것인지 혹은 상처받지 않도록 거짓말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양가적 감정이 공존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혼란을 겪기도 하였다. 영아의 경우는 아직 아빠에 대해 물어보는 질문의 수가 적어서 아직 부재로 인한 고민이 시작되지 않은 시기이다. 하지만 유아기의 경우는 다르다. 아버지의 부재를 느낀 아이들이 아버지에 대해 질문할 때,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주로 지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일단 거짓말을 하거나, 사실대로 이야기해주거나 하는 선택들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고민을 함께 할 수 있는 경험자 혹은 전문가와의 의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눈치를 너무 봐요. 어디서 그렇게 눈치를 쬐는지 애가 아빠 얘기를 하면... '어제 밤에 우리 아빠' 하다가 이려고 있어요. 절대 동요도 못 해요. 근데 제가 아빠 얘기를 막 하면 "아빠 얘기해도 돼?" 그래서 "응. 아빠 어딘가에 살아계셔." 찾아보려고 했어요. 왜냐면 아이의 권리잖아요. (유아 2)

아빠 얘기할 때 물어봐요. OO아 아빠 보고 싶어? 이래 물어보면 응 보고싶어 그래요. 아빠가 지금 일하러 아예 못 본단 얘기는 안하고. 아빠 지금 멀리 있으니까 OO이가 보고 싶을 때 연락해보고 만날 수 있으면 아빠 보러가자 그러면. 응 알았어 이려고 돌아서요. 근데 그 말하는데 그 짧은 순간에 저는 많은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해야 애가 상처를 안 받을 수 있을까. (유아 9)

본적은 있지만 기억이 안 나죠. 그래서 제가 그냥 아니지만 아니야~ 너 수술 받을 때 니 옆에 있었어. 그래서 좋은 추억을 주고 싶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빠가 자기를 사랑했지만. 쭈쭈 장난감을 사주러 일을 갔다. 이렇게 말은 해봤거든요. (유아 8)

또한 아이 아빠와의 관계의 정도에 따라 아이가 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영아 부모도 있었다.

저는 별 생각 다 해봤어요. 애기가 아빠를 찾는 상황. 애기 아빠가 합치자고 하는 상황? 저는 속이 다 뒤집어져요. 둘 다 손이 달달달 떨리면서. (영아 6)

하지만 자녀에게 최대한 사실대로 이야기해주려고 노력하는 어머니들도 있었다. 그런 경우 어머니 입장에서 잘 이해하는 경우와 아버지의 행동에 대해 두려움

을 가지게 되고, 말을 꺼내지 않게 되는 등의 상황을 맞기도 하였다.

아빠 없어 이 세상에 없어,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아 그런데 그건 또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 더러구요. 그래서 00아, 저번에 엄마가 했던 얘기는 거짓말이야. 아빠는 있는데, 지금 어딘가에 살아있는데 엄마랑 사이가 너무 안 좋아서 헤어졌어. 00이가 정말 보고 싶다고 하면 엄마가 연락해서 한번, 연락은 해볼게 라고 했더니 알겠다고. 그 다음엔 물어보진 않았어요. (초등 2)

그냥 사실대로 얘기하는게 제일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암만 생각해도 진짜 말 그대로 나중에 커서 알게 되면 애한테 거짓말하게 되는 거고, 그게 정말 싫었던 거죠. 그래서 애가 이제 물어봐요, 어떻게 됐냐고. 아빠는 어딴냐고, 자기 아빠 볼 수 있냐고. 그래서 나는 니네 아빠 어디 있는지 몰라. 왜 모르냐고 해요. 어, 지금 어딘지 연락을 안 해서 엄마도 모르겠어. 나 나중에 아빠 찾을 수 있어. 어 네가 찾을 순 있을 거야, 나중에 근데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는 솔직히 모르겠어. 혼자 누워서 울더라고요. ...(중략).....지금 연락처도 몰라 그랬더니 애가 무섭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를 잘 못하는데 느낌이 이제 애가 좀, 아 조금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 거 같기는 해요. (유아 4)

라. 임신·출산기의 어려움

1) 자녀 아버지와의 관계로 인한 어려움

많은 면담자의 경우 임신 출산시기에 아이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처음에는 같이 키우자고 하여 자녀 출생 초반에는 함께 생활하였으나, 생계유지를 위한 노력 및 양육에 도움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고, 무책임한 행동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면서 혼자 키우기로 결심한 경우 (유아 1, 영아 5, 초등 2, 5, 6, 7)가 많았다.

키우자 했는데 근데 개가 부탁을 하니까. 근데 믿을 수 있겠는 거예요. 자기는 진짜 열심히 할 테니까, 나 당장 일자리도 알아볼 테니까 제발 날자, 제발 날자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거기서, 그리고 나도 좋아했으니까 거기서 또, 뭐라 그래야하지. 거절할 수도 없고. 근데 너무 저도 개념이 없었던 거죠 그때는. 돈이 많이 들 거라는 생각도 없었고. 그래서 아 그래 알겠다, 믿어보겠다. (초등 2)

애기 아빠가 내가 이제 정말 잘하겠다. 나는 가족을 너랑은 이루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저도 이혼가정이고 아이만큼은 그렇게 키우고 싶지 않고. (중략) 같이 살면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갑질을 하는 거죠. 난 나 아니면 안되잖아. 그러면서 술 먹으러 나가고 술 먹고 와서 난리치고, 여자들 불러서 술 먹고 놀고 그런게 너무 심해서 같이 살면 애기를 낳아서도 정신병 걸릴 것 같고 그래서 혼자 키워야겠다. (영아 5)

또한 무책임한 태도뿐만 아니라, 임신 후 자녀 아버지로부터 폭행, 폭언 등을 겪고 혼자 자녀를 키우기로 결심한 경우도 면담사례 중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아이를 지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하거나, 같이 살자고 하면서도 폭언, 폭행을 하는 경우, 그 구체적 상황은 다양하였으나, 아이 아버지의 폭행이나 폭언 등으로 인해 위협을 느끼면서도 그러한 사람을 아이 아버지로써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아이를 혼자 양육하기로 결정한 경우가 다수 있었다(영아 4, 유아 7. 등).

저는 결혼 준비를 다 해논 상태여가지고. 근데 임신을 하니까 돌변하는 남자들이 종종 많잖아요. (중략) 폭력도 제가 다 참았거든요. 저는 혼자 키우는 거 진짜 용납할 수 없었어요. 나는 미혼모가 될 수 없어. 나는 재를 고쳐서라도 살아볼 거야 했는데 애기가 태어난 지 1주일도 안됐는데 또 폭언을 하고. (영아 4)

그래서 다른 폭행보다 더 심하게 해줘야한다는 법이 있으면 좋겠어요. 어떤 애기 엄마의 경우는 날기 싫은 아빠들은 어린아빠들은 청소년 엄마를 집단 구타를 하는 거죠. 애기 못 낳게 하려고...(중략) 저는 법적으로 크게 처벌해야한다. 제가 사실은 출산하고 작년에 형사고 발 두 번을 했어요. 증거도 내고 녹취록도 다 만들어서 내고 해가지고 겨우겨우 했는데 50만원 벌금이 나왔어요. 애 아빠는 월에 1000만원 넘게 버는 사람인데 너무 가벼운 거예요. 이게 민사로 간다 해도 30~40년 시달린 사람도 몇 천만 원 밖에 못 받는대요. 저는 개월 수도 적어서 많이 받아봐야 2~300? 이라는 거예요. 나의 목숨 값이.. (영아 4)

2) 임신 시 미혼모 관련 상담 창구 부재

청소년 미혼모의 경우 임신사실을 알고 의논 상대 또는 물어볼 곳이 없어 어떤 선택이 가능한지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청소년 전화인 1388에 전화를 했으나, 도움 되는 정보를 얻지 못했다고 하였다. 부모님께 바로 알릴 수가 없어 도움을 받고자 전화를 했지만 부모와 함께 오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하였다. 임신 시 갈 수 있는 병원 및 갈 수 있는 시설 및 학업유지 방법 등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선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1388 이런 데는 그런 거에 대한 정보가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알려줬다면 선택지가 있었을 텐데 저는 그때 너무 선택지도 없었고 방법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학생, 저 같은 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극단적으로 굴러 떨어져서 낙태하거나 이런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알려줄 수 있는 상담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유아 6)

청소년 미혼모가 아니더라도 임신 전에는 ‘미혼모’ 지원이 있는지, 그 상황에 도움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인지조차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임신 후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지원 등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였다. 임신 당시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낳은 경우 ‘미혼모’라고 부르는지조차 알지 못해 찾아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시설에 대한 검색을 할 때도 어떤 시설에서 어떤 지원을 해주는지를 알려주는 안내 사이트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혼전 임신 후 갈 수 있는 시설 등을 찾기 위해) 검색을 막 했죠. 미혼모도 몰랐어요. 애기 혼자 막 이렇게 검색을 하다보니까 (제 상황이) 미혼모더라구요. 미혼모구나 하고 찾았어요. 그때 처음 안게 OO(시설이름)이었어요 (영아 4)

그래서 다른 사람도 필요하다고 느끼는 게 미혼모라고 검색하면 서울에 있는 시설이라도 정보를 딱 깔끔하고 찾기 쉽게 여기는 어떤 교육을 하고 어떤 지원을 해주는구나 하는 사이트가 한 번에 뜨면 좋겠어요. 미혼모라고 검색했더니 여기 하나 나오고 미혼모 시설이라고 검색하니깐 여기 한 시설 나오고 뭐가 뭐 지도 모르겠고. (영아 4)

3) 부실한 산후조리와 높은 출산 비용

현재 국민행복카드(구 고운맘 카드)로 산전검사 및 출산금액을 50만원씩(청소년 미혼모 12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으나 지원 금액만으로는 충분한 산전 검사 및 출산의 금액을 충당하기는 부족하다고 하였다. 50만원 지원금은 출산 전에 대부분 검사비용으로 다 쓴다고 하였고, 병원비를 아끼기 위해 병원을 자주 가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 출산 시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었다.

안돼요. 그거(고운맘 카드)는 출산 전에 벌써 다 빠져요. 출산 전에 벌써 검사비용으로 돈 다 써요. (영아 1)

병원비 아길려고 항상 간호사 선생님이 (제가) 애기 보러 오랜만에 오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아끼고 했는데도 소진이 다됐고 남은 병원비는 카드로 끊었어요. (영아 1)

저는 부모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인큐베이터에 있었거든요. 부모님이 다 주시고... (영아 2)

또한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였으나 만족할만한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저는 애기를 겨울에 낳았거든요. 4시간 인큐베이터에 약하게 태어나서. 산모도우미서비스 그거 해서 카드를 받고 산후조리 신청했는데 그분 일찍 왔어요. 자기들 스케줄이 있어서. 우리 집에 왔는데 애는 병원에 있는 거예요. 날짜가 2주 다 못 받고 1주만 받았어요. (영아 2)

3 취업 및 자립의 어려움

가. 구직 및 취업 시의 어려움

면담을 한 많은 미혼모 어머니의 경우 취업 준비 시 혼자 자녀를 키우고 있는 조건 때문에 돌봄으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있을까봐 불이익을 당하거나, 취직을 해서도 해직을 당한 경험을 가진 경우가 많았다. 또한 혼자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에게 일이 생겼을 때, 자녀를 보살피러 가야하거나 하는 상황에서 급한 일이어도 다른 가족의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동료들의 이해가 절대적인 상황이 발생하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해를 받지 못하고, 자의반 타의반으로 일을 그만 두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전반적인 돌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시급함을 알 수 있다. 임신 전 취업을 하고 있었던 경우도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시선에 대한 우려로 스스로 직장을 그만둔 경우도 있었다.

〈임신 후 직장을 스스로 그만둔 경우〉

직장에서 푸쉬한 건 아니고 스스로가 그만뒀어요. 챔피언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 그만뒀어요. 배가 불러올게 뻔 하니까. (영아 4)

〈구직에서 불이익 당한 경우〉

작년 10월에 일을 하려고 이력서를 넣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이정도 회사에서 나를 싫다고 하지?’ 내 이력서가 훨씬 오버되는데. 정말 이해가 안 간다고 전화를 했더니 “애는 누가 보는데요? 혼자시라면서요. 아빠 없다면서요.” 근무하다가 애 때문에 빠지고 그러면 우리는 그런 사람 원하지 않는다고. (유아 3)

〈아이가 입원하고 권고사직 당한 경우〉

둘 단거 같아요. 면접 보러 가면 아이 혼자 키운다고 미리 말을 해요. 등본을 내니까. 그럼 거기서 바로 컷. 혼자 키우면 애기 아플 때 애 봐줄 사람 없잖냐고 바로 컷. (중략)... 권고사직 당했잖아요. 간병 구하고 출근 하겠다 하니까 권고사직 당했어요. 아침에 애 입원하고 그날 저녁까지 기다려준 것도 아니고 몇 시간 만에 권고사직 당했어요. (유아 7)

그때 1년 반을 다니면서 2번 정도 입원을 했어요. 근데 그때 아주 쌍욕을 먹었죠. 원장 선생님은 오케이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선배가 너무 저한테 야 너는 능력도 없고, 니 아들을 어떻게 아프게 하는 거냐. 이걸 그만 것 때문에 입원도 잘 시킨다. (유아 5)

또한 자녀를 돌보기 위해 시간을 낼 수 있는 직종을 선택해야하므로 취업 가능한 영역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았다. 미용사를 했었던 어머니의 경우 미용일은 10시부터 10시까지 일해야 하고 주말에도 해야 하는데, 도저히 그 시간동안 돌봄을 감당할 수가 없어 포기했다고 하였다.

막상 취업을 하려고 보니까 밤,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인턴을 해야 하고 비용도 작잖아요.... 그래서 애기 키우기에 시간도 되게 어렵고 돈도 박봉인데, 심지어 그 돈을 받으면 수급자도 끊기고 그래서 미용은 안 되겠다. (유아 6)

저는 20대 때는 미용 쪽에 있었는데, 아이를 키우다보면 그 주말에는 이제 아이한테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시간을. 아이도 맨날 일찍 나갔다가 늦게 오고 이게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서, 이제 미용을 접고 저도 이제 간호조무사를 이번에 공부해가지고 취득을 해서 취업을 했어요. (초등 8)

나. 취업교육 시 어려움

취업성공패키지 등을 통해서 취업준비를 지원받는 정책이 있지만 대부분의 취업패키지의 경우 이수를 위한 출결이 엄격하고 자녀를 키우면서 발생하는 지각이나, 결석에 대한 이해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교육이수를 정상적으로 마치기가 어려워져 재적된 경우를 몇 사례 볼 수 있었다. 교육을 받는 대상의 배경이 다양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자녀를 양육하면서 교육을 받는 경우, 상황을 고려한 돌봄에 대한 이해나 지원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취업성공패키지) 그렇게 해서는 취업 알선을 해줄 수 없다 계속 그러니까, 너무 그게 어렵거예요. 좀 돌봄 같은 게 필요한데... (초등 2)

내가 이제 직업을 어떤 걸 할 건지. 그 학원을 4개월 동안 하는데, 이 학원을 다니면서 지각이나 결석을 3회 이상 하면, 지각이 3회 이상 되면 결석이거든요. 이 하루 결석처리가 한 달 안에 정해져있어요. (영아 3)

이게 아이(를 키우기 위한) 목적인 거잖아요 저희는. 근데 다른 취업패키지랑 똑같은 기준이 되다보니까. 일반 사람들은 나홀로면 아이가 아프거나, 보채거나, 급한 일이 생기거나 할 일

이 없는데 그런 게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영아 1)

저는 아이가 아파가지고 입원을 길게 했는데 저희 친정어머님도 시골에 내려가서 길게 가게 서서 아무도 올 사람이 없어서 정말 제가 독박으로 10일 되는걸 제가 다 봤어요. 그러다보니 출석률이 안 좋아서 제가 제적이 됐어요. 그러니까 생계비 끊긴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영아 6)

4 법적 제도 및 지원절차로 인한 어려움

가. 양육비 소송

1) 소송과정 및 판결 후의 미지급으로 인한 어려움

양육비 청구 과정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지불선고가 나더라도 아이 아버지가 줄 의향이 없을 경우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영아 1,2,4,5, 초등 5,6) 소송을 진행 중에도 비효율적인 서류 처리들이 존재하고, 1년 넘게 걸려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는다고 해도 아이의 아버지가 양육비를 주지 않으려는 의지가 있으면 양육비를 실질적으로 지급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인지하고 있었다.

양육비 소송을 대한민국에 있는 거 A부터 Z까지 다 해봤거든요? 근데 못 받았어요. 사실상 받기가 되게 어려워요. 대한민국 가족법 안에 양육비와 관련된 건 다 한 거예요. 다 했는데 안 돼요...본인명의의 재산이 하나도 없으세요. 본인명의 재산에 핸드폰 하나도 없어요. (초등 3)

연락처를 알아도 (소송 진행하는 곳에서) 우편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쪽에서 확인안하면 반송돼요. 그걸 몇 번 반복하고 1년 넘게 걸리는 거예요. (초등 6)

안 줄 수 있죠. 충분히. 그리고 그게 있어요. 이 분이 직장을 다니세요. 이 분 급여에도 압류를 할 수 있거든요. 압류를 하면 최저생계급여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이 분이 200만 원을 버는데 최저생계급여가 150만 원이면 150만 원은 해당이 안 돼요. 나머지 50만원에 대해서 양육비를 받아가라 이 구조예요. 아동양육에 대한 보장은 안 하는데 그 쪽의 생계, 인권은 보장을 해주는 구조인거죠. 실은 아이가 더 급한데. 그 분 쓸 거 다 쓰고 남으면 가져가라 이거예요. 그 이상은 압류가 안 돼요. (초등 3)

전 했는데 재판에도 안 나오고 은행에 계좌를 몇 십만원 그거 가지고는 너무 적대요. 재판 이겨도. 그래서 못 받았죠. 네. 났는데 안주고 있고. 나는 돈 없다. (영아 2)

판결 나도 아버지가 돈 안주면 끝인 거예요. (영아 3)

또한 소송에 실질적으로 드는 비용이 상당히 높고, 또한 양육비를 받게 되면 수급이 깎이거나 수급자에서 탈락하기 때문에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고 해도 현재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나아지는 결과를 갖지 못한다. 따라서 승산이 높지 않고, 받는다고 해도 현재 소득에서 깎이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양육비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현재 양육비 지급을 위한 소송 및 절차들이 미혼모의 입장에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지급의 강한 강제성과 이를 통한 부의 자녀에 대한 책임을 함께 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받아도 지원금에서 깎여서 실질적 도움이 못되는 현실〉

하길래 개가 만약에 너 잘사는 거 보기 싫어 그래서 안 해주면 그게 또 걸림돌인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또 수급비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30만원 깎여, 그러면 개한테 받는 게 또 기본이 안 좋잖아요? 차라리 나라에서 받고 말지. (유아 6)

양육비 책정에 법원에서 60만원이 낮아요. 그러면 남자가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60만원을 받으면 또 수급비가 줄어요. 애 아버지가 60만원 준다고 해서 내 생계가 안 어려운데 아니잖아요. (영아 1)

애기를 인지신고해서 애기아빠 호적에 올려야하잖아요. 그것도 남기는 거 싫는데 실질적으로 받지 말라는 거 밖에 더 돼요? 양육비는 당연히 받아야 하는 건데 수급비가 깎여요. 그게 좀. (영아 4)

〈높은 소송비용〉

자원봉사하시는 분인데. 변호사 분인데 시간 많이 뺏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근데 사무실로 한 번 오시라고 해서 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서부 법원 앞에 변호사 사무실이 있더라고요. 비용은 보통 3~400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한 500정도 생각했어요. (유아 9)

형사법이 아니라 민사잖아요. 싸움도 오래되고 돈대로 깨지고 힘들어요. 싸움도 오래되고 돈대로 깨지고 힘들어요. 저는 만삭 때까지 일했거든요. 일을 해서 그걸로 재판했는데. 변호사 샀어요. 소송비용까지 해서 1000만원 들었어요. 그런데 의미가 없어요. (영아 1)

2) 아이 아버지의 무책임을 용인하는 사회

어쨌든 미혼모를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이 없잖아요. 남자한테는. (영아 1)

저는 국가에 밑거름이 될 아이를 낳았고, 잘 양육하고 있는데 부모 혼자서 아이를 낳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똑같은 부모의 책임이 있는데 왜 엄마가 그 책임을 반려자가 될 뻔한 아이아빠한테 묻고자 하는데 왜 그걸 국가에서 도와주지 못하고 엄마의 그 아픈 상처를 헤집으면서 까지. 그리고 만약에 한번 폭행한 사람이 만났는데 또 폭행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위험을 하고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데 왜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지. (유아 3)

나. 주민센터 이용에서의 어려움

1) 주민센터 이용에서의 부정적인 시선

혼자 출생신고를 하러 갔을 때 주민센터 직원들의 미혼모 상황에 대한 이해 부족과 부정적 시선으로 불편을 호소하였다. 혼외자로 체크하고 아빠 이름 없이 출생신고를 제출할 때 아빠 이름을 쓰라고 한다던지, 왜 아빠가 없냐고 큰 소리로 말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그 사실을 알고 직원들끼리 수군거리고 놀림거리처럼 말하는 것과 같은 경험을 통해 수치심을 느낀다고 하였다. 적어도 문제가 있는 듯한 눈빛으로 보지만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통해, 전반적 사회적 인식 개선이 미혼모가 당당하고 마음 편하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게 해주는 기본적인 조건임을 알 수 있었다.

(주민센터에) 출생신고를 하러 갔는데 밑에 조그만 칸에 혼외자체크가 있어요. 근데 나는 혼인을 하지 않았으니까 혼외자에 체크를 하고 줬더니 “왜 아빠 칸에 없어요?” 그래서 “결혼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애는 아빠가 없어요? 애 아빠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빠는 있죠.” “근데 왜 아빠 여기에 체크 안 했어요?” ..(중략).. “아니 결혼을 안 했는데 어떻게 애가 있어요.” (등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유아 1)

저한테는 그나마 소극적인 사람이여서 “여기 얘기아빠 안 적으셨어요.” 이러 길래 저는 “저 미혼모로 혼자 키울 겁니다.”이랬더니 당황을 하더니 뒤에 있던 내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이 귓속말을 해요. 모르니까 물어본다고. 너무 낮이 뜨거운 거예요. (유아 2)

그냥 그 말도 아니고 “뭐지?” 이렇게만 안 봤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도 빨간 립스틱을 늘 바르고 다녀요. 처음에 수급신고를 하러 갔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말정해보이시는데...”(중략)... 아는 동생도 미혼모인데..“하아. 어머님은 그렇게 힘든 게 없어 보이는데 이런 걸 왜 자꾸 신청하려고 그래요?” 이러더라요. (유아 2)

2) 주민 센터 직원의 안내 정보부족

주민 센터의 담당직원도 미혼모 정책 및 지원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미혼모 지원에 대한 정보의 접근성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주민 센터를 통한 지원정책에의 접근에는 어려움이 있고 오히려 미혼모 모임 또는 자조모임을 통해 도움을 많이 받았지만, 미혼모 자조모임의 존재도 정작 지원이 필요할 때는 알기가 쉽지 않았다. 주민 센터의 직원이 미혼모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을 잘 파악하고 있고, 알아야 할 정보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원 단체 등을 알려준다면, 정책지원 내용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시설 거주 시) 병원 가는 것도 제 주민번호로 가는 게 아니라 따로 코드, 번호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등록)은 말소가 되어있어서 아이 출생신고 하러 갔다가 엄청 놀란 거예요. 그래서 구청으로 가라고 그래서 구청에서 다시 이걸 벌금 내고 회복하고, 아이 출생신고 하고 이랬거든요. (초등 7)

저는 이제 수급자였다가 수급자 탈락이 됐다가 이제 한부모가 돈을 받는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다들 받더라구요. 그래서 전화했더니 못 받는대요. 그래서 다시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아 되네요 이래요. 그래가지고 그럼 7개월치를 소급을 해줄테니까 내래요 그거를 통장을. 냈는데 실업급여 받고 있었고 친구한테 받은 돈 합치니까 한부모가 3만 얼마 인가로 초과가 돼서 160만원을 못 받은 거예요. (유아 6)

진짜 그때는 이렇게 지원이, 뭐 이런 인트리(당사자협회)도 저는 잘 몰랐고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서 이제 서울에서 살 때, 그 때도 서울에서 살았는데도 동사무소 가도 저를 딱히 막 도와주려고 하지 않더라구요. 뭐 신청하세요, 한번만 신청하면 돼요 뭐 신청했는데도 뭐가 지원되는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때. (초등 8)

저 같은 경우에는 임신 중에 수급이 됐거든요. 임신 초기에 미혼모가 돼서 근데 주민 센터에서 딱히 뭘 알려주시거나 해주신 건 없어요. 여기 대표님이 뭐 서부건강강화지원센터,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도 여기 대표님(미혼모 관련 협회)이 00이이 넣고 6개월 째 돼서 알려주셨고. ..(중략).. 기저귀도 제가 알아보고 신청을 했었고. 어쨌든 주민 센터에서는 아무래도 수동적이잖아요. 00이 넣었을 때 전 한겨울에 넣었거든요. 첫 해에는 에너지 바우처를 못 받았어요. 주민 센터에서 알려주질 않아서. (영아 1)

알면 다행인데 저보다 더 모를 때도 있어요. 그게 뭐죠? 하고 물어볼 때도 있어요 직원어. (영아 3)

또한 주민 센터에서의 사회복지사가 신경을 많이 써주고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일 경우 열심히 지원을 신청하고 활용하는 사람들에게 따로 연락을 주어 더욱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추천해주기도 한다고 하여(초등 7), 사회복지사의 역할도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다. 소득수준과 수급 여부사이의 어려움

현재 자녀를 키우면서 일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생활은 어려우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한부모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현금은 전혀 없고 추운 집에 난방 할 비용도 없는 상황이지만, 자기이름으로 된 집이 있는 경우는 집이 소득으로 잡혀서 한부모 지원을 받지 못하여, 대출을 하여 법적 한부모 자격을 갖추어서 지원을 받게 되는 상황도 발생하였다. 또한 자립을 통해 수급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상황이지만 아이가 아픈 경우 병원비를 감당하는 것이 어려워, 의료비 지원이 되기 위한 수급을 유지해야하는 사례도 있었다. 당장 생활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대출이 늘어나는 상황인 경우가 많았다.

얼마 정도까지는 대출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한부모 자격을 딸 수가 있다. 집에 몇 프로 이상 재산이 있으면 안되는 거예요. 집이 내 거라서. 그게 소득으로 잡혀서. 현금은 없는데. 일단 집이 그거기 때문에...(중략).. 대출을 땡겨서 한부모가 됐고, 거기서 차상위가 됐고, 거기서 어린이집 보내고, (어머니 건강상) 조건부로 돼서 수급자가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초반에 대출 땡긴 것보다 지금 더 많아진거죠. 생활이 힘드니까 계속 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아 3)

저 같은 경우는 월 120을 넘으면 끊긴다 하더라구요. 다른 건 하나도 없어요. 제가 국가로부터 돈 받는 건 하나도 없는데 애 병원비. 애기가 아파서 근데 병원을 계속 다녀야 하니까. 그거 안 끊기려면 일은 해야겠고. 제대로 된 일은 못하고. 지금은 애들 가르쳐요. (유아 8)

학생인데 이제 사적소득 때문에. (수급자 지정 못 받음) 돈 통장으로 받지 말고 현금으로 친구들한테 받으라고. 수급자는 안 된다고. 근데 아니 근데 이것도 불법인거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알려줄 거면 진짜 알려주던가. 아니면 말을 해주지 말던가. 아니 그런 꿈수 다 알려주면서 왜 이런 거는... (유아 6)

5 인적네트워크 및 지원 요구

가. 부모와의 관계

개인마다 가정상황이 다르고, 관계도 서로 다르지만 대부분의 경우 임신인 사실을 원가족에게 알리고 양육을 결정하면서, 부모와 연락을 하지 않고 갈등상황인 경우가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현재 교류하면서 잘 지낸다고 해도 미혼모를 둔 가정으로서 회복될 수 없는 상처가 있다고 하였다.

저는 가족끼리 괜찮은데 서로 말하지 못한 아픔들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그게 보여요. 그래서 회복이 돼도 서로 준 상처가 아닌데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낸 상처라고 해야 하나 저희 엄마는 미혼모를 가진 엄마로서 힘들고 저희 아빠도 미혼모를 가진 아빠라 힘들고 저희 언니도 미혼모 동생을 뒤서 힘들고, 저도 미혼모라서 힘들고 그건 해결이 안돼요. (영아 4)

가족하고 사이가 원만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물론 원만하게 같이 키우는 집도 있는데 금전적 문제, 성격차이, 내가 미혼모가 된 거에 대해서 불만 아닌 내재적인 화가 많으신 거죠. (영아 1)

원래 안 친했어요. 가족들은 일을 안 하셔도 아이를 절대 안 봐주세요. 아이가 4살까지는 집에만 있었거든요. 나가기도 싫고, 다 만나기 싫고. 언니랑 같이 살기도 했는데 언니랑 맨날 싸웠어요. 애기 때문에. 언니랑 싸워서 애기가 울고불고 한 적도 있거든요. 4년 뒤부터는 친구들하고 연락을 했는데... (초등 2)

하지만 자녀가 크면서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점차 원가족과 교류가 있고 아이를 통해서 부모와의 관계가 원만해진 경우도 있었다. 연락을 잘 하진 않지만 부모의 지지가 큰 힘이 된다고 한 경우가 있었다.

전 저희 엄마만 계시는데요, 제 엄마는 처음만 반대지 그 다음부터는... 지금은 너무 좋아하세요. 내가 그때는 왜 그랬는지, 후회스럽다고. 그래서 지금은 너무 좋아, 좋는데 그렇다고 뭐 현실적으로 지지받는 거는 그냥 애를 잘 낳았다 이거고 돈이나 정신적으로는 그닥... (유아 5)

날고 한 2년째 그때 연락을 시작했어요. 그쪽에서 아시고 있었지만 연락을 안했었죠. 그러다가 저희 언니하고 오빠가 있는데 언니하고 오빠하고는 그래도 가끔 연락을 했거든요. 언니를 통해서 설에 한 번 오라 그러더라고요. (유아 8)

친정엄마. 저는 저희 애가 7개월 때 처음 갔어요. 그전에는 아빠가 용납이 안되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딱 보시고 녹았어요. (유아 9)

나. 어려울 때 도움이 된 사람

1) 나 자신

아이를 낳기를 결심하고 양육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큰 도움을 준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에 나 자신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임신사실을 알고 출산을 결심하고 양육을 결심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심리적으로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아이를 책임지고 키우겠다는 그 결심을 했기에 자녀에 대한 책임감과 자신에 대한 믿음이 가장 큰 삶의 원동력이었다고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자신이 직접 선택했기에 스스로 외로운 책임을 지고 있고,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기에 돌봄 및 양육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저는 없어요. 저 지금 허리 시술받아야 되는데 입원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어요. 애를 봐줄 사람이 없어요. 부모님하고도 연락 안 하고. (여아 3)

또한 이렇게 혼자 모든 것을 책임지고 생활해야하는 경우 출산 직후 양육 기술이 부족하여 이에 대해 도움을 줄 사람이 필요하였다.

12일 만에 애기를 데리고 왔는데 우는데 왜 우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룸메가 문을 딱 열고 오면서 언니 애기집봐 하면서 척척척척하더니 애가 울음을 푹 그치는 거예요. 그 친구에게 정말 많이 배웠어요. (영아 6)

2) 정부 및 민간으로부터의 지원

정부에서 제공하는 많은 지원들이 부족함과 불편함이 있지만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하였다. 미혼모 거점기관을 통해 지급하는 미혼모 초기 물품지원을 통해 받은 경제적 지원이 도움이 되었고, 민간 기업에서 미혼모 협회 등을 통해 지원되는 사업을 통한 전화상담이 심리 정서적 지원, 경제적 지원, 주거 지원 각각이 미혼모가 느끼기에 큰 도움이 되었음을 언급하였다.

저는 트라이앵글 사업에서 긴급전화 있잖아요. 저는 재가니까 시설이 없으니까 전화상담을 해주시잖아요. 저 때문에 엄청 시달리셨어요. 그거가 제일 도움이 되고 그 이후에는 정기적으로 기저귀 분유 주는데는 대한사회복지회에 없어서. 시설 들어가면 계속 주지만 딱 데는 특수하게 챙겨야지 주잖아요. 그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얼마 안되지만, 저는 항상

모든 지원 물품이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미혼모 거점센터에서) 10만원씩 양육물품 살 수 있게 해 주는거 있잖아요. 1년에 70만원 한도로 사는 거 있거든요. 그거가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거로는 애기 간식도 살 수 있고, 장난감도 살 수 있고. (영아 4)

3) 시설 거주에서의 도움

많은 면담자들이 시설거주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하였는데, 대부분은 시설 거주 생활에 대한 어려움이였다. 시설 내에서 사람들과의 어려움, 시설 규율의 엄격함, 시설 종사자들의 미혼모에 대한 이해의 부재 문제 등을 호소하기도 하였으나, 한편으로는 임신 후 영양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상황에 시설의 도움으로 영양 섭취를 하고, 자립에 지원을 받는 등의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한 고마움이 있었다. 임신 시 1차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병원을 방문하여야 하고 태아 상태 및 임신부의 건강상태를 점검해준다는 점에서 도움을 받았다.

저는 시설에 있어서 (병원을) 꼭 가야했어요. 저는 14주에 들어갔어요. 병원 진료는 다 받았어요. (영아 6)

시설에서 계속 있었어요. 시설 들어가고 한 달도 안되어가지고 애 낳았어요. 그 전까지 병원 한 번도 안 갔어요. 막달 다 되니까 시설 들어가서 계속 병원 가는 거예요. 시설에서도 난리가 났죠. 애는 전혀 안 크고 있었던 거예요. 밥을 제대로 안 먹었으니까 애 아빠가 일하러 간다고 하고 일을 전혀 안했던 거예요. 애는 안 크고 난리가 난 거예요. 집중적으로 앉혀 놓고 막 잘 먹였죠. (유아 7)

6 자녀 연령별 특성

가. 영아 자녀 가정의 어려움

1) 심리적 불안정 및 영아양육의 어려움

임신기 및 출산 이후 아이 아버지와의 갈등, 미혼모가 된 상황 등에 대한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영아를 혼자 양육하면서 겪는 육체적 피로가 더해져서 출산 전후 안정적인 양육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또한 출산 초기에 여러 정책 혜택을 받기 위한 지원 절차, 지원을 받음으로 인해 들어야 하는 의무적인 프로그램 참여 등을 어려워하기도 하였다.

백일 정도까지는 친정집에 있었어요. 제가 워낙 정서적으로 힘들어서 케어가 안되어가지구요. 낮에는 친정엄마가 봐주시고, 밤엔 아빠가 봐주시고. (영아 4)

저는 예전에 애기 많이 때렸어요. (영아 3)

지금도 애기 아빠에 대한 화가 지금도 잠을 못 잘 정도로 힘든데. 엄청 힘든데. 이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는데 애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와서 너무 힘든데. (영아 4)

2) 나홀로 육아의 어려움

수급을 받기 위해서는 자녀를 직접 양육해야하며, 자녀를 기관에 보낼 경우에는 일을 하거나, 구직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영아 자녀를 둔 생계급여 수급 조건의 어머니들은 생계 급여 수급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렇게 24시간 양육을 도맡아야 하기 때문에, 취업준비 등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

저는 수급자인데, 수급자 될 때 처음 한번 떨어졌거든요. 다시 재신청했는데 직접 양육을 하면 돈도 받고 어린이집 안가고 본인이 양육할 조건이 그래서. 어린이집 보내면 수급이 안가서. (영아 2)

어린이집을 가도 애를 케어를 하려면 일을 어차피 못하거든요. 고정적인 일을 못해요. 아이가 아프다고 내 맘대로 어린이집 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프면 어린이집에서 돌려보내거든요. 애가 아프면 조기하원을 해야 돼요. 너무 어리면 데려다주는 영아원도, 어린이집도 많고. 언니처럼 좀 커서 혼자 버스를 탈 수 있는 애기도 있지만 애는 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돼버리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수급비가 끊겨버리니까. 차라리 애를 안보내고 키워야 생계유지가 더 되는 거예요. (영아 1)

근로능력이 있으면 애기를 보육을 할 사람이 저밖에 만약에 없잖아요. 그런데 애기를 데리고 있으면 일을 못하니까 수급이 유지가 되는데, 어린이집 보내면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지니까. (영아 3)

3) 미혼모 한부모가족으로 자리잡기까지 행정절차

현실적 상황은 미혼모로 혼자 자녀를 키우고 있는 상황이나 아이 아버지가 동거인으로 되어 있거나, 출생 신고 시 아이 아빠와 동거중이라 출생신고를 아빠 이름으로 한 경우 등에 아이 아버지의 비협조로 한부모 지원상황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한 서류상의 조건을 변경하는 데에 소송과 법적 절차를 거치는

라 1년 이상의 시간을 보낸 사례도 있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애 아빠가 사업자로 있잖아요. 기저귀 바꾸처는 탈락했어요. 왜냐 하면 저희가 결혼은 안했지만 집이 공동명의였고, 애 아빠랑 저랑 동거인으로 되어있었던 거예요. 근데 애는 낳아서 제 밑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서류상으로 애 아빠는 아니지만 나의 동거인이기 때문에 애가 부양자로 되는 거예요. 애가 소득이 있으니까 OO이가 저소득층이 아니라서 기저귀 바꾸처를 받을 수가 없대요. 아빠가 아니라 내 동거인인데. 사실혼이 의심 되기 때문에 이걸 지원할 수가 없대요. (영아 1)

처음에 애기 이름도 원래는 아빠 밑에 올라가있었어요. 출생신고를 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애기 낳고 1달 안에 결핵주사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걸 하려고 하면 출생신고를 해야 되니까. 혼인신고도 안되어 있었어요. 애 주사는 맞춰야 되니까 구청가서 해라하니까 연락이 온 거예요. 원래 미혼모 앞으로는 애기가 올라가는데 미혼부 앞으로는 애기를 못 올려요. 근데 아빠가 혼자 와서 하는데. 혼인신고를 할거다라고 해서 그 직원이 아빠 밑에 올려준 거예요. (중략) 몇 번의 재판을 했다가 마지막에 엄마 밑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때도 내 밑으로 옮기는데도 돈이 들더라구요. (영아 3)

담당 공무원이 미혼모에 대한 지원 정책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담당자에 따라서 지원 여부가 달라지기도 한다고 하였다.

엄마들을 기초수급자를 잘 넘겨주는 공무원을 만나라고 그게 진짜 중요해요. (영아 6)

솔직히 사람이 이러면 안되는데, 저도 애기 낳고 나서 모르니까 넘어갔는데 이제는 애가 어느 정도 커서 이제 갓난 애기 데리고 있는 엄마 있잖아요. 뭐 했는데 뭐가 안됐다 하면 저는 가서 따지라고 해요. 이 사람들은 가서 직접적으로 따지거나 말을 안하면 안해줘요. 가서 애기를 해야돼요. (영아 1)

동사무소 직원이 모르고. 한부모만 얘기하고 차상위는 애기도 안한 거예요. 그러면 한부모 하는데도 두세 달이 걸렸는데 차상위 할라 그러면 또 두세 달이 걸리는 거예요. (영아 3)

4) 지역마다 다른 미혼모 거점센터에서의 지원 내용

전국에 17개의 거점기관이 있고, 기관마다 관할지역의 범위, 전체 인구수 등이 확연히 다름에도 같은 금액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지원 기간이 짧은 경우 지원 금액이 적은 경우 등 차이가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이 당사자 입장에서는 예정된 지원을 다 받지 못하고 줄어드는 느낌을 받게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⁵³⁾

저는 정책 중에 미혼모 초기지원 받고 있거든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은 수요를 감당을 못 해서 원래 주시던 금액에서 깎였어요. 원래는 연 70만 원이었는데 ... 금액이 똑 같이 나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연령도 어느 지역은 24개월까지,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36개월이니까, 사람들은 여기서 24개월까지 받다가 이제 서울로 다 넘어오는 거예요. (영아 7)

계속해서 미혼모는 늘어날 텐데. 갑자기 미혼모가 줄어들지는 않잖아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현실성 있게 금액을 조정해주시고,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이쪽은 이렇게 돼요. 저쪽은 저렇게 돼요.”하면 사람들이 “저쪽이 더 잘해준대.”하면서 가게 되잖아요. (초등 1)

또한 초기 양육 물품 지원을 통해 구매 가능한 물품 종류도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났는데, 한 지역의 경우는 영아에게 필요한 물품임에도 되파는 것이 가능한 물품을 제한하는 등의 규칙이 존재하여 정작 필요한 물건을 사지 못하는 불편이 있다고 하였다.

그니까 이렇게 있어요. 예전에는 10만원 안에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게 장난감도 내가 어떻게 보면 공짜로 받는 거잖아요. 10만원 안에서 사면 공짜로 받는 건데. 엄마들이 이걸 받아 놓고 되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아 3)

5) 기타 어려움

미혼모 자녀의 경우 다른 가정에 비해서 골고루 먹지 못해 영양결핍에 노출될 수 있는 경우가 있었다.

애네들이 골고루 먹지는 못해요. 일반가정 애들에 비해서 솔직히. 왜냐하면 과일이라든지 채소를 그때그때 넉넉하게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종류별로 그거를 저희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는 어릴 때 빈혈 왔었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 영양플러스 그걸 받았었어요. (영아 1)

또한 미혼모 지원을 받기 위해서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참여가 동반되는 경우가 있어 참여해야 하나, 어린 자녀를 데리고 이동을 하여 참여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53) 미혼모 거점기관의 어려움 및 지원요구에 대해서는 V장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임

아니면 내가 활동해야 되거나 참여를 해야 되거나. 어디든 참여를 해야지 혜택이 주어지는 거예요. (영아 1)

건가 같은 경우에는 1달에 한 번씩 자조모임 가야돼요. 만들기 수업이라든지 얼굴을 내비치고. 저는 OO이가 어리잖아요. 저는 차도 없어요. 그러면 대중교통 이용해서 덤뎨 촌뎨 애를 데리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저는 1월 달에 애를 낳았거든요. 산후조리도 못했어. 근데 주민센터에 애 출생신고인지 하려면 나 혼자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겨울에. 뭔가 하려면 무조건 가거나 참여하거나 사연을 쓰거나 그걸 다 해야 돼요. (영아 3)

나. 유아 자녀 가정의 어려움

1) 아빠에 대한 질문, 부재에 대한 대처

눈치를 너무 봐요. 어디서 그렇게 눈치를 줬는지 애가 아빠 얘기를 하면... ‘어제 밤에 우리 아빠’ 하다가 이려고 있어요. 절대 동요도 못 해요. 근데 제가 아빠 얘기를 막 하면 ‘아빠 얘기해도 돼?’ 그래서 “응. 아빠 어딘가에 살아계셔.” 찾아보려고 했어요. 왜냐면 아이의 권리잖아요. (유아 2)

얼마 전에 어린이집에서 가족에 대한 걸 배우면서 이라는 거예요. 엄마 우리는 가족 아니야. 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하니가 우리는 두 명이라서 가족이 아니래요. 그래서 우리 OO랑 엄마는 가족이야 그러니까 그래? 그러더라. 어린이집에서 엄마 아빠 애 이렇게 가족으로 규정하니가 애가 혼란스러워 하더라. 그래서 OO아 우리는 가족이야 엄마랑 OO이는 가족이고 엄마가 OO이 낳았어. 가족의 형태는 다양해. 그러니까 애가 이제야 이해를 하더라. 어린이집에서 그런 거를 생각 없이 아무 뜻 없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유아 9)

아빠 얘기할 때 물어봐요. OO아 아빠 보고 싶어? 이래 물어보면 “응 보고싶어” 그래요. 아빠가 지금 일하러 가서 아예 못 본단 얘기는 안하고. 아빠 지금 멀리 있으니까 OO이가 보고 싶을 때 연락해보고 만날 수 있으면 아빠 보러가자 그러면. “응 알았어” 이라고 돌아서요. 근데 그 말하는데 그 짧은 순간에 저는 많은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해야 애가 상처를 안 받을 수 있을까.... (유아 9)

2) 36개월 이후 경제적 어려움

미혼모 초기 지원 사업을 포함한 많은 지원의 기준이 자녀 연령 36개월까지 지원이 되고 그 이후는 별도의 지원이 없기 때문에, 36개월 이후 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이 많고, 본격적으로 자립을 권유받는 시기이므로 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이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영아시기에 영아를 직

접 양육을 해야 하는 상황이 대부분이므로, 36개월에도 미혼모가 자립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였다.

근데 무슨 기준이 다 36개월 기준인 거예요. 근데 36개월 돼도 아직 애기고 솔직히 경제적으로 자립을 할 수가 없거든요. (영아 1)

저희가 수급을 받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원래 36개월이면 수급이 끊겨요. 35개월까지 애기 보다가 36개월에 딱하니 직장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데도 만들어진 매뉴얼 안에서 엄마들을 자꾸 옥죄니까 말 그대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아이랑 같이 살면 나의 만족도도 높는데 그게 아니라 오로지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일만 찾으니까 그 일을 하면서도 계속 괴리감에 힘든 거죠. (중략) 36개월 났다고 엄마들 내몰지 말고... (초등 3)

다. 초등 자녀 가정의 어려움

1) 학교에서 교사의 부적절한 대응

학교에 처음 들어가면서 가족관계를 써내고, 저소득층 지원을 받는 경우 해당하는 서류를 나누어 주거나, 교사가 한부모 가정에 대한 대처를 잘 하지 못하는 경우 어머니나 자녀에게 상처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초등학교 처음 들어가면서 제일 어려운 건 가계도 조사죠. 그거를 대체 왜. 등본내고 다 하는데도 또 다시. (중략) 물론 뭐라고 말씀은 안하시죠. 근데 꼭 무슨 때만 되면 누구누누누 구만 딱 정해서 뭘 준단 말예요. 그것도 사실 좀... (초등 1)

아빠랑 하는 게 있는데 첫 마디가 “난 아빠 없는데.” 앤 개념치를 앓는 거예요. 개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선생님 놀래서 “응 알았어.” (말을 가로막음) 이랬대요. 왜 놀래요? 한부모 가정인거 분명히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왜 그 말을 막았을까요. (초등 1)

(다른 한부모에게서 전해들은 이야기 공유) 그 집 딸이 선생님이 확대가족에 대해 조사를 하면서 “확대가족인 사람 손들어” 그랬는데, 이 딸은 자기는 엄마랑 살지만 외삼촌도 있고 외할머니도 있으니까 “저요”하고 손들었어요. 교사가 “왜?” 하니까 딸이 “저희는 할머니도 있고 외삼촌도 있어서 확대가족이에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너희 집은 확대가족이 아니라 한부모가족이야.”라고 학교 수업시간에서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런 일이 한번 벌어지면 엄마들한테 소문이 짝 나죠. 그래서 저희는 엄마들이 학교를 가지 말라고 해요. (대표님 사례)

2) 다른 학부모와의 관계에서의 어려움

자녀 학교의 학부모 간 관계에서 미혼모라는 이유로 고립을 경험, 고립에 대한

대응은 주로 피하는 방법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저도 이번에 반모임을 하자고 반톡에 올라왔는데, 반대표가 만들어서 해요. 반모임을 하자고 하는데 시간대를 투표로 했더니 다 저녁시간에 아이를 아빠한테 맡겨두고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낄 자리가 아니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절대 끼면 안 되겠다 이 생각. 반모임에는. 저는 ‘엄마들이랑 친해지면 좋은 게 있겠지. 아이들이 더 친하게 지내겠지.’ 했는데 그건 상상의 일부였어요. (초등 2)

저는 학부모친구뿐만 아니라 친구도 없어요. (초등 3)

근데 어느 날 이런 단톡방이 그냥 멈춘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미혼모한테 막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미혼모인가 왜 얘기 안 했냐고. 성범죄자도 아닌데 왜 얘기를 해야 돼요? 그 분이 큰 상처받았다고. 그냥 피하는 게 아니예요. 필사적으로 피하는 거예요. (초등 1)

그리고 저번에 잠깐 얘기했던 엄마가 있는데, 그 엄마도 그 다음부터는 아예 자랑 얘기도 안하시고 그냥 피해요. 그래서 접근도 못하겠어요. 엄마들 모임도 있었는데 안갔거든요 제가. 모이자고 그랬는데, 단톡방...(초등 2)

(반 모임 등 학부모 모임에) 거의 대부분의 엄마들이 안 가는 거 같더라구. 가지 말라고도 해 불문율처럼 그냥. 안 가는 게 속 편해요. (초등 7)

드문 경우 부모 중에서 친구를 사귀고 교류하기도 하였다.

그 중에 00이랑 친한 친구 엄마 있는데 그분은 다 알고 계셔가지고, 제 사정을 알고 계셔가지고 가끔씩 지금도 부탁했더니 봐주신다고 잠깐. 집이 가깝거든요. 그래서 그 엄마 얘기 말고는 다른 사람하고는 한 마디도 안해요 정말. (초등 2)

3) 방과 후 돌봄 및 돌봄 공백

초등자녀를 둔 면담자 중 많은 수가 자녀를 지역아동센터에 보내고 있었으나, 방학에는 지역아동센터의 문 여는 시간과 출근시간이 맞지 않아 돌봄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였다. 초등돌봄도 될 확률이 높지 않고 고학년이 되면 이용이 어려워 지역아동센터에서 방과 후 돌봄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정해진 프로그램을 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가셔도 편히 쉬지 못하고, 자유롭게 있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걱정을 호소하였다(초등 4,5,6).

초등학생도 영유아처럼 돌봄이 필요하진 않지만, 하교 후 돌봐줄 사람이 없는

경우 혼자 하교를 하거나 밖으로 배회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염려하였다.

아이들이 집에 가서 쉬고 싶은데 엄마아빠가 없다는 이유로 계속 외부에서 도는 거거든요. 그 상황을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니까 그게 많이 안타까워요. 어느 집 아이를 떠나서. (초등 3)

라. 미혼부 양육 사례

1) 출생신고의 어려움과 미신고상황으로 인한 어려움

아이 엄마의 정보를 다 알지 못하고, 알려주지 않는 상황 때문에 만 2세 넘게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기관이용 불가, 미혼부 시설이용 불가, 한부모 지원 불가 등 모든 지원에서 배제되어 도움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그래서 여러 군데 전화를 해봤어요. 시설을. 미혼부 시설을. 전부 다 출생신고가 되어야한다고 하는거예요. 출생신고가 안 되면 안 되냐고. 제가 아빤데. 근데 출생신고가 안 되면 안 된다고 4~5군데가 다 안 된다고. (미혼부 1)

2) 지인과 미혼모·부 지원단체 도움으로 생계 유지

아이를 갑자기 맞게 되고, 살 집이 없고, 자녀가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시설에 가지도 못하는 상황이라 친구 집에서 함께 생활하였고, 친구도 이사를 가야할 상황이라, 검색을 통해 민간지원단체를 알게 되고 연락을 하여, 원룸 보증금 및 월세를 지원받고 일정수준의 생활비도 받고 있다고 하였다.

일반 원룸에 보증금을 후원해주시고 보증금을 제가 갖는 건 아니고. 월세를 매달 내주시는 거고. 세금 같은 거만 내가 내고, 월세까지 다 해주시고, 여기서 기저귀나 물티슈 다 가져다 쓰고 김치나 쌀 이런 거도 다 주시고. (미혼부 1)

3) 혼자 아이를 데리고 나가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

아이를 혼자 데리고 나가는 것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고 다른 사람들이 다 자신만 바라보는 듯한 느낌 등을 받아 외출이 불편하다고 하였다. 미혼부의 경우에도 아이를 혼자 키우게 되는 것에 대한 대비없이 혼자 데리고 나가는 것뿐 아니

라, 재우기, 먹이기, 씻기기 등이 모두 낯설고, 배워야 하지만 물어볼 곳이 없었다고 하였다.

처음에 애기 띠 매거나, 처음에는 애기 띠도 없었거든요. 그냥 안고 다니고 그랬거든요. 보건소에 예방접종하거나 하면 또 혼자 데려가면 창피하고. (미혼부 1)

애가 어렸을 때는 누나네 집에 자주 갔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거리는 한 시간 반 정도 되는데 자주 갔어요. 그 애기를 안고 누나네 집에 버스타고 가면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좀 창피하고 처음에는. (미혼부 1)

4) 다른 미혼부와의 만남을 통한 정보공유가 불가능함

미혼부로서 모르는 것도 많지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쉽지 않고, 미혼부들과 교류를 하려고 노력해보았으나 만나자고 하면 연락이 끊어지는 등 다른 미혼부를 직접 만나 정보를 얻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하였다.

그래서 남자들이 어디를 나서거나 애기를 데리고 누구한테 도움을 청하거나 할 때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여성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미혼부 1)

자존심도 좀 상하고. 내가 혼자 한 번 해볼까 하는 마음이 좀 커요. 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막상 부딪혀보면 진짜 안 되거든요. 그제. 그래서 조금 미혼부 분들이나 만남을 하거나 하는게 쉽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 곳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미혼부 1)

예전에도 이거랑 다른 얘기지만 출생신고 관련해서 인터넷에 글을 올렸어요. 인터넷에 검색을 해도 안 나오더라고요. 도움 받을 곳은. 글을 올려봤었는데 답글이 몇 개 달렸더라고요. 본인은 했다. 안됐다는 사람도 있고 쉽게 됐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연락을 해봤어요. 이래이래한 상황인데 만나 뵙고 커피한 잔 하면서 물어봐도 되냐고 했더니 그 다음부터 답변이 없어요. 다들 남자라서 그런 건지 자기 상황이 창피해서 그런 건지, 확인을 못하셨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 다음부터 답변이 없으시더라고요. 이게 창피하시고 그런 건가 만나기 꺼려하시나. 그런가하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혼부 1)

미혼부의 비율도 늘고 있고, 미혼모와는 다르게 미혼부가 겪는 어려움도 있기에 미혼부 간에도 네트워크 및 자조모임 등이 활성화되어,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7 소결

본 장에서는 실태조사에서 드러나기 어려운 미혼모·부 실생활에서 겪었을 경험들을 심층면담을 통해 양육단계별, 영역별로 듣고, 어려움을 파악하였다. 총 미혼모 25명, 미혼부 1명을 면담하였다.

미혼모의 심층면담을 통해 알아본 양육의 어려움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았다. 첫 번째, 혼자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어려움은 자녀 돌봄이었다. 특히 긴급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대체 양육자가 없기 때문에, 다니던 직장에서 해직당하거나, 직장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었다. 이에 따른 환아를 위한 돌봄 제공 또는 한부모를 위한 긴급돌봄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둘째, 기관이용 및 돌봄이용에서 맞벌이, 한부모, 조손가족, 다문화 등 취약계층 모두가 추천 대상이 되거나, 같은 순위를 받는 경우가 있어, 취약계층 안에서도 돌봄의 경우 돌봄 취약 순위를 정하여 저소득 한부모의 경우 우선권을 주는 방향이 필요하다.

셋째, 유아시기에 아버지 부재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 어머니들에게 심리적 부담이 되고 있었다. 어머니의 성향에 따라 상황을 대하고 설명해주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고, 그 과정에서 아이와 어머니가 상처를 받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집단 상담이나 전문가 조언이 필요하다.

넷째, 경제적으로 정부지원을 받거나, 한부모 신청을 하기 위해서 또는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 주민 센터 방문이 꼭 필요하다. 하지만 주민 센터에서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기에 이에 미혼모가족이 도움 받을 수 있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

다섯째, 미혼모·부 초기지원 사업이 지역마다 차이 나는 지원을 받고 있고, 부모교육 등 교육 참여를 위해서는 아이를 데리고 오는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참여에 한계가 있다. 부모교육 및 참여 프로그램들은 미혼모 가정을 위한 것이므로 여러 곳에 거점센터를 만들어 접근성을 높이고 당장 개소 수 확대가 어렵다면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초등학교 입학 후 학교에서 선생님이나 친구들, 또는 다른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부재에 대한 반응으로 상처를 받는 일이 있어, 기관 교사, 학

교 교사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배경의 자녀에 대해 대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교사 스스로 학생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할 뿐 아니라, 학교에서 학생들 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도 상황에 맞는 대처방법을 습득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미혼부의 경우 미혼모의 동의 없이 출생신고가 매우 어려운 구조여서, 출생신고 전에 아이를 맡았을 경우 시설입소, 기관등록, 한부모 지원, 병원이용 등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V

미혼모·부 초기지원 거점기관의 운영현황

1. 미혼모·부 초기지원 거점기관 현황
2. 미혼모 거점기관 현황 및 요구사항
3. 소결



V. 미혼모·부 초기지원 거점기관의 운영현황

본 장에서는 재가에서 자녀를 있는 미혼모의 양육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시설 거주하지 않는 재가 양육 미혼모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주요 전달체계인 미혼모·부자거점기관의 운영현황과 담당자들의 어려움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조사 및 토론회 자료 등으로 수집한 문헌을 참고하여 미혼모·부 초기지원 사업 거점기관의 현황을 알아보고, 전국 17개의 거점 기관 중 4곳의 전·현재 담당자를 면담하여 거점기관 운영 시 어려움, 담당자로서의 어려움 등을 파악하였다.

1 미혼모·부 초기지원 거점기관 현황

미혼모·부 초기지원 사업은 시설입소자를 제외한 미혼모·부자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만 3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 가정에 지원하는 출산·양육 지원을 비롯하여, 심리정서 지원, 친자 검사비 지원, 프로그램·자조모임, 자원 연계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⁵⁴⁾ 재가 양육하는 미혼모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예산 부족, 인력의 잦은 교체 등의 문제로 여러 가지 개선들이 요구되며, 미혼모 부자 거점기관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8년 5월 25일에 서울특별시 한부모 가족지원센터에서 진행된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운영개선 방안’에서는 미혼모·부자 거점기관의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현재 거점기관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거점기관에 지원을 받기 위해 오는 미혼모·부 들이 초기 상담 시 보다 구체적이고 도움이 되는 사례관리가 될 수 있도록, 경제, 건강, 인간관계, 교육, 생활기

54)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 미혼모부 초기지원사업 안내 <http://www.kihf.or.kr/lay1/S1T378C393/contents.do>, 2018. 11. 01. 인출.

술, 생활공간, 정서적 문제 등 균형 있는 삶이 이루어지도록 상담일지 작성을 위한 매뉴얼이 보다 구체화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이영호, 2018)⁵⁵⁾. 또한, 미혼모 지원이 시스템 속에서 장기적으로 지원되어야 하며, 미혼모 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사업운영비의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 점, 실무자 교육과 유관기관의 네트워크를 통해 실무자의 존재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있었다.

또한 거점기관의 분포, 운영 및 예산 관련 의견들을 논의했는데 핵심 내용은 <표 V-1-1>과 같다. 현재 미혼모 거주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위치와 예산이 일괄적으로 정해져서 인구수, 지역면적 등을 감안했을 때, 불균형적인 분포로 미혼모 거점기관이 분포되어 있고, 담당직원의 잦은 교체, 예산 부족, 위기상황 시 대처가 어려운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 표 V-1-1 ▣ 미혼모·부 초기지원 사업의 문제점 정리

구분	문제점
거점기관 분포	- 인구수를 고려하지 않은 불균형적인 분포 - 전국에 187개의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음에도 17개 지역센터에서만 거점기관 사업을 진행함.
운영관련	- 담당직원 수 1명 - 수행경험이 적고 근무 기간이 너무 짧음 - 응급상황에 도움을 받을 수 없음
예산관련	- 부족한 예산 - 규모 상관없이 동일함

자료: 김도경(2018).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편.), 미혼모부자거점기관 운영개선 방안 토론회 자료집(pp. 25-30.). p.26.

2 미혼모 거점기관 현황 및 요구사항

본 절에서는 4군데의 미혼모 거점기관의 사례 조사를 통해 미혼모 거점기관의 현황 및 어려움, 요구사항 등을 살펴보았다.

가.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1) 예산 부족으로 인한 지원 대상 조정

55)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2018). 미혼모·부자거점기관 운영개선 방안. 중 이영호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대표 토론회에서 발췌.

양육 용품지원의 경우 중위소득 72%이하 한부모 중 36개월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게 1년 70만원(1회 10만원씩)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따라 미혼모 가족 수에 차이가 있고, 이에 따라 지원신청이 많은 지역은 예산범위에서 정해진 수준의 지원을 다 할 수 없어 지원 기간 및 지원 자녀 연령 등을 조정하여 지원하고 있는 상황을 나타냈다.

지원자가 많아서 양육용품 지원은 24개월 이하 자녀에만 제한하고 있고요, 나머지 자조모임, 교육프로그램, 문화행사 등은 36개월 이하 자녀를 둔 가정도 받을 수 있어요 (거점센터 C)

제한 방법이 정해진 건 없고 센터마다 다르게 운영해요 (거점센터 A)

1년에 지원할 미혼모 수를 예상했을 때, 지원 자녀 연령수를 제한하거나, 금액을 조정하지 않아도 되는 센터의 경우, 미혼모 인구수가 많지 않은 지역의 경우는 현재 1년에 지원중인 미혼 한부모 가구 수가 35가구 정도로 1년에 70만원씩 지급 가능하다고 하였다. 반면, 지원신청이 많은 지역은 센터에 따라 거점센터마다 1년간만 지원하거나, 지원 금액을 낮추는 등의 내부 규율을 다르게 하여 지급하고 있었다.

2) 부모교육 등 프로그램 참가

미혼 한부모 초기지원사업 지원을 위해 1회 7만원의 비용지원을 직접 담당자가 함께 만나 쇼핑을 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어, 지원물품 구매를 위해 만나서 상담 및 상황 파악 등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장점이 있다고 하였다. 1회 7만원 비용지원, 부모교육 등 프로그램 참여시 2만원을 추가한 9만원 비용지원으로 프로그램 참여를 장려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일부 거점센터의 경우 육아용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교육 및 참여 프로그램을 필수로 들어야 하는 등의 제약이 있기도 하여, 자발적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한 구조가 필요하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미혼 한부모 가구 지원 프로그램은 부모교육, 육아용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집단 상담, 자조모임, 문화체험 등의 지원이 있는데 거점기관 B의 경우는 시설양육미혼모와 함께 문화체험을 하기 때문에 문화체험의 비용은 시설에서 부담하여 행사 공유가 가능한 점을 장점으로 꼽았다(거점센터 B).

지역에 따라 미혼모·부 초기 거점기관의 관할 범위가 넓고, 거주 인구가 많지

많은 경우 한 사례를 관리하기 위해 하루 종일 차를 운전하여 가야하는 어려움이 있고, 부모교육 및 체험 행사를 개최하더라도, 미혼모 가족이 참여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거점센터 뿐만 아니라 미혼모 가족의 거주 지역 가까이의 다문화 센터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또는 문화센터 등 유사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에서의 교육활동 참여에 대해 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거점센터 D).

나. 미혼모·부 거점센터 운영의 어려움

위에서 언급되었던 것처럼 전국에 존재하는 거점기관의 개소수의 부족, 예산 부족, 인력의 잦은 교체 등의 문제로 여러 가지 개선들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거점기관 사례 조사를 통해 알아본 미혼모·부 거점센터 운영의 어려움은 다음과 같다.

1) 한부모임을 밝히는 과정

미혼모·부 초기지원 중 양육 용품지원을 받기 위한 대상자로는 "36개월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부자 가구 중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2%이하인 가구"로 정해져 있으나, 이는 한부모를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를 밝히는 것 자체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사실혼 관계로 의심되나 확실한 근거가 없을 경우 지원하지 않을 수 없고, 사실혼 관계임이 거의 확실해 보이나, 상황이 너무 어려울 경우 지원하지 않기도 어려운 딜레마에 빠진다고 하였다.

2) 예산 부족

예산은 사업비와 운영비, 담당자 인건비가 모두 포함되어 연 5,000만원이 지원된다. 사회적 인식의 변화 등으로 미혼모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에도 예산이 5년간 동결되어왔고, 2019년 예산안에도 운영비, 사업비가 작년과 동결되었다. 양육 물품지원도 자녀가 36개월 미만 자녀를 가진 미혼모·부 가구에 연간 7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지만 예산부족으로 일부 거점센터에서는 지원 가구 대상 축소, 지원 기간 축소, 지원 금액 감액 등의 지원내용을 변경해야하는 상황을 맞고

있었다. 다음의 사례는 미혼모 당사자 면담 사례 중 초기거점기관에 관한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저는 정책 중에 미혼모 초기지원 받고 있거든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은 수요를 감당을 못 해서 원래 주시던 금액에서 깎았어요. 원래는 연 70만 원이었는데, 금액이 똑같이 나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연령도 어느 지역은 24개월까지,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36개월이니까, 사람들은 여기서 24개월까지 받다가 이제 서울로 다 넘어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미혼모는 늘어날 텐데. 갑자기 미혼모가 줄어들지는 않잖아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현실성 있게 금액을 조정해주시고,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이쪽은 이렇게 돼요. 저쪽은 저렇게 돼요.”하면 사람들이 “저쪽이 더 잘해준대.”하면서 가게 되잖아요 (영아 7).

3) 인건비 지급 구조개선 및 인력 보충

현재 미혼모·부 초기 지원 사업 담당자로 1명이 배정되어 있고, 가정방문, 사례관리, 상담, 프로그램 구성 등 초기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업무 및 관련된 행정 업무를 맡아서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미혼모·부 초기지원 사업지침에 “사업수행 담당자의 기본급은 월 185만원 이내로 함(여성가족부, 2018a: 312)”으로 명시되어 있어, 상담 등의 전문 능력이 필요한 경력인력을 뽑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업무를 시작하여 미혼모 거점기관 담당자로서 경력을 쌓았다 하더라도, 임금상한 금액이 정해져있는 한 경력을 반영한 정해진 수준 이상의 임금상승이 불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미혼모·부 가정을 지원하고 상담하고 방문하면서 쌓인 노하우들을 지속해서 활용하지 못함과 동시에 담당자들이 바뀌게 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지속해서 일을 하고 싶어도, 임금상승 불가 규정으로 인해 기존 미혼모·부 초기지원 담당자가 다른 업무로 옮기고 새로운 인력을 뽑게 되는 것이다. 면담자 중 전 담당자였으나, 경력 증가로 다른 업무를 맡고 있는 면담자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다.

바라는 점은 “사업수행 담당자의 기본급은 월 185만원”이라는 문구만 없다면 좋겠어요. (거점센터 A)

전 그 일을 계속 하고 싶었거든요. 임금 안올라도 된다고 했는데, 안된다고 옮기라고 해서.. 지금도 제가 여기 있으면 부모교육 같은거 받으러 와서 인사하고.. 그래도 제가 여기 있니까 그분들을 계속 보게 돼서 좋지요. (거점센터 A)

2019년 예산안의 인건비 부분에서 종사자 처우개선 1.8%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변경될 예정이나(미혼모지원 네트워크, 2018),⁵⁶⁾ 이는 실질적 도움이 되는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다. 경력이 높아지지만 경력만큼 임금을 상승시키지 못하는 규정 때문에 미혼모·부 거점기관 담당자로서 지속적인 업무를 원할 경우에도 담당자에 다른 업무를 부여하고 거점기관 담당자는 다시 뽑는 형태가 지속되어, 담당자의 잦은 교체가 일어나고 이로 인한 인수인계가 어렵다. 업무량 및 임금 문제 외에도 담당자가 자주 바뀜으로 인해 미혼모 당사자 입장에서도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다시 관계를 쌓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지원을 받는 미혼모에게도 정서적 부담을 줄 수 있으며, 라포 형성 및 정서적 지원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업무자체는 인수인계할 수 있지만, 그 분들의 사정을 인수인계할 수는 없거든요. 새로 오신 분은 또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고... 저도 어떤 사정은 6년 만에 알게 된 것도 있어요.(거점센터 A)

4) 담당자의 업무 과중

미혼모·부 초기지원 사업 담당자가 처음 업무 시작 시 어려움은 짧은 인수인계 기간으로 인해 필요한 업무를 파악을 하지 못한 채 업무를 시작하게 되어, 행정적 일처리가 오래 걸리고, 이로 인해 미혼모 지원에도 소홀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였다. 거점기관에서 미혼 한부모 가구를 지원하는데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적절한 지원을 위해 인력충원이 필요하다.

▣ 표 V-2-1 ▣ 미혼모·부 초기지원 거점기관 현황 및 개선안

구분	현황	개선안
거점기관 분포	- 인구수를 고려하지 않은 불균형적인 분포 - 전국에 187개의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음에도 17개 지역센터에서만 거점기관 사업을 진행함.	- 인구수에 비례한 미혼모·부 거점기관 추가운영 필요 - 보다 많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미혼모·부 지원담당자를 두어 부모교육 및 사례관리에 있어 접근성을 향상시킴
운영 관련	- 행정업무, 상담업무, 사례관리 등을 모두 1명의 담당자가 맡아, 업무집중이 어려움 - 인건비 상한 금액이 정해져 있음: 잦은 인력교체를 초래하며 담당자의 경험부족과 라포형성에 어려움이 있음	- 담당 인력 보충: 상담전문인력 별도 배치 - 인건비 지급구조 개선: 경력을 반영하여 임금이 상승할 수 있는 구조를 확보해야 함 ex. 미혼모·부 거점기관이 건강가정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56) 미혼모지원 네트워크(2018), 2018, 2019년 예산안 분석자료,

구분	현황	개선안
		호봉을 따르는 등
예산 관련	- 예산이 지원 대상 인구에 상관없이 동일하여, 지역에 따라 정해진 기준만큼 양육물품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인구규모를 반영하여 거점기관 당 지원금을 편성하여, 양육물품지원 대상의 가정수에 비례하여 동일하게 지급되도록 해야함.

3 소결

미혼모·부 초기지원 사업은 한부모에는 해당되지 않는 미혼모·부에게만 지원되는 가장 대표적인 미혼모·부 지원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다음의 이유로 거점센터 운영과 미혼모 가족에게 제공하는 충분한 지원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첫 번째, 담당인력의 저임금과 경력향상으로 인한 임금향상이 불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두 번째, 전국에 오직 17개 거점센터로 절대적 수 부족으로 한 거점센터에서 관리해야하는 지역범위가 너무 넓고, 거리가 멀어 관리와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

세 번째, 지역별로 한 거점센터가 담당해야 하는 미혼모·부 수의 차이가 있으나, 한 센터 당 같은 금액의 지원만이 이루어지고 있어 당사자에게 지원되는 금액이나 기간에 차이가 발생하여 불균형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각 지역 별로 다른 상황을 이해하고 융통성 있는 운영을 인정해주고, 지속적으로 초기 거점센터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여, 한부모 가족이 아닌 미혼모·부 가족이 초기에 지원받을 수 있는 도움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확장해가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VI

미혼모·부 가정의 자녀양육 지원방안

1. 정책 방향
2. 자녀 양육단계별 요구 및 정책 방안
3. 미혼모·부 생활 점점별 정책 방안



VI. 미혼모·부 가정의 자녀양육 지원방안

본 연구에서는 재가에서 양육하는 미혼모·부의 양육에 초점을 맞추고, 300명 대상의 미혼모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제시한 미혼모 양육 및 자립실태 현황을 살펴보았다. 또한, 심층면담을 통해 제시한 미혼모·부 가정의 양육의 어려움 및 지원요구를 분석하였으며, 미혼모·부 초기지원 거점센터 사례조사를 통해 거점센터 담당자들의 어려움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미혼모·부 양육 지원에 있어 보완될 점과 나아가야 할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며, 본 장에서는 재가 양육 미혼모·부가 보다 나은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한다.

1 정책 방향

가. 미혼모·부도 양육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마련

입양 특례법 이후로 입양건수는 현저하게 떨어져(본 연구의 표 II-1-15 참고), 양육 미혼모의 비율이 늘어났다고 짐작할 수 있는 반면, 베이비박스 등을 통해 버려진 아기의 수는 늘어났다는 통계 또한 부정할 수 없다⁵⁷⁾.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에 대해 사회에서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선 때문에 자녀를 포기하지 않도록, 양육을 결심한 미혼모·부를 지지하는 사회 분위기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양육하기로 결심한 재가 양육 미혼모·부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시설에서 지원을 받지 않고 스스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재가양육 미혼모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이 필요하다.

57) 뉴스웨이(2016.10.26). [카드뉴스] 저출산 시대의 아이러니, 버려지는 아기들. 미혼모협회 I'm MoM. <https://mihonmo.modoo.at>, 2018. 12. 19. 인출.

재가에서는 임신기, 출산 초기의 병원 이용, 주거 마련 등에서 절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음과 동시에 시설이용의 목적도 결국 재가로 자립을 하게 되므로, 재가에서 건강하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나. 미혼모·부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전달체계 마련

미혼모·부 초기지원사업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를 근거로 하여, “미혼모·부가 아기를 스스로 양육하고자 할 경우 초기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상담 및 정보제공, 자녀출산과 양육 시 응급지원 서비스를 제공”(여성가족부, 2018a: 305)하기 위한 서비스이다. 하지만, 본 연구의 조사에서 미혼모·부 초기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3.5/4(본 연구의 표 III-5-4 참고)로 높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지원받고 있는 가구의 비율이 9.0%, 과거에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가구가 11.3%로 지원경험 비율은 낮은 편이다. 또한 예산부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점과 거점센터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현재는 미혼모·부 초기지원 거점센터의 운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거점센터 운영의 실효성 논의와 더불어, 미혼모·부 상황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지원해줄 수 있는 근본적인 전달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고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 미혼모·부 재가 양육 가정의 돌봄 지원 확대가 요구됨

본 연구에서 살펴본 결과, 모의 상태가 취업을 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구직중이거나 직업훈련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아이돌봄으로 인해 구직에 제한이 있거나, 직업훈련과정을 이수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본 연구의 표 III-3-11, 표 III-3-20 참고). 또한 자녀 돌봄을 맞춤형으로 제공해줄 수 있는 제도인 아이돌봄 사업이 있지만, 인지도는 93.4%로 매우 높은 것에 반해 실제 이용비율은 17.1%에 불과했다. 이용하고 있지 않은 응답자 중에서도 이용의향이 있는 응답자는 64.0%로 높고, 이용만족도도 3.9점으로 매우 높으나(본 연구의 표 III-2-7 참고),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과 연결의 어려움, 지원 조건 등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용에 어려움이 많다. 또한 기관 이용 및 돌봄 이용에 있어서도 우선순위가 세분화 되어 있지 않아, 한부모, 조손가족, 맞벌이 등 돌봄 기관을 원하는 모든 집단이 동등하게 우선순위를 부여받는다면, 맞벌이의 경우에

자녀 수 등에서 더 우선적으로 지원되는 경우가 있어, 저소득층 미혼모 등 돌봄을 지원해줄 지인의 부재, 경제적 능력의 부족, 생계유지의 어려움 등 복합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단에 대해 우선적 기회를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

라. 미혼모·부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조사 결과 미혼모 응답자가 답한 미혼모에 대한 인식은 ‘매우 심각하다’는 의견이 31.7%로 매우 높고, 특히 초등학생 자녀를 둔 응답자의 경우 그 응답이 41.9%로 더욱 높았다(본 연구의 표 III-5-1 참고). 면담 결과를 감안하더라도, 양육 미혼모 뿐 아니라, 미혼모가족의 자녀까지 보육교육기관 및 학교의 교사, 친구들, 학부형을 비롯하여, 주민센터 등의 접점을 통하여 부정적 시선을 경험하고 있다(본 연구의 표 III-5-2 참고). 양육미혼모에 대한 편견과는 다르게, 자신과 자식을 책임지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각 접점에서의 반 편견 교육과 함께, 양육 미혼모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공공캠페인의 시행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당면시 되고 있는 미혼부의 무책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양육비 이행에 있어 강제성 강화, 미혼부의 무책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게 하는 사회적 인식 및 분위기 조성이 필요할 것이다.

2 자녀 양육단계별 요구 및 정책 방안

가. 자녀 양육단계별 지원내용 정리

[그림 VI-2-1]에서는 미혼모·부 가족이 혜택 받을 수 있는 지원내용을 임신기, 출산기, 영아 양육기, 유아 양육기, 초등 양육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러한 지원 내용에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받을 수 있는 보편적 지원부터, 저소득층 대상(중위소득 ~ 이하), 저소득 한부모 가족 대상(2018년 기준 중위소득 72% 이상), 저소득 한부모 가족 중에서도 미혼모·부에 해당하는 가족, 또는 가구 대상이 받을 수 있는 지원 내용들로 지원 대상이 나누어진다. 또한 지원 내용별로 살펴보면, 경제적 지원, 의료 및 건강지원, 돌봄지원, 법률 및 주거지원, 자립 지원 등으로 그 지원의 종류를 구분해 볼 수 있다.

[그림 VI-2-1]에서 보듯이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등은 모든 가구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지원내용에 따라 중위소득 30~50% 이하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저소득층 지원, 또한 저소득 한부모 및 청소년 한부모일 경우 받는 아동양육비 및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거주지원 등이 있다. 이처럼 미혼모 가족은 상황에 따라 다양한 대상을 위한 지원체계 속에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림 VI-2-1 연령별 지원내용 정리

	임신	출산	영아양육	유아양육	초등양육
통합지원			미혼모·부자 초기지원 드림스타트(선정)		
의료 및 건강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출산비용 지원 (기초생활, 긴급복지)			
		산모건강관리(보건소)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지원(산후관리) 영양플러스(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 불량)			
경제적 지원		아동수당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아동양육비 저소득층 주거, 조제분유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돌봄 지원			보육료 및 방과후 보육료 지원	유아학비 지원	초등돌봄 지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아이돌봄 서비스	
법률 지원			양육비이행확보 지원서비스		
주거 지원			한부모가족 무료 법률 구조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임대주택		
자립 지원					
			청년희망기움통장(근로활동 조건) 취업성공패키지		

자료: 1) 복지포 홈페이지,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각 사업별 검색. <http://bokjiro.go.kr/wellInfo/retrieveWellInfoBoxList.do>. 2018. 12.20. 인출
2) 영양플러스, 보건복지부(2016). 2016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 -영양-,

나. 자녀 양육단계별 지원 요구 분석

1) 임신·출산기 요구 분석

본 연구에서는 임신·출산기보다는 양육기의 어려움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미혼모 가족 지원이 현재 한부모 가족지원법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볼 때, 임신·출산기에 해당하는 지원이 부족하다.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을 하고, 양육을 결정함으로써,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 미혼모 가족의 경우, 임신기에 심리적 안정 뿐 아니라, 적절한 병원방문을 통한 검사 및 치료, 및 임신부의 건강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것이다. <표 VI-2-1>에서는 조사에서 나타난 임신·출산기 상황 및 정책요구를 나타내었다.

▮ 표 VI-2-1 ▮ 임신·출산기 지원요구 및 정책 방안

구분	상황 및 요구	정책 방안
임신 출산 양육 결정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자 육아하게 된 주된 사유는 부의 책임 및 만남 회피(46.3%)가 가장 높음. - 임신, 출산기에 자녀의 아버지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우가 많음. 	부의 책임 강화
임신 의료시설 이용 및 산후조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 4%에 달하는 미혼모가 출산전에 전혀 병원을 찾지 않고, 29.7%가 25주 이후 병원을 찾았음. - 14주 이후에 병원 방문을 한 미혼모의 34%가 병원비가 없다는 이유로, 그 다음이 '출산을 결정하지 못해서'(16%)로 나타남. - 출산 후 28.3%가 산후조리를 하지 못하였다고 답하였고, 정부지원 산후도우미의 경험을 받은 경우가 13.2%에 지나지 않음. 	저소득 출산에 대한 국민행복카드 추가지원 산후조리 지원 홍보
보완되어야 할 임신·출산기지원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36.3%): 긴급주거시설 제공 - 2순위(24.7%): 의료서비스 정보제공 - 3순위(12.0%): 심리상담 지원 	임신기 정보 제공 안내 전화

주: 본 연구의 Ⅲ장 실태 조사 및 Ⅳ장 심층면담 내용을 바탕으로 함

이러한 조사 결과 및 심층면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임신·출산기에 꼭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지원 정책은 다음과 같다.

가) 임신·출산기 의료비 지원 강화

현재 청소년 임신의 경우 국민행복카드로 120만원⁵⁸⁾, 그 외의 임신부의 경우에는 전 국민 동일하게 국민행복카드로 50만원의 임신·출산기 지원을 받는다. 하지만, 현재 지급되는 50만원으로는 임신·출산기의 의료비를 다 충당하지 못하여, 꼭 필요한 검사를 받지 않거나, 병원방문을 늦추는 경우가 있었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20%에 달하는 미혼모가 15주 이후에 병원방문을 하였고, 늦은 병원방문의 이유로 ‘병원비가 없어서’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본 연구의 표 III-4-8 참고).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해산급여로 60만원(쌍둥이 출산 시 120만원)이 지급되나⁵⁹⁾, 50만원 지원인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임신·출산기 지원과 중복지급이 불가하여, 저소득층 한부모를 위한 출산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2019년부터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임신·출산기 지원 금액이 6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고, 산모 뿐 아니라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 결제도 가능하게 된 것⁶⁰⁾은 바람직한 현상이나, 60만원은 여전히 임신·출산을 충당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이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70%이상이 만 25세 이상의 성인이나, 실질적 경제적 자립이 어려워 대출을 통해 출산을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본 연구의 표 I-3-1, 표 III-4-12 참고). 임신·출산기 지원의 경우 저소득층 대상으로 저소득층의 임신의 경우 의료비 지원을 인상하여, 임신 시 기초검사, 출산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수준으로의 조절이 시급하다.

또한,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재가 양육을 할 경우 임신기의 영양 및 건강상태에 대한 관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병원을 가지 않아 산모의 건강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임신기에 기본적인 건강을 관리 받고, 병원이용을 할 수 있는 제도 마련하고, 출산 후 한 달간 산후조리 인력을 확보시킴

58) 복지포,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searchIntClId=01&searchCtgId=999&welInfSno=58&pageGb=1&doMainName=&firstIndex=10&recordCountPerPage=10&cardListTypeCd=list&welSrvTypeCd=01&searchGb=01&searchWelInfNm=&pageUnit=10&key1=list&stsfCn=>, 2018. 11. 30. 인출.

59) 복지포,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해산급여,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welInfSno=283>, 2018. 11. 30. 인출

60) 베이비뉴스(2018. 08. 07). 국민행복카드 지원금 60만원으로 늘어난다. <http://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7107> 2018. 11. 30. 인출.

으로써 산모와 아이의 건강 뿐 아니라 육아에 대한 기본적 방법을 자세히 알려줄 수 있는 전문 인력배치가 필요하다.

나) 원스톱 전화를 통한 임신기 정보제공

현재로는 미혼모 가족의 대부분이 겪었을 위기 임신 상황에서, 개인의 상황에 맞는 지원정보를 의논할 수 있는 상담창구가 부족하며, 본 연구의 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12.0%가 '심리상담 지원'이라고 응답하여, 예상하지 못한 임신 발생 시, 상황에 맞게 필요한 지원정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정확한 상담전화 신설이 필요하다.

〈표 IV-3-1〉에 나타내었듯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2018. 8.)에서는 위기임신 상담 및 다문화가족, 한부모, 미혼모·부 등 어려운 상황의 가족이 임신·출산·자녀양육, 양육비, 가족갈등 등 어려움을 원스톱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 가족상담 창구 설치를 제안하였고, 2019년에 신설될 예정에 있다.

▣ 표 VI-2-2 ▣ 미혼모·부 대상 상담창구 마련 계획

구분	내용
[비혼 출산·양육] 동등하게 대우받는 여건 확립	- 비혼모 등 경제사회적 어려운 상황의 임신출산양육 관련 통합적 문제해결을 위한 원스톱 상담창구 운영
	- 24시간 위기 임신·출산 상담, 관련기관 연계, 종합정보제공 등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18),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 추진방안. pp. 14-15.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한부모 상담전화(61)에서도 미혼모·부 대상 초기 상담 및 출산, 자녀양육, 시설 입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한부모 가족대상 정부지원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정해진 주제에 대한 정보 제공뿐 아니라, 미혼모·부의 경우 저소득층 지원 등 한부모(미혼모·부)의 상황에 맞는 상담이 필요하다.

61)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부모 상담전화. <http://www.kihf.or.kr/lay1/S1T378C392/contents.do>. 2018. 11. 30. 인출.

표 VI-2-3 한부모(미혼모·부 대상) 원스톱 상담창구 세부 제안 내용

구분	내용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도록 하루 3교대가 가능한 충분한 상담인력 확보 - 법률 자문 상담인력 확보 - 한부모 당사자 입장에서의 상담이 가능한 전문인력 확보
상담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혼모부초기 지원사업, 한부모가족대상 정부지원 정보, 양육비 이행지원 연계 등 여성가족부 산하의 사업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한부모(미혼모·부)의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는 복지정책까지도 제안해줄 수 있는 범부처적 정보제공이 가능해야함 - 맞춤형 정보제공 필수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부모 및 미혼모 당사자 협회 및 민간지원단체 연락처 공유

이러한 원스톱 상담전화에서 보완되어야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를 통해 미혼모·부 가정의 지원요구를 살펴보면, 양육정보 및 미혼모·부 가정이 지원받을 수 있는 정확한 지원 정보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이는 주민센터 등 지원정보를 제공받아야 할 접점에 있는 담당자가 자주 바뀌고, 해당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며,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는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원스톱 상담전화에서는 정확하고 구체적이고, 다양한 지원정보, 복지정보까지 상황에 맞추어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미혼모가 자녀를 출산하고 출생신고를 하는 과정,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문제로 정부 지원을 통해 경제적 지원을 받기 위한 과정에서 다양한 케이스의 법률 자문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이에 대해서는 물어볼 사람조차 없어,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원스톱 상담창구 구성 시, 보다 실질적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법률 자문이 가능한 인력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필수적이다. 셋째, 한부모(미혼모·부) 대상의 정보제공 및 상담전화에서는 한부모가정관련 업무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한부모(미혼모·부)의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는 복지정책까지도 제안해줄 수 있는 범부처적 정보제공이 가능해야한다. 또한 한부모(미혼모·부) 상담창구에서 한부모 및 미혼모 당사자 협회 등의 대표전화를 공유하는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면, 정부지원정책으로 제공받지 못하는 부분을 민간지원단체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2) 영아 양육기 요구사항 및 정책 방안

영아 양육기의 요구 사항과 관련하여 개선되어야 하는 정책방안을 <표 VI-2-4>에 간략히 정리하였다. 영아기 부모의 경우 많은 비율의 응답자가 자녀를 기관에 보내지 않고, 엄마가 혼자 자녀를 돌보며,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을 혼자 하는 것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육체적 어려움, 자녀의 비양육 부모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으로 인한 심리적인 어려움, 자녀 양육 시 필요한 정보의 부족 등이 주요한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 표 VI-2-4 ▮ 영아 양육기 지원요구 및 정책 방안

구분	상황 지원요구	정책 방안
영유아 대상 서비스 이용	- 어린이집 시간연장형 보육을 전체의 30.8%로 이용률이 높고, 이용하지 않은 부모 중 64.3% 또한 시간연장형 보육을 원함.	기관 이용 우선권 및 긴급 돌봄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자녀 양육시 필요한 정보	- 정부 지원에 대한 정보(34.7%)와 출산 직후 자녀 양육에 대한 기술(33.3%)에 대한 정보 필요함.	실질적 양육에 도움이 되는 부모교육 제공
식생활	- 식사를 거르지는 않지만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의 섭취가 충분하지 않음.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자녀 건강체크 및 영양섭취 관리
어머니의 우울 정도	- 미취업 집단이 양육효능감이 부족하고 우울감이 높은 경향을 보임. - 영아기에 아이 아버지와 관계 정리 등으로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경향을 보임.	심리상담

주: 본 연구의 Ⅲ장 실태 조사 및 Ⅳ장 심층면담 내용을 바탕으로 함.

가) 재가양육 미혼모의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유아부모에게도 해당하는 사항이나, 기관을 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영아 자녀를 둔 미혼모의 경우, 엄마가 아프거나, 취업 준비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개인의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수요가 매우 높았다.

여성가족부에서도 2019년 예산안에서 아이돌봄 지원시간을 연 600시간에서 연 720시간으로 확대하고, 정부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20%에서 150%로 인상하는 등의 지원을 확대하여 아이돌봄 서비스의 지원 확대 노력을 하고 있으나(여성가족부, 2018c: 2), 많은 미혼모 가정에서는 지원받은 금액조차도 부담이 커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용하고자 해도 연결이 잘 되지 않아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실질적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아이돌봄 서비스 시간 및 지원대상을 늘리는 것 이전에, 제공자의 공급을 늘리는 것과 동시에 돌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배정 지원이 필요하다.

2019년 예산안에서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거주하는 한부모 가족의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위해 61억 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여성가족부, 2018c: 6). 하지만, 전국에 있는 한부모 및 미혼모가족복지시설에 시설에 거주하는 한부모 수는 한부모, 미혼모·부 포함하여 정원 기준으로 2,000세대(본 연구의 표 II-2-5 참고)정도에 지나지 않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현재 예산안은 매우 높은 금액이다. 이 지원금액을 배분하여, 재가에서 12세 미만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원하는 돌봄체계 지원 방안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따라서, 이에 한부모 시설에 거주하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과 함께 재가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미혼모의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할 필요가 있다.

나) 영아 부모의 심리적 상담

미혼모인 영아 부모의 경우 임신 및 출산 과정을 겪으면서 자녀 아버지와의 관계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자녀를 혼자 키워야 하는 육체적 어려움 등을 복합적으로 경험한다. 상황적으로 이해해주고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지인도 많지 않은 상황이고, 복합적인 스트레스가 예상되는 대상인 영아 부모와 미혼모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자녀돌봄과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혼자 자녀를 키우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다) 영아 자녀 건강 체크 및 영양지원

많은 미혼모 가정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는 어린 영아의 건강상에도 큰 영향을 준다. 현재 아이가 아플 경우 저소득층 대상으로 영양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어린 자녀를 둔 저소득층 한부모의 경우 자녀의 영양높은 식생활을 위해 금전적으로 투자가 어렵기 때문에, 꼭 필요한 식자재를 지원하는 등의 실질적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3) 유아 양육기 요구사항 및 정책 방안

유아 양육기의 요구 사항과 관련하여 개선되어야 하는 정책방안을 <표 VI-2-5>에 간략히 정리하였다. 유아기의 양육의 어려움으로는 아버지의 부재에 대한 대처, 기관이용 시 긴급돌봄필요에 의한 돌봄공백, 여가생활의 부족, 기관에서의 부당한 대우 등의 경험이 있었고,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이 요구된다.

▮ 표 VI-2-5 ▮ 유아 양육기 지원요구 및 정책 방안

구분	상황 지원요구	정책 방안
아버지 부재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버지를 찾는 시기가 만 3.8세로 유아시기로 나타남. - 아버지 부재에 대한 설명 등으로 어머니의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시기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시기 부모교육에 아버지 부재에 대한 좋은 대화법 및 집단 상담 내용 포함.
영유아 돌봄 공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 자녀가 집에 혼자 있었던 경험이 전체의 9.9%(1.4%는 주 2회 이상)를 차지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돌봄 지원
기관에서의 부정적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이용에서 자녀의 친구사이에서 다툼 등에서 불리한 상황을 겪는 경우가 많음. - 학대경험을 한 유아 가구가 많은 편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교사 대상 교육 및 일반 가정 대상 부모교육에서도 한부모/미혼모 가족에 대한 반편견 교육이 필요함.

주: 본 연구의 Ⅲ장 실태 조사 및 Ⅳ장 심층면담 내용을 바탕으로 함.

가) 아버지(비양육부모)⁶²⁾ 부재 인식시기의 부모교육

미혼모·부의 경우 한부모의 경우와는 달리 겪는 어려움 중의 하나가 아버지(비양육 부모) 부재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이다. 조사결과 평균 만 3.8세의 유아시기에 자녀가 아버지의 부재에 대한 인식을 시작하며, 유아자녀를 둔 어머니의 스트레스 정도가 영아자녀와 초등자녀를 둔 어머니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난다(본 연구의 표 III-2-27, 표 III-2-28 참고). 이 시기에 어린 자녀에게 사실대로 이야기 해주어야 할지, 어떻게 이야기해 주어야 할 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지만, 그 답을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자녀에게 비양육 부모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게 되는 일이므로 전문적인 상담 및 부모교육을 통해 이에 대해 대처할 수 있도록 미혼모·부 대상 교육을 고안할 때, 직접적 양육정보에 대한 내용과 함께, 전문적인

62) 조사 및 대부분의 심층면담을 미혼모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아버지로 표기하였으나, 비양육부모 전반을 일컬으며, 미혼부의 경우 비양육부모는 어머니임.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오프라인 부모교육이 어렵다면 한부모 대상 원스탑 심리상담전화 신설 시 비양육부모 부재인식 대처에 대한 상담도 가능하도록 하여, 미혼모 부모가 직접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담창구의 마련이 함께 요구된다.

나) 자립교육 시 돌봄 지원 강화

유아기 자녀를 둔 미혼모의 경우 대부분 자녀를 기관에 보내기 시작하면서 자립준비를 시작하게 되는데, 긴급 돌봄 발생으로 인해 취업 중인 어머니도 해직을 당하거나, 취업준비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한다. 많은 경우 취업성공패키지 등 취업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기술을 배우고, 자격증을 취득하여, 취업준비를 하는 경우가 많으나, 취업교육 중에도 엄격한 출석으로 지각이나 결석 횟수에 따라 교육이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정부지원 취업교육의 경우 연수 기간 자녀 돌봄으로 인한 결석을 며칠 인정해주는 등의 양육을 하고 있는 취업교육생에 대한 제도적 돌봄 지원이 요구된다.

4) 초등 양육기 요구사항

초등 양육기의 요구 사항과 관련하여 개선되어야 하는 정책방안을 <표 VI-2-6>에 간략히 정리하였다. 초등학생 자녀의 양육의 어려움으로는 방과 후 돌봄의 부족으로 인한 돌봄 공백, 학교에서 초등생 자녀 및 부모가 겪는 편견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다.

▣ 표 VI-2-6 ▣ 초등 양육기 지원요구 및 정책 방안

구분	상황 및 지원요구	정책 방안
초등학생 방과후 서비스이용 및 미이용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학교 방과후과정에 대한 이용률(84.7%)과 이용 의향(72.7%)에서 높은 의존도를 보여주나 아이의 비선호(25%)에 의한 미사용이 높음. - 초등돌봄이 추천 및 우선지원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돌봄의 경우 미혼모 및 한부모 가정을 돌봄취약계층으로 우선순위로 두어 지원받을 수 있게 함.
초등학생 돌봄 공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학생의 경우 전체의 56.8%가 혼자 등교하며, 67.6%가 혼자 하교하고 있음. - 혼자 집에 있게 되는 경우도 46.0%로 높고, 그 중 3시간 이상 있는 경우도 34.1%에 달함. - 이유의 50%이상은 야근 및 주말근무 때문이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학생의 경우 혼자 있게 되는 경우가 많아 저녁 도시락 지원, 가사 도우미 지원 등 혼자 있음으로 인한 안전, 건강 문제에 대한 대책 필요

구분	상황 및 지원요구	정책 방안
학교에서의 편견 경험	- 교사 및 학교 친구들과부터 아버지 부재에 대한 부정적 반응을 겪은 사례들이 많음. - 아버지 부재로 인한 자녀의 스트레스 정도는 초등학교의 경우 가장 높게 나타남.	- 학교 교사 대상 반 편견 교육을 실시
학부모 모임 참여비율이 낮음	- 자녀 친구들의 부모들이 모이는 모임/연수 등의 행사에 참여하지 않은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일반 부모대상 부모교육에서도 다양한 가족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임.

주: 본 연구의 III장 실태 조사 및 IV장 심층면담 내용을 바탕으로 함.

가) 초등 오후 돌봄 공백 지원 강화

대부분의 돌봄 공백 논의에서 영유아가 중심이 되고 있으나,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혼자 이동이나, 집에서 혼자 있는 경우에 안전상 돌봄 상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초등학교시기부터 혼자 있는 학생의 비율이 매우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나, 초등학교의 하교 후 돌봄도 중요한 문제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미혼모 가정의 돌봄지원 중 초등학교 대상의 방과 후 돌봄이 시급하다. 본 연구의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교 자녀를 둔 응답자의 56.8%가 자녀 혼자 등원을 하며, 67.6%가 자녀 혼자 하원을 한다고 응답하였으며(본 연구의 표 III-2-13 참조), 응답자 중 60% 이상의 초등학교생이 적게는 1년에 4-5회 많게는 주 5일 이상 혼자 있는 시간이 있고, 그 중 80% 이상이 1시간 이상 혼자 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본 연구의 표 III-2-18 참조). 또한 본 연구의 결과, 양육기 지원을 위해 보완되어야 할 지원서비스 중 평균 28%의 응답자가 돌봄 기관 지원 시 우선순위를 제공해야한다는 요구를 하였는데, 초등학교 자녀를 둔 응답자의 경우 31.3%가 돌봄 기관 우선순위를 시급한 지원서비스로 응답하였다(본 연구의 표 III-5-7 참조). 이는 학교마다 선별 기준이 다르기는 하지만, 초등 돌봄 등 방과 후 돌봄에서 지원자 대상으로 추천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돌봄대상자를 뽑아, 가정에서 돌봄 지원 인력이 부족한 미혼모 가정의 경우 돌봄 제공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많은 미혼모 가족의 경우 가족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혼자 자녀를 돌보는 상황 때문에 일을 하기 위해서는 돌봄 기관의 이용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돌봄 기관에서 돌봄 배정 우선순위가 맞벌이 부부 등 타 조건에 비해 우선적 지원이 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에 미혼모를 포함한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등 상황

적으로 더욱 취약한 돌봄 가정을 정하여 돌봄 우선순위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초등 대상 돌봄 대상을 선정할 때 우선권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는 우선순위 선정마련이 시급하다.

구체적으로, 2018년 12월 현재 기준 초등돌봄교실 서비스 대상을 살펴보면 “돌봄이 꼭 필요한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의 1-2학년 학생을 중심으로 돌봄서비스 제공”(한국교육개발원·17개 시도교육청, 2018: 41)이라고 대상이 명시되어 있고, 선정 기준은 “학교 여건에 따라 선정”으로 명시되어 학교 재량에 맡기고 있다. 따라서 현재 기준으로는 맞벌이 가족, 미혼모를 포함한 한부모 가족이 동등하게 대상으로 되어 있어, 한부모 가족의 돌봄의 어려운 상황이 돌봄 우선순위에 반영되고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일부 초등학교에서 초등돌봄 신청에 있어 한부모에 대한 우선권을 제공⁶³⁾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초등돌봄 선정에 있어 우선순위를 제시해줄 것을 제안한다.

표 VI-2-7 | 초등돌봄교실 대상 우선순위 제안

현행	개정안
- 대상 학년 : 초등 1~2학년 위주에서 초등 전 학년으로 점차 확대하고 학부모 수요 및 학교 여건에 따라 대상 학년 선정 -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등의 학생을 중심으로 운영	1순위: 저소득(기초생활수급, 차상위, 법정한부모) 2순위: 맞벌이(맞벌이 다자녀가정), 조손가정

자료: 한국교육개발원·17개 시도교육청(2018).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 한국교육개발원·17개 시도교육청 p. 41.

나) 학교의 교사 및 학부모 대상 반편견 교육

조사 결과, 유아시기에 아버지 부재로 인한 어머니의 스트레스가 가장 높았다면, 자녀의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시기는 초등시기로 나타났다. 원인으로서는 학교의 친구들과 학교 선생님과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의 친구들과 및 친구들의 부모 등으로부터 한부모 가정임에 대한 편견으로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도 교사들이 가족의 다양성을 인식하고 인식개선을 주도할 수 있도록, 교사 임용 시 교육 내용에 반편견 교육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내용으로는 다양한 가족의 형태와 구성원의 역할 등을 담고, 한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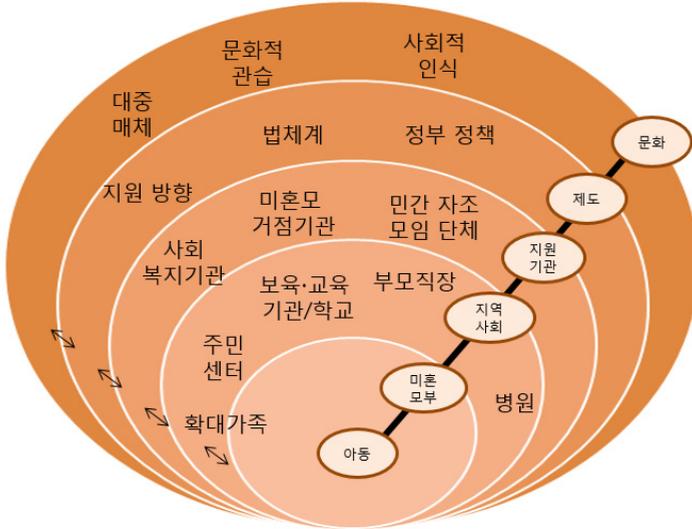
63) 경기도 산마루 초등학교의 경우 '1순위: 저소득(기초생활수급, 차상위, 법정한부모), 2순위: 맞벌이(맞벌이 다자녀가정) 3순위: 조손가정'.

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구성원인 학생들을 대할 때 주의할 점 등을 교육하고, 다른 아이들에게도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이해를 심어줄 수 있는 교사의 역할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교사와 교사가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한부모 가정의 상황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도를 향상시키도록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이해를 위한 교육을 제도적으로 추가시킬 필요가 있다.

3 미혼모·부 생활 접점별 정책 방안

미혼모·부 가정이 겪는 어려움은 아동, 미혼모·부 개인이 겪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미혼모·부 가족을 둘러싼 지역사회와 우리나라 사회 전체의 문화와 인식에서 오는 문제이기도 하다. 아동 또는 미혼모·부의 개인이 겪는 문제들도 보육·교육 기관, 학교, 주민센터, 병원 등 가까운 지역사회에서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미혼모 거점센터, 미혼모 자조 모임 단체, 사회복지시설, 지원 상담 전화 등 미혼모·부를 돕기 위한 기관을 통해 도움을 받기도 한다. 또한 정부의 지원 및 미디어의 영향을 받기도 하며, 미혼모·부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인 미혼모·부에 대한 편견적 인식이 곳곳에서의 접점에서 미혼모·부에게 어려움을 준다. [그림 VI-3-1]에서는 브룬펜브레너의 생태학적 접근 모델로 미혼모·부의 가족을 둘러싼 환경을 나타내보고, 각각의 접점에서 개선해나가야 할 정책제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미혼모·부 가정을 둘러싼 환경 중 아동 및 미혼모·부 중심의 지원은 본 장의 2절 자녀 양육단계별 요구 및 정책 방안에서 다루었고, 본 절에서는 지역사회에서의 주민센터, 지원 기관 및 제도적 문화적 측면에서 개선되어야 할 정책방안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그림 VI-3-1 미혼모·부 가정을 둘러싼 환경



가. 주민 센터 및 지원기관의 역할 강화

1) 주민 센터에서의 정확한 정보 제공

경제적 지원이 절대적인 미혼모·부 입장에서 공무원의 미숙지된 정보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미혼모지원을 위한 정확한 정보 숙지가 필요하다. 미혼모에 대한 경험 부족, 잦은 담당자 교체로 정확한 숙지가 어렵다면 담당 공무원도 이용할 수 있는 정보제공 창구가 필요하다.

2) 실질적 양육 및 정서적 지원

임신기 자녀연령에 맞는 정서적 지원(전화상담 포함)과 부모교육 확충이 필요하다. 임신 발생 시 본인의 상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에 대한 상세한 정보 제공 및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얻을 수 있도록 전문 인력과외의 구체적 상담이 필요하다. 많은 경우 법적문제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상담이 가능한 전문적 상담까지 가능한 인력의 배치가 필수적이다. 또한 자녀 시기별 정서적 지원이 요구되는데 영아기의 부모의 산전 후 스트레스 관리, 심리적 문제 등을 상담하고 부모로서 자신감을 향상시키고 역량을 키우는 집중 상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한

유아기 아버지 부재에 대한 대화를 위해 부모교육 및 전문가 상담 제공 및 초등기의 또래집단에서의 어려움 대처 및 정서적 문제 상담 등을 원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나. 미혼모·부 거점센터의 역할 증진

미혼모·부 초기지원 사업은 한부모 가족에는 해당되지 않는 미혼모·부에게만 지원되는 가장 대표적인 미혼모·부 지원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만큼 미혼모·부 가정의 특성을 파악하여, 그들의 요구와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문제이다.

따라서 전국의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거점센터를 보다 많이 신설하고, 미혼모·부가 보다 거주지역과 가까운 곳에서 부모교육 및 자조모임을 할 수 있고, 담당자 입장에서도 보다 가까이에서 사례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예산도 인구수에 맞게 편성함으로써, 미혼모·부 가정이 받는 지원에 차이가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하기 위해서는 미혼모 거점기관 담당자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상담경력 및 관련 경력 보유자를 채용하여, 경력이 쌓여도 임금상승이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더 숙련된 전문 인력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2018년 예산 4억2천3백만 원에서 2019년 예산안 4억2천7백만 원으로 전체 금액에서 인건비부분에서 종사자 처우개선 1.8%가 반영되었으나, 이는 매우 미비한 증가로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기대하기 어렵고, 보다 근본적인 구조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다(미혼모지원네트워크, 2018, 내부자료).

1) 거점센터 담당자의 임금 구조개선

미혼모·부 가족에 대한 지원을 체계적이고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경력자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임금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많은 경우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미혼모 거점기관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혼모 거점기관 담당자의 경우 임금구조가 별개로 운영되고 있고, 지침에 담당자의 임금을 '월 185만원 이내'로 설정해 놓음으로 인해 경력 향상에 따른 임

금향상이 어렵고 전문성 있는 인력 활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임금 구조는 담당자의 근로의지를 약화시키고, 잦은 이직을 초래하며 이는 지원받는 미혼모 입장에서 담당자가 자주 바뀔으로서 바뀔 때마다, 사례 공유와 라포 형성 등을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정신적인 소모를 주게 된다.

▣ 표 VI-3-1 ▣ 미혼모·부 초기지원 사업지침 변경 제안사항

현행	개정안
사업수행 담당자의 기본급은 월 185만원 이내로 함	삭제

자료: 여성가족부(2018a). 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p. 307, 312.

2) 실질적 참가가 가능한 부모교육 활성화

미혼모 거점센터에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아이를 직접돌보는 비율이 높고, 자가 이용률이 낮기 때문에 실질적 교육 참가가 어렵고, 교육에 참가하게 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현재 거점기관 운영이 전국에 17개로 한 거점센터 당 관할 지역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보다 더 가까운 거점에서 부모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거나 차량지원이 가능하게 하는 등 지역에 따라 다른 지역적 상황을 반영하여, 보다 자율적으로 운영하여, 실질적으로 미혼모·부 가정이 접근 가능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3) 미혼모·부 거점기관의 불균형적 분포 개선

전국에 17개의 거점센터가 전체 인구수 및 미혼모·부자 가정의 수를 고려하지 않고 분포되어 있고, 예산이 일괄적으로 정해져 있어 지역마다 예산 분포 및 담당자의 사례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50%가 영아 부모였음에도 불구하고(본 연구의 표 I-3-1 참고), 미혼모·부 초기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의 비율이 9.0%, 과거에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가구가 11.3%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본 연구의 표 III-5-4 참고). 하지만 사용한 사람에게 만족도를 물었을 때는 3.5/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본 연구의 표 III-5-4 참고). 만족도가 높지만 지원을 받은 미혼모 가정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보았을 때, 미혼모·부 가족이 충분히 서비스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하지만, 현

재로서는 예산이 충분하지 못하여, 대상자를 더 홍보하고 발굴하여도, 예정된 지원을 다 제공하기가 어려운 구조이므로, 해당되는 미혼모·부자 가정이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접근성을 높이고 홍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마. 미혼모·부 가정 지원의 법적·제도적 문제 개선

1) 양육비 소송에 있어 부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본 연구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양육비를 받고 있는 경우가 7.3%에 불과하다(본 연구의 표 III-1-18 참고). 면담조사에 따르면 소송절차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되고, 소송에서 지급판결이 난다고 하더라도,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한 처벌이 없다. 지급을 받는다고 해도 수급자인 경우, 수급에서 감해지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양육비 소송 자체를 시도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이렇게 자녀 양육에 대해 부의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구속력이 없고, 실질적 효과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양육하지 않는 배우자의 무책임을 외면하게 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근본적으로는 자녀양육에서 배우자의 책임을 보다 더 구속력 있게 관리해야 하며, 그 전에 인식개선 캠페인 시 미혼모·부의 경우 비양육 부모에 대한 책임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캠페인도 병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미혼부 출생신고 절차 개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라 함) 제46조에 따르면,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 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도록 하되,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혼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생모가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편, 동법 제57조 제1항은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 신고를 한 때에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 규정은 ‘모의 인적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고, 따로 부의 혼인 외 출생자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모의 인적사항’을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 지정 신청, 가족관계등록창설 및 성본 창설, 인지’라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부자관계가 확정될 수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2015년 동법을 개정하여 모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친생부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즉, 동법 제57조 제2항을 신설하여 미혼부가 모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유전자 검사 등을 거쳐 아이의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그 절차가 간소화되었다.

다만, 동법이 개정된 이후인 2015년 11월부터 12월까지 미혼부 출생신고 건수는 100건이 넘었지만, 이 중 허가가 이루어진 건은 16건에 불과했고,⁶⁴⁾ 실제 생모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미혼부의 자녀 출생신고가 기각된 경우도 있어, 법의 실효성에 대해 여전히 논란이 진행 중이다.⁶⁵⁾ 이에 김수민 의원은 2015년 5월 18일 ‘모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법원행정처에서는 실무상으로도 그 취지대로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여,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제2항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입법취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동 규정을 “모의 성명이나 등록기준지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로 개정하여 출생신고 시 필요한 모의 정보 중 어느 하나라도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들 모두가 출생신고로 인해 법적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 표 VI-3-2 ▣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57조(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②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제57조(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②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자료: 본 개정안은 51) 의안정보시스템, [2009459]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의원 등 12인)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P1T7M0B9Q1Q8Q1L4Q4I3A2P7P1M205&ageFrom=20&ageTo=20, (2018. 2. 27 인출)의 내용과 동일

64) 머니투데이, 2018년 8월 3일자 기사, [MT리포트]"내 자식인데, 아빠는 출생신고를 못한다고?" 사실은..., <http://news.mt.co.kr/newsPrint.html?no=2018072413208298802&type=1&gubn=undefined>, 2018. 11. 30. 인출.

65) 서울경제, 2018년 8월 13일자 기사, [아픈 사회, 우리가 보듬어야 할 이wert 영아 권리보호 못하는 출생신고제."병원서 자동 등록율", <https://www.sedaily.com/NewsView/1S3CGEQGI4>, 2018. 11. 30. 인출.

3) 한부모 임대주택 지원 대상 및 입주요건 개선

본 연구에 따르면 미혼모를 포함한 한부모가족 지원에 있어 주거지원은 한부모 가족이 필요로 하는 지원에 있어 그 중요도가 크며, 한부모대상 임대주택 지원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높다(본 연구의 표 III-5-4 참고). 이에 한부모지원사업에 포함된 임대주택 주거지원은 중요도가 높으나,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여성가족부, 2018a: 230-232, 289-291)에 따른 임대주택 지원 대상 및 내용에 있어 그 의미가 모호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임대주택 지원 대상에 있어 자립의지가 있는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것에는 동의하나, 자립의지 유무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립의지가 있는'이라는 조건은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입주요건으로 '현재 직업이 있거나, 학업 수행을 하는 등 자립의지가 확고한 자'라는 문구는 자립의지가 있다는 것을 직업유무 및 학업수행 등으로 판단하려는 의도가 있으나, 1순위 조건인 미혼모·부의 경우 자녀 돌봄으로 인해 자립의지가 있으나 취업 및 학업수행조차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현재 직업이 있거나 학업수행을 하는 등 자립의지가 확고한 자'의 입주요건은 삭제하여, 다양한 어려운 상황의 가족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입주요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 표 VI-3-3 ▮ 한부모 임대주택 지원대상 및 입주요건 개정안

구분	현재	개정안
공동생활 가정형 (매입임대주택) 주거 지원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 자립의지가 있는 무주택 한부모 가족* ○ 입주요건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으로, 현재 직업이 있거나 학업 수행을 하는 등 자립의지가 확고한 자 ○ 입주 우선 순위 : (1순위) 미혼한부모가족 (2순위) 부자가족 (3순위) 모자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 무주택 한부모 가족* ○ 입주요건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 ○ 입주 우선 순위 : (1순위) 미혼한부모가족 (2순위) 부자가족 (3순위) 모자가족

자료: 여성가족부(2018a). 2018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pp. 230-232, 289-291.

바. 취업 및 자립을 위한 실질적 지원 체계 마련

대부분의 수급을 받는 미혼모의 경우 자녀가 어릴 때는 자녀 양육을 조건으로 수급을 받고, 자녀가 어느 정도 큰 후에는 자녀를 기관에 보내면서 취업을 하여 자립을 강구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양육을 하다가 바로 취업을 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고, 취업교육을 받는다고 해도 교육 후 구직을 위한 시간과 돌봄이 필요하다. 또한, 취업교육 중에도 엄격한 출결 체크로 아이를 돌보면서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취업교육을 받는 경우 중 자녀를 혼자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 긴급아이돌봄서비스 마련 및 자녀돌봄으로 인한 결석계, 조퇴계 인정 등 실질적으로 한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며 취업준비를 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현실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박영혜(2016)에 따르면 재가양육미혼모가 시설양육미혼모보다 연령과 학력이 높게 나타났고, 연령과 학력이 높을수록 자립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재가양육미혼모에게 자립지원의 일환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지원이 시급하다.

▣ 표 VI-3-4 ▣ 점점별 정책 방안 요약

구분		정책 방안
미혼모·부 가족 지원	자녀 돌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부모, 미혼모·부 가정의 영유아 기관 이용 및 초등학생 돌봄교실 이용에 우선권 제공 - 기관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거점기관을 마련하여 긴급돌봄 방안 마련 - 아이돌보미 사업 확충 중 한부모/미혼모·부 가정의 우선 지원 및 금액적 지원이 시급함. - 취업훈련시 돌봄 지원 및 자녀양육시 출결로 인한 취업훈련 제적 기준 완화
	자녀 양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기 자녀연령에 맞는 정서적 지원(전화상담 포함)과 부모교육 확충 필요. - 정보제공: 현 상황에서 본인의 상황상 받을 수 있는 지원에 대한 상세한 정보 제공 및 구체적인 해결방안 제시 필요(법률상담 포함) - 유아기/초등기 아버지 부재에 대한 대화를 위한 부모교육 및 전문가 상담 제공
교육기관	교사 대상 반편견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교사 및 신규교원 연수시 반편견 교육 강화('19년) 등

구분		정책 방안
주민센터	정확한 정보 제공 및 공무원 대상 반편견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당공무원의 정확한 정보 숙지를 위한 미혼모 지원 - 점점의 공무원 교육 실시 - 담당공무원의 다양한 가족에 대한 태도에 대한 반편견 교육 실시
	미혼모·부 원스탑 상담창구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혼모·부, 한부모 전문 상담 전화창구를 마련, - 상담원의 전문성 확보 필요 - 상담능력 뿐 아니라, 지원정보에 대한 이해 미혼모 상황에 대한 이해를 겸비한 인력 필요. - 전문인력 인건비 확보
법적 제도	비양육 부모의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 및 인식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의 책임강화를 위한 양육비 지급의 강제성 강화 - 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캠페인 실시(미혼모 인식개선 홍보에 포함시킴)
	미혼부 출생신고 절차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육비 소송관련 절차 간소화 - 미혼부 출생신고 관련 법률의 구체화 필요
문화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국민 인식개선 캠페인을 통한 미혼모에대한 편견개선 - 미혼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없애고 책임감있게 자신의 자녀를 키우는 현실적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 김도경(2018).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편.), 미혼모부자거점기관 운영개선 방안 토론회 자료집(pp. 25-30).
- 김미숙·전진아·하태정·김효진·오미애·정은희·최은진·이봉주·김선숙(2013). 아동 종합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상용(2011). 이혼 가정 복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한부모 가정의 양육비 확보를 위한 제도를 중심으로, 이혼가정과 자녀양육 '양육비 제도로 받고 있는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김은설·유해미·최은영·최효미·배운진·양미선·김정민(2015).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세종: 보건복지부·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김은지(2013). 한부모가족을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국가 간 비교연구. 가족과 문화, 25(2), 270-300.
- 김은지·김동식·최인희·선보영·황경란·이재연(2012).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 I: 청소년한부모의 발생과정에 따른 예방 및 지원정책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은지·김동식·최인희·선보영·김나연·정다운(2013).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II: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역사회 지원체계 모형개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은지·장혜경·황정임·최인희·김소영·정수연·성경(2015).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 김지연·황여정·이준일·방은령·강현철·곽종민·박민영(2013).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 II: 청소년 한부모 유형 및 생활주기별 대응방안.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혜영·선보영·김은영·정재훈(2009). 미혼부모의 사회통합방안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혜영·이미정·이택면·김은지·선보영·장연진(2010). 미혼모의 양육 및 자립실태

- 조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희주(2015). 미혼모의 의료서비스 이용경험에 대한 사례연구. *한국가족복지학*, 50, 181-214.
- 김희주·권종희·최형숙(2012). 양육미혼모들의 차별경험에 관한 질적사례연구. *한국가족복지학*, 36, 121-144.
- 김희주·조성희·김지혜(2016). 미혼모 차별 경험 척도 개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56, 169-196.
- 남부현(2010). 십대 미혼모를 위한 미국의 사회복지 체계와 서비스 그리고 한국적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농촌지도와 개발*, 17(1), 103-135.
- 미혼모지원 네트워크(2018). 2018, 2019년 예산안 분석자료.
- 미혼모 협회 I'm MoM(2018). 내부자료.
- 박영숙(2008). 가정위탁을 통한 양육미혼모 지원에 관한 연구. *청소년시설환경*, 6(3), 15-27.
- 박영혜(2016). 재가와 시설의 양육미혼모 정부지원 차이에 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1), 493-502.
- 박화옥(2017). 영유아 양육미혼모의 우울과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7(1), 149-155.
- 배운진·김아름·송신영·권지성(2016). 돌봄 취약계층 맞춤형 육아지원 방안 II: 입양아동을 중심으로.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배운진·조숙인·장문영(2017). 돌봄 취약계층 맞춤형 육아지원 방안(III): 한부모가족 특성별 자녀양육 실태 및 지원 방안.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백혜정·김지연(2013). 청소년 한부모의 출산 시 상황과 양육태도 및 행동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 *한국청소년연구*, 71, 87-117.
- 백혜정·김지연·김혜영·방은령·방현주(2012).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 I: 총괄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변화하는 미래를 만드는 미혼모 협회 인트리 내부자료(2017).
- 보건복지부(1999). 여성복지사업안내.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3). 아동종합실태조사.
- 보건복지부(2016). 2016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 -영양-.

-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2018). 2018 한부모 조기자립을 위한 매뉴얼.
- 서해정·안태운·이현주(2010). 경기도 미혼부자가족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경기: 경기도여성가족연구원.
- 성정현·김지혜·신옥주(2015). 미혼모의 임신출산위기 경험과 해소를 위한 지원시스템 개선방안.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7(2), 277-309.
- 성정현·김희주·이미정·박영미(2016). 미혼모들의 경험을 통해 본 공공서비스 전문가들의 미혼모들에 대한 인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8), 404-418.
- 소라미(2016). 아동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본 출생신고제도의 문제점 및 과제. 한 국가족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16(3), 2-10.
- 신옥주(2016). '미혼모'의 인권제고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비교법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논집, 21(2), 233-272.
- 신옥주(2018). 자의 성과 본 결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편.), 미혼모 법적 지위 개선을 위한 민법 개정 토론회 자료집. (pp. 27-43). 김상희 국회의원실·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 신윤정·이상림·김윤희(2012).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 I: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국가 비교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안재진·김지혜(2006). 시설미혼모의 양육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적 관계망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아동권리연구, 10(4), 605-624.
- 여성가족부(2017). 2017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 여성가족부(2018a). 2018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 여성가족부(2018b). 2018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고시문(안).
- 여성가족부(2018c). 보도자료_2019년 여성가족부 정부예산안
- 오영나(2018). 양육비이행제도의 실효성. 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 3년 기념 심포지엄, 41-45.
- 이경숙·노정숙·김수진(2017). 미혼모의 정신건강과 모-자녀 상호작용 특성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2(4), 467-489.
- 이미숙·장세권·신경제·이용섭(2007). 미혼모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산부인과적 고찰. 대한주산학회지, 18(3), 222-232.
- 이미정(2009). 미혼모가족에 대한 무관심과 해외입양. 젠더리뷰, 서울: 한국여성

- 정책연구원. 2009년 여름호.
- 이미정·박복순·문미경·김영란·김혜영·강지원·최형숙·목경화(2011). 미혼부의 책
임강화 방안.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영호(2018).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한국미혼모지
원네트워크·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편.), 미혼모부자거점기관 운
영개선 방안 토론회 자료집(pp. 11-20).
- 이용우(2017). 한국사회 미혼모 지원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한국사회정책, 24(1),
97-115.
- 이은주·최규련(2014). 시설미혼모의 양육/입양 선택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
생활과학회지, 25(2), 247-260.
- 이충은(2017).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국제법무, 9(1), 129-
152.
- 임해영·이혁구(2013). 미혼모의 입양결정 과정에 관한 연구-해석학적 근거이론
방법 접근. 한국사회복지학, 65(3), 53-78.
- 장화숙(2008). 미혼모 지원정책 연구.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18).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
제 추진방안. pp. 14-15.
- 전재희(2017). 미혼모 복지정책에 대한 고찰: 영국 및 한국 비교 중심으로. 다문
화건강학회지, 7(1), 33-49.
- 정해숙·최윤정·최자은(2014). 학생 미혼모 학습권 보장 방안. 서울: 한국여성정
책연구원.
- 제석봉(2008). 학생미혼모 실태조사 연구.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조은희(2011). 미혼모 가족의 법적 지위. 홍익법학, 12(2), 141-165.
- 조은희(2018). 미성년 미혼모의 권리보호를 위한 소고: 미성년 미혼모의 성년의
제와 친권 및 양육권을 중심으로. (편.), 미혼모 법적 지위 개선을 위한 민
법 개정 토론회 자료집. (pp. 3-24). 김상희 국회의원실·한국미혼모지원
네트워크.
- 조지용(2016). 미혼모의 자녀양육 경험에 관한 연구: 입양에서 양육을 재결정한
양육모를 중심으로. 신학과 목회, 46, 219-239.
- 최승희(2008). 입양으로 자녀를 상실한 미혼모들의 슬픔 연구: 외적통제소, 자아

- 존중감, 사회적지지, 입양결정과정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36, 203-225.
- 최효미·유해미·김지현·김태우(2016). 청년층의 비혼에 대한 인식과 저출산 대응 방안.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통계청(2017). 2015~2045 장래가구추계.
- 한국교육개발원·17개 시도교육청(2018).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
-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내부자료(2017). 제 8차 정기총회 (사)한국미혼모가족협회.
- 홍봉선·남미애(2011). 청소년 양육미혼모의 자녀양육과 자립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방안. 청소년학연구, 18(9), 19-52.
- Australian Human Rights Commission(2017). The rights and needs of young parents and their children. A summary of key findings from the children's Rights Report 2017.
- Hoffmann, H. & Vidal, S.(2017). Supporting teen families: an assessment of youth childbearing in Australia and early interventions to improve education outcomes of young parents. LCC Working Paper Series. 2017-12. Institute for Social Science Research, The University of Queensland.
- Institut d'Etudes Politiques de Bordeaux(2004). Les maternités précoces dans les pays développés: Problèmes, dispositifs, enjeux politiques. Dossiers d'études, 53. Caisse nationale d'allocations familiales.
- 子どもの人権連 (1999). 子ども権利条約これから.
- 森田明美 (2018) 「第5章 ひとり親家庭の生活支援を考える」、『生活変動と社会福祉』、放送大学教育振興会、78 - 100.
- 流石智子(2016). 『日本の母子福祉』 あいり出版.
- 東野充成(2016). 「児童扶養手当政策における母子家庭の差異化」 『九州工業大学研究報告. 人文・社会科学』九州工業大学大学院工学研究院, 64, 1 - 10.
- 神原文子(2010). 『子づれシングル』明石書店, 244-249.
- 東洋大学福祉開発研究センター (2018) 当事者主体の相談支援: 世田谷区における母子家庭支援研究報告書, 東洋大学福祉開発センター子どもユニット.

〈인터넷 자료〉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

①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http://www.familynet.or.kr/introduce/business/unmarried/unmarried2.do>, 2018. 06. 04. 인출.

② 2018 미혼모·부 초기지원사업 수행기관명

<http://www.familynet.or.kr/introduce/business/unmarried/unmarried2.do>, 2018. 03. 02. 인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취업성공패키지

①사업소개, 사업개요

<http://www.work.go.kr/pkg/succ/content01/busiInfo.do>, 2018. 06. 20. 인출.

②사업소개, 지원대상자, 선정 요건 및 절차

<http://www.work.go.kr/pkg/succ/content02/reqProcess.do>, 2018. 06. 20. 인출.

③사업소개, 지원대상자, 범위

<http://www.work.go.kr/pkg/succ/content02/scope.do>, 2018. 06. 18. 인출.

④사업소개, 지원금, 참여수당

<http://www.work.go.kr/pkg/succ/content04/partBenefit.do>, 2018. 06. 20. 인출.

⑤사업소개, 지원금, 훈련참여수당

<http://www.work.go.kr/pkg/succ/content04/trainBenefit.do>, 2018. 06. 20. 인출.

⑥사업소개, 지원금, 청년구직촉진수당

<http://www.work.go.kr/pkg/succ/content04/youngSeekActvAllo.do>, 2018. 06. 20. 인출.

⑦사업소개, 지원금, 취업성공수당

<http://www.work.go.kr/pkg/succ/content04/empSuccBenefit.do>, 2018. 06. 20. 인출.

⑧취업지원내용, 개요

<https://www.work.go.kr/pkg/succ/content03/summary.do>, 2018. 06. 18. 인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한부모가족지원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8423&efYd=20161220#0000>, 2018. 06. 05. 인출.

네이버 포스트, KTV 국민방송,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에서 지원받기까지!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5299349&memberNo=4328593&vType=VERTICAL>, 2018. 06. 06. 인출.

뉴스시스(2018. 04. 01). 낙태하면 죄라면서...미혼모 양육비, 강제할 방법 없나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322_0000260298&cID=10201&pID=10200, 2018. 06. 18. 인출.

뉴스웨이(2016. 10. 26). [카드뉴스] 저출산 시대의 아이러니, 버려지는 아기들. 미혼모협회 I'm MoM. <https://mihonmo.modoo.at>, 2018. 12. 19. 인출.

머니투데이, 2018년 8월 3일자 기사, [MT리포트]"내 자식인데, 아빠는 출생신고를 못한다고?" 사실은..., <http://news.mt.co.kr/newsPrint.html?no=2018072413208298802&type=1&gubn=undefined>, 2018. 11. 30. 인출

베이비뉴스(2018. 05. 30). 미혼모, '엄마'를 결심하면 '가난' 따라오는 나라 <http://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5324>에서 2018. 06. 18. 인출.

베이비뉴스(2018. 08. 07). 국민행복카드 지원금 60만원으로 늘어난다. <http://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7107>에서 2018. 11. 30. 인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① 2008년 입양현황(2009. 5. 6)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903&CONT_SEQ=336591&page=1, 2018. 02. 27. 인출.

② 2009년 입양현황(2010. 2. 9)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1&CONT_SEQ=264487&page=1, 2018. 02. 27. 인출.

③ 2010년 입양현황(2011. 5. 30)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903&CONT_SEQ=336875&page=1, 2018. 02.

27. 인출.

④ 2011년 입양현황(2012. 2. 15)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901&CONT_SEQ=336951&page=1, 2018. 02.

27. 인출.

⑤ 2012년 국내외 입양현황(2013. 4. 11)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 2018. 02. 27.

인출.

⑥ 2013년 국내외입양현황(2014. 6. 25).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1&CONT_SEQ=301618&page=1, 2018. 02. 27.

인출.

⑦ 국내외 입양인들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다!(2017. 5. 12)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39603, 2017. 02. 27.

인출.

⑧ 보건복지부(2018. 5. 11). 평범한 사람들의 입양이 한 아이의 세상을 바꿉니다!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44791&page=1, 2018. 02. 27.

인출.

⑨ 보건복지부(2018. 5. 17). 2011년~2017년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21, 2018. 11. 16. 인출.

⑩ 보건복지부(2018. 5. 31). 2008~2017년 국내입양아 수 및 입양비율

http://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MainPrint.do?idx_cd=2708&board_cd=INDX_001, 2018. 11. 16. 인출.

복지로 홈페이지

①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http://www.bokjiro.go.kr/wellnfo/retrieveGvmtWelInfo.do?searchIntClId=01&searchCntId=999&welInfSno=58&pageGb=1&domainName=&firstIndex=10&recordCountPerPage=10&cardListTypeCd=list&welSrvTypeCd=01&searc>

hGb=01&searchWellInfNm=&pageUnit=10&key1=list&stsfCn=, 2018. 11. 30. 인출.

②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http://bokjiro.go.kr/welInfo/retrieveWellInfoBoxList.do>. 2018. 12. 20. 인출.

③ 해산급여,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lInfo.do?wellInfSno=283>, 2018. 11. 30. 인출

서대문구 공식 블로그 <http://tongblog.sdm.go.kr/1495>, 2018. 06. 06. 인출.

서울경제, 2018년 8월 13일자 기사, [아픈 사회, 우리가 보듬어야 할 이웃] 영아 권리보호 못하는 출생신고제."병원서 자동 등록을",

<https://www.sedaily.com/NewsView/1S3CGEQGI4>, 2018. 11. 30. 인출

애란한가족네트워크, 미혼모대안학교, 나래대안학교

① 교육과정 안내

<http://www.aeranwon.org/alternative/s04.html>에서 2018. 06. 20. 인출.

양육비이행관리원

① 양육비이행관리원: 알림공간, 홍보자료, [행사]2016년 양육비이행관리원 국문 리플릿

<https://www.childsupport.or.kr/lay1/program/S1T35C38/front/board.do?sa=view&val6=2&sno=2378&bid=10&pg=1>에서 2018. 06. 09. 인출.

② 양육비이행관리원 공식블로그, 양육비 이행 통계, 2017 뉴스레터 4호 양육비이행관리원 통계

<https://blog.naver.com/pinacho1/221156738744>, 2018. 06. 18. 인출.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 2018. 06. 05. 인출.

② 미혼모자 가족복지 기본생활지원 지역별 현황

http://www.mogef.go.kr/cs/opf/cs_opf_s003.do?mid=old920, 2018. 06. 06. 인출.

③ 미혼모자 가족복지 공동생활지원 지역별 현황

http://www.mogef.go.kr/cs/opf/cs_opf_s003.do?mid=old920, 2018. 06. 06. 인출.

④ 미혼모 대안교육위탁기관 지역별 현황

http://www.mogef.go.kr/cs/opf/cs_opf_f091.do, 2018. 03. 06. 인출.

의안정보시스템

① 의안정보시스템, [200756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2인)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H1U7B0S6Z2O3B1B7M1S1M2L9C7D6L9&ageFrom=20&ageTo=20, 2018. 02. 27 인출

② 의안정보시스템, [2009459]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의원 등 12인)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P1T7M0B9Q1Q8Q1L4Q4I3A2P7P1M2O5&ageFrom=20&ageTo=20, 2018. 02. 27. 인출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35&ccfNo=3&cciNo=2&cnpClsNo=4>, 2018. 06. 06. 인출.

청와대, 국민소통 광장, 국민청원 및 제안, 미혼모를 위한 히트 앤드 런 방지법을 만들어주세요. GIRLS_CAN_DO_ANYTHING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48613?page=8>, 2018. 06. 18. 인출.

통계청 홈페이지

① 요보호아동 발생 및 보호 내용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TX_117341138&conn_path=I3, 2018. 02. 27. 인출.

② 통계청, 인구총조사, 2015~2017 전국 연령별 미혼모의 수 현황,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parentId=A#SelectStatsBoxDiv, 2018. 02. 27. 인출.

③ 통계청, 인구총조사, 2015~2017 전국 연령별 미혼부의 수 현황,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parentId=A#SelectStatsBoxDiv, 2018. 2. 27. 인출.

④ 통계청, 인구총조사, 2015~2017 전국 연령별 미혼모·부의 자녀수 현황,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parentId=A#SelectStatsBoxDiv, 2018. 02. 27. 인출.

⑤ 보건복지부, 보호대상아동현황보고 2017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TX_117341138&conn_path=I3, 2018. 2. 27. 인출.

한겨레(2015. 5. 7.) '신생아 살해'...누가, 왜, 제 아이를 낳자마자?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90276.html, 2018. 03. 06. 인출.

한국건강가정진흥원

① 미혼모부 초기지원사업 안내 <http://www.kihf.or.kr/lay1/S1T378C393/contents.do>, 2018. 11. 01. 인출.

② 한부모 상담전화. <http://www.kihf.or.kr/lay1/S1T378C392/contents.do>. 2018. 11. 30. 인출.

호주의 한부모 지원 (BABY HINTS TIPS)

<https://babyhintsandtips.com/single-parent-pension/#>, 2018. 10. 22. 인출.

호주 복지부 홈페이지(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① Health Care Card, What the benefits are, <https://www.humanservices.gov.au/individuals/services/centrelink/health-care-card/who-can-get-card/what-benefits-are>, 2018. 10. 22. 인출.

② Mutual obligation requirements,
<https://www.humanservices.gov.au/individuals/enablers/mutual-obligation-requirements/29751>, 2018 10. 15. 인출

③ Parenting Payment, How much you can get, <https://www.humanservices.gov.au/individuals/services/centrelink/parenting-payment/how-much-you-can-get>, 2018. 10. 22. 인출.

④ Rent Assistance, Who can get it, <https://www.humanservices.gov.au/individuals/services/centrelink/rent-assistance/eligibility-payment-rates/who-can-get-it>, 2018. 10. 22. 인출.

호주 통계청 홈페이지(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① 1286.0 - Family, Household and Income Unit Variables, 2014
<http://www.abs.gov.au/ausstats/abs@.nsf/Lookup/by%20Subject/1286.0~2014~Main%20Features~Underlying%20Concepts~11>, 2018. 10. 01. 인출.

② Census of Population and Housing: Reflecting Australia - Stories from the Census,
<http://www.abs.gov.au/ausstats/abs@.nsf/Lookup/by%20Subject/2071.0~2016~Main%20Features~Snapshot%20of%20Australia,%202016~2>, 2018. 10. 18. 인출

Australian Government Australian Institute of Family Studies

<https://aifs.gov.au/publications/Australian-households-and-families>, 2018. 10. 22. 인출.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① parenting-payment
<https://www.humanservices.gov.au/individuals/services/centrelink/parenting-payment>, 2018. 10. 22. 인출.

② Family Tax Benefit,
<https://www.humanservices.gov.au/individuals/services/centrelink/family-tax-benefit>, 2018. 10. 22. 인출.

Australian Human Rights Commission (2017). The rights and needs of young parents and their children.

https://www.humanrights.gov.au/sites/default/files/AHRC_CRR_2017_Summary.pdf, 2018. 10. 15. 인출.

e나라지표 홈페이지, 국내 입양아 수 및 입양 비율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08, 2018. 2. 27. 인출.

Families Australia

<https://familiesaustralia.org.au/policies-submissions/current-policy-areas/building-stronger-australian-families/families-in-australia/>, 2018.10.18. 인출.

The rights and needs of young parents and their children (2017)

https://www.humanrights.gov.au/sites/default/files/AHRC_CRR_2017_Summary.pdf, 2018. 10. 15. 인출.

YoungParents'Hub 홈페이지

- ① Early Learning Education,
<https://www.youngparentshub.com/early-learning-education/>, 2018 10. 15. 인출
- ② Education Services, DALE Young Parents' School
<https://www.youngparentshub.com/dale-young-parents-school>, 2018 10. 15. 인출
- ③ Pathways Courses,
<https://www.youngparentshub.com/pathways-1/>, 2018 10. 15. 인출
- ④ Referral Services,
<https://www.youngparentshub.com/referral-services-1/>, 2018 10. 15. 인출

厚生労働省 (2017). 일본 전국 한부모세대 조사 결과 보고

<http://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0000188147.html>, 2018. 10. 15. 인출.

税制뉴스「どうなる!? 未婚のひとり親世帯への寡婦控除」

<https://nichizei-journal.com/zeimu/%E3%81%A9%E3%81%86%E3%81%AA%E3%82%8B%E3%80%80%E6%9C%AA%E5%A9%9A%E3%81%AE%E3%81%B2%E3%81%A8%E3%82%8A%E8%A6%AA%E4%B8%96%E5%B8%AF%E3%81%B8%E3%81%AE%E5%AF%A1%E5%A9%A6%E6%8E%A7%E9%99%A4/>

Abstract

Customized Child-rearing Supporting Plans(IV): Current Status and Supporting Strategies for Unwed Single-parent Families

Ji Hyun Kim·Mekyung Kwon·Yoonkyung Choi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investigate in the current situations of the supporting system for unwed single-parent families and their difficulties on rearing children and to provide the policy suggestions to improve the child rearing environment for the unwed single-parent families. This study focused on the unwed single-parent families who do not live in the housing facilities for single parents and live in their own.

In this research, we used several research methods. First, we reviewed the literature on supporting policies that are applicable to unwed single-parent. Second, we conducted the online survey with 300 unwed single-mother families and they reported the current difficult situation of their child-rearing as unwed single-mothers including the issues about child-caring, work-life balance, and absence of non-nurturing parent. Third, 24 unwed single-mothers and 1 single-father parent were interviewed for this study to provide the specific experiences that they experienced from the pregnancy to now, including specific difficulties

in child rearing, and needs for social supporting services. Lastly, we conducted the case study of the institution for the initial support for unwed single parent families.

In this study, we categorized the sample of the survey and participants of the in-depth interviews based on the age of the children, Infant/toddler(0-2 years old), young children(3-5 years old), and elementary schooler(6-11 years old). The most suffering difficulties that the unwed single-parent families were experiencing were the financial burdens and the child caring regardless of the age of children and their employment status. When the parents were working, as there is no extra care-giver, sometimes they were dismissed due to the emergent care-giving situation. However, even though they do not work, most of them are to prepare to be occupied, there should be some place where their children are placed. In addition, the parents of young children are suffering from the situation when they are asked about the children's un-nurturing parent. For mothers, the degree of the stress from the situation was the highest for mothers of the young children. However, for the children, the degree of the stress from the situation was the highest for the elementary schooler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e following policies. First, the unwed single mothers should be considered as priority for the selection of child-caring services based on the vulnerability of caring. Second, the role of the initial support institution for the unwed single parent families should be strengthened. In addition, due to the lack of the places where the unwed parents can obtain the accurate information about that the supporting services that they can be provided.



부록

- 부록 1. 설문지
- 부록 2. 미혼모·부 면담 질문지

부록 1. 미혼모 실태 조사 설문지

미혼모 가정의 자녀양육 실태 및 지원방안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를 실시하는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정책 연구를 보다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국가 정책연구기관입니다.

본 조사는 2018년 육아정책연구소의 일반과제인 「미혼모 가정의 자녀양육 실태 및 지원방안」에서 영유아 및 초등 자녀를 둔 미혼모 가정의 지원정책 이용 현황, 돌봄 현황, 양육의 어려움 및 자립관련 어려움에 대해 파악하고 적절한 정책지원을 마련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 33조에 따라 통계자료 작성 및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될 것이며, 그 외의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을 것을 말씀드립니다. 귀하의 응답은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매우 귀중한 자료로 사용될 것이므로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 응답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18년 8월

육아정책연구소 백선희 소장

문의처 : 한국리서치 권성욱 과장 ☎ 02-3014-1069

육아정책연구소 최윤경 연구원 ☎ 02-398-7761



SQ1. 귀하는 현재 미혼모십니까?

1. 그렇다 2. 아니다 -> 설문종단

SQ2. 미혼모로서 출산한 자녀를 현재 양육하고 계십니까?

1. 현재 양육하고 있다 2. 현재 양육하고 있지 않다 -> 설문종단

SQ3. 귀댁의 자녀는 몇 명입니까?

총 ()명

SQ3-1. 순서대로 자녀의 성별과 출생년도를 응답해 주세요.

자녀가 4명 이상인 경우, 첫째 자녀부터 셋째 자녀까지만 응답해 주세요.

형제자매 순위	성별		출생년도
	남	여	
	1	2	
1. 첫째 자녀			()년
2. 둘째 자녀			()년
3. 셋째 자녀			()년

SQ4. 귀하가 현재 거주하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시/도 ()구/시/군 ()읍/면/동

A. 자녀 돌봄

A1. 귀하는 미취학 자녀를 주로 어떤 방식으로 돌보고 있습니까?

해당하는 방식을 모두 골라주세요.

- | | |
|-------------------------------|---------------------|
| 1. 내가 직접 돌봄 | 2. 기관 이용(반일제 학원 포함) |
| 3. 조부모 돌봄 | 4. 나의 형제자매 및 친인척 돌봄 |
| 5. 건강가정센터 아이돌보미 이용 | 6. 민간 양육도우미 이용 |
| 7. 사설 학원 이용(영어, 미술, 음악, 체육 등) | 8. 기타() |

A1-1. 자녀가 이용하는 기관의 유형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 | | |
|----------------------------|------------|
| 1. 국공립 어린이집 | 2. 민간 어린이집 |
| 3. 가정 어린이집 | 4. 기타 어린이집 |
| 5. 국공립 유치원 | 6. 사립 유치원 |
| 7. 반일제 학원(영어 유치원, 놀이 학교 등) | 8. 기타() |

A1-2. 현재 이용 중인 기관을 자녀가 등/하원하는 시간은 평일 기준으로 각각 언제입니까?

구분	시간
1. 등원 시간	오전/오후 ()시()분
2. 하원 시간	오전/오후 ()시()분

A1-3. 자녀의 기관 등/하원을 주로 도와주는 사람은 각각 누구입니까?

※ 어린이집, 유치원의 셔틀버스를 이용할 경우, 배웅 및 마중 나가는 사람을 응답합니다.

구분	동행자
1. 등원 동행자	
2. 하원 동행자	

- | | |
|----------------|-------------------|
| 1. 본인(자녀의 어머니) | 2. 조부모 |
| 3. 나의 형제 및 친인척 | 4. 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보미 |
| 5. 민간 양육도우미 | 6. 기타() |

A1-4. 귀하께서 미취학 자녀를 기관에 보내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순위, 2순위를 선택해 주십시오.

- | | |
|--|-----------------------------|
| 1. 기관에 보내는 것이 안심되지 않아서 | 2. 자부담해야 하는 보육·교육 비용이 부담되어서 |
| 2.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것이 더 도움이 되어서 | |
| 3. 갈 수 있는 기관의 대기자가 많아 자리가 나지 않아서 | |
| 4. 기관 이용 및 절차에서 입학 거부나 차별 경험이 있어서(다만면서 겪은 차별 포함) | |
| 5. 기타() | |
| 6. 없음 | |

A2. 현재 상황(취업, 기관의 대기 상황, 비용, 가족과의 관계 등)에 상관없이 모두 이용 가능하다면 아래 보기 중 아이를 돌보기 위해 가장 이용하고 싶은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1순위, 2순위를 선택해 주십시오

※ 현재 이용하고 계신 방식도 포함하여 응답할 수 있습니다.

1. 내가 직접 돌봄
2. 기관 이용(반일제 학원 포함)
3. 조부모 돌봄
4. 나의 형제자매 및 친인척 돌봄
5. 건강가정센터 아이돌보미 이용
6. 민간 양육도우미 이용
7. 사설 학원 이용(영어, 미술, 음악, 체육 등)
8. 기타()

A3-A. 다음 각 서비스별로 인지여부에 대해 응답해 주세요.

항 목	A. 서비스 인지여부	
	알고 있음	모름
	1	2
1. 시간제 보육		
2. 어린이집 시간 연장형 보육		
3. 어린이집 24시간 보육		
4. 어린이집 휴일보육		
5. 유치원 방과후 과정		
6. 아이돌봄 서비스		
7. 공동육아나눔터		

A3-B. 다음 각 서비스별로 이용여부에 대해 응답해 주세요.

항 목	B. 서비스 이용여부	
	이용함	이용하지 않음
	1	2
1. 시간제 보육		
2. 어린이집 시간 연장형 보육		
3. 어린이집 24시간 보육		
4. 어린이집 휴일보육		
5. 유치원 방과후 과정		
6. 아이돌봄 서비스		
7. 공동육아나눔터		

A3-C. 다음 각 서비스별로 이용의향에 대해 응답해 주세요.

항 목	C. 서비스 이용의향	
	있음	없음
	1	2
1. 시간제 보육		
2. 어린이집 시간 연장형 보육		
3. 어린이집 24시간 보육		
4. 어린이집 휴일보육		
5. 유치원 방과후 과정		
6. 아이돌봄 서비스		
7. 공동육아나눔터		

A3-D. 다음 각 서비스별로 이용만족도에 대해 응답해 주세요.

항 목	D. 서비스 이용만족도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1	2	3	4	5
1. 시간제 보육					
2. 어린이집 시간 연장형 보육					
3. 어린이집 24시간 보육					
4. 어린이집 휴일보육					
5. 유치원 방과후 과정					
6. 아이돌봄 서비스					
7. 공동육아나눔터					

A3-1.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 돌봄에 보내지 않더라도 돌봐줄 사람이 있어서
2. 지원하였으나 추첨에서 떨어져서
3. 운영시간이 이용희망 시간보다 짧아서
4. 돌봄의 질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5. 돌봄선생님 및 다른 아이들로부터 차별 경험이 있어서 또는 차별이 있을까봐
6. 아이가 좋아하지 않아서
7. 기타()

A4. 귀하의 자녀가 집에서 성인이나 보호자 없이 혼자 있었던 적이 얼마나 됩니까?

- | | | | |
|--------------|---------|--------------|---------|
| 1. 전혀 없다 | -> A10 | 2. 1년에 1-2회 | -> A10 |
| 3. 1년에 4-5회 | -> A4-1 | 4. 한 달에 1-2회 | -> A4-1 |
| 5. 한 달에 3-4회 | -> A4-1 | 6. 주 2회 이상 | -> A4-1 |

A4-1. 1회 혼자 있을 때의 시간은 보통 어느 정도입니까?

- | | |
|------------------|------------------|
| 1. 30분 미만 | 2. 30분 이상 1시간 미만 |
| 3. 1시간 이상 3시간 미만 | 4. 3시간 이상 5시간 미만 |
| 5. 5시간 이상 | |

A4-2. 자녀가 혼자 있게 되는 상황은 주로 어떤 상황입니까?

1. 돌봄 공백이 발생하여 매일 혼자 있는 시간이 있음
2. 내가 직장에서 피치 못하게 야근을 하게 될 때나 주말에 일을 해야할 때(시간 외 근무)
3. 지인을 만나러 나갈 때
4. 집 앞에 잠시 불일을 보러 나갈 때(쓰레기를 버리는 등)
5. 돌봄을 제공하기로 한 기관 또는 사람이 약속을 못지켰을 때
6. 기타()

A5. 귀하는 초등학생 자녀를 방과 후에 주로 어떤 방식으로 돌보고 있습니까?

방과 후에 돌볼 수단으로 이용하는 방식을 모두 골라주세요.

※ 예시 : 자녀가 학교한 후 초등 방과후 과정을 이용하고, 지역 아동센터에 들렀다가 어머니 귀가시간까지 혼자 있다면 '초등 방과후 과정 이용', '지역아동센터', '자녀 혼자 집에 있음'에 응답합니다.

- | | |
|--------------------------------|----------------|
| 1. 내가 직접 돌봄 | 2. 초등돌봄교실 이용 |
| 3. 초등 방과후 과정 이용 | 4. 조부모 돌봄 |
| 5. 나의 형제자매 및 친인척 돌봄 | 6.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
| 7. 민간 양육도우미 이용 | 8. 지역아동센터 |
| 9. 자녀 혼자 집에 있음 | 10. 사설 공부방 이용 |
| 11. 사설 학원 이용(영어, 미술, 음악, 체육 등) | 12. 기타() |

A6. 현재 상황(취업, 기관 대기 상황, 비용, 가족과의 관계 등)에 상관없이 아래 보기 중 방과 후 돌볼 수단으로써 가장 이용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1순위, 2순위를 선택해 주십시오. ※ 현재 이용하고 계신 방식도 포함하여 응답할 수 있습니다.

- | | |
|--------------------------------|----------------|
| 1. 내가 직접 돌봄 | 2. 초등돌봄교실 이용 |
| 3. 초등 방과후 과정 이용 | 4. 조부모 돌봄 |
| 5. 나의 형제자매 및 친인척 돌봄 | 6.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
| 7. 민간 양육도우미 이용 | 8. 지역아동센터 |
| 9. 자녀 혼자 집에 있음 | 10. 사설 공부방 이용 |
| 11. 사설 학원 이용(영어, 미술, 음악, 체육 등) | 12. 기타() |

A7. 자녀의 등교/학교시각은 각각 언제입니까?

※ 학교에서 돌봄교실이나 방과후 교실을 이용할 경우, 최종적으로 마치는 시각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시각
1. 등교 시각	오전/오후 ()시 ()분
2. 하교 시각	오전/오후 ()시 ()분

A7-1. 자녀의 등/학교를 주로 도와주는 사람은 각각 누구입니까?

※ 등교 동행자는 자녀가 학교를 가기 위해 집을 나설 때 도와주는 사람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 하교 동행자는 자녀가 학교를 마친 후 집 또는 다른 돌봄으로 이동할 때 도와주는 사람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구분	동행자
1. 등교 동행자	
2. 하교 동행자	

- | | |
|----------------------|----------------|
| 1. 본인(자녀의 어머니) | 2. 자녀 혼자 다님 |
| 3. 조부모 | 4. 나의 형제 및 친인척 |
| 5. 민간 양육도우미 | 6. 아이돌보미 |
| 7. 셔틀버스 동승자(인솔 교사 등) | 8. 기타() |

A8-A. 귀하의 초등학령기 자녀가 방과 후에 이용하는 돌봄 서비스 기관 또는 돌봄 인력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음 각 서비스별로 인지여부에 대해 응답해 주세요.

항 목	A. 서비스 인지여부	
	알고 있음	모름
	1	2
초등돌봄교실		
2. 초등 방과후 과정		
3. 아이돌봄 서비스		
4. 지역아동센터		

A8-B. 귀하의 초등학령기 자녀가 방과 후에 이용하는 돌봄 서비스 기관 또는 돌봄 인력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음 각 서비스별로 이용여부에 대해 응답해 주세요.

항 목	B. 서비스 이용여부	
	이용함	이용하지 않음
	1	2
초등돌봄교실		
2. 초등 방과후 과정		
3. 아이돌봄 서비스		
4. 지역아동센터		

A8-C. 귀하의 초등학령기 자녀가 방과 후에 이용하는 돌봄 서비스 기관 또는 돌봄 인력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음 각 서비스별로 이용의향에 대해 응답해 주세요.

항 목	C. 서비스 이용의향	
	있음	없음
	1	2
초등돌봄교실		
2. 초등 방과후 과정		
3. 아이돌봄 서비스		
4. 지역아동센터		

A8-D. 귀하의 초등학령기 자녀가 방과 후에 이용하는 돌봄 서비스 기관 또는 돌봄 인력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음 각 서비스별로 이용만족도에 대해 응답해 주세요.

항 목	D. 서비스 이용만족도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1	2	3	4	5
1. 초등돌봄교실					
2. 초등 방과후 과정					
3. 아이돌봄 서비스					
4. 지역아동센터					

A8-1.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 돌봄에 보내지 않더라도 돌봐줄 사람이 있어서
2. 지원하였으나 추첨에서 떨어져서
3. 운영시간이 이용희망 시간보다 짧아서
4. 돌봄의 질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5. 돌봄선생님 및 다른 아이들로부터 차별 경험이 있어서 또는 차별이 있을까봐
6. 아이가 좋아하지 않아서
7. 기타()

A8-2.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 돌봄에 보내지 않더라도 돌봐줄 사람이 있어서
2. 지원하였으나 대기 순번이 너무 길어서
3. 순번이 되었으나 세부 조건에 따라 연결이 잘 되지 않아서(장기이용 우선, 시설방문 꺼림 등)
4.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다 사용하여서
5. 돌봄의 질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6. 아이가 좋아하지 않아서
7. 기타()

A8-3.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지역아동센터에 보내지 않더라도 돌봐줄 사람이 있어서
2. 학교에서 지역아동센터까지 이동이 어려워서
3. 센터에서 참여해야 하는 프로그램이 부담스러워서
4.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이미지가 싫어서
5. 운영시간이 이용희망 시간보다 짧아서
6. 돌봄의 질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7. 아이가 좋아하지 않아서
8. 기타()

A9. 귀하의 자녀가 집에서 성인이나 보호자 없이 혼자 있었던 적이 얼마나 됩니까?

1. 전혀 없다 → B1 2. 1년에 1-2회 → B1
3. 1년에 4-5회 → A9-14. 한 달에 1-2회 → A9-1
5. 한 달에 3-4회 → A9-16. 주 2회-4회 → A9-1
7. 주 5일 이상 → A9-1

A9-1. 1회 혼자 있을 때의 시간은 보통 어느 정도입니까?

1. 30분 미만 2. 30분 이상 1시간 미만
3. 1시간 이상 3시간 미만 4. 3시간 이상 5시간 미만
5. 5시간 이상

A9-2. 자녀가 혼자 있게 되는 상황은 주로 어떤 상황입니까?

1. 돌봄 공백이 발생하여 매일 혼자 있는 시간이 있음
2. 내가 직장에서 피치 못하게 야근을 하게 될 때나 주말에 일을 해야할 때(시간 외 근무)
3. 지인을 만나러 나갈 때
4. 집 앞에 잠시 불임을 보러 나갈 때(쓰레기를 버리는 등)
5. 돌봄을 제공하기로 한 기관 또는 사람이 약속을 못지켰을 때
6. 기타()

B. 자녀 양육관련

♣ 다음은 미혼모로서 자녀를 키우는 것에 관한 질문입니다.]

B1. 자녀를 키우는 데 다음의 어려움을 얼마나 느끼시나요?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1. 육체적 부담					
2. 정서적인 부담 (사회적 편견 및 스트레스로 인한 속상함 등)					
3. 경제적 어려움					
4. 원가족 간의 어려움(부모님과의 관계 등)					
5. 돌봄 공백					

B2. 귀하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나 기관을 순서대로 2가지 응답해 주세요.

1. 부모
2. 형제자매 및 친인척
3. 친구
4. 다른 미혼모 지인
5. 미혼모 당사자 단체
6. 미혼모 거점기관 포함 정부 기관
7. 종교단체
8. 직장 동료 및 상사
9. 기타()
10. 없음

B3. 현재 해당 자녀를 양육하면서 가장 필요한 정보는 무엇입니까? 필요한 순서대로 2가지를 응답해 주세요.

1. 연령별 자녀양육 방법
2. 아동 문제행동에 따른 대처
3. 아동 정서적 문제시 심리 상담 정보
4. 정부 지원에 대한 정보
5. 아버지 부재에 대한 대화법
6. 편견/차별 상황에서의 대처법
7. 기관이나 돌봄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정보
8. 기타()

B3-1. 출산 직후, 가장 필요한 정보 및 도움의 내용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한 순서대로 2가지를 응답해 주세요.

1. 실제 양육 시 필요한 기술 위주의 교육(목욕시키기, 기저귀갈기, 이유식 만들기 등)
2. 취업 교육 및 구직 정보
3. 주거 정보
4. 어머니의 자신감 회복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
5. 자녀 아버지 및 원가족과의 관계 관련 상담
6. 양육비 소송 및 법률관련 정보
7. 사회보장서비스에 대한 정보(수급자 및 법정 한부모 조건 등)
8. 기타()

B4. 귀하는 자녀와 함께 다음과 같은 여가 활동을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항 목	전혀 하지 않는다	1년에 1~2회	1년에 5~6회	한 달에 1~2회	한 달에 3~4회 이상
	1	2	3	4	5
1. 운동 및 나들이(놀이공원, 동물원, 한강시민공원 등)					
2. 외식(편의점, 분식집 등 제외)					
3. 쇼핑					
4. 여행					
5. 영화나 공연 관람					
6.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관람					

B5. 다음은 귀하가 학부모로서 실제 자녀에게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최도]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1. 나는 자녀의 선생님(들)과의 면담에 참석한다					
2. 나는 자녀 친구들의 부모들이 모이는 모임/연수 등의 행사에 참석한다					
3. 나는 자녀의 기관 및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한다					
4. 나는 자녀가 자녀의 친구들과 함께 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참석하기 위해 노력한다					

♣ 다음은 귀하의 생활환경에 관한 질문입니다.**B6. 귀 덕의 자녀의 생활환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각 항목에 대하여 응답하여 주십시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1. 먹을 것이 충분치 않아 식사의 양을 줄이거나 식사를 거른 적이 있다					
2. 하루에 적어도 한 번은 육류 또는 생선을 섭취한다(채식인 경우, 콩류 및 두부류 포함)					
3.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를 매일 섭취한다					
4. 인스턴트 식품(예: 라면, 햄버거 등) 등을 주 3회 이상 먹는다					
5. 아동의 연령과 발달수준에 맞는 책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					
6. 정기적인 여가활동을 하고 있다(미술, 수영, 악기, 태권도 등)					
7.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게임이나 기구들이 있다(교육적인 유아용 장난감, 보드게임, 블록, 컴퓨터 게임 등을 포함)					
8. 야외활동을 할 수 있는 기구들이 있다(자전거, 스쿠터, 롤러스케이트 등)					

B7. 다음은 자녀가 하루 동안 각종 매체들을 얼마나 이용하는지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내용에 응답해 주십시오.

항 목		전혀 안함	30분 미만	30분~1시간 미만	1시간~3시간 미만	3시간 이상
		1	2	3	4	5
1. 동영상 시청 (TV, 스마트폰, 태블릿 PC 포함)	1) 주중					
	2) 주말					
2. 독서 (영/유아의 경우 책 읽어주는 시간)	1) 주중					
	2) 주말					

B8. 자녀와 하루에 1:1로 마주보고 집중하여 이야기하고 놀아주는 시간은 얼마인가요?

1. 전혀 안 함
2. 30분 미만
3. 30분 이상 1시간 미만
4. 1시간 이상 3시간 미만
5. 3시간 이상

B9. 귀하는 얼마나 자주 자녀와 함께 저녁을 드시나요?

1. 전혀 안 함 → B9-1
2. 주 1~2일 → B9-1
3. 주 3~4일 → C1
4. 주 5일 이상 → C1

B9-1. 자녀는 주로 누구와 또는 어디에서 저녁을 먹나요?

1. 자녀의 조부모
2. 아이돌보미
3. 민간양육 도우미
4. 자녀 돌봄기관(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포함)
5. 어린이집
6. 주로 자녀 혼자 먹음
7. 기타()

C. 부모 특성

♣ 다음은 부모의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C1. 자녀 양육에 대하여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칸에 표시해 주십시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1. 나는 현재 아이를 잘 키우고 있다					
2. 앞으로 나는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 것이다					
3. 나는 아이와 관계가 좋은 편이다					
4. 나는 좋은 부모가 될 수 없을 것 같아 걱정이다					
5. 우리 아이는 나를 지치고 힘들게 한다					
6. 아이를 돌보느라 내 생활을 포기하고 있다					
7. 내 자녀는 내가 마땅히 키워야 한다					

C2. 다음 각 항목에 대하여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칸에 표시해 주십시오.

항 목	전혀 없음	며칠 동안	일주일 이상	거의 매일
	1	2	3	4
1. 지난 한 달 동안 자주 기분이 처지거나 우울하거나 희망이 없다는 느낌으로 고민하고 있다				
2. 지난 한 달 동안 자주 일상적인 활동에 흥미나 즐거움의 감소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				

C3. 다음은 귀하의 부모님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칸에 표시해 주십시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1. 자라면서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다					
2. 임신 전 부모님과 관계가 좋았다					
3. 현재 나는 부모님과 관계가 좋다					
4. 부모님은 나에게 정서적으로 도움이 된다					
5. 부모님은 나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해 주신다					

D. 자녀 아버지 관련**◆ 다음은 자녀 아버지에 관한 질문입니다.****D1. 귀하의 자녀는 누구의 성을 따르고 있습니까?**

1. 아이의 어머니(응답자 본인) 2. 아이의 아버지 3. 기타()

D2. 귀하의 자녀는 자녀의 아버지에게 인지되어 있습니까? 인지란 자녀의 아버지가 자녀의 존재를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1. 임의 인지되어 있음(아이의 아버지가 자발적으로 인지함)
 2. 강제 인지되어 있음(법원에 인지청구를 통해서 인지함)
 3. 인지되어 있지 않음

D3. 양육비 지급을 받고 있습니까?

1. 지급 받고 있다 2. 과거에는 지급 받았으나 현재는 받고 있지 않다
 3. 지급 받은 적 없다

D4. 귀하는 법적으로 양육비 이행확보절차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까?

1. 그렇다 2. 아니다

D5. 다음 중 어떤 조건이 바뀐다면 양육비소송을 하시겠습니까?

1. 양육비 소송 기간 단축
2. 양육비 소송 시 비용 단축
3. 소송절차에서 친권 및 성이 바뀌지 않도록 제도 변경
4. 양육비 이행에 대한 법적 구속력 강화(소득 원천징수 및 출국금지 등)
5. 양육비를 받더라도 수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제도 변경
6. 기타()
7. 어떠한 경우에도 소송할 의향이 없음

E. 자녀의 아버지에 대한 인식

◆ 다음은 아버지에 대한 자녀의 인식 관련 질문입니다.

E1. 귀하의 자녀는 아버지의 부재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1. 알고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다
2. 알고 있으나 혼란스러워 한다
3. 알고 있는 것 같다
4. 모르고 있는 것 같다
5. 모른다

E2. 귀하의 자녀가 아버지에 대해서 질문하거나 보고 싶다고 한 적이 있습니까?

1. 그렇다 → E2-1
2. 아니다→ E2-2

E2-1. 그렇다면, 그 첫 시기는 언제입니까? 자녀의 만 나이를 응답해 주세요.

만 ()세 때

E2-2. 귀하는 자녀에게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인해 현재 스트레스와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1. 전혀 그렇지 않다
2. 별로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약간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E3. 아버지가 없다는 사실로 인해 자녀가 현재 스트레스와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1. 전혀 그렇지 않다 → F1
2. 별로 그렇지 않다 → F1
3. 보통이다 → F1
4. 약간 그렇다 → E3-1
5. 매우 그렇다 → E3-1 9. 알지 못한다 → F1

E3-1. 현재 자녀가 겪고 있는 스트레스 및 심리적 어려움은 누구에 의한 것입니까?

해당하는 보기에 모두 응답해 주세요.

1. 보육/교육기관이나 학교 선생님
2. 학교나 기관의 친구들
3. 아이 친구들의 부모
4. 조부모 등 친척들
5. 공공기관 및 지원기관(시설 포함) 직원
6. 기타()

F. 학업 및 자립

[카테고리(F1~F12) : ♣ 다음은 귀하의 학업 및 자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F1. 귀하의 현재 상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가장 주된 활동 하나만 응답해 주세요.

1. 취업 중
2. 구직 중
3. 학업 중
4. 취업, 구직, 학업 중 어떤 것도 하고 있지 않음

F2. 귀하의 최종 학력은 무엇입니까?

1. 중학교 졸업 이하
2. 고등학교 중퇴 또는 재학
3. 고등학교 졸업(또는 동등수준)
4. 대학교 재학 또는 휴학
5. 대학교 졸업
6. 대학원 재학 이상

F3. 귀하의 임신 당시 학력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1. 중학교 재학 중 → F3-1
2. 중학교 중퇴 → F4
3. 중학교 졸업 → F4
4. 고등학교 재학 중 → F3-1
5. 고등학교 중퇴 → F4
6. 고등학교 졸업 → F4
7. 대학교 재학 중 → F3-1
8. 대학교 졸업 이상 → F4

F3-1. 임신으로 인해 학교를 자퇴 및 휴학하였습니까?

1. 그렇다
2. 아니다

F4. 귀하의 임신 당시 취업상태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1. 취업 중 → F4-1
2. 취업준비 및 구직 중 → F5
3. 학업, 양육, 가사, 퇴직, 장애 등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음 → F5

F4-1. 임신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었습니까?

1. 그렇다
2. 아니다

F5. 귀하께서는 귀하의 현재 상황이 경제적으로 안정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그렇지 않다
2. 별로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약간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F6. 미혼모로서 자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만 응답해 주세요. [복수] [RANK: 2]

1. 더 높은 학력
2. 자녀 돌봄 공백 해소
3. 전일제 정규직 취업
4. 정부지원을 받으며 소득 인정
5. 보다 다양한 취업교육 지원
6. 미혼모에 대한 차별 해소
7. 주거지원 확대
8. 기타()

F7. 자립하기 위해서 최소한 어느 정도의 학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수]

1. 학력과 자립은 무관
2. 중학교 졸업
3. 고등학교 졸업
4. 2~3년제 전문대 졸업
5.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

F8. 다음 각 항목별로 귀하에게 해당하는 정도를 응답해 주세요.

※ 해당 경험이 없어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만 '해당 없음'을 응답해 주세요.

항 목	그렇다	아니다	해당 없음
	1	2	9
1. 소득 발생 시 기초생활수급의 지원이 줄어드는 지원체계 때문에 자립의지가 생기지 않는다			
2. 미혼모로서 취업 시 편견이나 차별로 취업이 되지 않는다			
3. 취업 후에도 긴급 자녀 돌봄 상황 및 자녀 기관 이용 후 자녀를 봐줄 사람이 없어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둔 경험이 있다			
4. 취업한다고 하더라도 미혼모에 대한 편견 및 부당한 대우로 직장을 그만둔 경험이 있다			
5. 미혼모라는 이유로 직장에서 성희롱 등을 겪은 적이 있다			

F9. 귀하의 근로시간 형태는 어떠한가요?

1. 전일제
2. 시간제

F9-1. 귀하께서 일을 하기 위하여 집에서 나오는 시각과 집으로 들어가는 시각은 각각 언제입니까?

구분	시각	
1. 집에서 나오는 시각	오전/오후)시 ()분
2. 집으로 들어가는 시각	오전/오후)시 ()분

F9-2. 귀하가 현재 일자리에서 일한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1. 6개월 미만
2. 6개월 이상 1년 미만
3. 1년 이상 3년 미만
4. 3년 이상 5년 미만
5. 5년 이상

F9-3. 귀하는 현재 일자리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1.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2. 만족하지 않는다
3. 보통이다
4. 만족한다
5. 매우 만족한다

F9-4. 현재 귀하가 일을 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1순위, 2순위를 선택해 주십시오.

1. 자녀 양육 시간의 부족
2. 저임금
3. 업무 및 업종에 대한 불만족
4. 근무시간과 자녀 돌봄시간이 맞지 않음
5. 육체적 피로
6. 긴급 돌봄 상황이 많이 발생하여 업무에 지장을 줌
7. 미혼모에 대한 편견과 차별
8. 기타()
9. 없음

F10. 귀하는 한 해 동안(2017년 7월~2018년 6월) 취업을 위해 일자리에 몇 번이나 지원해 보셨습니까?

1. 지원해 본 경험이 전혀 없다
2. 1회
3. 2~3회
4. 4~5회
5. 6~10회
6. 10회 초과

F12-4. 귀하께서 직업훈련을 받았던 기관은 어디였습니까?

해당하는 기관을 모두 골라주세요.

- 1. 여성인력개발센터 또는 여성회관
- 2. 직장 또는 근무 장소
- 3. 사설 학원
- 4. 공공직업훈련기관
- 5. 미혼모 관련 시설
- 6. 통신 강좌
- 7. 기타()

F12-5. 직업훈련 비용은 주로 누가 부담하였습니까? 가장 많은 금액을 부담한 방법 한 가지만 응답해 주세요.

- 1. 본인 부담
- 2. 부모님(혹은 가족, 친지) 부담
- 3. 정부나 공공기관 지원
- 4. 미혼모 당사자 협회를 통한 지원
- 5. 미혼모 거주시설 지원
- 6. 기타()

F12-6. 귀하가 임신 및 출산 이후 직업훈련을 받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단수]

- 1. 훈련시간 동안의 자녀 돌봄
- 2. 직업훈련비용의 부담
- 3. 나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이 없음
- 4. 미혼모에 대한 편견
- 5. 체력 소모 및 건강 문제
- 6. 훈련을 받고도 취업이 잘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 7. 기타()

F12-7. 취업훈련을 통해 취득한 자격증이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인지 적어주세요.

- 1. 있다() -> F12-7-1
- 2. 없다 -> F12-8

F12-7-1. 취득한 자격증을 이용하여 취업을 하셨습니까?

- 1. 그렇다
- 2. 아니다

F12-8. 자립에 도움이 되는 취업교육이 되기 위해서 개선되어야 할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전문성 강화
- 2. 다양한 취업교육 분야
- 3. 강사의 자질 부족
- 4. 교육운영 및 관리
- 5. 직업훈련 후 실제 취업 지원
- 6. 기타()

G. 임신·출산·양육 결정과정

☛ 다음은 귀하가 임신하였을 당시에 관한 질문입니다. 임신하였을 당시를 떠올리면서 응답해 주세요.

G1. 귀하가 출산을 결정한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나의 아이이므로 출산을 고민하지 않음
2. 출산을 고민하였으나 아기 아버지와 함께 키우기로 약속해서 결심
3. 임신중절을 고려했으나 결심을 할수 없어서
4. 임신중절 시기를 놓쳐서
5. 임신중절하려 했으나, 비용이 없어서
6. 가족 등 주변의 강한 양육 지지로
7. 최근 미혼모에 대한 인식변화로
8. 기타()

G2. 혼자 아이를 키우게 된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임신사실을 알고 아이 아빠가 책임과 만남을 회피하여서
2. 아이 아빠는 함께 키우기를 바랐으나, 내가 그 사람과 결혼할 생각이 없어서 헤어짐
3. 임신 당시 함께 키우기로 했으나 가족의 반대 때문에
4. 자녀 양육을 함께 하다 이후에 아이 아빠의 변심과 무책임으로
5. 사귀는 사이가 아니어서 연락하지 않는 상태였음
6. 기타()

G3. 귀하가 임신 사실을 알린 사람은 주로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항 목	양육 권유	입양 권장	만남 회피	낙태 권유	알리지 않음	해당 없음
	1	2	3	4	8	9
1. 아이 아버지						
2. 나의 부모						
3. 나의 형제자매						
4. 나의 가장 친한 친구						

G4. 귀하가 출산을 결정하는 데 있어 가장 도움을 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 | | |
|-----------------|------------------------------|
| 1. 도움 준 사람 없음 | 2. 아이 아버지 |
| 3. 나의 부모 | 4. 나의 형제자매 |
| 5. 아이 아버지의 가족 | 6. 나의 친구 |
| 7. 나의 학교 선생님 | 8. 직장 동료 및 상사 |
| 9. 시설 또는 기관 상담원 | 10. 종교인 |
| 11. 미혼모 경험자 | 12. 기타() |

G5. 귀하가 양육을 결정하는 데 있어 가장 도움을 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 | | |
|-----------------|------------------------------|
| 1. 도움 준 사람 없음 | 2. 아이 아버지 |
| 3. 나의 부모 | 4. 나의 형제자매 |
| 5. 아이 아버지의 가족 | 6. 나의 친구 |
| 7. 나의 학교 선생님 | 8. 직장 동료 및 상사 |
| 9. 시설 또는 기관 상담원 | 10. 종교인 |
| 11. 미혼모 경험자 | 12. 기타() |

G6. 귀하가 아이의 양육을 결정했을 당시 가장 크게 고민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 1. 사회의 냉대와 주위의 시선
- 2. 아이 아버지와의 관계
- 3. 경제적인 문제
- 4. 주거 문제
- 5. 가족과의 관계
- 6. 학업 또는 진로 문제
- 7. 기타()

H. 임신기 의료시설 이용

◆ 다음은 임신기 의료시설 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H1. 귀하는 임신 몇 개월째에 처음으로 태아 검진을 위하여 의료시설을 방문하였습니까?

- 1. 임신 9주 이전 → H2
- 2. 임신 9주~13주 → H2
- 3. 임신 14주~24주 → H1-14.
- 4. 임신 25주~33주 → H1-1
- 5. 임신 34주 이후 → H1-16.
- 6. 출산 때까지 가지 않음 → H1-1

H1-1. 의료시설에 늦게 가거나 가지 않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병원에 가기가 두려워서
- 2. 임신 사실을 다른 사람이 알게 될까봐
- 3. 아이 아버지와의 관계 정리 등의 이유로
- 4. 병원비가 없어서
- 5. 출산여부를 결정하지 못해서
- 6. 기타()

H2. 출산 후 산후조리는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 1. 산후조리원 → H4
- 2. 부모님 집 → H3
- 3. 나의 집 → H3
- 4. 형제자매 집 → H3
- 5. 친구 집 → H3
- 6. 미혼모 시설 → H4
- 7. 산후조리 하지 못했음 → H4
- 8. 기타() → H4

H3. 산후조리 시 정부지원 산후도우미의 도움을 받았습니까?

- 1. 도움을 받았다 → H3-1
- 2. 도움을 받지 않았다 → H4

H3-1. 정부지원 산후도우미에 대한 정보는 어디를 통해 습득하셨습니까?

- 1. 미혼모 당사자 단체
- 2. 미혼모 시설
- 3. 주민센터
- 4. 정부 정보 제공 사이트
- 5. 일반 블로그 및 미혼모 인터넷 카페
- 6. 기타()

H4. 귀하는 임신 및 출산을 위한 비용을 어떻게 지불하셨습니까? 이용하신 방법을 모두 골라주세요

- 1. 국민행복카드(구. 고운맘 카드)를 통한 임신지원 금액으로
- 2. 나의 월급 및 모아둔 돈으로
- 3. 부모의 도움으로
- 4. 미혼모 시설 및 지원단체를 통한 산부인과 무료 지원으로
- 5. 아이 아버지의 도움으로
- 6. 대출로
- 7. 기타()

13.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향후 어떠한 사업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미디어를 통한 대국민 공공 캠페인
2. 가족관계 개선 및 이웃과의 교류 프로그램 제공
3. 미혼부(아이 아버지)의 법적 책임 강화
4. 미혼모 차별 법·제도 개선
5. 미혼모의 자립지원 강화

J. 정책 지원 경험

J1. 귀하께서는 임신하여 현재까지 아래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만족도에 대해서도 응답해 주세요.

항 목	A. 지원 경험 여부			B. 만족도				
	현재 지원 받고 있음	과거받았으나 현재 받지않음	지원 경험 없음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1	2	3	1	2	3	4	5
한부모 가족	1. 법적인부모 (저소득 한부모지원금 지원 대상자)							
	2. 아동양육비 (만 14세 미만 아동 대상)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13만원, 만 5세 이하 아동의 경우 추가 5만원)							
	3. 학용품비 (중고생 자녀) (자녀 1인당 5.41만원)							
	4.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만 18세 이하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120만원)							
	5.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검정고시학습비, 고등학교교육비, 자립촉진수당 등)							
	6. 미혼모부 초기지원 (수급자가 아닌 만 3세 이하 양육 미혼모 대상)							
	7.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사업 (양육비 외)							
	8.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 (양육비이행원을 통해 한부모 가족이 양육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							
주거	9.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10. 정부지원 임대주택 거주 (기존주택 매입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공공임대, 영구임대주택 등)							
	11. 주거비 지원 (전세자금 융자지원, 월임대료 보조)							
기타	12. 기초생활보장수급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13. 방과후 보육료 지원 (차상위 이하 및 장애아동이 방과후 어린이집 일일 4시간 이상 이용 시 지원)							
	14. 아동발달지원계좌 (디딤씨앗통장) (저소득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하는 초기 비용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 지원)							
	15. 아동통합서비스지원 (드림스타트사업) (취약계층 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16. 스포츠강좌이용권/문화바우처 (수급가구 및 차상위 가구 대상 8만원 한도 스포츠 활동 강좌비 지원)							
	17. 희망키움통장 (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의 자산형성지원사업)							

J5. 마지막으로 미혼모가 임신·출산·양육을 잘 할 수 있도록 바뀌었으면 하는 것을 한 가지만 고르신다면 무엇인지 자유롭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

K. 일반적 특성

◆ 다음은 귀하 및 귀하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K1. 귀하의 출생연도는 언제입니까? ()년

K2. 귀하가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구원은 본인과 자녀를 포함하여 총 몇 명입니까?

※ 가족이 아니더라도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을 포함하여 응답해 주세요. 다만 시설 거주자의 경우는 본인과 자녀만 가구원으로 생각하여 응답해 주세요.

()명

K2-1. 귀하는 현재 누구와 살고 있습니까?

※ 시설 거주자의 경우, 1. 본인+자녀에 응답해 주세요. [단수]

- | | |
|-------------------|--------------------------|
| 1. 본인+자녀 | 2. 본인+자녀+본인의 부모 |
| 3. 본인+자녀+본인의 형제자매 | 4. 본인+자녀+본인의 부모+본인의 형제자매 |
| 5. 본인+자녀+본인의 친구 | 6. 본인+자녀+다른 미혼모+그의 자녀 |
| 7. 기타() | |

K3. 귀하의 월 평균 가구 소득은 얼마나 됩니까? 모든 가구원의 소득을 합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만원

K4. 가구 기준이 아닌 귀하 본인의 월 평균 소득을 항목별로 응답해 주세요.

항목	월 평균 소득
1. 본인의 월평균 소득	()만원
2. 정부 및 보조금 및 지원 금액	()만원
3. 부모 및 친척, 형제 등으로부터 받는 용돈	()만원
4. (자녀 아버지로부터 받는) 양육비	()만원

K5. 귀하의 월 평균 총 생활비는 얼마나 됩니까?

※ 생활비란, 식비, 주거관리비, 의류비, 교육비, 보건의료비 등과 같이 생활에 드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만원

K5-1. 다음은 항목별 월 평균 지출비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 *표시가 되어있는 항목은 매달 꾸준히 나가는 금액으로 응답해 주세요.

항목	월평균 소득
1. *주거/관리비(월세, 관리비, 대출 이자 등)	()만원
2. *교육/보육비(사교육비 포함)	()만원
3. *보건/의료비(예방접종, 치과치료 등 병원 이용 비용 등)	()만원
4. 교통/통신비(소액결제를 제외하고, 순수 통신비만 응답)	()만원
5. *저축/보험	()만원

K6. 귀하는 채무(빚)가 있습니까?

1. 있다 → K6-1 2. 없다 → K7

K6-1. 빚을 지게 된 가장 주된 요인은 무엇입니까?

1. 보증금 2. 생활비
3. 자녀의 보육/교육비 4. 의료비 5. 기타()

K7. 현재 귀하가 살고 있는 집의 점유형태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 보증금이 있는 월세, 반전세 등의 경우는 '3. 월세'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자가 2. 전세
3. 월세 4. 무상 → K7-1

K7-1. 현재 무상으로 살고 있다고 하셨는데, 살고 있는 집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1. 가족 2. 친지
3. 친구 4. 정부지원 시설 5. 기타()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2. 미혼모·부 면담 질문지

미혼모·부 면담 질문

I. 양육 및 돌봄

1. 자녀를 양육은 주로 누가하시나요? 자녀 키우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2. (기관 보낼 경우) 자녀를 기관에 보내면서 미혼모·부이기에 어려웠던 경험이 있으신지요. 선생님이나 자녀 친구 부모들과의 관계는 어떠신지요? 미혼모·부 자녀라는 이유로 자녀가 겪은 어려움이 있을까요?
3. 아빠(엄마)에 대해서 자녀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셨나요? 학교나 친구사이에서 아빠(엄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나 할 때 아이가 어떻게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나요?
4. 자녀와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함께 시간을 보내시나요? 자녀와 주로 어떻게 놀아주시나요? 주말에는 어떻게 시간을 보내시나요?
5. 아이와 (맘이) 해보지 못했지만 가장 해주고 싶은 일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II. 임신 및 출산기

1. 임신을 처음 아셨을 때, 어떠셨는지요. 지금 생각해보실 때, 그때 어떤 것을 알았다면, 어떤 도움이 있었다면, 도움이 되었을거라고 생각하세요?
2. 조심스러운 질문이지만, 혹시 임신 당시 자녀 아버지(어머니)와의 관계 및 혼자 자녀를 키우게 된 계기를 간략히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3. 처음 임신은 언제 알게 되고 병원은 언제쯤 가셨나요? 임신기에 병원방문을 얼마나 하셨는지, 산 후조리는 어떻게 하셨는지요. 관련정보는 어떻게 아셨나요?

Ⅲ. 취업 및 자립

1. 현재 일을 하시거나 취업준비를 하시나요? 취업과정에서 미혼모·부이기에 겪었던 차별 등이 있는지요.
2. 귀하는 생계유지는 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고 계신지요. 수급중이시라면 수급자를 벗어나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축은 얼마나 하고 계신가요.
3. 임신 당시 출산 시기에 직장에 다니는 중이셨나요? 그렇다면 직장에서 미혼모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았거나, 어려움을 겪은 적 있었나요? 육아휴직등은 사용하실 수 있었나요? (미혼부 : 직장에서 미혼부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았거나, 어려움을 겪은 적 있었나요? 육아휴직등은 사용하실 수 있었나요?)

Ⅳ. 인적 네트워크

1. 현재 누구와 함께 사시나요? 부모님과과의 관계는 어떠신지요?
2. 시설에 입소하셨던 경험이 있으신지요? 시설에서 거주 할 때 양육에 있어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3.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도움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있다면 누구입니까?

Ⅴ. 법적 제도로 인한 어려움

1. 임신 시 지원 신청, 출산, 출생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면서 법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으신지요?
2. 양육비를 받고 계신지, 청구 신청 의향 및 시도경험, 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아이의 성과 관련한 어려움 포함)

연구 협력진

박지윤 동양대학인간과학종합연구소연구원

최형숙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대표

돌봄취약계층 맞춤형
육아지원 방안 (Ⅳ)

- 미혼모·부 가정의 자녀양육 실태 및 지원방안 -

